

연구보고 2010-12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문희 최혜선

머 리 말

최근 들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 유아교육정책이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정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규모나 대상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지원하는 방법도 아동별 지원과 기본보육료 등 시설별 지원의 성격을 가진 지원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보육료 추가 지원, 그리고 민간개인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서울과 부산 공인어린이집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며, 지역 간 격차도 매우 크다.

본 보고서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보육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정책 수립 반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을 검토하고, 공무원 의견조사를 통하여 지방정부 특수시책 사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지방정부 정책 중 공인 어린이집 실태를 심도있게 검토하며, 이러한 검토에 의거하여 앞으로의 정책방안 및 제도의 발전 가능성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을 8개 영역 66개 세부과제로 분류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정책의 중요도와 효과성,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 현금지원, 교사수당, 취약가정 보육료 지원 등이 상위 우선순위로 나타나서 이러한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서울형 어린이집과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은 실시 규모나 지원방식 등이 다른 부분이 많으나, 국공립어린이집 대안으로 어느 정도 기능을 하므로 확대할 필요성과 동시에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 조건이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가 2011년에 추진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추진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보육정책 정책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정부, 현장 관계자 및 학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요 약

1. 서론

- 본 연구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하고, 지방정부 특수시책 중 공인 어린이집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정책방안 및 제도의 발전 가능성으로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둬.
-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함. 보육시설 공급 및 설치 관련 정책, 차등 지원 및 만5세아 전액지원 등 보육료 지원 정책, 교사 인건비 등 교사 관련 지원정책, 프로그램 및 평가 등 질 관리 정책 등 각종 예산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문제점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도출함.
 - 지방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함.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고유의 보육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을 파악함. 또한 이들 지방정부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효과성 및 우선순위를 파악함.
 - 지방의 특수보육시책 중 서울형과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등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시설장과 부모의 인식 및 의견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앞서서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육정책의 방향 및 개선 방안 등 정책 제언을 도출함.
-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문헌연구, 행정기관 자료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보육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전국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보육정책 자료와 통계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음. 자료 수집은 부분적으로는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일부는 부처가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음.
 - 심층 분석 대상 보육사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보육담당 공무원, 서울시와 부산시 어린이집 시설장과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2. 보육정책 현황

- 보육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보육정책 성과 지표를 제시하였음. 주요 지표는 보육정책의 추진 방향과 성과 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줌.
- 보육비용 지원 정책은 2004년 이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으로, 보육료 전액지원아동 및 전체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은 2009년 현재 각각 45.0%, 65.7%임. 소득대비 보육료 지출 비율은 2009년 7.4%임.
 - 영아 기본보육료의 성격은 여전히 불분명함.
 - 만5세 보육료 지원에 소득제한 적용은 단순한 부모 비용지원임을 나타내며,
 - 유아 보육료 낮은 지원 단가, 민간우위 공급 구조 등으로 보육비용 지원의 부모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임.
 - 취업모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소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특별활동 비용의 지역 차이가 크고 중앙정부 지침은 부재함.
- 양육수당은 2009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2009년 차상위계층 이하 0, 1세 아동 888,811명 중 8.7%인 77,000명이 지원 받았음. 지원액은 10만원임.
 - 저소득층 영아 보육시설 이용 저해, 모의 취업 동기 약화 등 비판 요인이 있어서 유아로의 확대나 지원금 확대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함.
- 보육 지원 확충으로 보육재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2010년 GDP 대비 보육재정 비율은 0.47%임. 유아교육 비용이나 농어촌 영유아 지원 등을 포함하면 0.62%가 됨. OECD는 1% 이상을 권장함.
 - 아동 1인당 보육예산은 420만원 정도이고 지역별 차이가 큰데, 지역내 보육료 지원 대상이 많을수록 높아지므로 그 의미는 복합적임.
 -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예산은 지방정부의 보육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2009년에는 평균 아동 1인당 15만원 수준이나 분포는 4~98만원으로 지역간 격차가 큼. 이러한 차이의 조정은 중앙정부의 중요 기능이 되어야 할 것임.
- 2009년 보육시설 공급률은 54.2%, 보육시설 이용률은 42.9%, 아동수 대비 국공립 시설 이용 비율은 6.1%임.
 - 보육서비스 및 국공립 공급률·이용률은 시·도, 시·군·구별 격차가 커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필요함.

-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률은 2% 수준임. 교사 연장 근무 수당 지급방식은 탄력적 정책이나 교사 장시간 근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님.
 - 소수 아동 야간보육을 위한 교사 인건비 지원방식은 효율성이 낮고, 관리체계 부재로 이용 아동 대부분에게 월 60시간을 지원하고 있음. 거점형 시설로 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 있음.
- 평가인증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통과 시설 비율은 2009년 신청 기준으로 60.5%임.
 - 정보 공개 미비로 부모 활용도 낮고, 재정지원과의 연계 부재로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담보 역할 부족함. 평가 의무화로 전환도 검토가 필요함.
- 교사는 평일 9.5시간 근무로 8시간 근무로 준수가 어렵고, 평균 급여는 126만원임.
 - 교사수 대비 월 수당 지급 교사 비율은 18.2%로 전국 확대가 필요함.
 - 보육교사 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은 0.29%로 대체교사 규모가 제한적임.
 - 보수교육 지원이 미미하여 질 높은 교육에 한계가 있음.

3.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우선순위

- 지방정부 특수시책을 8개 영역 66과제로 분류하고 공무원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과제를 선정함.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 현황과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에서 나타난 정책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몇 가지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우선순위는 부모 지원, 교사 등 인력 지원, 공공보육시설, 특수보육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부수적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필요성 우선순위가 낮음.
 -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의 하나로 보편적 현금 지원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의 양육수당제도는 보육시설 미이용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대체적 성격이 강한데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이보다는 보편적 수당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일반 보육료 추가 지원보다는 다자녀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나타냄.
 - 교사수당 지원에도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특히 평가인증과 연계한 보육

교사 수당 등은 전국적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공무원들이 국공립보육시설에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도와 효과성도 높이 평가 하였음.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이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토록 요구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공감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민간시설 운영비 지원은 우선순위가 낮아 가급적 삼가야 할 정책임을 시사하며, 동시에 아동 간식비, 냉난방비 등 부가적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도 필요성과 효과성 평가가 낮음. 이러한 비용 중 상당부분은 표준보육당가에 반영되어 있어서 중복됨. 특히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보육비용이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하고 있는 영아의 간식비 추가 지원은 대표적 지원 사례라고 하겠음.

4. 공인 어린이집 운영 효과와 시사점

-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을 심층분석하기 위해 선별한 서울형 어린이집과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살펴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서울과 부산 공인 어린이집 사례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공인 어린이집 수용성은 선정 기준과 지원조건에 달려 있으며, 평가 기준과 지원조건은 보육시설의 공공성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수위 결정이 쉽지 않음.
 - 공인 어린이집 운영에서 가장 큰 공감대는 회계의 투명성임. 운영조건의 적절성 조사에서 시설명의 1계좌로 회계관리 투명성이 가장 점수가 높음. 그러나 서울시 어린이집의 재무회계규칙에서 기타 운영비 항목 지출 10% 준수는 74.4%가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하였음.
 - 정부가 정한 공인 어린이집의 조건 유지의 어려움이 상존함을 시사함.
 - 서울시가 민간과 가정 서울형 보육시설에 추가 지원하는 보육료 기준 10%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서울형 시설장의 17.0%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 사후관리는 조사대상 전체의 33.5%, 서울형 보육시설장은 46.7%가 완화된다고 응답하였음. 부산의 경우도 평가기준이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모두 50.0%이상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인식은 높지 않고, 또한 이

를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삼지 않는 부모도 상당수여서, 홍보나 정보 전달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냄.

- 서울시 시설장들은 공인 어린이집 운영 개선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시설체계화와 열린 운영, 공공성 확대에 대해 7점 만점에 서울 5점 수준, 부산 5.7점 내외임
 -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리 체계화, 교사의 자존감이나 업무 적극성, 자존감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됨.
 - 재정운영도 개선이 되었다는 응답이 64.2%로 나타남. 부산의 경우 보육시설이 공보육어린이집에 참여한 이유는 안정된 교사채용이 50% 수준이었음.
- 공인 어린이집의 부모에 대한 효과는 질적 수준 개선에 대한 인식, 보육료 감소로 나타남. 특히 시설설비, 교재 교구 및 장비, 내부분위기의 3개 항목에서 변화되었다는 비율이 서울과 부산 모두 상대적으로 높음.
- 서울의 경우, 투자 대비 서비스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서울형 시설장의 35% 정도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부산 공보육어린이집 원장은 6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산할 경우 선정이나 유지 조건은 서울형보다는 강화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을 시사함. 어린이집 건물 소유 및 회계관리 등의 조건에 다수가 동의함.
-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율장학은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서울시 시설장의 70%가 자율장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전문가 교사 연구 지원을 요구함.

5. 향후 정책과제

□ 보육료 지원 및 부모 부담과 관련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만5세아 무상보육에 대한 소득 제한은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만5세 무상보육이 보편적 학교 준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합리적임.
- 취업모에 대한 소득 감액 제도는 제도 도입 자체는 높이 평가하지만, 소극적으

로 추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은 일반 보육료 추가 지원보다는 다자녀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등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보육료 이외에 기타 필요 경비 상한선은 지역 차이가 큼. 중앙정부가 특히 특별활동 비용, 시간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여야 함.
- 향후 추진 과제의 하나로 현금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아 보육료 지원단가와 실제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 보육료간의 격차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 보육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추진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2011년에 시범사업이 예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는 비용 효율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보육서비스 공급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은 다시 한번 전면적 검토가 필요함.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효과성도 높이 평가하였음.
- 보육시설 이외에 육아지원시설이 주요한 인프라로 확충되어야 함. 서울 이외에 재정 취약지역에도 설치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함.

□ 보육시설에서는 실시하는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함.

- 시간연장형이나 장애아 보육, 일시보육 등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되어야 하고, 그 방법으로 거점형 보육시설을 제안함.
- 주간에 모든 아동이 12시간 보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보육시설 이용시간 체계를 다양화하고 비용 지원체제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함.

□ 평가인증제도에서 앞으로의 정책과제는 결과 활용과 재정 지원과의 연계임.

- 전체 보육시설은 최소 우수인증시설, 인증시설, 미인증시설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인증결과는 총점 등급과 영역별 등급, 장단점 등을 공개하며, 부모에게 서류 통보를 보육시설 의무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인증제도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으로는 1단계는 평가인증제도와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운영비 지원과 연계하고, 2단계는 영아 기본보육료, 3

단계는 차등보육료로 설정하고, 평가인증 시설의 확대 추이에 맞추어서 일정기간을 두어 정책도입을 예고한 후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 장기적으로 평가인증제도는 의무적 평가제도로의 변경을 검토함.

□ 보육교사 처우 및 환경 개선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음.

- 보육교사 처우 관련 예산 사업 중 대체교사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사업으로 제도 도입은 주요한 정책적 성과라고 할 수 있음. 당분간은 대체교사의 수를 증가시켜야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비담임 교사 추가 배치로 전환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탄력 근무로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오후반 교사 배치가 검토되어 보육교사가 아동과의 보육활동 이외에 보육활동 준비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교사 수당 지원은 액수 증액과 더불어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전국적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별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공급과 이용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는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임. 보육 공급과 이용률은 동일 시·도내에서도 시·군·구별 편차가 큼. 특히 전북이 시·군별로 표준편차가 10%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나타냄.
- 중앙정부가 보육재정 시·도 균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지방정부간 특수시책 사업비의 지역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여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중 평가인증보육시설 교사 수당과 같은 시책 등 일부를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2
3. 연구방법	3
4. 유사 선행연구	7
5. 보고서 구성 등	9
II. 보육정책의 현황	10
1. 보육비용 지원	10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25
3. 보육 재정	26
4. 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	31
5. 시간연장형 보육	46
6. 보육시설 평가인증	49
7. 보육인력 특성과 처우	54
8. 소결: 주요 보육 지표	59
III.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62
1. 특수보육시책 현황	62
2.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우선순위 의견	74
3. 요약 및 시사점	88
IV. 공인 어린이집 운영과 효과	91
1. 공인 어린이집 개요	91
2. 공인 어린이집 수용 및 부모 인지	101
3. 공인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의 적절성	110

4. 공인 어린이집의 운영 개선 효과	129
5. 공인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 효과	153
6. 공공 어린이집 관련 의견	163
7. 요약 및 시사점	168
V. 정책제언	171
1. 향후 정책과제	171
2. 맺는 말	177
부록	181
부록 1. 시·군·구 보육시설·유치원 공급률, 이용률과 특수보육예산	182
부록 2.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 지표	191
부록 3. 호주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193
부록 4. 조사표 5종	200

표 차례

〈표 I-3- 1〉 가구조사 설문 내용	4
〈표 I-3- 2〉 구 단위 가구조사 완료 가구 및 영유아 수	5
〈표 I-3- 3〉 보육시설조사 설문 내용	6
〈표 I-3- 4〉 시설조사 완료 수	6
〈표 II-1- 1〉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11
〈표 II-1- 2〉 보육비용 구성	13
〈표 II-1- 3〉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상한액: 2010	13
〈표 II-1- 4〉 시·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2010	14
〈표 II-1- 5〉 서울시 각 구의 영유아 추가 수납액 상한 기준: 2010	15
〈표 II-1- 6〉 경기도 각 시의 추가 수납액 기준: 2010	16
〈표 II-1- 7〉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17
〈표 II-1- 8〉 연령별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 2007~2009	19
〈표 II-1- 9〉 보육료 지원 건수: 2007~2009	19
〈표 II-1-10〉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사유 백분율 분포: 2009. 4	20
〈표 II-1-11〉 보육시설 유형 및 지원여부별 월평균 보육 비용	21
〈표 II-1-12〉 아동 연령 및 시설유형별 전체 아동 월평균 보육 비용	22
〈표 II-2- 1〉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비교: 2010	26
〈표 II-3- 1〉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2005~2010	27
〈표 II-3- 2〉 연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5~2010	28
〈표 II-3- 3〉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0	28
〈표 II-3- 4〉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0	29
〈표 II-3- 5〉 보육·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2010	29
〈표 II-3- 6〉 보육·유아교육 비용 부모와 정부 분담: 2010	30
〈표 II-4- 1〉 연도별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 예산 현황	32
〈표 II-4- 2〉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대기자 현황: 2009. 3.	32
〈표 II-4- 3〉 시·도별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동 현황: 2009	32
〈표 II-4- 4〉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 수: 2009	33
〈표 II-4- 5〉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수: 2009	34

〈표 II-4-6〉 유치원 설치 및 원아수	34
〈표 II-4-7〉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2009	35
〈표 II-4-8〉 시·도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2009	36
〈표 II-4-9〉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분포	37
〈표 II-4-10〉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시설 현원 비율 평균 분포	37
〈표 II-4-11〉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시설 공급 및 이용 비율 평균	38
〈표 II-4-12〉 시·도별 시·군·구 단위 국공립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40
〈표 II-4-13〉 시·도별 시·군·구 단위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41
〈표 II-4-14〉 보육아동 연령 분포	43
〈표 II-4-15〉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아수	44
〈표 II-4-16〉 시·군·구 단위 보육아동 중 다문화 가정 아동 비율과 수	44
〈표 II-5-1〉 시·도별 시간연장형 보육 제공 현황 : 2009. 11월 말	47
〈표 II-5-2〉 제 특성별 야간보육의 필요성	48
〈표 II-6-1〉 연차별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참여 및 인증률: 2010. 3	50
〈표 II-6-2〉 2005~2009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참여율, 인증률: 2010. 3	51
〈표 II-6-3〉 2005~2009 평가인증시설 지역별 분포 : 2010. 3	51
〈표 II-6-4〉 평가인증 참여시설 결과점수 분포	52
〈표 II-6-5〉 호주와 영국의 평가인증 정보 공개 및 활용 사례	53
〈표 II-7-1〉 보육시설 종사자 수	55
〈표 II-7-2〉 보육교사 자격 및 학력 분포	56
〈표 II-7-3〉 교사 관련 사업 규모	57
〈표 II-7-4〉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교사의 급여(월평균 급여 및 연평균 수당)	58
〈표 II-7-5〉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58
〈표 II-8-1〉 주요 지표	60
〈표 III-1-1〉 사업유형별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2010	63
〈표 III-1-2〉 서울시 보육사업 부담비율 : 2010	65
〈표 III-1-3〉 서울시 특수보육시책: 2010	67
〈표 III-1-4〉 경상북도 특수보육시책: 2010	71
〈표 III-1-5〉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아동 1인당 특수보육시책 예산 평균	73
〈표 III-2-1〉 영역별 특수시책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75
〈표 III-2-2〉 영역별 특수시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75

〈표 III-2- 3〉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76
〈표 III-2- 4〉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관련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77
〈표 III-2- 5〉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77
〈표 III-2- 6〉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관련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78
〈표 III-2- 7〉	보육비용 지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79
〈표 III-2- 8〉	보육비용 지원 관련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지원 대상	79
〈표 III-2- 9〉	보육인력 인건비 지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81
〈표 III-2-10〉	보육인력 인건비 지원 관련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지원 사업 대상	81
〈표 III-2-11〉	취약보육운영 지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82
〈표 III-2-12〉	취약보육운영 지원 관련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83
〈표 III-2-13〉	평가인증시설 지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84
〈표 III-2-14〉	평가인증시설 지원 관련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84
〈표 III-2-15〉	보육시설 기능 보강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85
〈표 III-2-16〉	보육시설 기능 보강 관련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대상	86
〈표 III-2-17〉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87
〈표 III-2-18〉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87
〈표 III-3- 1〉	우선순위 상하위 11대 세부과제 4점 척도	89
〈표 IV-1- 1〉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 기준 및 배점	92
〈표 IV-1- 2〉	서울형 어린이집 재정지원 : 2010	94
〈표 IV-1- 3〉	서울형어린이집 시설 및 이동수 현황 : 2010. 10	96
〈표 IV-1- 4〉	부산시 공보육 평가 및 지정조건	97
〈표 IV-1- 5〉	부산시 공보육 사업 선정을 위한 1, 2차 평가 배점	98
〈표 IV-1- 6〉	부산시와 서울시 사례 비교	100
〈표 IV-2- 1〉	서울형 비율 및 비서울형 시설유형별 앞으로 공인 신청 계획	101
〈표 IV-2- 2〉	시설유형별 서울형으로 공인 받지 않으려는 이유	102
〈표 IV-2- 3〉	서울형 어린이집 인지 여부	103
〈표 IV-2- 4〉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료 인지 여부	103
〈표 IV-2- 5〉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서울형어린이집 여부	104
〈표 IV-2- 6〉	공인 이후 이용자의 보육시설 선택시 서울형 공인 여부 영향	105
〈표 IV-2- 7〉	서울형 어린이집 미이용 이유	106
〈표 IV-2- 8〉	인근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옮길 의향	106

〈표 IV-2- 9〉	서울형 어린이집을 우선 선택	107
〈표 IV-2-10〉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참여 이유	107
〈표 IV-2-11〉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과 공보육 지정일 인지 여부	108
〈표 IV-2-12〉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인지	108
〈표 IV-2-13〉	국공립 어린이집과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보육료 및 교사 인건비 동일 인지	109
〈표 IV-2-14〉	공보육 어린이집 여부가 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109
〈표 IV-3- 1〉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지표 기준 및 조건의 적절성 총괄	110
〈표 IV-3- 2〉	시설유형별 서울형 어린이집의 성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조건	111
〈표 IV-3- 3〉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유형별 공인 조건 적절성에 대한 의견	112
〈표 IV-3- 4〉	민간·가정시설 서울형여부별 공인 조건 적절성에 대한 의견	113
〈표 IV-3- 5〉	시설유형별 서울형 공보육 조건이 강화 필요성	114
〈표 IV-3- 6〉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공보육 조건 강화 필요성	114
〈표 IV-3- 7〉	시설유형별 추가 지원 수준의 적절성	115
〈표 IV-3- 8〉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추가 지원 수준의 적절성	116
〈표 IV-3- 9〉	시설유형별 사후관리의 충분성	117
〈표 IV-3-10〉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사후관리의 충분성	117
〈표 IV-3-11〉	시설유형별 주치의 전문과목	118
〈표 IV-3-12〉	시설유형별 주치의로부터 받은 서비스: 2010	118
〈표 IV-3-13〉	시설유형별 주치의 제도의 유용성 및 필요성	118
〈표 IV-3-14〉	서울형 보육시설 주치의 유무 인지 및 서비스 경험	119
〈표 IV-3-15〉	시설유형별 IP-TV 설치 여부 및 설치시 만족도	120
〈표 IV-3-16〉	시설유형별 IP-TV의 유용성 및 필요성	121
〈표 IV-3-17〉	시설유형별 IP-TV의 교사와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121
〈표 IV-3-18〉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IP-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부모 인식	122
〈표 IV-3-19〉	IP-TV의 교사와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한 부모 인식	122
〈표 IV-3-20〉	IP-TV 이용자 가입 여부 및 가입시 이용 빈도	123
〈표 IV-3-21〉	설치한 경우 타 부모 관찰시 걱정에 대한 응답	123
〈표 IV-3-22〉	시설유형별 자율장학 모임 참여 여부 및 보육 질적 수준 제고에 도움 효과 의견	124
〈표 IV-3-23〉	시설유형별 자율장학의 필요성	124

〈표 IV-3-24〉 시설유형별 자율장학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	125
〈표 IV-3-25〉 시설유형별 공동구매의 필요성	126
〈표 IV-3-26〉 시설유형별 공동구매가 필요한 이유	126
〈표 IV-3-27〉 시설유형별 공동구매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126
〈표 IV-3-28〉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평가지표 기준의 적절성	127
〈표 IV-3-29〉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공보육 조건의 강화·완화 필요성	127
〈표 IV-3-30〉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지정시설에 대한 지원 수준 만족도	128
〈표 IV-3-31〉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지정시설 평가의 적절성	128
〈표 IV-4 1〉 보육의 공공성 및 운영 개선 개요	129
〈표 IV-4 2〉 시설유형별 보육의 공공성 및 운영 개선 7점 척도 평균	130
〈표 IV-4 3〉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공개와 열린 운영의 개선 정도	130
〈표 IV-4 4〉 시설유형별 서울형 공인 이후 입소아동 및 대기아동 변동	131
〈표 IV-4 5〉 시설유형별 서울형 공인 이후 보육시설의 총 수입과 지출	132
〈표 IV-4 6〉 시설유형별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관리 체계화의 개선 정도	132
〈표 IV-4 7〉 민간·가정 서울형여부별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관리 체계화의 개선 정도	133
〈표 IV-4 8〉 서울형 공인 이후 교사관리 및 태도	133
〈표 IV-4 9〉 시설유형별 서울형 공인 이후 교사관리 및 태도 개선 비율	134
〈표 IV-4-10〉 시설유형별 시설의 재정운영 안정화와 투명화 개선 정도	135
〈표 IV-4-11〉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시설의 재정운영 개선 정도	135
〈표 IV-4-12〉 시설유형별 ‘기타 운영비 항목 10%’ 지출 준수 여부	136
〈표 IV-4-13〉 민간·가정 시설 서울형여부별 ‘기타 운영비 10%’ 지출 준수 여부	136
〈표 IV-4-14〉 시설유형별 재무회계 관련 사항 준수 비율	137
〈표 IV-4-15〉 민간·가정 보육시설 재무회계 관련 사항 준수 비율	137
〈표 IV-4-16〉 표준보육과정 운영 현황	138
〈표 IV-4-17〉 시설유형별 표준보육과정 운영 7점 척도 평균	139
〈표 IV-4-18〉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표준보육과정 운영: 40인이상	139
〈표 IV-4-19〉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표준보육과정 운영: 39인이하	140
〈표 IV-4-20〉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설비와 놀잇감 안전	140
〈표 IV-4-21〉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설비 실태 7점 척도	141
〈표 IV-4-22〉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보육시설 설비 실태	

	7점 척도 평균	142
<표 IV-4-23>	시설유형별 맞춤형보육 실시 및 확대 필요 비율	143
<표 IV-4-24>	민간·가정 보육시설 맞춤형보육 실시 및 확대 필요 비율	144
<표 IV-4-25>	시설유형별 맞춤형보육 평균 아동 수	144
<표 IV-4-26>	시설유형별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145
<표 IV-4-27>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145
<표 IV-4-28>	시설유형별 부모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선택 여부	146
<표 IV-4-29>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부모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선택 여부	146
<표 IV-4-30>	시설유형별 특별활동 실시 시간	147
<표 IV-4-31>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특별활동 실시 시간	147
<표 IV-4-32>	시설유형별 특별활동 비용	148
<표 IV-4-33>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특별활동 비용	148
<표 IV-4-34>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운영 개선 정도	149
<표 IV-4-35>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입소아동 · 대기자 증가여부	149
<표 IV-4-36>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총수입 · 총지출 변화	150
<표 IV-4-37>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관리 체계 변화	150
<표 IV-4-38>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교사 관리와 교사의 태도 변화	151
<표 IV-4-39>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지정 이후 가장 좋아진 점	151
<표 IV-4-40>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운영 개선 정도	152
<표 IV-4-41>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취약보육 실시 여부	152
<표 IV-4-42>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수	152
<표 IV-4-43>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특별활동 선택 가능 여부	153
<표 IV-4-44>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시간	153
<표 IV-5- 1>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의 개선 정도	154
<표 IV-5- 2>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의 개선 정도	154
<표 IV-5- 3>	시설유형별 보육서비스 질 개선 총괄	155
<표 IV-5- 4>	시설유형별 보육서비스 질 개선 7점 척도 평균	156
<표 IV-5- 5>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서비스 질 개선 7점척도 평균 ·	156
<표 IV-5- 6>	서울형어린이집 정책 이후 서울시 보육수준 향상 기여 여부	157

〈표 IV-5- 7〉	서울형 공보육 이후 변화	158
〈표 IV-5- 8〉	항목별 서울형 공인 이후 변화	158
〈표 IV-5- 9〉	서울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월평균 보육비용 감소	160
〈표 IV-5-10〉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투자 대비 서비스 수준 개선 정도	160
〈표 IV-5-11〉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개선 정도	161
〈표 IV-5-12〉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변화: 부모 평가	162
〈표 IV-5-13〉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부모 만족도	162
〈표 IV-6- 1〉	공공형 어린이집 확산시 필요 조건	163
〈표 IV-6- 2〉	시설유형별 공공형 어린이집 확산시 필요 조건의 적절성	164
〈표 IV-6- 3〉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공공형 어린이집 확산시 조건 필요성	165
〈표 IV-6- 4〉	서울형 어린이집과 공공 어린이집이 동일한지에 대한 부모 인식	166
〈표 IV-6- 5〉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과 공공 어린이집 수준 비교	166
〈표 IV-6- 6〉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 서울시 부모	167
〈표 IV-6- 7〉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 부산 공보육 보육시설 이용 부모	168

그림 차례

[그림 II-1-1]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사유 백분율 분포	20
[그림 II-1-2]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순비용과 추가비용 비교: 2004, 2009	22
[그림 II-4-1]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2009	39
[그림 II-4-2]	시·도별 시·군·구 단위 국공립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2009	40
[그림 II-4-3]	시·도별 시·군·구 단위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42
[그림 IV-3-1]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지표 기준 및 조건의 적절성 총괄	111
[그림 IV-4-1]	보육의 공공성 및 운영 개선 7점척도 평균	129
[그림 IV-4-2]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설비와 놀잇감 안전 운영 7점 평균	141
[그림 IV-5-1]	시설유형별 보육서비스 질 개선 7점 평균	155
[그림 IV-5-2]	서울형 공인 이후 변화	157

부표 차례

〈부표 1〉 2009년 시·군·구별 보육시설 공급률, 이용률 및 특수보육사업 예산	182
〈부표 2〉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기준	190
〈부표 3-1〉 보육시설 유형별 평가인증 영역	193
〈부표 3-2〉 종일제보육시설 인증 현황 - 2010	194
〈부표 3-3〉 가정보육센터 인증 현황 - 2010	19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에 들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 유아교육정책이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영유아 양육지원은 규모나 대상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지원하는 방법도 아동별 지원과 시설별 지원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설보육 서비스 이용비용을 중심으로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보육비용 지원 이외에 기관 미이용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방식의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 7월부터 보육료·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이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아동의 50%로 확대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에 따라 2009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 수준에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0세와 1세아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 지원의 전달체제로 전자카드형태의 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추진하였다. 한편으로는 농어촌 우선으로 보육교사 수당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유치원 교육도 교육비 지원 이외에 종일제 등을 중심으로 교사 인건비와 종일반 비용 지원이 확대되며 교사수당제도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업 확대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2002년 4천억원 규모의 보육예산이 2009년 현재 3조 5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유아교육비 지원금도 1조 2천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외 가정내보육인 아이돌보미 비용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며, 농림부가 농어민 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원한다.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는데, 대표적 정책이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보육료 추가 지원, 그리고 서울형 및 부산 공인 어린이집 제도 등이다. 많은 지방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시 또는 아동이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주로 현금으로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용을 지원하고, 대부분 출생순위별로 제한하여 중앙정부 보육료 지원에 추가하여 지원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2009년 5월부터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로 인건비 형태로 보조하는 유사 공공시설인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현재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일정한 추가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약 2,550개 민

간보육시설에 인건비의 일부와 부모보육료 총 수입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보육료 수준을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하게 낮추어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정책은 타 시·도에서 관심을 보여서 부산에서도 공보육어린이집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민간개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의 공공성 증진 방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므로, 서울형 어린이집 실태와 성과 파악 등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유아 정책들은 상호 기본철학을 달리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정책의 전개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정책의 기본적인 정책의 기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사업초반에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별 지원방식에 기초한 전자카드 제도와 인건비 형태의 시설별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다른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¹⁾ 또한 재정적으로 여건이 좋은 지방정부 정책의 활성화와 더불어 그 이외 지역은 소외되는 지역간 격차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을 검토하고, 지방정부 특수시책 사업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지방정부 정책 중 공인 어린이집 실태를 심도있게 검토하며, 이러한 검토에 의거하여 앞으로의 보육정책 방안 및 제도의 발전 가능성으로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양한 보육 정책들을 검토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정책 발전 가능성으로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한다. 보육시설 공급 및 설치 관련 정책, 차등 지원 및 만5세아 전액지원 등 보육료 지원 정책, 교사 인건비 등 교사 관련 지원정책, 프로그램 및 평가 등 질 관리 정책 등 각종 예산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문제점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도출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한다.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고유의 보육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을 파악한다. 또한 이들 지방정부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효과성 및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셋째, 지방의 특수보육시책 중 서울 공인 어린이집과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등 민

1) 전자가 시장주의적 보육재정 지원방식이라면 후자는 사회민주주의형 보육재정 지원방식임.

간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시설장과 부모의 인식 및 의견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앞서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육정책의 방향 및 개선 방안 등 정책 제언을 도출한다.

3. 연구방법

가.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보육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행정기관 자료조사

전국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보육정책 자료와 통계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부분적으로는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일부는 부처가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특히 2009년 보육통계를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 보육 공급률과 이용률을 산출하였다.

다. 설문조사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보육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보육담당 공무원, 어린이집 및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지방정부 보육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지방정부 보육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보육시책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을 검토하여 8개 영역 66개 세부과제로 분류하고, 영역별 우선순위와 영역내 세부과제의 중요도와 효과성 4점 척도와 상대적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국 240명의 보육담당 공무원이 응답하였다. 응답된 영역내 세부과제 중요도 및 효과성 점수는 영역별 가중치를 주어 전체 세부과제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2) 영유아가 있는 가구 조사

서울시 가구 중 영유아가 있는 가구 약 1,5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일차적으로 25개구에게 2개 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30개 영유아 가구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조사 내용은 가구 및 부모 특성, 영유아 특성, 보육서비스 이용,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실태, 보육시설 미이용 자녀 양육실태,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서울형 어린이집 등 서울시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하였다(표 I-3-1 참조).

〈표 I-3-1〉 가구조사 설문 내용

구분	문항
가구 및 부모 특성	- 부모 인구학적 특성: 학력, 취업상태, 종사상 위치 등 - 가족특성: 가구원 수, 자녀수, 가족유형, 가구소득 등
영유아 특성	- 인구학적 특성: 연령, 성별, 출생순위, 건강상태 - 다니는 기관, 돌보아 주는 사람, 양육수당 지원 여부등
보육서비스 이용	- 보육정보센터·영플라자·서울형 어린이집 인지 여부 - 서울형 어린이집, 에듀케어 프로그램 - IP-TV 설치 필요 여부 - 보육서비스 지속이용 여부 등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기관 선택시 고려한 점, 기관 이용 시간 - 순수 보육료 및 월평균 소득대비 보육료 비율 - 특별활동 프로그램 참여 - 기관의 만족도와 개선해야 할 부분 - 보육시설 평가인증 및 서울형 공보육 여부 - 공보육시설 이용 시 질적 수준, 주치의, IP-TV 설치 등 변화 - 공보육어린이집을 미이용 이유와 이동 의사
보육시설 미이용	- 향후 보육시설 이용 의사, 향후 이용 보육시설의 종류와 그 이유

조사 결과 서울시 25개구에서 총 1,552가구, 1,727명의 영유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각 구별 조사 완료 가구 및 아동수는 <표 I-3-2>와 같다. 완료조사 가구수는 구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조사 자료는 서울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완료 아동수와 각 구별 영유아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 분석하였다.

〈표 I-3-2〉 구 단위 가구조사 완료 가구 및 영유아 수

단위: 가구, 명

구 분	가구수	아동수	구 분	가구수	아동수
전체	1,552	1,727			
종로구	59	70	마포구	62	71
중구	63	68	양천구	60	64
용산구	68	75	강서구	66	71
성동구	64	71	구로구	60	69
광진구	51	55	금천구	61	69
동대문구	60	67	영등포구	54	57
중랑구	59	72	동작구	59	62
성북구	60	67	관악구	54	60
강북구	69	83	서초구	62	64
도봉구	69	77	강남구	62	69
노원구	72	86	송파구	67	72
은평구	63	70	강동구	67	72
서대문구	61	66			

3)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서울시 보육관련 정책의 실태, 성과 및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시 보육시설 1,2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25개구에 각각 4개 동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표본 지역내 보육시설을 모두 조사하도록 하였다. 조사 내용은 보육시설 일반 운영현황, 서울시 보육정책 및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지표 기준과 조건의 적절성 등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공공형 어린이집 확산시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하였다(표 I-3-3 참조).

조사 방법은 조사표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에 조사원이 방문 수거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표 발송시에는 서울시와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조사 협조 공문을 첨부하였다.

조사 결과 총 1,270개 보육시설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표 I-3-4 참조). 분석방법으로는 교차분석²⁾, T 검증, 집단간 차이 검증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2) 제표 중 교차분석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빈도 분포상 교차분석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임.

〈표 1-3-3〉 보육시설조사 설문 내용

구분	문항
시설장 인적사항	- 인구학적 특성 :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등
보육시설 일반 현황	- 시설의 설립유형과 연도, 건물형태, 임대여부 - 보육아동의 정원과 현원, 보육료 지원아동, 취업모 아동수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외에 다른 운영 시설
보육시설 운영	- 맞춤형 보육 실시여부와 실시시 평균 아동수, 확대 필요성 - 평가인증 여부, 서울형 공보육 여부와 공보육 받지 않는 이유 - 특별활동프로그램 관련 사항 - 연령별 보육료 - 재무회계규칙 준수, 표준보육과정, 안전, 청결·위생·건강·영양관리 등 운영 사항
서울형 어린이집 등 서울시 보육정책	-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지표 기준과 조건의 적절성 - 보육료 지원의 적절성 - 서울형 어린이집 사후관리의 충분성과 적절성 - 맞춤형 보육, IP-TV, 자율장학, 공동구매, 주치의 제도 관련 사항 -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과 운영의 개선정도 - 서울형 공보육 이후 교사, 운영 및 총 수입과 지출의 변화 - 서울형 어린이집 공보육 조건의 강화 필요성 - 공공형 어린이집 확산시 반영해야 할 사항

〈표 1-3-4〉 시설조사 완료 수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서울형	599	136	17	241	200	6
비서울형	671	12	6	311	326	15
전체	1,270	148	23	552	526	21

4) 부산시 공보육 보육시설 조사

부산시 보육시설 설문조사 당시 공보육 어린이집인 26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 보육시설의 협조를 받아서 이용 부모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부산시의 협조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총 25개 보육시설 자료가 완료되어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 내용은 서울시 시설 및 부모 설문조사 문항 중 부산시에 해당되는 문항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라. 간담회 및 자문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육·교육기관 원장, 교사, 부모,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4. 유사 선행연구

보육 정책의 성과나 모니터링 관련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2000년 이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먼저 변용찬 등(1998)이 보건복지부의 보육확충 3개년 사업 완료 후에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보육확충 3개년 사업은 1995년부터 1997년간의 사업으로 국고지원, 국민연금기금 용자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 공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평가결과, 확충사업 3개년의 결과로 보육시설 공급은 민간부문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등 보육의 다양성 부족, 농어촌 지역적 불균형 등이 문제로 파악되었으며, 보육서비스 행정체계 측면에서는 지난 3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과 보육재정 측면에서는 표준보육단가의 부적절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서문희 등(1999)은 보육확충 3개년 사업 중 민간개인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금 용자 사업을 평가하였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용자사업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요구되었던 사업으로 타당성 있는 필요한 사업이었고 보육의 공급의 양적 확충이나 보육환경 개선 및 국민의 인식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그러나 용자 실시와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지침의 제시가 미흡하였고, 실제 용자자 선정과정에서의 설치 예정 지역의 보육수요나 용자자의 원금 상환능력을 고려한 엄밀한 심사가 부족하여 그 결과 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을 용자한 시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변용찬 등(2000)은 부모 보육료 지원제도를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규모, 전달체계 등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적절성, 효과성, 형평성, 책임성 6개의 영역별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대상 선정 기준, 지원 수준, 지원 방식 등 적절성은 낮고, 형평성 차원에서는 지역별 시설 유형별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문희 외(2001)는 시설별 보육재정 지원에 대하여 전체 사업 및 구체적인 세부사업별로 적절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차

원에서 평가지표를 개발, 평가하여,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적절성 및 형평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KDI(조병구 외, 2007)는 2006년에 도입된 영아 기본보조금³⁾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영아 기본보조금이 일부 시설에만 적용된다는 사실과 도입 전후의 자료가 있음을 이용하여 준 실험적(Quasi-experimental)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영아 기본보조금은 시설들 중 규모가 작고 영아보육에 특화해 왔던 가정보육시설의 질을 향상시켜 프로그램도 늘리고, 교사 대 아동비율도 준수하며, 교사에 대한 처우도 향상시키는 등 효과를 가져왔으나,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을 바라고 시장에 진입하는 시설의 다수가 가정보육시설이라는 점이 시사하듯이 영아보육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가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아기본보조금은 아동 모의 노동시장 참여나 보육시설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시설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소득 1~2분위 가구의 부담을 줄여 주었으나, 전체 보육비용 측면에서 보면 소득 3~5분위의 보육비 지출을 현저하게 늘렸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보육시설 제1차 평가인증 시행에 대하여 적절성과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서문희·김은기·김명순·김은영·송신영 외, 2009). 평가자료로는 주로 시설장 및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는데, 평가 결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수단으로서의 유용함을 규명하였다.

지방정부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 외, 2009)에서 232개 지방정부 특수시책과 보육서비스 이용, 출산율과의 관계를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여 다자녀 가구 보육료 지원이 해당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률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다자녀 가구 양육수당이나 출산 수당이 출산 아동 중 해당 출생순위 아동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집중 분석하고자 하는 서울형 등 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연구로는 김재완(2009)이 서울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평가에 대한 시설장과 보육교사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로 서울형 어린이집 기준·평가 후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해 질적 향상 및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준의 체계성과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정부 평가인증과의 중복성, 공인 제도 주요 운영체계 등 기타 개선점이 요

3) 이후 기본보육료로 명칭이 변경됨.

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제갈현숙·김송이(2010)가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공보육 확대를 위한 원칙이라는 제목 하에 공인 과정, 프로그램 변화, 보육교사 노동조건 등은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성과도 있으나 여러 가지 지도 감독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임에서 오는 문제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공인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5. 보고서 구성 등

본 보고서는 보육정책을 검토하여 변화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기본 통계를 생산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과제로, 유아교육정책 부분과 동시에 추진되었다. 본 보고서는 전체 3개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별개의 주제 이면서도 상호 관련성을 갖는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육정책 전반을 검토하고자 중앙정부 보육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황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기술하였으며,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지방정부의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을 검토하고 시·군·구 보육 공급 및 이용률을 산출하여 지역간 차이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 산출이 가능한 일부 통계를 주요 지표로 제시하였다.

둘째로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수보육시책을 8개 영역 66개 세부과제로 분류하고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정책의 중요도와 효과성,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낮은 정책은 향후 개선을 요하는 정책으로 볼수 있다.

셋째로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 중 공인 어린이집 사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중앙정부에서도 2011년 하반기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므로 이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보육정책의 현황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보육사업 현황에 대하여 제도와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앞으로의 정책 개선방안 모색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중앙정부의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재정 및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보육료 지원, 자녀 양육수당, 보육재정을 다루었으며, 인프라 차원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포함하였으며,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와 관련하여 예산 사업인 시간연장형 보육사업을 살펴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관련해서는 평가인증제도와 보육인력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보육비용 지원

중앙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보육비용 지원의 내용과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을 검토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보육비용 지원 제도

우리나라의 육아 비용 지원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비용 지원, 농어민 자녀 보육·교육 및 육아 비용 지원,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조세지원 등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비용 지원이다.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운영비 지원은 시설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보조금 지원과 부모 보육료 지원인 부모보조금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육재정은 시설별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 이외에 기능보강비 예산으로 구성되는데, 기능보강비는 설치비, 개보수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고,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은 모두 보육시설 운영, 즉 아동보육에 소요되는 보육비용이다. 영유아 보육법은 다양한 형태의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별 지원, 기본보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설별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보조금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표 II-1-1〉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구분		지원내용
국공립 및 법인 등 시설	40인 이상 시설	-원장 인건비 80%,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교사 80%) -추가지원: 농어촌, 폐광지역, 도서벽지 ·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시설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40인 미만 시설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교사 80%)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 보육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24시간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휴일보육 3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시 5만원 -방과후 16~20명 보육 시 인건비 50%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3명 기준 인건비 100% 지원
	장애아 통합시설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 80%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
영아전담시설 (2004년 이전 지정 및 국고보조 신축비 지원)		-원장(18명 이상) 및 보육교사 인건비 80% -유아반 별도 편성 : 보육교사 인건비 30%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농어촌 시설 차량운영비 : 개소당 월 20만원
장애아전담시설 (시·도 지사 지정)		-원장(6개반 이상),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인건비 80% -치료사 아동 9인당 1명 인건비 100% 지원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차량운영비 : 월 20만원
민간 가정 보육 시설	일반보육시설	-영아, 장애아반 지원 기준에 따라 기본보조금 지원 -교재교구비: 개소당 연 500~1,200천원 -농어촌 소재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장애아통합시설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시간연장 시설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24시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직장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 또는 1인당 월 100만원 -교재교구비: 개소당 연 500~1,20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0). 보육사업안내

대체로 유아교사는 인건비의 30%, 영아전담교사는 80%를 지원하고,⁴⁾ 추가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이외 차량운영비는 개소당 월 20만원(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별 지원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보육이 해당되고, 이러한 지원은 시설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외 민간 일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연간 50~120만원 지원한다. 교재교구비는 1998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 직장보육시설에도 지원한다. 농어촌 소재 시설에는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 지원한다(표 II-1-1 참조).

지방정부 중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방식을 도입한 시·도는 서울시와 부산시이다. 서울시는 국공립·민간시설 유형의 구분 없이 시가 권장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보육시설에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데, 민간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으면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 부산시도 '09년부터 민간·가정보육시설을 선발하여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가정보육시설 공보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2) 민간시설 기본보육료

현재 정부는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육료로 지원하고 있다.⁵⁾ 지원액은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 한편 유아에 대해서는 2007년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본 사업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영아 기본보육료는 아동별로 지원하므로 부모보조금의 성격을 갖지만 부모가 아닌 시설에서 바로 수령하며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시설보조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 도입시 이를

4) 2004년 이전에는 각각 45%, 90%에서 2005년부터 축소 조정되었음.

5) 영아에 대한 지원은 2002년 하반기에 영아 10명 이상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에 시설별로 40만원을 처음 지원한 데서 시작되었음. 그 후 2003년에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하였고, 2004년에 반별로, 2005년에 아동별로 전환하여 지원 수준을 다소 확대하였음. 2006년부터는 기본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하였고, 동시에 부모 부담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낮추어 통일하였음. 2009년부터는 기본보조금을 기본보육료로 명칭을 수정함.

이용권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러한 성격은 강화되었다.6)

〈표 II-1-2〉 보육비용 구성

단위: 천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2010년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기본보조	249	104	69	292	134	86	340	164	109	350	169	112
보육료	350	308	254	361	317	262	372	327	270	383	337	278
보육비용	599	412	323	653	451	348	712	491	379	733	506	390

3) 부모 보육료 지원

가) 보육료

다음으로 <표 II-1-3>은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 상한액을 나타낸다.

〈표 II-1-3〉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상한액: 2010

단위: 천원

시·도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만3세	만4세이상	만3세	만4세이상
서울		243	238	243	238
부산		237	216	263	243
대구		232	214	245	240
인천		237	222	270	258
광주		229	212	245	239
대전		235	215	260	260
울산	만0세: 383	232	254	219	244
경기	만1세: 337	267	245	270	270
강원	만2세: 278	225	213	247	247
충북	만3세: 191	243	218	270	264
충남	만4세 이상: 172	232	217	258	248
전북		230	208	230	208
전남		230	222	249	246
경북		237	212	258	242
경남		234	254	235	246
제주		216	209	239	239

6) 정부 예산상 항목은 보육료지원임.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보육시설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보육료가 다르다. 단, 정부 미지원시설의 0~2세 영아는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정부지원단가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정하게 되기 때문에 영아 보육료 상한선은 정부 지원단가로 통일되어 있다. 유아 보육료 상한선은 <표 II-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표 II-1-4〉 시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2010

단위: 원

시·도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서울	50,000 이내	- 실비 범위 내에서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 결정 -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위임 불가	
부산	연 80,000	연 90,000	월 70,000
대구	연 80,000	연 90,000	월 80,000
인천	국고보조시설 70,000 (직장보육시설포함) 민간보육시설 100,000 (부모협동포함) 가정보육시설 100,000	- 국고보조시설(직장보육시설포함) 만 0~1세 월 40,000, 만 2~5세 월 60,000 - 민간보육시설(부모협동포함), 가정보육시설 만 0~1세 월 70,000, 만 2~5세 월 90,000 ※ 보육료, 입소료 제외 경비이며, 수납시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서 첨부	
광주	70,000(1회) (재원아 20,000(1회))	연120,000	행사비: 연 50,000 기타 필요경비: 월 80,000
대전	90,000	건당 12,000 (년 144,000)	월 60,000
울산	81,000 (재원아 22,000)	실비수납 (년 18회 이내)	월 70,000
경기	100,000	시군에 위임	시군에 위임
강원	70,000 (재원아 30,000)	실비로 결정	70,000
충북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호자의 협의 및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군수에게 신고 후 수납하도록 결정		
충남	시 90,000 군 78,000	시 160,000 군 143,000	시 100,000 군 70,000
전북	50,000 (재원아 20,000)	시 월 110,000 군 월 80,000	시 월 90,000 군 월 90,000
전남	연 80,000	연 120,000	월 80,000
경북	연 80,000	1회 20,000	월 75,000
경남	연 80,000	연 100,000	월 70,000
제주	60,000 (재원아 50,000)	연 50,000	월 70,000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 이외에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등을 추가로 수납하는데, 시·도별 실태는 <표 II-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16개 시·도 중에서 충북은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고, 서울시는 입소료 이외의 비용을 구에 위임하고, 경기도는 입소료 이외의 비용을 시·군에 위임하였다. 그 이외 지역은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표 II-1-5>는 서울시 각 구가 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상한액을 책정한 액수이고, <표 II-1-6>은 경기도 각 시의 추가 수납액이다.

<표 II-1-5> 서울시 각 구의 영유아 추가 수납액 상한 기준: 2010

단위: 원

구	연간 현장학습비	월 특기적성비	구	연간 현장학습비	월 특기적성비
강남구	240,000	230,000 (서울형 150,000)	서대문구	180,000	80,000 (3월동 이내)
강동구	150,000	180,000 (5과목 이내)	서초구	240,000	150,000
강북구	180,000	150,000	성동구	200,000	100,000
강서구	200,000	90,000	성북구	150,000	70,000
관악구	150,000	90,000	송파구	월 30,000	150,000
광진구	200,000	140,000 (부모 협의 결정)	양천구	180,000	90,000
구로구	250,000	90,000	영등포구	200,000	110,000
금천구	150,000	80,000	용산구	190,000	100,000
노원구	170,000	80,000	은평구	영아 180,000 유아 200,000	90,000
도봉구	150,000	80,000	종로구	200,000	80,000
동대문구	150,000	(부모 협의 결정)	중구	180,000	80,000
동작구	180,000	180,000	중랑구	150,000	80,000
마포구	180,000	50,000			

주: 입소료는 50,000원으로 통일

서울시는 입소료는 5만원으로 통일되어 있고, 현장학습비는 월 15~25만원, 특기적성비는 5~23만원으로 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기적성비는 강남구가 23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동구와 동작구가 18만원이며, 강북구과 송파구가 15만원, 광진구가 14만원이며, 마포구가 5만원으로 가장 적다. 특기적성 과목에 대한 제한은 서대문구가 3과목, 강동구가 5과목 이내으로 제한한다.

경기도는 기타비용 상한액은 부천시 11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이외는 모두 10만

원 미만이다. 수원시 기타 비용 92,000원 이외에 특기활동비 30,000원으로 1과목을 허용하는 것이 이채롭다.

〈표 II-1-6〉 경기도 각 시의 추가 수납액 기준: 2010

단위: 원

시·군	기타비용	시·군	기타비용	시·군	기타비용
수원시	92,000원+ 특기활동비 30,000원(1과목)	이천시	95,000	고양시	80,000
성남시	93,000	김포시	영아 70,000 유아 90,000	의정부시	75,000
부천시	98,000	광주시	100,000	남양주시	90,000
안양시	95,000	안성시	79,000	과천시	95,000
안산시	84,000	하남시	83,000	구리시	88,000
용인시	80,000	의왕시	87,000	양주시	80,000
평택시	76,000	오산시	0세 30,000 1세 50,000 2세이상 80,000	포천시	75,000
광명시	82,000	여주군	80,000	동두천시	85,000
시흥시	85,000	양평군	80,000	가평군	74,000
군포시	90,000	과천시	84,000	연천군	74,000
화성시	80,000				

자료: 각 지방정부(2010).

나) 보육료 지원

부모 보육료 지원은 부모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무상보육 및 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구분된다.

특정 기준의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은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100%, 3층에 80%, 4층에는 60%, 5층에는 30%를 지원하였고,⁷⁾ 2009년 7월부터는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 소득 및 선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2009년 6월까지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7) 보육료 지원은 1991년 시설운영지원에 탁아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한 이래 1992~2003년도에는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의 120% 수준 소득자)까지 지원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 점차 그 대상과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음. 2006년부터는 차상위계층에 100%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100%, 3층에 80%, 4층에는 60%, 5층에는 30%를 지원하였음.

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진다. 즉,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소득 50%를 초과하고 60%까지는 기준단가의 60%, 하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0%까지는 기준단가의 30%를 지원한다. 이러한 기준의 상한 소득 기준은 4인가족 소득 기준으로 각각 258만원, 339만원, 436만원이다(표 II-1-7 참조). 또한 2009년 7월부터 맞벌이 가구의 부모 소득 중 낮은 소득의 일부(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됨에 따라 맞벌이 가구 중 약 15,000여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표 II-1-7〉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단위: %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	2009. 7.부터
1층	법정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 계층	40	60	80	100	100	100	100
3층	50%까지	-	40	60	70	80	80	100
4층	60%까지	-	-	30	40	50	60	100 (하위소득 50%)
	70%까지	-	-	-				60 (하위소득 60%)
5층	100%까지	-	-	-	-	20	30	30 (하위소득 70%)
6층	130%까지	-	-	-	-	-	-	-

무상보육으로는 취학직전 연령인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1999년 하반기부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⁸⁾ 2010년 현재에는 보육 아동 70%에 해당하는 4인가구 소득인정액 43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05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비용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원하였는데, 2010년부터는 가구의 출생 순위상 둘째아 이상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여 사실상 전액을 지원한다.

8) 1999-2001년도는 농어촌 지역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2002년 전국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지원,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지원(도시/농촌 지원단가 일원화), 2006년 농촌 100%, 도시 80% 수준까지 지원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던 것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대상 아동은 전액 지원된다. 차등지원과 만5세아 무상 등 부모 부담 지원은 유아교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소유규모 5ha 미만의 농·어업인 가구 자녀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시설 미이용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이다.⁹⁾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추가하여 각 지방정부가 별도의 지자체 예산으로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셋째아 이상 자녀, 부산시는 둘째 자녀 이상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나. 보육비용 지원 실적

보육료 지원 수혜 아동수는, 차등보육료 지원 수혜 아동의 경우 전체 보육아동의 2009년 말 기준으로 67만 2천여명으로 해당아동의 65.7%에 이른다. 연령별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 비율은 2008년까지는 0세아의 비율이 다소 낮았으나, 2009년은 0~5세 중 만5세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표 II-1-8 참조). 이는 보육시설 이용 0세아의 부모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맞벌이가 많아서 지원 소득기준 범주를 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9년 7월부터 맞벌이 가구 소즉인정액 산정시 부모 중 낮은 소득의 25% 감액으로 지원을 받게 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차등보육료 이외 만5세아, 장애아 무상 등 보육료 지원 대상의 지속적 확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건수는 영유아보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2년에 3만 4천건이었으나 2009년 12월 기준으로 79만5천건으로, 이는 보육시설 이용아동 대비 67.7%이다. 만5세아는 해당아동 중 70.6%가 지원 대상이다(표 II-1-9 참조).

다음 <표 II-1-10>는 2009년 12월 현재 보육아동의 보육료 지원유형별 백분율을 나타낸다. 전체 117만 5천명의 아동 중 67.7%가 보육료 지원 대상인데, 지원 유형별로는 하위 50% 이하 면제 아동이 39.8%이고 두 자녀로 면제 받는 아동이 5.2%이며 11.0%가 차등 지원 대상이다.

9) '06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을 추가로 도입, 보육시설 미이용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였고, '08년부터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함.

〈표 II-1-8〉 연령별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 2007~2009

단위: 명, %

구분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5세이상	계
2009년							
전체 보육 아동수(A)	107,525	198,831	268,038	227,966	193,934	26,375	1,022,669
보육료 지원 아동수(B)	72,730	138,265	175,710	148,448	129,914	14,836	672,087
보육료 지원 비율(B/A)	67.6	69.5	65.6	65.1	67.0	56.3	65.7
2008년							
전체 보육 아동수(A)	99,245	160,320	242,324	229,424	192,668	36,198	960,179
보육료 지원 아동수(B)	53,072	99,423	152,076	144,917	123,015	19,653	592,256
보육료 지원 비율(B/A)	53.5	62.0	62.8	63.2	63.8	54.3	61.7
2007년							
전체 보육 아동수(A)	68,908	122,663	222,258	237,919	207,305	61,318	920,371
보육료 지원 아동수(B)	34,985	78,245	141,917	154,957	139,376	37,356	586,836
보육료 지원비율(B/A)	50.8	63.8	63.9	65.1	67.2	60.9	63.8

주: 방과후 포함됨.

〈표 II-1-9〉 보육료 지원 건수: 2007~2009

단위: 건, %

구분	차등보육료	만5세 무상지원	두자녀 이상	장애아	총계
2009년					
전체 보육 아동수(A)	1,022,669	152,380	-	-	1,175,049
보육료 지원 건수(B)	672,087	107,951	(60,704)	15,083	795,121
비율(B/A)	65.7	70.6	-	-	67.7
2008년					
전체 보육 아동수(A)	920,371	175,323	-	-	1,135,502
보육료 지원 건수(B)	592,256	122,858	(108,500)	15,644	730,758
비율(B/A)	61.7	70.1	-	-	64.3
2007년					
전체 보육 아동수(A)	920,371	179,562	-	-	1,099,933
보육료 지원 건수(B)	586,836	145,303	(109,599)	17,615	749,754
비율(B/A)	63.8	80.9	-	-	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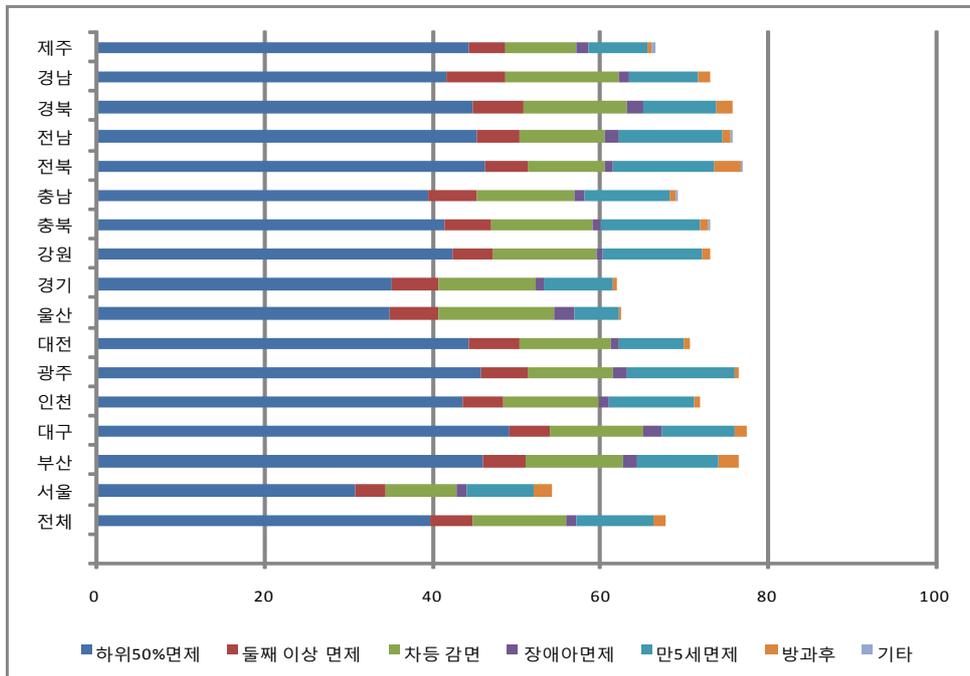
주: 농림부 지원이 제외됨.
2008년까지 두 자녀는 중복지원임.

지역별로 전체 및 유형별 보육료 지원 아동 비율이 차이를 보인다. 지원아동 비율이 부산, 대구, 인천, 전북, 전남, 경북의 지원아동이 75%를 넘는 수준인데 비하여 서울은 54% 수준이고, 울산과 경기도가 62% 수준으로 비율이 낮다.

〈표 II-1-10〉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사유 백분율 분포: 2009. 4

단위: %(명)

구분	하위50% 면제	둘째 이상 면제	차등 감면	장애아 면제	만5세 면제	방과후	기타	계 (아동수)
전체	39.8	5.2	11.0	1.3	9.2	1.3	-	67.7 (1,175,049)
서울	31.0	3.5	8.5	1.2	8.0	2.2	-	54.3 (193,723)
부산	46.2	4.9	11.6	1.7	9.7	2.4	-	76.4 (62,862)
대구	49.3	4.8	11.2	2.1	8.7	1.4	-	77.5 (57,501)
인천	43.6	5.0	11.2	1.2	10.2	0.7	-	71.9 (58,567)
광주	46.0	5.5	10.2	1.7	12.6	0.6	-	76.5 (45,640)
대전	44.5	5.9	10.9	1.0	7.8	0.6	-	70.7 (38,141)
울산	35.0	5.9	13.8	2.2	5.4	0.3	-	62.5 (24,074)
경기	35.3	5.5	11.5	1.0	8.2	0.5	-	62.2 (283,774)
강원	42.5	4.9	12.2	0.9	11.7	1.0	-	73.1 (37,562)
충북	41.5	5.5	12.2	0.9	11.9	0.9	0.1	72.9 (42,557)
충남	39.7	5.6	11.8	1.1	10.1	0.7	0.1	69.2 (52,282)
전북	46.3	5.2	9.1	1.1	12.0	3.1	0.1	76.8 (55,619)
전남	45.3	5.3	10.0	1.6	12.4	1.0	0.1	75.6 (51,240)
경북	44.9	6.0	12.3	1.9	8.9	1.9	-	76.0 (63,724)
경남	41.7	7.0	13.6	1.3	8.2	1.4	-	73.2 (84,186)
제주	44.5	4.3	8.5	1.3	7.2	0.4	0.5	66.6 (23,597)



[그림 II-1-1]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사유 백분율 분포

다. 부모 부담

이러한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명목상 부담은 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보육시설 이용 부모 부담 비용은 연령을 구별하지 않은 보육시설 이용 비용은 전체 평균 168,100원으로 2004년 조사결과 164,700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부모의 실제 부담은 다소 낮아졌다고 하겠다.

〈표 II-1-11〉 보육시설 유형 및 지원여부별 월평균 보육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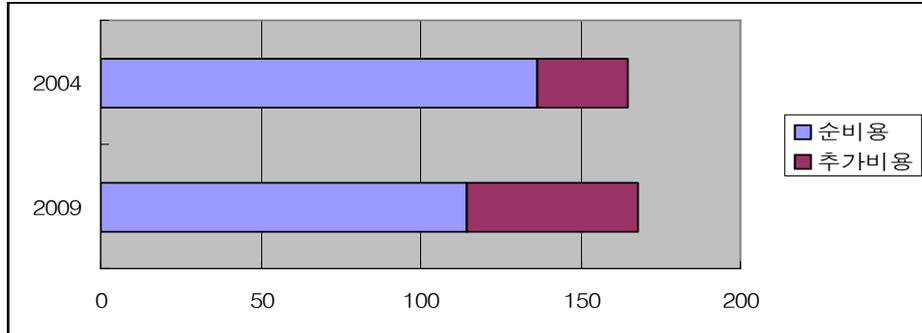
단위: 천원, %(명)

구 분	전체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소득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168.1	114.3	53.8	(1,342)	7.4
시설유형					
국공립	126.6	86.7	39.8	(215)	6.1
사회법인	110.9	69.5	41.5	(117)	5.4
기타법인	143.7	103.2	40.5	(53)	6.6
민간	188.4	124.5	63.9	(801)	8.1
가정	163.0	133.1	29.9	(126)	7.3
직장	229.2	164.3	64.9	(26)	5.4
부모협동	99.5	96.9	2.6	(4)	6.1
F	13.8**	8.4**	18.6**		6.2**
감면여부					
면제	55.0	10.7	44.3	(470)	4.6
감면	165.2	108.5	56.7	(484)	7.8
일반	308.6	246.8	61.8	(389)	9.6
F	1239.1**	1728.6**	16.0**		78.4**
2004년 조사	164.7	136.4	28.3	(818)	8.3

주: ** p<.01.
 자료: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09년 보육시설에 내는 비용 중 순수 보육비는 114,300원이고 추가 비용이 53,800원이다. 2004년 조사에서는 순 비용이 136,400원이고 그 이외는 추가 비용 28,300원으로 총비용이 164,700원이었다. 두 조사 모두 총액은 유사하지만 2009년에는 2004년 대비 순비용은 감소하고 추가 비용이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영향으로 볼 수 있다(그림 II-1-2 참조).

그러나 이 비용은 가구소득 대비 평균 7.4%로 2004년 8.3% 수준에 비하여 0.9% 포인트가 낮아졌다.



[그림 11-1-2]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순비용과 추가비용 비교: 2004, 2009

<표 11-1-12> 아동 연령 및 시설유형별 전체 아동 월평균 보육 비용

단위: 천원(명)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
전체							
총비용	116.5	157.3	175.5	180.9	179.2	144.9	168.1
순보육비	101.9	132.6	129.3	120.5	110.3	75.0	114.3
(수)	(45)	(178)	(329)	(317)	(256)	(217)	(1,342)
국·공립							
총비용	106.0	206.3	128.3	136.7	117.0	97.1	126.6
순보육비	106.0	198.1	108.0	86.0	73.4	44.4	86.7
(수)	(3)	(17)	(40)	(58)	(46)	(50)	(215)
사회복지법인							
총비용	289.1	156.5	114.2	104.5	112.5	83.4	110.9
순보육비	278.5	124.6	84.2	66.7	63.0	29.9	69.5
(수)	(3)	(4)	(24)	(33)	(31)	(23)	(117)
민간							
총비용	113.3	148.0	192.6	205.5	209.0	173.1	188.4
순보육비	96.8	122.7	137.1	134.5	127.8	91.2	124.5
(수)	(15)	(106)	(200)	(187)	(163)	(130)	(801)
가정							
총비용	98.4	163.1	194.6	158.5	214.3	188.0	163.0
순보육비	82.3	140.3	149.5	132.6	200.1	98.0	133.1
(수)	(24)	(43)	(45)	(11)	(3)	(1)	(126)

주: 기타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보육시설은 생략함
 자료: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시설유형별로는 약간씩의 차이를 나타내 총 비용과 추가비용 모두 직장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유사한 수준으로 가장 많고, 추가비용은 부모협동 이외에는 가정보육시설이 가장 적다. 보육료 감면여부별로 보면 일반아동 보육료는 평균 308,600원으로 가구소득대비 9.6% 수준이다. 면제 및 감면아동은 보육료 이외 기타 비용으로 44,300원, 56,700원을 낸다. 면제 아동도 가구소득대비 4.6%에 해당되는 평균 55,000원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1-11 참조).

<표 II-1-12>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부담액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연령별 시설유형별 총비용과 순수 보육료를 제시한 것이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평균값이 달라진다. 사례수가 가장 많은 민간보육시설의 사례를 보면 2~4세가 평균 20만원 내외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라. 성과와 과제

보육료 지원사업은 최근 여러 가지 긍정적 성과를 이루었다. 첫째, 차등 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 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부모 부담을 다소 완화하였다. 전국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보육비용 지출은 가구소득 대비 평균 7.4%로 2004년 8.3% 수준에 비하여 0.9% 포인트가 낮아졌다. 둘째, 보육료 지원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종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보육아동의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아동을 기준으로 정책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도시 근로자가 아닌 전체를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취업모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면하여 무차별적인 보육정책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취업모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차별적 접근의 정책적 성과를 이루었다. 넷째, 다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을 종전에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을 반영하였으나, 출생순위만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여 실제 다자녀 가구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육정책이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의 하나임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보육료 지원 및 부모 부담과 관련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여전히 높다. 2004년과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 보육비용 총액은 유사하지만 2009년에는 2004년 대비 순비용은 감소하고 추가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비용 감소는 정부의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총 비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심의 공급구조에서 정부 지원으로 부모 부담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영아 기본보육료의 성격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보육바우처 시스템 도입시 바우처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설보조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한 듯하지만 부모보조금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있다. 부모보조금은 시설보조금에 비하여 교사 처우, 보육서비스의 질과의 강력한 연계에 한계가 있다.

셋째, 만5세아에 대한 소득 제한의 적절성이다. 현실적으로는 부모들의 높은 조기교육열로 굳이 정부가 취학준비를 시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분상 만5세 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이 학교 준비를 목표로 한다면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다. 외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등학교 입학전 교육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¹⁰⁾

넷째, 유아 보육료는 지원 단가와 개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선 또는 부모 부담 보육료에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가 기관 이용 비용 전액지원 대상을 확충하고 있으나 부모들의 비용 지원 체감도는 높지 않고 정책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섯째, 취업모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 감액 제도는 취업모를 배려하였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감액 수준이 낮아서 추가 지원 대상은 15,000명으로 소수에 머물렀다. 비교적 소극적으로 접근하였다고 평가되므로 소득인정액 산출시 감액 증가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¹¹⁾

여섯째, 특별활동을 포함하여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기타 필요 경비는 지역 차이가 크고, 중앙정부는 평가인증 지표율 통하여 통합적 표준보육과정 준수를 중요시하며 특별활동 등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보육시설 특별활동도 향후 주요 정책과제가 된다.

10) 영국 정부는 2004년부터 1주 12시간 30분 38주의 무상교육을 보장하고 있음. 현행 만 4세의 경우 99%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9월부터는 주 15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음. 프랑스는 만3세 이상의 유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상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 3세 이상의 취학 전 유아에 대한 100%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1) 외국 국가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취업이 보육시설 이용 및 이용시간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사례는 찾기 어려움.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가. 제도

정부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24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나 친권자 및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자에게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 가구이며, 4인 가족 기준 가구소득 163만원 이하 가구이다. 지원액은 월 10만원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된다.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재원 아동, 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은 제외된다.

나. 양육수당 지원 실적

양육수당 예산은 2009년 324억원에서 2010년 65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2009년에 이 제도가 하반기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이며, 지원 기준 등에 차이는 없다. 2009년에는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 7만7천명이 지원받았다.

다. 성과와 과제

양육수당의 지원은 정책적으로 부모들간의 정부 지원의 형평성을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동시에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양육수당제도가 보육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한 양육수당제도가 여성의 노동 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제 제도 시행 6개월로 아직 평가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양육수당이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고, 여성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도 감안하여 금액 상향조정이나 유아로의 대상 확대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현금 지원인 아동수당으로의 전환 방안 모색도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외국사례로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공공보육서비스 미이용 영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의 양육수당(APE)은 6세미만 아동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감축한 경우에 노동시간 감축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핀란드나 노르웨이의 공공서비스 대체수단으로 지원되는 영아 양육수당이 일하는 영아의 모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랑스의 가족수당 대상 확대는 출산 수준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여성 취업률은 다소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Piketty, 1998).

두번째로는 현재 양육수당은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면에서 보육료 지원에 비하여 형평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차등보육료 전액지원대상과 지급단가가 7분의 1 내지 5분의 1 수준이며, 차등보육료와 달리 2~4세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0세~1세 아동 중 일부 소득계층은 소득수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상보육의 대상이 되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양육수당이 아동을 위하여 사용되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으므로, 사용처를 지정한 바우처로 발행하는 방법 등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표 II-2-1〉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비교: 2010

구분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비고
지원대상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보육시설 이용아동	
연령	만 0~1세	만 0~4세	3, 4세 양육수당 대상 제외
소득계층	차상위 계층 4인가구 159만원 이하	하위소득 70% 4인가구기준 258만원 이하	가구소득 160 ~ 257만원 양육수당 대상 제외
지급단가	월 10만원	0세 73만3천원, 1세 50만6천원(민간시설)	

3. 보육 재정

가. 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료 지원 확대,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등 시설 및 아동별 지원 확대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2004년 4000억원에 불과하던 중앙정부 예산은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II-3-1>은 2006년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항목별 보육사업 예산이다. 2006년은 1조 7236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4조 288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중앙정부 예산만 2조 478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가 증가되었다.

2010년도 보육예산 중 18.6%인 7993억원이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고 77.6%인 3조 3276억원이 보육료 지원금이다. 또한 2009년부터는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2010년부터는 맞벌이에 대한 배려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추가되었다. 보육예산의 증가는 보육료 지원의 증가와 비례하여 증가되어 왔다.

<표 II-3-1>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2005~2010

단위: 백만원

내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시설 운영 지원	인건비	672,563	554,824	658,368	753,082	766,876
	차량운영비	8,100	8,210	8,429	9,893	9,863
	교재교구비	24,546	22,000	21,896	22,609	22,610
소계		705,209	585,034	688,693	785,584	799,349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590,840	897,452	1,254,762	2,109,618	1,856,036
	5세아 무상보육	274,490	280,901	262,783	281,906	248,963
	장애아무상보육	61,043	71,543	66,577	105,602	94,721
	두자녀보육료	19,606	47,059	98,594	172,116	173,235
	기본보조금	-	306,303	530,472	-	934,915
	맞벌이 보육료	-	-	-	-	19,700
	소계	945,979	1,603,259	2,213,188	2,669,242	3,327,570
보육시설 기능 보강		67,189	83,263	65,197	41,978	17,902
인프라 구축 등 기타		5,237	15,100	24,615	8,205	7,362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	-	68,802	136,764
계		1,723,614	2,286,656	2,991,693	3,573,811	4,288,947

주: 국고 지원 사업 예산으로, 시도 및 시·군·구 특별사업 예산은 제외된 것임.
2009년 기본보조금은 운영비에 포함됨.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이러한 중앙 정부의 국고지원 사업 예산 이외에 각 시·도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특수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소요예산 역시 계속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시·도 사업비 4835억원, 시·군·구 사업비 1713억원이다. 이는 각각 국고 사업비의 11.3%, 4.0%로 모두 15.3%이다. 국고사업 예산 대비 특수사업 비용 비율은 2008년에 비하여 증가된 것이나 그 이전에 비하여 감소되었다.¹²⁾ 2008년에 낮아진 것은 국고지원사업의 확충에 따라 지방정부 분담금이 증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2) 2003년과 2004년에는 20% 이상이었음.

〈표 II-3-2〉 연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5~2010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고사업비 (A)	시·도 특별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비 (C)	계	국고사업대비 시·도 특별 사업비(B/A)	국고사업대비 시·군·구 특별 사업비(C/A)
2005년	1,322,974	176,464	96,175	1,595,613	13.3	7.3
2006년	1,723,613	224,842	89,647	2,038,102	13.0	5.2
2007년	2,286,084	292,763	101,169	2,680,016	12.8	4.4
2008년	2,944,883	255,883	108,074	3,308,840	8.7	3.7
2009년	3,570,376	378,054	132,662	4,081,092	10.6	3.7
2010년	4,288,978	483,527	171,298	4,943,803	11.3	4.0

주: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임.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표 II-3-3〉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0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고사업비 (A)	시·도 특별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비 (C)	계	국고사업대비 시·도 특별 사업비(B/A)	국고사업대비 시·군·구 특별 사업비(C/A)
전체	4288,978	483,527	171,298	4,943,804	11.3	4.0
서울	618,900	189,227	63,564	871,691	30.6	10.3
부산	257,105	13,056	915	271,076	5.1	0.4
대구	228,293	9,112	1,798	239,203	4.0	0.8
인천	214,866	30,838	5,266	250,970	14.4	2.5
광주	170,071	6,525	410	177,006	3.8	0.2
대전	150,010	15,913	908	166,831	10.6	0.6
울산	77,904	7,546	1,953	87,403	9.7	2.5
경기	930,383	118,591	53,075	1,102,049	12.7	5.7
강원	145,520	5,837	2,729	154,086	4.0	1.9
충북	153,169	6,212	10,722	170,103	4.1	7.0
충남	187,594	17,849	3,839	209,282	9.5	2.0
전북	244,534	16,351	2,632	263,517	6.7	1.1
전남	227,024	2,048	4,160	233,232	0.9	1.8
경북	254,408	18,642	9,530	282,580	7.3	3.7
경남	333,227	16,623	9,799	359,649	5.0	2.9
제주	95,970	9,157	-	105,127	9.5	-

주: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임.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표 II-3-3>은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으로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국고사업 대비 시·도 사업비 비율은 서울이 30.6%로 가장 높고, 인천, 대전, 경기도가 1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전남은 1% 미만으로 가장 낮고, 대구와 광주, 강원, 충북은 4%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시·군·구 특별사업비 비율 또한 서울이 10.3%로 가장 높고, 충북과 경기도가 각각 7.0%, 5.7%로 다음으로 높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은 1%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다.

<표 II-3-4>는 2010년도 보육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원별로 재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총 추정 예산 4조 944억원 중 중앙정부가 보육예산의 41.8%를 분담하고 시·도가 27.4%, 시·군·구가 30.8%를 분담하고 있다.

<표 II-3-5>은 2010년도 보육, 유아교육, 농어민 지원 등 영유아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 결과이다. 세 부처의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 총 예산은 6조 5544억 규모로 GDP 대비 0.62%이다.

<표 II-3-4>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0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재원			계
	중앙	시·도	시·군·구	
국고지원사업	2,066,483	1,111,248	1,111,247	4,288,978
시·도 사업	-	241,764	241,763	483,527
시·군·구 사업	-	-	171,298	171,298
계	2,066,483	1,353,012	1,524,308	4,943,803
(비율)	(41.8)	(27.4)	(30.8)	(100.0)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표 II-3-5> 보육·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2010

단위: 백만원, %

구분	국비	지방비	계	GDP 대비 비율
보육	2,066,483	2,877,320	4,943,803	0.465
유아교육		1,529,272	1,529,272	0.144
농업인양육비	40,686	40,686	81,372	0.008
계			6,554,447	0.617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교육과학기술부(2010). 내부자료.
 농림수산부(2010). 농업인 양육비 지원사업 계획.

<표 II-3-6>은 보육과 유아교육 소요 비용의 부모와 정부의 분담 비율을 나타낸다. 2010년 국고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볼 때 보육은 63.7%, 유아교육은 40.9%로 추정된다.

<표 II-3-6> 보육·유아교육 비용 부모와 정부 분담: 2010

단위: 백만원, %

구분	정부	부모	계	정부 분담 비율
보육 ¹⁾	4,103,201	2,331,424	6,434,625	63.7
유아교육 ²⁾	1,034,754	1,494,345	2,529,099	40.9

주: 1) 보육 정부 예산은 중앙과 지방정부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액(국고지원사업에 한정)을 합한 액수이고, 부모 부담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중 연령별 1인당 평균 보육료 부담액을 활용하여 산출함.

2) 유아교육은 정부 예산은 각 지방교육청 인건비와 유아교육비 지원액을 합한 액수이고, 부모 부담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중 연령별 1인당 평균 유아교육비 부담액을 활용하여 산출함.

자료: 보건복지부(2010). 내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내부자료

나. 성과와 과제

보육예산 증대는 유아교육예산과 더불어 대표적인 영유아에 대한 조기 투자로, 확대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 2004년 이후 중앙정부 보육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4조를 넘어섰다. 이는 GDP 대비 비율 0.2% 미만이며, 중앙 및 지방정부 보육·유아교육과 농어업인 지원까지 다 합해도 국민 1인당 GDP 대비 비율은 0.62% 수준이다. 1996년 유럽보육위원회(European Commission Network on Childcare: ECNC)가 각 유럽 국가들에게 권고한 GDP의 최소 1% 수준은 물론 OECD 국가 평균 0.7%에는 못 미친다.¹³⁾

한편 우리나라 보육계산의 지역적 격차가 매우 크다. 국고지원은 부모 보육료 지원 예산이 상당수이므로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지역이 예산이 더 많겠으나,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 사업비는 추가적인 투자 규모를 나타내므로 특수시책사업비의 지역

13) 20개국 중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5개국만이 이러한 수준을 달성하고 있음. 프랑스의 1% 투자 안에는 보육서비스와 2세 대상의 유아학교,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액 등이 포함되어 있음. 벨기에(플랑드르 지방)도 2.5세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교(kleuterschool), 보육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액을 포함하면 1%에 달한다고 볼 수 있고, 헝가리도 유치원에 대한 투자액은 상당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1%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OECD, 2006).

차이는 지역간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국고 지원 사업 대비 시·도 사업비는 평균 11.3%이지만 최소 0.9%에서 최고 30.6%에 분포하고, 시·군·구 사업비는 평균이 4.0%이지만 전혀 없는 지역부터 최고 10.3%로 차이를 보인다. 시·도 사업비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4만원에서 98만원으로 24배 정도의 격차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4. 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

다음은 보육시설 설치와 이용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보육 공급과 이용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어서 보육시설 이용아동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공급 관련 제도

영유아보육법 제2장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 여섯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보육 수요와 공급을 위하여 중앙 및 각 지방정부가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공립보육시설은 시·군·구가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공립보육시설 이외의 보육시설 설치는 인가제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전상담제도를 두어서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시·군·구가 보육시설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보육시설 설치 운영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하 위법령으로 정한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국공립보육시설 공급과 이용 현황

1)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2005년 이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예산은 점차 감소하여 왔다. 2010년은 약 20억 정도로 목표량은 10개소에 불과하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취약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아동과 그 보호자를 지원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 택지, 국민임대주택 등 개발, 정비, 조성 사업시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2008년 1월에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수준은 저조하다.

〈표 II-4-1〉 연도별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49,460	34,268	41,729	24,039	27,239	9,438
국공립 예산	38,280	19,800	20,216	9,910	10,948	1,982
신축 개소수	400	110	112	50	46	10
장애아전담 예산	3,445	2,599	2,166	714	476	238
신축 개소수	30	12	10	3	2	1
합계	7,735	11,869	19,347	13,415	15,815	7,218
증개축	3,828	4,960	3,472	2,480	2,610	992
기타 예산 개보수	3,720	6,000	4,800	5,775	7,506	4,530
리모델링	-	-	4,925	950	1,050	475
기자재구입	-	-	5,920	3,960	4,140	700
기타	187	909	230	250	509	521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표 II-4-2〉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대기자 현황: 2009. 3.

단위 : 개소, 명

시설수(A)	국공립 정원(B)	국공립 현원(C)	입소 대기자수(D)	이용률(%)(C/B*100)	시설당평균 대기인원(D/A)
1,831	142,370	126,277	118,478	88.7	64.7

자료: 보건복지부(2009). e-보육 통계.

〈표 II-4-3〉 시·도별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동 현황: 2009

단위 : 개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동	47	4	9	3	13	4	2	5	16	21	35	45	67	83	106	86	1
읍면	453	-	-	-	10	-	-	3	10	21	35	45	65	79	99	86	-
계	500	4	9	3	23	4	2	8	26	42	70	90	132	162	205	172	1

주: 읍1개소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임.

자료: 보건복지부(2009). e-보육 통계.

국공립보육시설 입소대기 아동은 사실 대부분이 민간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어서 허수이기는 하지만 국공립보육시설 선호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용된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국·공립 시설 대기아동은 1,831개 시설에 118,478명으로 시설당 평균 65명

인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II-4-2 참조).

전국적으로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은 47개 동 453읍면이다(표 II-4-3 참조). 정부가 2010년에 농어촌에 소규모 보육시설 10개소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나 이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의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2) 보육시설 및 아동 규모

2009년 12월 현재 35,550개소의 보육시설에서 117만 5천여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이중 초등학생을 제외하면 전체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42.0%이다.

시설유형별 보육 구성 비율을 보면 국·공립시설과 법인보육시설 등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보육시설의 수는 전체 시설의 10% 미만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 대신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대다수로 2009년 12월 현재 민간개인보육시설이 13,433개소로 37.8%이고 가정보육시설이 17,359개소로 48.8%이다(표 II-4-4 참조).

보육 아동은 2009년 12월 현재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이 약 12만 9천명 정도로 11.0%이고 법인 및 법인 외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약 16만 5천명으로 14.1%인데 비하여,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이용은 민간개인보육시설 62만 3천명과 가정보육시설 23만7천명으로 모두 86만명 수준인 73.2%이다.

한편, 유치원은 2010년 4월 통계로 전국 8,388개원이 설치되어 53만 8천명이 이용하고 있고,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이 많지만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이용 아동은 사립유치원 이용자가 전체 원아의 76.5%에 해당된다(표 II-4-6 참조). 공립 유치원의 상당수는 농어촌 면지역에 초등학교 병설로 설치되어 있다.

〈표 II-4-4〉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 수: 2009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1995	9,085	1,029	928	22	3,175	3,844	87	미분류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204	미분류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263	42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298	59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320	61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350	65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370	66
(비율)	(100.0)	(5.4)	(4.1)	(2.6)	(37.8)	(48.8)	(1.0)	(0.2)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표 II-4-5〉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수: 2009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 협동
1995	293,747	78,831	77,187	591	92,634	42,116	2,388	미분류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7,807	미분류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12,985	933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4,538	1,238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5,124	1,444
2008	1,135,502	123,405	113,874	53,818	615,647	210,438	16,809	1,491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2,996	236,892	18,794	1,655
(비율)	(100.0)	(11.0)	(9.6)	(4.5)	(53.0)	(20.2)	(1.6)	(0.1)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표 II-4-6〉 유치원 설치 및 원아수

단위: 개원, 반,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전체	8,344	24,567	537,822	8,373	24,908	537,361	8,388	25,670	538,587
공립	4,480	6,789	119,128	4,490	6,873	125,305	4,498	7,115	126,341
사립	3,861	17,778	418,694	3,880	18,021	411,825	3,887	18,541	412,01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각 연도). 유치원현황.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모두 합하면 영아는 전체 영아 138만 1천명 중 41.6%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유아는 전체 유아 135만 5천명 중 보육시설 42.4%, 유치원 39.7%면 총 82.0%의 아동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영유아를 합하면 약 274만명 중 61.6%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보육시설은 만2세아가 268,038명, 54.4%로 가장 높다(표 II-4-7 참조).

최연소자녀 기준 모 취업률과 비교해 보면, 모 취업률은 35.8%, 영유아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률은 61.6%로 모 취업률보다 기관 이용률이 더 높았다. 최연소자녀 기준 모 취업률은 영아보다 유아의 모 취업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아의 경우 모 취업률이 가장 높은 만2세의 보육시설 이용률도 가장 높아 모취업과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모취업률이 44~46% 수준으로 비슷한 데 반하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률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여 유아는 모취업과 상관없이 기관을 이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4-7〉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2009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¹⁾ (A)	보육시설 (B)	유치원 (C)	계 (B+C)	비율 (B/A)	비율 (B+C/A)	최연소자녀 기준 모취업률 ²⁾ (2009)
0세	424,529	107,525	-	-	25.3	-	24.7
1세	464,282	198,831	-	-	42.8	-	29.2
2세	492,482	268,038	-	-	54.4	-	39.2
0~2세 소계	1,381,293	574,394	-	-	41.6	-	29.9
3세	447,432	227,966	111,482	339,448	50.9	75.9	44.4
4세	434,700	193,934	181,441	375,375	44.6	86.4	44.8
5세	473,112	152,380	244,654	397,034	32.2	83.9	46.0
3~5세 소계	1,355,244	574,280	537,557	1,111,837	42.4	82.0	44.9
0~5세 전체	2,736,537	1,148,674	537,557	1,686,231	42.0	61.6	35.8

주: 1) 인구수는 2009년 12월 주민등록인수임.
 2) 모취업률은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임.
 3) 보육시설 자료는 2009년 4월, 유치원 자료는 2010년 4월 통계로 5세이상이는 제외하였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유치원현황.
 보건복지부(2009). 보육통계.

OECD는 교육 및 보육기관 권장 이용률로 0~2세아 30%, 3~5세아 90%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영아의 이용률이 높는데, 모의 취업률이나 육아휴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 자료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유아는 상당수가 학원 등 유사 기관을 이용하므로 단지 만5세 유아의 4.4%만이 아무 곳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지역 차이

가) 시·도 차이

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은 지역마다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시·도 단위 보육공급과 이용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II-4-8〉은 2009년 시·도 단위의 보육시설 설치 통계 자료와 주민등록 인구수 통계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인구 대비 보육시설 정원 비율로 시·도 단위 보육공급률을 산출한 결과이다.

전국적으로 아동수 대비 보육 공급률은 54.2%이고 보육시설 이용률은 42.9%, 정원 충족률은 79.3%이다. 보육공급률은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45.1%로 가장 낮고 제주도가 81.0%로 가장 높다. 아동 대비 보육이용률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40% 미만으

로 울산 다음으로 낮고 제주도가 68.1%로 가장 높다.¹⁴⁾

보육정원 대비 현원인 보육충족률은 지역간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경북이 74.9%로 가장 낮고 제주도가 84.1%로 가장 높다.

〈표 II-4-8〉 시·도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2009

단위: 명, %

구분	영유아인구수 (A)	보육정원(B)	보육현원(C)	공급률(B/A)	이용률 (C/A)	정원충족률 (C/B)
전체	2,736,537	1,482,416	1,175,049	54.2	42.9	79.3
서울	511,746	230,888	193,723	45.1	37.9	83.9
부산	153,636	78,238	62,862	50.9	40.9	80.3
대구	124,359	73,312	57,501	59.0	46.2	78.4
인천	152,192	71,246	58,567	46.8	38.5	82.2
광주	85,754	58,802	45,640	68.6	53.2	77.6
대전	87,627	47,864	38,141	54.6	43.5	79.7
울산	66,078	30,381	24,074	46.0	36.4	79.2
경기	725,746	359,719	283,774	49.6	39.1	78.9
강원	76,946	47,965	37,562	62.3	48.8	78.3
충북	84,846	56,254	42,557	66.3	50.2	75.7
충남	117,882	66,557	52,282	56.5	44.4	78.6
전북	96,787	72,755	55,619	75.2	57.5	76.4
전남	95,844	65,751	51,240	68.6	53.5	77.9
경북	134,724	85,131	63,724	63.2	47.3	74.9
경남	187,727	109,494	84,186	58.3	44.8	76.9
제주	34,643	28,059	23,597	81.0	68.1	84.1

주: 보육정원 및 보육현원 중에는 초등학생이 일부 포함됨.
 자료: 행정안전부(2009). 주민등록인구 통계.
 보건복지부(2010). 2009년 보육통계.

나) 시·군·구 차이

다음은 시·도별 각 시·군·구의 보육공급 수준 분포를 나타낸다. <표 II-4-9>를 보면 공급률 최다 빈도는 41~50%와 51~60%로 각각 57개 시·군·구가 분포하며, 다음이 61~70%로 54개 시·군·구이다.

공급이 과소하다고 할 수 있는 공급률 30% 미만인 지역은 경북에 1개 시·군·구이다. 공급률 31~40%는 15개 시·군·구로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에 각각 6개, 4개, 2개 시·군·구가 분포하고 인천, 전북, 경남도 각 1개 시·군·구가 분포한다.

14) 보육 공급과 이용을 산출시 영유아 인구수는 0-5세인 반면에 보육아동은 만6세이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약간 과대 추정되었을 것임.

〈표 II-4-9〉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분포

단위: 시·군·구

구분	30이하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100이상	계
전체	1	15	57	57	54	34	9	5	0	232
서울	0	6	11	4	3	1	0	0	0	25
부산	0	2	3	5	4	2	0	0	0	16
대구	0	0	0	5	2	0	1	0	0	8
인천	0	1	8	1	0	0	0	0	0	10
광주	0	0	0	1	2	2	0	0	0	5
대전	0	0	1	2	2	0	0	0	0	5
울산	0	0	4	1	0	0	0	0	0	5
경기	0	4	11	6	6	3	1	0	0	31
강원	0	0	5	5	3	5	0	0	0	18
충북	0	0	1	3	4	3	1	0	0	12
충남	0	0	3	7	2	2	1	1	0	16
전북	0	1	1	2	4	2	2	2	0	14
전남	0	0	2	2	10	5	2	1	0	22
경북	1	0	3	7	9	3	0	0	0	23
경남	0	1	4	6	3	5	1	0	0	20
제주	0	0	0	0	0	1	0	1	0	2

자료: 보건복지부(2009). e-보육 통계.

〈표 II-4-10〉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시설 현원 비율 평균 분포

단위: 시·군·구

구분	30이하	31~40	41~50	51~60	61~70	71~80	계
전체	8	62	85	61	11	5	232
서울	3	11	7	4	0	0	25
부산	0	5	8	3	0	0	16
대구	0	0	7	0	0	1	8
인천	1	7	2	0	0	0	10
광주	0	0	1	4	0	0	5
대전	0	1	3	1	0	0	5
울산	0	4	1	0	0	0	5
경기	1	15	9	5	1	0	31
강원	0	4	8	5	1	0	18
충북	0	1	4	6	1	0	12
충남	0	2	9	3	2	0	16
전북	0	2	3	6	1	2	14
전남	0	3	6	9	3	1	22
경북	2	3	10	8	0	0	23
경남	1	4	7	7	1	0	20
제주	0	0	0	0	1	1	2

자료: 보건복지부(2009). e-보육 통계.

한편 공급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아동인구 대비 정원수가 71~80%는 34개 시·군·구이고 90%가 넘는 곳이 총 5개 지역이다. 공급률 30% 미만인 지역은 경북 울릉군으로 24.6%이고 인구 대비 정원수가 71% 이상인 시·군·구가 많은 시·도는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강원도이며, 특히 보육공급률이 90%가 넘는 지역은 충남 서천군, 전북 정읍시와 남원시, 전남 화순군, 제주 서귀포시이다.

<표 II-4-10>은 시·도별 시·군·구 단위에서 보육 이용 수준 백분율 분포를 나타낸다. 이용률 최다 빈도는 41~50%로 85개 시·군·구, 다음이 31~40%로 62개 시·군·구가 분포하며, 다음이 51~60%로 61개 시·군·구이다. 이용이 매우 낮은 30% 이하인 지역은 8개 시·군·구로 서울 3, 충북 2, 인천, 경기, 경남이 각 1개 시·군·구이다. 현원이 71~80%인 곳은 5개 시·군·구이고 91%이상인 시·군·구는 없다. 이용이 높은 현원율이 71% 이상인 지역은 전라남·북도, 대구, 제주에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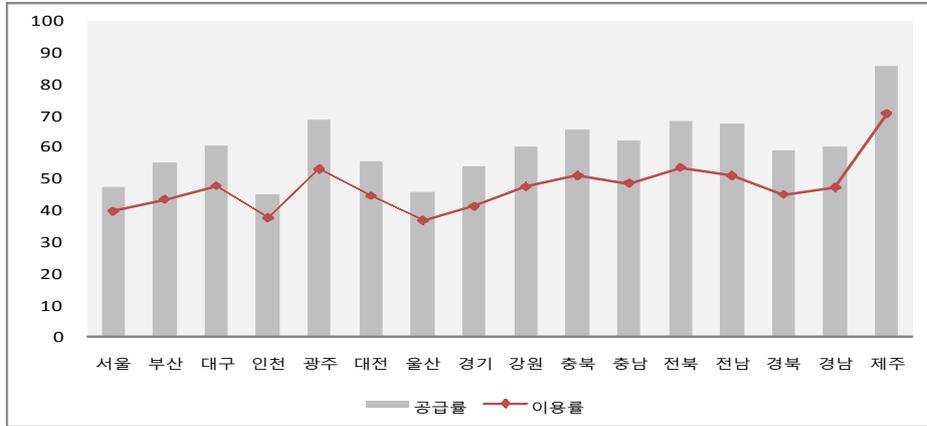
<표 II-4-11>과 [그림 II-4-1]은 시·도별 시·군·구 보육공급률과 이용률 평균을 나타낸다.

<표 II-4-11>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시설 공급 및 이용 비율 평균

단위: %(시·군·구)

구분	공급(인구 대비 정원 비율)				이용(인구 대비 현원 비율)				정원 충족률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저	최고	평균	표준 편차	최저	최고		
전체	58.5	13.9	24.6	96.8	45.6	9.7	22.0	75.8	79.3	(232)
서울	47.3	10.2	31.3	71.8	39.6	8.0	26.7	58.3	83.9	(25)
부산	55.1	10.8	38.4	72.6	43.3	6.5	32.6	55.7	80.3	(16)
대구	60.8	10.5	52.5	85.7	47.5	9.6	40.1	70.3	78.4	(8)
인천	45.3	4.6	35.2	52.3	37.4	4.1	28.1	43.7	82.2	(10)
광주	68.8	8.6	59.6	78.4	52.7	4.2	47.3	59.0	77.6	(5)
대전	55.6	6.2	48.2	62.9	44.4	5.3	37.5	50.3	79.7	(5)
울산	46.0	6.2	40.3	56.4	36.6	3.4	34.0	42.1	79.2	(5)
경기	53.9	13.4	35.0	81.8	41.1	8.9	22.1	60.2	78.9	(31)
강원	60.1	12.4	40.3	78.8	47.3	8.8	33.9	64.3	78.3	(18)
충북	65.5	10.9	48.4	88.7	50.8	7.8	38.8	66.0	75.7	(12)
충남	62.1	14.0	47.3	95.8	48.4	8.3	37.5	65.6	78.6	(16)
전북	68.3	16.0	40.0	96.8	53.3	11.1	33.0	75.8	76.4	(14)
전남	67.5	11.8	41.1	90.4	50.8	9.1	34.3	72.8	77.9	(22)
경북	59.1	12.8	24.6	79.1	44.8	8.9	22.0	55.3	74.9	(23)
경남	60.2	13.8	33.3	83.8	47.0	9.6	28.5	63.0	76.9	(20)
제주	85.7	13.2	76.4	95.0	70.4	6.2	65.9	74.8	84.1	(2)

자료: 보건복지부(2009). e-보육 통계.



자료: 행정안전부(2009). 주민등록인구 통계.
보건복지부(2010). 2009년 보육통계.

[그림 11-4-1]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2009

기초자치단체 단위 공급률 평균은 58.5%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평균 85.7%이다. 제주도는 두 개 자치시가 각각 76.4%, 95.0%로 18.6%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지만 아동수 대비 공급이 과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부표 11-1 참조). 다음은 공급률이 평균 60%가 넘는 지역은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으로 60~68%에 분포한다. 이들 자치 시·군·구 평균 공급률이 60%가 넘는 지역은 표준편차가 8~16%의 분포를 보인다.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50%를 넘는 지역은 전북, 경북, 경남이다.

시·군·구 단위 이용률은 평균 45.6%이다. 시·군·구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 공급률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70.4%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 광주, 충북, 전남이 50%로 수준으로 높다. 보육 이용률 역시 공급과 마찬가지로 동일 시·도내에서도 시·군·구별 편차가 크다. 특히 전북이 표준편차가 10%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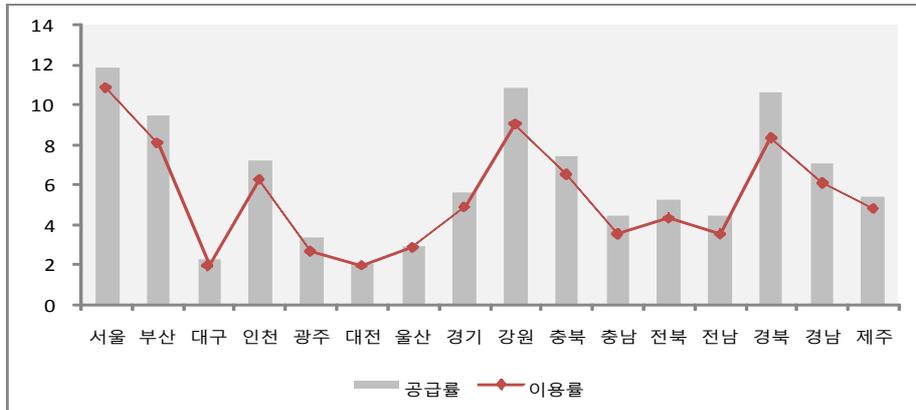
시·군·구 단위 보육 공급 대비 이용 비율인 정원충족률은 전국이 79.3%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과 인천, 대구, 제주가 80%를 넘고 그 이외 시·도는 74~79%에 분포한다. 다음 <표 11-4-12>와 [그림 11-4-2]는 시·도별 시·군·구 국공립보육시설 공급률과 이용률 평균을 나타내는데, 공급은 전체적으로는 평균 7.3%이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시·도별 편차가 크다.

〈표 II-4-12〉 시·도별 시·군·구 단위 국공립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단위: %(시·군·구)

구분	공급(인구 대비 정원 비율)				이용(인구 대비 현원 비율)				정원 충족률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저	최고	평균	표준 편차	최저	최고		
전체	7.3	6.4	0.0	36.5	6.1	5.3	0.0	30.6	88.5	(232)
서울	11.9	6.1	5.2	32.5	10.8	5.1	5.0	27.0	91.8	(25)
부산	9.5	6.7	2.7	25.1	8.1	5.5	2.1	19.5	86.6	(16)
대구	2.3	1.6	0.7	5.3	1.9	1.5	0.6	4.7	76.7	(8)
인천	7.2	5.9	2.0	20.1	6.3	5.1	1.9	17.6	87.6	(10)
광주	3.4	1.4	2.1	5.6	2.7	1.1	1.5	4.3	77.5	(5)
대전	2.1	1.6	0.2	4.7	2.0	1.5	0.2	4.3	93.9	(5)
울산	3.0	1.1	1.2	4.1	2.9	1.1	1.1	3.8	94.9	(5)
경기	5.6	3.5	1.3	15.4	4.9	3.2	0.6	13.2	91.2	(31)
강원	10.9	8.9	2.5	36.5	9.0	7.5	2.1	30.6	84.3	(18)
충북	7.5	5.9	0.0	22.3	6.5	5.2	0.0	19.6	85.8	(12)
충남	4.5	3.1	0.0	10.5	3.5	2.4	0.0	7.0	84.1	(16)
전북	5.3	4.6	0.0	12.5	4.3	3.9	0.0	12.3	82.5	(14)
전남	4.5	5.1	0.0	16.6	3.5	3.7	0.0	13.5	79.7	(22)
경북	10.6	9.1	0.0	31.2	8.3	6.8	0.0	21.1	78.7	(23)
경남	7.1	5.1	1.1	23.7	6.1	4.8	0.7	22.5	86.3	(20)
제주	5.4	4.2	2.5	8.4	4.8	3.5	2.4	7.2	90.5	(2)

자료: 보건복지부(2009). e-보육 통계.



자료: 행정안전부(2009). 주민등록인구 통계.
보건복지부(2010). 2009년 보육통계.

[그림 II-4-2] 시·도별 시·군·구 단위 국공립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2009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국공립시설 공급률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구 평균이 11.9%이고 강원과 경북의 시·군 평균은 10%를 넘는다.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 대구, 울산으로 구 평균이 각각 2.1%, 2.3%, 3.0%이다.

시·군·구 단위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률은 평균 6.1%인데, 이 역시 공급률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서울만 평균 10%를 넘고 다음이 강원으로 9.0%이고, 부산과 경북이 8% 수준으로 비교적 높으며, 대구와 대전은 구 평균이 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시·군·구 단위 국공립보육시설 공급 대비 이용 비율인 정원충족률은 전국이 88.5%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전, 울산, 경기, 제주가 90%를 넘고 대구와 광주 77% 수준에 머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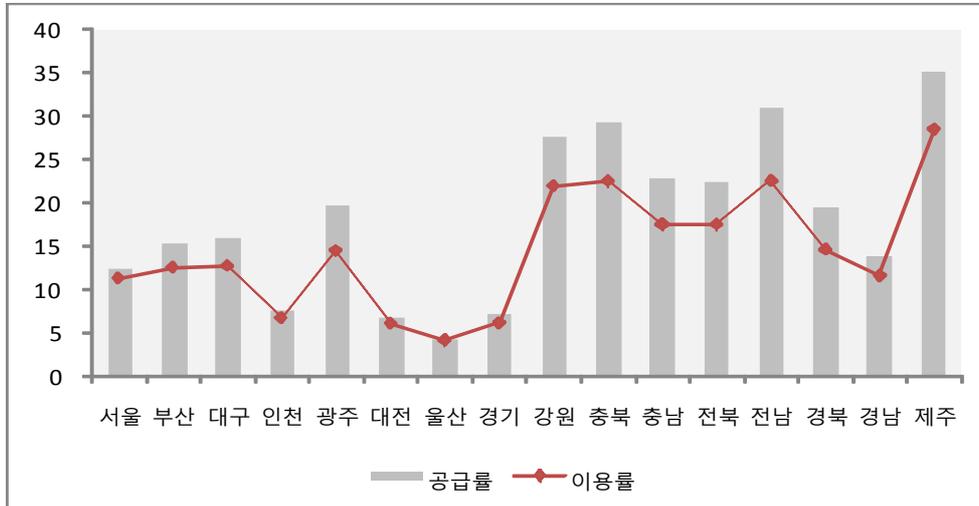
다음 <표 II-4-13>과 [그림 II-4-3]은 시·도별 시·군·구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의 공급률과 이용률 평균을 나타내는데, 공급은 전체적으로는 평균 17.9%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35.2%이고, 전남, 충북, 강원 27~31% 수준으로 높으며, 울산이 4.5%로 가장 낮다. 10% 미만인 지역은 울산 이외에 인천, 대전, 경기도이다.

<표 II-4-13> 시·도별 시·군·구 단위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단위: %(시·군·구)

구분	공급(인구 대비 정원 비율)				이용(인구 대비 현원 비율)				정원 충족률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저	최고	평균	표준 편차	최저	최고		
전체	17.9	12.9	0.0	71.8	14.1	9.2	0.0	45.2	83.2	(232)
서울	12.5	6.4	5.9	32.5	11.3	5.3	5.7	28.1	91.5	(25)
부산	15.4	7.9	6.7	32.6	12.6	5.7	6.0	22.7	83.4	(16)
대구	16.1	5.7	8.8	26.8	12.7	4.3	7.1	21.2	80.3	(8)
인천	7.8	5.7	2.5	20.1	6.7	5.0	2.4	17.6	86.4	(10)
광주	19.7	4.0	17.0	26.7	14.5	2.0	11.6	16.8	74.9	(5)
대전	6.8	2.8	3.9	10.5	6.1	2.4	3.6	9.2	89.4	(5)
울산	4.5	2.5	2.0	8.6	4.2	2.2	1.9	7.7	93.4	(5)
경기	7.2	5.0	2.4	27.2	6.2	4.3	1.8	21.7	89.5	(31)
강원	27.8	13.0	12.5	57.2	21.9	9.4	10.6	41.4	80.2	(18)
충북	29.4	15.0	8.2	57.5	22.4	11.0	6.6	45.2	78.0	(12)
충남	22.9	13.6	3.9	51.9	17.5	9.1	3.3	37.8	78.0	(16)
전북	22.6	11.9	0.0	50.7	17.4	9.9	0.0	43.9	76.8	(14)
전남	31.0	16.6	7.5	71.8	22.5	9.5	7.2	39.7	76.4	(22)
경북	19.6	10.4	6.0	38.9	14.6	7.4	4.6	32.9	76.7	(23)
경남	14.0	7.5	4.7	31.9	11.6	6.7	4.3	29.6	82.3	(20)
제주	35.2	20.5	20.7	49.7	28.4	14.9	17.8	38.9	82.8	(2)

자료: 보건복지부(2009). e-보육 통계.



[그림 11-4-3] 시·도별 시·군·구 단위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시·군·구 단위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이용률은 평균 14.1%이며, 제주와 충북, 전남이 각각 28.4%, 22.5%, 22.4%로 가장 높다. 인천, 대전, 울산, 경기가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시·군·구 단위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 공급 대비 이용 비율인 정원충족률은 전국이 83.2%이다. 지역별로는 울산과 서울이 90%를 넘고 광주가 74.9%로 낮은 편이다.

다. 보육 아동 특성

1) 연령분포

<표 11-4-14>는 보육시설 단위 시·도 및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 백분율 분포를 나타낸다.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만2세 이용아동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3세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이 만5세아 비율이 높아서, 농어촌의 만5세아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높음을 나타냈다.

시설유형별로는 가정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영아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이용아동 중 94%가 영아이고 유아의 비율은 6% 정도에 불과하며, 만5세아는 인건비 지원 시설 이용률이 높다.

〈표 II-4-14〉 보육아동 연령 분포

단위: %,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방과후	계 (아동수)
전체	9.0	17.0	23.0	19.0	17.0	13.0	2.0	100.0 (1,175,049)
사·도								
서울	8.0	16.0	23.0	19.0	17.0	13.0	4.0	100.0 (193,723)
부산	8.0	17.0	24.0	20.0	15.0	12.0	4.0	100.0 (62,862)
대구	7.0	16.0	24.0	23.0	16.0	11.0	3.0	100.0 (57,501)
인천	9.0	17.0	24.0	20.0	16.0	13.0	1.0	100.0 (58,567)
광주	11.0	17.0	20.0	18.0	17.0	16.0	1.0	100.0 (45,640)
대전	11.0	20.0	25.0	19.0	14.0	10.0	1.0	100.0 (38,141)
울산	7.0	18.0	28.0	23.0	14.0	9.0	1.0	100.0 (24,074)
경기	12.0	18.0	23.0	18.0	16.0	12.0	1.0	100.0 (283,774)
강원	5.0	15.0	22.0	21.0	20.0	16.0	1.0	100.0 (37,562)
충북	7.0	15.0	21.0	20.0	19.0	17.0	1.0	100.0 (42,557)
충남	7.0	15.0	22.0	21.0	19.0	15.0	1.0	100.0 (52,282)
전북	10.0	16.0	20.0	17.0	17.0	16.0	4.0	100.0 (55,619)
전남	8.0	15.0	20.0	19.0	19.0	17.0	2.0	100.0 (51,240)
경북	8.0	16.0	24.0	21.0	16.0	12.0	3.0	100.0 (63,724)
경남	10.0	19.0	25.0	19.0	14.0	11.0	2.0	100.0 (84,186)
제주	9.0	19.0	21.0	21.0	19.0	10.0	1.0	100.0 (23,597)
시설유형								
국공립	2.0	11.0	20.0	23.0	23.0	19.0	2.0	100.0 (129,656)
법인	3.0	11.0	20.0	23.0	21.0	18.0	4.0	100.0 (112,338)
법인외	2.0	10.0	19.0	22.0	22.0	18.0	7.0	100.0 (52,718)
민간개인	5.0	12.0	23.0	23.0	20.0	15.0	2.0	100.0 (623,045)
직장	3.0	15.0	24.0	25.0	20.0	12.0	1.0	100.0 (18,794)
가정	31.0	37.0	26.0	4.0	1.0	1.0	0.0	100.0 (236,843)
부모협동	2.0	9.0	22.0	22.0	23.0	20.0	2.0	100.0 (1,655)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09년 보육통계.

2)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2009년 12월 보육통계에 의하면 영유아 중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26,412명이다. 이는 2010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6세 이하 다문화가족 영유아 수 62,137명의 42.5%이다. 전체 영유아 대비 보육아동의 비율이 40.1%임을 고려한다면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보육시설 이용 다문화가족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26,412명 중 법인이 13%, 국공립이 11%로 나타났다.

〈표 II-4-15〉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아수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의외	민간 개인			
전체	26,412	2,855	3,438	1,697	13,234	6	5,103	79
대도시	8,259	1,130	437	280	4,642	5	1,736	29
중소도시	7,498	472	376	267	4,087	1	2,277	18
농어촌	10,655	1,253	2,625	1,150	4,505	-	1,090	32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09년 보육통계.

〈표 II-4-16〉 시·군·구 단위 보육아동 중 다문화 가정 아동 비율과 수

단위: %(시·군·구)

구분	아동비율				아동수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 차	최소	최대	총수	
전체	3.6	2.9	0.6	13.2	99.4	71.8	1	415	23,058	(232)
강원	3.7	2.0	0.8	7.6	51.2	40.2	14	153	921	(18)
경기	1.8	0.7	0.3	4.1	136.4	102.2	6	415	4,229	(31)
경남	4.6	3.3	0.9	11.3	95.9	64.9	30	275	1,918	(20)
경북	5.0	3.3	0.9	13.2	73.1	61.6	1	251	1,682	(23)
광주	1.7	0.4	1.1	2.2	134.4	85.2	44	249	672	(5)
대구	1.7	0.7	1.0	2.8	116.5	95.8	12	325	932	(8)
대전	1.7	0.5	1.1	2.3	115.0	20.1	81	134	575	(5)
부산	1.8	0.7	0.9	3.1	63.6	38.3	14	148	1,017	(16)
서울	1.7	0.7	0.6	3.2	118.7	53.5	37	286	2,968	(25)
울산	1.9	0.2	1.6	2.1	84.4	18.5	67	105	422	(5)
인천	2.2	1.1	1.2	4.1	97.0	74.2	9	196	970	(10)
전남	5.9	2.9	1.3	13.2	80.5	41.7	32	179	1,772	(22)
전북	6.9	4.2	1.4	13.1	117.4	72.4	27	295	1,643	(14)
제주	1.4	0.3	1.2	1.6	145.0	70.7	95	195	290	(2)
충남	5.1	2.6	1.9	12.5	124.9	90.0	24	362	1,998	(16)
충북	4.9	3.2	1.5	10.9	87.4	66.2	27	270	1,049	(12)

자료: 보건복지부(2009). e-보육 통계.

2009년 4월 현재¹⁵⁾로 시·군·구별로 보육시설 이용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은 평균 99명이 있고, 최대는 경기도 안산시가 415명이었고, 최소는 경북 울릉군으로 1명이다. 보육시설 이용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 대비 3.6%인데, 시·도별로 시·군 평균은 전북 6.9%, 전남 5.9%, 충남 5.1%, 경북 5.0%이다. 시·군·구 중 최대는 13.2%이다.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은 시·군 모두 최대가 10%를 넘었는데, 10%를 넘는 곳은 13곳으로 모두 군 지역이다.

라. 성과와 과제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은 총량적으로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모두 합하면 영아는 전체 영아 중 41.6%, 유아는 전체 유아 중 총 82.0%의 아동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영유아를 합하면 약 274만명 중 61.6%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OECD는 교육 및 보육기관 권장 이용률로 0~2세아 30%, 3~5세아 90%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영아의 이용률이 높는데, 이는 영아기 본보육료 지급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확충에서 상당부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유아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외에 상당수가 학원 등 유사 기관을 이용하므로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무런 유아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는 단지 4.4%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공급상 구조적으로 시설 설치 및 운영주체 유형과 지역적 편차는 문제가 된다.

보육서비스 공급에서의 가정 중요한 과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정부가 보육의 질과 부모 부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후부터 끊임 없는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1990년대의 양적 확충 정책의 결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초기 설비투자에 대한 재정부담과 민간자원 활용 논리로 인하여 정부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져 이제는 신규 시설 목표치마저 낮추었으므로¹⁶⁾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사실상 국공립시설의 확충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공립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는 서비스 현장에 대한 직접지원이 부모 보조금 지원에 비해, 영유아 서비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부통제, 규모의 이익, 전국적인 서비스의 질 향상, 교사들에 대한 훈련의 효과성, 서비스 이용의 형평

15) 보육 아동 중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은 총 23,058명으로 집계되었음.

16) 2009년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계획은 38개소, 2010년 이후 10개소에 불과함.

성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OECD, 2006), 그 효과는 공공성 높은 운영으로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비스 공급기관 직접지원 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은 대부분이 가정보육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

한편 공급과 이용의 지역적 균형 역시 주요 정책과제이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공급률 평균은 58.5%이며, 시·군·구 단위 이용률은 평균 45.6%이다. 시·군·구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 공급률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70.4%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 광주, 충북, 전남이 50%로 수준으로 높다. 보육 이용률 역시 공급과 마찬가지로 동일 시·도내에서도 시·군·구별 편차가 크다. 특히 전북이 시·군별로 표준편차가 10%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5. 시간연장형 보육

가. 제도

정부는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수요자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하여 시간연장보육을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적용되며, 지원은 2010년 현재 두 가지 방식이다. 하나는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가 지원되는 방식으로, 인건비지원 시설의 경우 월 지급액의 80%,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아동 3명이상 보육 시 월 100만원이 지원된다. 다른 하나는 2010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시간연장근무수당은 지원 형태이다. 이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약 30만원(월)을 지원(1일 2시간 근무, 1만2천원 지원, 시간연장 1개반 기준)하는 것으로, 최소 시간연장 보육아동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으로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영유아 부모에게 차등 지원되어 소득하위 50%의 경우는 시간연장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고, 소득하위 60%는 60% 지원, 소득 하위 70%는 3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나. 현황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는 지정 보육시설수는 4,598개소이고 미지정 시설이 1,542개소이며, 총 야간보육 이용 아동수는 26,486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약 2%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율은 시·도별로 최고 제주 5%, 강원 1%이나 대부분 2%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한편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3% 정도가 시간연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도에 따라서는 최고 제주도 34%, 최저 경기도 8%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

〈표 II-5-1〉 시·도별 시간연장형 보육 제공 현황 : 2009. 11월 말

단위: 명(%)

시·도	시설이용 영유아수 (A)	시간연장형 이용 아동수				보육 시설수 (B)	시간연장 보육시설수	
		저녁시간 (A 대비 비율)	야간	24시간	휴일		지정 (B 대비 비율)	미지정
전체	1,150,562	26,486 (2)	58	1,097	2,296	35,259	4,598 (13)	1,542
서울	186,216	4,399 (2)	32	325	353	5,685	774 (14)	262
부산	60,654	1,263 (2)	2	106	96	1,653	235 (14)	69
대구	55,995	993 (2)	2	36	59	1,492	203 (14)	43
인천	57,858	1,189 (2)	-	53	60	1,760	195 (11)	81
광주	44,897	735 (2)	1	23	95	1,149	76 (7)	58
대전	37,861	1,324 (3)	-	19	54	1,393	235 (17)	76
울산	23,878	391 (2)	3	24	41	654	84 (13)	13
경기	280,767	5,277 (2)	10	272	421	10,372	862 (8)	405
강원	37,358	530 (1)	5	8	82	910	136 (15)	27
충북	42,073	931 (2)	-	1	56	1,030	178 (17)	14
충남	51,796	1,197 (2)	-	24	77	1,449	205 (14)	57
전북	53,446	1,525 (3)	1	49	154	1,502	254 (17)	95
전남	50,393	1,529 (3)	-	21	31	1,103	321 (29)	34
경북	61,911	1,138 (2)	-	37	30	1,807	187 (10)	39
경남	82,128	2,922 (3)	2	95	325	2,801	485 (17)	239
제주	23,331	1,143 (5)	-	4	362	499	164 (34)	30

자료: 보건복지부(2009). 내부자료.

이러한 이용에 비하여 부모들의 요구는 높아서 미충족 요구가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시간연장 상시 필요성은 7%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취업모는 10%가 상시적으로 시간연장보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 시간연장형 보육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보육아동의 수이다. 13%의 시설에서 2%의 아동을 보육한다는 것이 나타내듯이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소수인 시설에 교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시간연장 보육교사에게 시간연장을 지원하는 단시간 연장보육 지원은 단기적으로 교사 처우 개선면에서 탄력성이 높은 정책이지만 교사가 연장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표 11-5-2〉 제 특성별 야간보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상시	1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없음	계(수)	X ² (df)
전체	7.1	9.3	14.4	4.1	65.1	100.0(3,303)	
지역규모							
대도시	7.5	10.8	13.2	3.2	65.3	100.0(1,318)	29.9(8)**
중소도시	7.7	8.6	16.6	4.6	62.6	100.0(1,436)	
읍면	4.7	7.4	11.6	5.1	71.1	100.0(551)	
모취업							
모취업	10.2	12.4	16.9	4.0	56.5	100.0(1,113)	72.3(8)**
미취업	5.3	7.6	13.2	4.1	69.7	100.0(2,114)	
모부재	10.5	9.2	10.5	6.6	63.2	100.0(76)	

주: ** $p < .01$.

자료: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다. 성과와 과제

시간연장형 보육은 종전에 야간보육교사 인건비지원에 더하여 2010년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에게 1일 2시간 근무, 1만2천원 지원을 근무수당으로 월 약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는 인건비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탄력성이 높은 정책으로, 2010년 주요 제도적 성과라 하겠다.

그러나 아직 시간연장형 보육은 공급 대비 수요가 높다. 시간연장형 보육정책의 어려움은 정확한 상시 수요 예측의 어려움에 있으나 시간연장형 보육 상시 수요는 7%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실제 이용은 보육아동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첫째, 모든 보육시설이 신청하도록 개방하며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1명이어도 교사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은 정책이므로, 이보다는 지역별로 취약보육 거점형 어린이집을 두어서 취약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효율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교사 1인에 아동 1~2명 있는 시간연장형 보육은 아동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시간연장형 보육은 매일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영유아 부모에게 차등 지원되는데, 시설장의 보고 이외의 점검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용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야간보육 아동은 거의 다가 월 60시간을 다 이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셋째, 시간연장보육 대상이 취업모 등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인가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는다. 향후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시간연장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6. 보육시설 평가인증

가. 제도

정부는 평가인증제도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3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모형을 개발하는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2004년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도부터 본격 시행하여 왔다.

2010년부터는 제2주기로 제1주기와는 다소 다른 기준으로 운영된다. 달라진 특성을 보면 참여대상을 신규인가 1년 미만 시설 참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고, 지표의 적절성을 보완하고자 지표축소, 달성도 높은 항목 통합, 항목신설 등의 변경을 추진하였고, 법적 기본사항(설치기준,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확인을 추가하였으며, 평가인증 신청에서 인증 결정에 이르는 기간을 단축하고¹⁷⁾ 인증의 객관성 및 기준 점수를 강화하였으며, 각 지역의 사전조력 인프라를 통해 인증시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외 미인증시설 평가인증 참여로 '05~'06년 평가인증시설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2010년 현재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사의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된다. 인증점수는 자체점검 보고서 10%, 기본사항확인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

17) 평가인증 과정은 2005년 시범운영 초기에는 9~10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6~7개월의 조정되었고, 2011년부터 6개월로 조정되었음.

위원회 의견서 25%이다. 심의의견은 보육시설의 특징과 장점,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노력, 보고서에 나타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우수사례 및 부적절 사례, 보고서 간 대비오차로 구성한다.

평가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는 인증, 그렇지 못하면 인증유보로 결정된다. 총점 및 영역별 기준점수는 2.25점(3.00만점)이다.

평가인증 보육시설은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홈페이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시설의 시설장이 교체된 경우 인증당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신입 시설장은 교체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시설장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는 평가인증사무국에서 배 심의마다 인증 기준 통과 시설 명단만을 발표하는 형태로 공개되며, 결과는 주로 지방정부가 교사 수당 등 인센티브 제공의 준거로 활용한다.

나. 현황

2005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09년에 실시한 제1차 평가인증에서 신청 건수는 29,084건으로 보육시설 수 대비 86.8%이고, 인증 통과시설은 20,255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60.5%이다.

<표 II-6-1> 연차별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참여 및 인증률: 2010. 3

구분	신청 건			인증통과 시설		
	신청소계	신청누계	전체대비 누계비율	인증통과 소계	인증통과 누계	전체대비 누계비율
'05(시범실시)	1,089	-	-	650	-	-
'06(1~4기)	4,420	5,509	16.4	2,804	3,454	10.3
'07(1~4기)	6,359	11,868	35.4	4,181	7,635	22.8
'08(1~4기)	7,776	19,644	58.6	5,464	13,099	39.1
'09(1~4기)	9,440	29,084	86.8	7,156	20,255	60.5

자료: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9). 내부자료.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평가인증 신청 건수와 인증 보육시설 비율은 <표 II-6-2>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0년 3월 현재 전체 33,499개 보육시설 중 60.5%인 20,255개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보육시설 설치 주체 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법인 보육

시설이 90%를 넘고 가정과 민간개인 시설이 55~58% 수준이며 부모협동보육시설이 33.8%로 가장 낮다.

〈표 II-6-2〉 2005~2009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참여율, 인증률: 2010. 3

단위: 개소, %

구 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계
전체(A)	1,826	1,458	350	15,525	65	14,275	33,499
인증(C)	1,669	1,384	202	8,685	22	8,293	20,255
인증률(C/A)	91.4	94.9	57.7	55.9	33.8	58.1	60.5

주: 1) 전체시설은 2008년 12월말 전국 보육통계(33,499개소)를 기준임. 법인외는 민간개인으로 분류함.
 2) 참여신청 시설 수는 신청 후 자체포기, 재신청 등의 이유로 중복 산정될 수 있음.
 자료: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9). 내부자료.

〈표 II-6-3〉 2005~2009 평가인증시설 지역별 분포 : 2010. 3

단위: 개소, %

지역	보육시설 수(A)	인증시설 수(B)	비율(B/A)
계	33,499	20,255	60.5
서울	5,600	3,629	64.8
부산	1,651	1,286	77.9
대구	1,426	848	59.5
인천	1,652	1,151	69.7
광주	1,096	961	87.7
대전	1,318	820	62.2
울산	609	411	67.5
경기	9,712	4,057	41.8
강원	885	739	83.5
충북	950	671	70.6
충남	1,344	743	55.3
전북	1,479	1,146	77.5
전남	1,054	776	73.6
경북	1,708	1,179	69.0
경남	2,539	1,494	58.8
제주	476	344	72.3

주: 1) 전체시설은 2008년 12월말 전국 보육통계(33,499개소)를 기준임.
 2) 참여신청 시설 수는 신청 후 자진취소, 재신청 등의 이유로 중복 산정될 수 있음.
 자료: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9). 내부자료.

2010년 3월 현재 인증시설 비율은 시·도별로는 광주가 87.7%로 가장 높고 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가 70% 이상으로 비교적 높으며, 경기도가 41.8%로 가

장 낮다(표 II-6-3 참조).

2006년 1기부터 2009년 4기까지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의 점수분포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인증시설 중 95점 이상이 11.8%, 90점 이상이고, 반면에 80점 미만은 17.0%이다. 전체적으로 평가인증에 통과한 시설 중 40%가 90점 이상을 받는 등 상당수의 시설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75점 이하도 4.8%로, 평가인증 통과 시설들간의 점수 차이도 크다(표 II-6-4 참조).

〈표 II-6-4〉 평가인증 참여시설 결과점수 분포

단위: %(개소)

구분	인증						불인증	계(수)
	95점이상	90-94.99	85-89.99	80-84.99	75-79.99	73.33-74.99	73.32점 이하	
전체	11.8	26.2	24.7	18.5	12.2	4.8	1.7	100(20,567)
인증시설누적	12.4	39.9	65.7	84.5	96.2	100.0	na	100(19,605)

주: 2006년 1기 ~ 2009년 4기까지의 시설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2010). 내부자료.

다. 성과와 과제

2009년과 2010년은 평가인증제도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해이다. 2009년에는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6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제2주기 평가인증으로 평가지표와 운용체계를 개선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제1주기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평가점수가 평균 87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1주기 평가인증 시행 목표를 일정 부분은 달성하였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평가인증제도에서 앞으로의 정책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결과 활용과 재정 지원과의 연계이다.

현재 인증 결과는 인증통과 시설 명단만 공개하는데, 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 정도가 높지 않고, 보육시설 선택시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비율도 낮으며, 이용하는 시설의 평가인증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평가인증 결과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해서 공개함으로써 부모들이 평가인증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료 지원 등 재정지원과의 연계가 없어서 평가인증제도가 질적 수준 제고 수단으로 역할을 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고, 재정 지원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연계되었다는 증거도 확보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시설 운영비 지원과

연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본보육료나 차등보육료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은 평가인증 신청과 연계하고, 일정기간 이후에 평가인증 통과와 연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평가인증 통과와 연계 시에는 정책 사전예고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표 II-6-5〉 호주와 영국의 평가인증 정보 공개 및 활용 사례

구분	내 용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에 도입되는 새로운 평가 체계는 각각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곱 가지 질적 분야에 걸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나의 총괄적인 등급을 결정하며, 모든 서비스에는 승인과 등급 정보가 표시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의 등급은 영역별로 최우수(Excellent), 우수(High Quality),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 노력 중(Operation Level), 불만족(Unsatisfactory)의 5단계로 구분 -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주기가 달라지는데 최우수(Excellent)와 우수(High Quality)는 3년마다,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는 2년마다 평가를 받으며, 노력 중(Operation Level)을 받은 시설은 최소 1번 이상의 방문점검과 1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함. 단, 신규시설은 처음 인가 시 노력 중(Operation Level)을 받는데 이 경우 3-6개월 이내 추가 방문점검을 받아야 함. - 평가 결과 불만족(Unsatisfactory)를 받은 시설은 개선계획과 함께 수시로 방문점검을 받게 되며 개선 정도에 따라 처벌/폐쇄 조치가 가능함. - 미인증 시설 이용 아동은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매겨진 영역별 등급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및 검사 결과 공개는 서비스 제공자 의무 사항으로 2008년 9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아동보육규정(The Childcare (Inspection) Regulation 2008)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보육서비스 제공자 및 기관은 2009년 8월 1일 이후 3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검사일 이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함. • 서비스 공급자는 검사가 예정되면 이를 돌보는 아동 부모에게 알려야 함. •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검사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모든 부모에게 보내야 하고 이외 누구라도 이를 원할 경우 무료로 제공하여야 함. • 공개 대상 부모는 가정보육의 경우는 현재 이용 아동 부모에 한하지만 기관은 검사전 1년간 최소 12주 주당 2시간 이상씩 2번 이상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그 대상임. - 검사 보고서를 Ofsted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누구라도 검색을 통하여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내용은 기관에 대한 설명, 전반적 성취도, 개선을 위하여 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 지도력 및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자)의 질과 기준, 아동에 대한 결과를 서술형으로 제시하고 부록으로 항목별 평가접수표를 제시 - 검사는 총괄 및 영역별로 A-D로 4등급 평가

주: 2006년 1기 ~ 2009년 4기까지의 시설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2010). 내부자료.

외국 사례로 호주는 각 영역별로 등급은 최우수(Excellent), 우수(High Quality),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 노력 중(Operation Level), 불만족(Unsatisfactory)의 5 단계로 나누어 공개하고, 보육료 지원과 연계하여 미인증 시설 이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영국은 2008년 아동보육규정(The Childcare(Inspection) Regulation 2008) 9항과 10항(regulation 9 and 10),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부모에게 검사 결과보고서 사본을 보내야 하고, 이외 누구라도 이를 원할 경우 무료로 제공하는 규정에 따라서 검사 보고서를 Ofsted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누구라도 검색을 통하여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 평가는 총괄 및 영역별 A~D의 4단계로 구분된다 (표 II-6-5 참조).

7. 보육인력 특성과 처우

가. 제도

보육인력은 시설규모와 아동연령별 교사대 아동수 등 일정 기준에 의하여 배치된다. 아동 20인이하 보육시설 시설장은 교사와 겸직이 가능하고, 영양사와 간호사는 아동 100인 이상 시설에, 취사부는 아동 40인 이상 시설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장과 교사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¹⁸⁾

이러한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예산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보육종사자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한다.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할 지역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은 대학, 전문대학,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데, 직무교육은 40시간 기준으로 1인당 6만원, 승무교육은 80시간 기준으로 1인당 12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농어촌 등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한다.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어촌 등 보육시설에 한달에 2주 이상 근무할 경우 지원하고,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 및 대표자는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시설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

18) 보육인력 양성 및 자격기준은 본 글에서는 제외하고자 함.

·군·구에서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해당시설에 15일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보육교사가 주 중 5일을 연가로 사용할 때, 보육정보센터에서 월급제로 채용된 대체교사를 시설에 파견한다.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며, 분할 사용은 불가하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성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5일 근무에 월 130만에 교통비와 퇴직금 적립은 각각 10만원, 퇴직적립금 6만5천원은 별도로 지급한다. 보육교사가 5인 이하인 시설에 우선 지원한다.

나. 현황

2009년 12월 현재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150,477명이고, 특수교사 1,103명, 치료사 538명, 간호(조무)사 자격자가 763명이고 영양사가 624명이며 취사부 및 조리사가 11,806명이다.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의 중복 자격일 가능성이 높다.

〈표 II-7-1〉 보육시설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
전체	35,424	150,477	1,103	538	624	763	802	11,806	5,375
국공립	1,913	13,418	378	110	77	123	134	2,363	881
법인	1,470	11,889	491	330	78	109	156	1,785	734
법인외	932	5,279	61	29	41	57	101	903	585
민간개인	13,393	73,093	155	68	371	423	309	5,428	2,428
가정	17,283	43,935	12	1	1	6	46	900	679
직장	66	240	2	-	4	-	5	29	2
부모협동	367	2,623	4	-	52	45	51	398	66

주: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가 모두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09년 보육통계.

2009년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174,905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보육교사의 자격을 보면 보육교사 중에서 보육교사 1급이 전체 보육교사의 과반수를 조금 넘고 보육교사 2급이 33.5%이며 3급 교사가 9.8%이다.

보육시설 유형별로 직장보육시설 교사의 82.6%, 국공립보육시설 교사의 거의 80%가 1급 교사이고, 법인, 법인외 보육시설 교사도 73.7%, 72.1%의 교사가 1급 교사이

다. 반면에 보육교사 3급은 민간개인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가정보육시설은 교사의 12.8%가 3급 교사이다. 다음 지역별 차이는 1급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으로 65.5%이고 부산과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제주가 각각 60%를 넘는다. 3급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경기도로 12.1%이다. 이 역시 경기도에 가정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표 II-7-2 참조).

〈표 II-7-2〉 보육교사 자격 및 학력 분포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자격				보육교사 학력				
	1급	2급	3급	계(수)	고졸	전문 대졸	4년제 대졸	대학 원졸	계(수)
전체	56.7	33.5	9.8	100.0(174,905)	13.5	67.6	17.6	1.3	100.0(131,835)
유형									
국공립	79.5	19.0	1.5	100.0(14,631)	5.9	67.3	25.0	1.8	100.0(14,410)
법인	73.7	23.6	2.7	100.0(12,629)	5.1	72.1	21.3	1.5	100.0(13,312)
법인의외	72.1	24.0	4.0	100.0(5,747)	8.9	67.2	21.8	2.1	100.0(5,824)
민간	52.2	36.9	10.9	100.0(79,558)	14.2	69.7	15.0	1.1	100.0(64,834)
직장	82.6	16.3	1.1	100.0(2,845)	2.7	56.8	37.7	2.8	100.0(2,711)
가정	50.8	36.4	12.8	100.0(59,204)	21.3	62.4	15.4	0.9	100.0(30,525)
협동	63.6	30.6	5.8	100.0(291)	11.4	58.4	27.9	2.3	100.0(219)
사도									
서울	55.8	33.8	10.4	100.0(29,298)	14.5	64.1	19.6	1.8	100.0(22,908)
부산	61.4	31.2	7.4	100.0(9,262)	9.5	70.7	18.4	1.4	100.0(7,537)
대구	57.9	30.7	11.4	100.0(8,474)	11.2	70.0	17.5	1.3	100.0(7,018)
인천	56.1	36.2	7.7	100.0(8,617)	19.3	64.0	15.7	1.0	100.0(5,968)
광주	63.2	29.2	7.7	100.0(6,435)	10.8	66.8	21.2	1.2	100.0(5,123)
대전	56.1	35.6	8.3	100.0(6,417)	12.4	65.9	20.1	1.6	100.0(4,587)
울산	60.4	30.6	9.1	100.0(3,523)	12.4	69.6	17.4	0.6	100.0(2,805)
경기	51.5	36.4	12.1	100.0(45,805)	18.6	63.3	17.1	1.2	100.0(29,277)
강원	64.2	30.3	5.4	100.0(4,579)	8.8	77.4	13.2	0.8	100.0(4,053)
충북	58.5	34.3	7.2	100.0(5,520)	10.6	72.0	16.3	1.1	100.0(4,491)
충남	60.3	32.7	7.0	100.0(6,988)	12.1	68.5	18.1	1.3	100.0(5,155)
전북	60.2	30.3	9.5	100.0(7,827)	11.9	64.8	22.1	1.2	100.0(6,619)
전남	65.5	29.4	5.1	100.0(6,719)	8.6	74.7	15.6	1.1	100.0(6,058)
경북	59.4	31.3	9.3	100.0(9,226)	11.3	72.3	15.3	1.1	100.0(7,555)
경남	54.6	33.8	11.6	100.0(13,290)	10.5	71.2	17.3	1.0	100.0(9,655)
제주	61.1	30.6	8.4	100.0(2,925)	10.9	78.8	9.8	0.5	100.0(3,026)

주: 급수에는 가정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가 모두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09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09). e-보육 통계.

다음, 2009년 e-보육시스템에 학력이 입력된 보육교사의 학력은 고졸 13.5%, 전문대졸 67.6%, 4년제 대학졸 17.6%, 대학원졸 1.3%로 전문대졸이 2/3를 차지한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는 시설장 학력과 유사하다. 가정보육시설 교사의 21.3%가 고졸로 고졸 비율이 다른 보육시설 유형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고 다음이 민간개인시설로 14.2%가 고졸 학력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보육시설 교사의 고졸 비율이 높는데, 이는 시설장의 학력 분포와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에 가정보육시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표 II-7-2 참조).

교사 관련 사업 규모는 2010년 보수교육 27,700명, 농어촌 교사 특별근무수당 27,344명, 대체교사 450명이다(표 II-7-3 참조).

〈표 II-7-3〉 교사 관련 사업 규모

단위: 명

구 분	2010
보수교육	27,700
농어촌 근무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7,344
대체교사	45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보육사업안내.

한편,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약 126만원으로, 20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96만원인 것과 비교하여 약 30만원 이상 증가하였다. 국공립, 직장, 법인 등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이 150만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보육교사 급여는 유사직종인 유치원교사 총 급여 6호봉 기준 250만원 수준(김현숙 외, 2007)은 물론 25~29세 전문대졸 여성근로자 평균 임금 153만7천원 수준(통계청, 2010)과 비교하여 열악함을 알 수 있다(표 II-7-4 참조).

이러한 급여에 비하여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2009년도 평균 9.5시간으로, 2005년 조사 결과인 1일 평균 근무시간 10시간 19분과 비교하면 약 49분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II-7-5 참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긴 것은 기본적으로 보육이 취업모 자녀 등 장시간 보육 요구가 있는 아동보육을 담당하므로 피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외에도 이용시간 규정 부재로 인하여 보육시설 12시간 운영 원칙과 아동의 보육시간을 동일시하면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지 않는 아동까지도 장시간 보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표 II-7-4〉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교사의 급여(월평균 급여 및 연평균 수당)

단위: 만원(명)

구분	2009		2004	2009	
	월평균 급여	표준편차	급여	연평균 수당	표준편차
전체	126.1(13,076)	30.8	96	148.4(11,020)	104.0
국공립	155.0(1,844)	23.9	146	147.8(1,635)	88.4
법인	150.2(1,922)	24.1	129	126.5(1,492)	100.2
민간/법인의외/부모협동	113.8(5,329)	23.1	92	150.5(4,604)	106.0
가정	101.9(2,791)	14.3	78	148.8(2,348)	103.8
직장	154.0(1,190)	25.7	없음	172.6(941)	118.3
통계치	3087.3***			30.1***	

주 : *** p<.001.

자료 : 유희정 외(2009). 2009년도 전국실태조사 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여성정책연구원.
 이미화 외(2004). 2004년도 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 보고서. 여성부.

〈표 II-7-5〉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단위:시간(명)

구분	1일 평균 근무시간
전체	9.5(13,088)
국공립	9.6(1,849)
법인	9.9(1,882)
민간/법인의외/부모협동	9.5(5,343)
가정	9.2(2,757)
직장	9.7(1,257)
F	101.7***
2005 년도	10시간 19분

주 : *** p<.001.

자료 : 유희정 외(2009). 2009년도 전국실태조사 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여성정책연구원.
 서문희 외(2006).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 여성가족부.

다. 성과와 과제

보육교사 관련 정책은 대부분 정책 도입 단계에 있으므로 성과보다 더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그 동안의 보육정책은 주로 부모 보육료 부담 완화에 집중되었고 보육서비스의 질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교사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최근의 성과 및 한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부터 농어촌 등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게 된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금액이나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 수당은 전국 교육교사로의 확대가 요구된다. 지방정부 사업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도 해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지방정부가 낮은 교사 급여 보전의 수단으로 수당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역별 차이기 커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방정부가 이를 중앙정부 사업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금도 유치원교사 담임수당 41만원(2011년)과 비교되므로 지원 수준의 점진적 조정도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사 처우 관련 예산 사업 중 대체교사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사업으로 제도 도입은 주요한 정책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가 연가를 주중 5일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사용상 불편사항이다. 대체교사 제도는 당분간은 교사 수를 증가시켜 연가 이외에 교육이나 단기휴가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사 추가 배치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 시 직무교육은 40시간 기준으로 1인당 6만원, 승무교육은 80시간 기준으로 1인당 12만원을 지원한다. 보수교육은 지방정부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이 지원금이 질 높은 보수교육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지원으로는 반당 50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기 어렵다.

넷째, 보육교사 8시간 근무 준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하고, 이후 종일제 교사를 별도로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사 근무시간은 아이들과의 활동과 다음 날을 위한 준비 시간의 비율이 6:4로 배분되어야 한다. 보육 시간 체계를 이원화하여 영유아의 연령, 부모의 취업 유무에 따라 전업모 자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3시까지 보육하고 종일제는 취업모 등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적용하여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린이집이나 아동 입장에서 모두 바람직하다.

8. 소결: 주요 보육 지표

앞에서 논의한 영역별로 주요 성과 자료를 토대로 보육정책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보육통계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이 가능하다. 이 지표는 매년 산출 및 연도별로 누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므로 보육정책의 추진 방향과 성과 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각 영역별로 간략하

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보육비용 지원 주요 지표는 보육 아동 중 보육료 전액지원아동 비율과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 및 소득대비 보육료 지출 비율이다.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는 부모 보육료 완화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이다. 보육료 전액지원아동 비율과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은 2009년 현재 각각 45.0%, 65.7%이다. 이는 시·도별 통계 산출이 가능하다. 한편 소득대비 보육료 지출 비율은 가구 대상 설문조사로 산출되며 2009년 전국조사에서 7.4%로 추정되었다.

〈표 11-8-1〉 주요 지표

영역	세부지표명	전국 통계	주기	최저 산출단위	기초자료 출처
보육비용 지원	보육료 전액지원아동 비율	45.0%	1년	시·군·구	보육통계
	보육료 지원아동비율	65.7%	1년	시·군·구	보육통계
	보육료 소득대비 비율	7.4%	5년	국가	실태조사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아동 비율	8.7%	1년	국가	복지부
	양육수당 지원액	10만원	1년	국가	복지부
보육재정	GDP대비 국고지원금 비율	0.195	1년	국가	복지부
	GDP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	0.465	1년	국가	복지부
	GDP대비 총 보육·유아교육 재정 비율	0.617	1년	국가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보육료 정부 부담 비율	0.637	1년	국가	복지부
	아동1인당 보육예산	4,207천원	1년	시·군·구	복지부
	아동1인당 특수보육시책예산	151천원	1년	시·군·구	복지부
공급 및 이용	보육시설 공급률	54.2%	1년	시·군·구	보육통계
	보육시설 이용률	42.9%	1년	시·군·구	보육통계
	국공립시설 이용아동 비율	6.1%	1년	시·군·구	보육통계
시간연장형 보육	시간연장 보육아동 비율	2%	1년	시·군·구	보육통계
평가인증	평가인증시설 비율	60.5%	1년	시·군·구	평가인증사무국
	우수인증시설 비율	-	-	시·군·구	평가인증사무국
교사 근무환경	월 수당액	11만원	1년	전국	복지부
	수당 지급 교사 비율	18.2%	1년	전국	복지부
	교사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	2.9%	1년	전국	복지부

양육수당은 양육수당 지원아동 비율과 양육수당 지원액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2009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제도의 성격과 영향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정책으로 채택된 이상 그 추이는 파악되어야 한다. 2009년 0, 1세 아동 8.7%

가 지원 받았으며, 지원액은 월 10만원이었다.

보육재정은 GDP대비 국고지원금 비율, GDP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 GDP대비 보육·유아교육 재정 비율, 보육료 정부 분담 비율, 아동 1인당 보육예산, 아동1인당 특수보육시책 예산의 여섯 가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GDP대비 국고지원금 비율은 2010년이 0.20%, 2011년 0.22%이고, GDP 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은 0.47%이다. 유아교육 및 농어촌 영유아 지원을 포함하면 0.62%이다. 아동1인당 보육예산은 420만원 정도이고 지역별 차이가 큰데, 지역내 보육료 지원 대상이 많을수록 높아지므로 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한편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예산은 4~98만원으로 평균 15만원 수준이다.

일반적 보육서비스 공급 및 이용률은 전국적으로는 보육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상태로 평가되는 상황이므로 그 의미는 퇴색된다. 그러나 시·도나 시·군·구별로는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간 형평성의 상태를 알게 해 주고, 또한 과잉 공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09년 보육시설 공급률은 54.2%, 아동수 대비 보육시설 이용률은 42.9%, 아동수 대비 국공립시설 이용 비율은 6.1%이다.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률은 2% 수준이다.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전체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통과 시설 비율은 2010년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된다. 2009년 신청 기준으로 통과비율은 60.5%이다. 이외 앞으로 우수 어린이집 비율 등 상세 지표도 산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시·도 및 시·군·구 통계 산출이 가능하여 지역별 비교도 의미가 있다.

교사 부분은 월 수당액, 교사수 대비 월 수당 지급 교사 비율, 보육교사 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로 정하였다. 교사수 대비 월 수당 지급 교사 비율은 18.2%이고, 보육교사 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은 29%이다.

Ⅲ.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 예산은 제2장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 65억 5천 만원으로 국고 지원사업비의 약 15%가 된다. 이 비용 역시 시·도 및 시·군·구별로 차이가 크다. 제3장에서는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특수보육시책 현황

가. 시·도 특수보육시책의 개요

시·도 특수보육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육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전남 4만부 터 서울 98만원에 이르기까지 지역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특수보육시책 내용을 분류하는 방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데 크게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¹⁹⁾,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비용 지원, 평가인증보육시설 지원, 취약보육 운영지원,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운영비 지원으로 구성된다.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법인 시설 인건비이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서울과 부산에 해당되며, 이외 운영비는 매우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은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역량개발비이다. 전남을 제외하고는 각 시·도에서 수당 형태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그러나 그 수준은 차이가 많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경북에서 국공립시설 환경개선비를 두고 있으며, 서울, 부산, 경남에서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를 책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기능보강비는 46억 이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과 육아지원센터 설치 운영 역시 서울시의 대표적인 특수시책 사업이다. 특수보육시책 예산 중 국공립시설 건축비는 없다.

전남과 경북을 제외하고 부모 부담 보육비용 추가 지원으로 보육료 및 기타 경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9)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이 혼동되는 경우도 있음.

〈표 III-1-1〉 사업유형별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2010

단위: 백만원

구분	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483,527	189,227	13,056	9,112	30,838	6,525	15,913	7,546	118,591	5,837	6,212	17,849	16,351	2,048	18,642	16,623	9,157
보육 아동인당	0.41	0.98	0.21	0.16	0.53	0.14	0.42	0.31	0.42	0.16	0.15	0.34	0.29	0.04	0.29	0.20	0.39
시·도별	89,944	87,581	2,363	-	-	-	-	-	-	-	-	-	-	-	-	-	-
공립시설운영지원	68,054	43,867	371	216	1,335	677	1,017	971	600	668	-	4,324	4,881	202	6,993	402	1,526
운영지원	15,255	780	-	-	86	-	640	20	10,757	88	-	360	860	-	-	-	1,664
인건비지원	173,248	132,229	2,733	216	1,421	677	1,657	991	11,357	755	-	4,684	5,741	202	6,993	402	3,190
소계	156,903	-	5,820	5,820	13,898	2,640	10,448	3,708	72,543	2,038	5,722	7,780	8,043	-	6,429	7,506	4,508
중·장년자 역량개발지원	64	12	-	-	-	-	-	-	-	-	-	-	-	-	-	-	52
소계	156,967	12	5,820	5,820	13,898	2,640	10,448	3,708	72,543	2,038	5,722	7,780	8,043	-	6,429	7,506	4,560
시설확충	-	-	-	-	-	-	-	-	-	-	-	-	-	-	-	-	-
공립시설환경개선	217	-	-	-	-	-	-	-	-	-	-	-	-	-	217	-	-
민간시설환경개선	4,790	4,650	40	-	-	-	-	-	-	-	-	-	-	-	-	100	-
육아지원센터설치운영	9,677	8,289	982	-	-	-	-	-	-	-	-	-	6	-	400	-	-
소계	14,684	12,939	1,022	-	-	-	-	-	-	-	-	-	6	-	617	100	-
보육료지원	112,222	38,857	2,500	3,200	12,584	2,626	2,434	1,661	31,855	1,560	-	2,126	1,893	-	3,064	7,500	362
기타경비지원	4,383	-	621	-	2,084	13	265	-	-	1,400	-	-	-	-	-	-	-
소계	116,605	38,857	3,121	3,200	14,668	2,639	2,699	1,661	31,855	2,960	-	2,126	1,893	-	3,064	7,500	362

(표 III-1-1 계속)

평가 인증 시설 지원	구분	인증시설운영비지원														계주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인증 시설 지원	인증시설운영비지원	3,820	-	-	-	309	-	-	-	-	38	3,025	-	-	-	448	-
	인증시설중사자 취우, 역량개발	2,380	-	-	-	-	430	-	-	-	-	-	750	1,200	-	-	-
	인증시설 환경개선	1,423	-	-	-	-	-	600	-	-	400	-	-	-	-	333	90
	조력단 운영	371	-	20	-	-	70	3	65	-	7	-	100	-	50	56	-
	소계	7,994	-	20	-	309	500	603	65	-	7	438	3,025	850	1,200	383	594
취약 보육 운영 지원	장애이전담, 통합시설	3,898	1,484	-	85	381	19	-	516	-	-	214	79	-	650	319	122
	영아전담시설	2,818	-	305	-	60	-	412	480	-	-	-	-	646	-	-	915
	시간연장형보육시설	2,527	-	-	-	-	-	-	39	2,488	-	-	-	-	-	-	-
	방과후보육	3,474	3,360	-	66	-	-	-	-	48	-	-	-	-	-	-	-
	소계	12,717	4,844	305	151	441	19	412	1,035	2,536	29	-	214	79	646	650	319
기타	행사지원	707	70	35	13	101	50	25	15	-	48	33	20	10	257	30	-
	단체운영지원	30	-	-	-	-	-	-	-	-	-	-	-	-	25	5	-
	모니터링단운영	275	275	-	-	-	-	-	-	-	-	-	-	-	-	-	-
	부모·종사자교육	317	-	-	-	-	-	5	70	-	-	19	-	-	215	-	8
	보육정책위원회운영	0	-	-	-	-	-	-	-	-	-	-	-	-	-	-	-
지방정보센터운영	326	-	-	-	-	-	-	65	-	-	-	-	84	10	167	-	
소계	1,655	345	35	13	101	50	95	85	-	48	52	20	94	507	202	8	

보육시설 평가인증관련 예산은 인천, 충북, 충남, 경남이 평가인증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광주, 전북, 전남은 종사자 인건비를, 대전, 충북, 경북, 경남은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취약보육과 관련해서는 충북을 제외하고는 이외 시·도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취약보육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나.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례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례로 2010년 서울시와 경상북도의 사례를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시·도를 선택한 것은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특수시책사업 예산규모가 크고 지원하는 정책의 종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한다.

1) 서울시 사례

서울시 시비 보조사업은 아동 1인당 98만원이고, 총 예산은 국고 지원 사업 대비 30.6%로 타 시·도보다 예산규모가 월등하게 많고 사업 유형도 서울형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1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 중에서 대표적 사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I-1-2〉 서울시 보육사업 부담비율 : 2010

사업내용	사업비 부담비율(%)		비고
	시비	구비	
-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70	30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지원	50	50	
- 종교시설, 0세아 전담간호사, 장애아통합시설 치료사, 비상근교사, 대체인력, 보육도우미 인건비	50	50	
-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50	50	
- 시간연장 및 휴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시간제 근무교사 인건비 및 근무수당 포함)	50	50	
- 영아반 운영비,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50	50	
- 보육교사 중식비	50	50	
- 장애아 통합 및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50	50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50	50	
- 장애아 순회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50	50	
- 영유아플라자 설치비, 운영비 및 인건비	50	50	
- 민간시설 서비스 향상지원비	100	-	일부시설부담

서울시 보육사업 예산의 시와 구의 분담은 인건비, 운영비 지원은 70:30이고, 민간 시설 서비스 향상지원비는 전액 시비 사업이며, 이외는 모두 시와 구가 50:50으로 분담한다.

가) 보육료 차액 지원

보육료 전액 면제 유아 중 법정저소득층 유아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월 10일 이상 이용 시 차액은 전액 지원하며 부모수납은 불허한다. 지원액은 2010년 기준으로 3세아는 52,000원, 4세 이상 66,000원, 방과후 33,000원이다.

나)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시설 내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지정된 시설은 영아반 교사인건비 80%(2개반 이상인 경우), 유아반 교사인건비 30%를 지원한다.

둘째, 정부지원시설, 영아전담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으로서 0세아를 현원 9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간호사 1인 인건비 전액을 지원한다. 0세아가 2월 연속(해당월 포함) 6명 미만일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셋째, 비상근교사 인건비 지원이다. 정부지원시설 혹은 서울형 어린이집 중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 평일 오후 6시 이후 보육아동이 2개반 이상인 경우 교사 인건비를 1일 4시간 기준으로 16,000원을 지원한다. 교사 급여가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설에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다.

넷째, 기본 보육시간 이후 최대 4시간 30분 이하의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을 실시하는 일반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교사 2인까지 교사 연장근무수당을 시간당 5,000원, 1인 1일 최대 4시간 30분 기준으로 월 562,500원 지원한다.

다섯째, 휴일보육시설 지정 시설 중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1인당 3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보육교사에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을 지원한다.

여섯째, 보육포털서비스에 등재된 24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24시간보육은 보육아동 일평균 1명 이상인 경우 교사 1명 월 지급액의 80% (민간 서울형어린이집 100만원)를 지급한다. 휴일보육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인 경우 교사 1인당 일 5만원을 시·구비로 지원한다.

〈표 III-1-3〉 서울시 특수교육시책: 2010

단위: 천원

사업명	'10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역
전액면제 아동 보육료지원	189,226,794	전액면제아동	차액보육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884,580	보육시설	운영비, 인건비, 보육도우미 운영비
운영비	41,604,364		
영아전담간호사 인건비		정부지원, 영아전담 및 서울형 정부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중 시	0세이를 현원 9명이상 보육하는 시설 간호사 인건비
비상근교사 인건비		간염장 보육시설 미지정 시설	1인 4시간 16,000원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1인 4.5시간 월 56만2천원, 2인까지
휴일보육시설 교사 근무수당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	1인 1일 5만원
보육포탈서비스 등계 24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 인건비		민간 휴일보육지정시설	3인이상 인건비 80%, 3인미만 1인 1일 5만원
단체인력 인건비		등계 어린이집	1인 1일당 35,000원
통합보육시설 치료사 인건비		천 어린이집	인건비
종교시설 내 보육시설 인건비		통합보육시설	국공립에 준함.
보육인력처우개선비		종교시설 내	차등
보육도우미		정부지원시설, 서울형 어린이집	월 36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표 III-1-3 계속)

사업명	'10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역
서울형 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87,051,992	서울형어린이집 2,025개소	인건비, 운영비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	2,400,000	서울형어린이집 400개소	6,000천원
민간보육시설 기능보강	2,250,000	민간보육시설 450개소	5,000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12,000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및 송년의밤 행사비 각 6,000
보육시설 배상보합지원	928,428	보육아동 194,161명	보육아동 상해보합비
방과후 보육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3,120,000	방과후 보육시설 400개반	정부지원시설 월 850천원, 기타자정시설 월 1,450천원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240,000	보육교사 400명	100천원
장애아 보육			
장애아통합보육시설(시센터)운영	85,387	시센터 1개소	운영 위탁금
장애아시설 운영비지원	865,200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비
자치구 장애아보육지원센터지원	283,712	장애아보육지원센터 16개소	운영비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250,000	자치구별 1개소	20,000천원
다문화 다민족 보육시설 운영	3,750	보육시설 3개소	2,500천원
영유아플라자			
영플라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780,226	영유아플라자 25개소	73,443천원 및 78,603천원
영플라자 교재교구 및 시스템 구축	150,000	영유아플라자 5개소	60,000천원 및 100,000원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70,000	보육시설 연합회	행사지원비
서울키즈센터 건립	8,039,190	서울키즈센터 건립	건립비

일급제, 서울시 기준보육료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모든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및 취사부의 유급휴가 대체인건비를 지원한다. 결혼 휴가 6일 이내, 직계존비속 5일 이내, 5일 이상 보수교육, 2주 이상 병가 1인당 1일 35,000원이다.

여덟째,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 현원이 5명 미만으로 감소될 경우에는 2개월까지만 지원한다.

이외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된 현원 40인 이상 보육시설 중 공개채용 방법으로 보육도우미를 채용한 시설에 일일 6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각 개별 법령상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시와 자치구가 동일하게 분담한다.

처우개선비는 시설장 처우 개선비로 정부지원시설과 서울형 어린이집에 적용하고, 보육교사는 전체 시설에 적용한다. 특수교사, 치료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교사도 해당되며, 민간시설 대표자, 가정보육시설 시설장 또는 대표자가 보육교사로 겸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우개선비 지급이 불가이나 서울형 어린이집 중 시설장·보육교사 겸직은 시설장으로, 대표자·보육교사 겸직은 보육교사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²⁰⁾

다) 운영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부모협동 보육시설에 0세아반(장애아반) 월 20만원, 1세아반 및 2세아반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현원 40인 미만 시설의 경우 3개 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모든 보육교사 급여를 91만원(처우개선비 미포함) 이상 지급하고, 반당 현원이 50%이상일 때 지원하며 2~3세 혼합반일 경우 2세 4명 이상인 시설이다.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설치한 시설 중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운영비 월 55만원, 미지정 시설은 월 1,15만원이며, 보조교사는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교사는 미술, 체육, 피아노 등 특기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반당 현원이 16명(정원의 80%)이상으로 반당 정원 준수 시 지원하며 최고 3개반까지 지원한다.

장애아 방과후반 운영비는 장애아전담, 통합 또는 방과후 지정시설에서 장애아 방

20) 지급액은 시설장은 정부지원시설 월 195,000원, 보육교사는 정부지원시설 월 145,000원, 민간시설 월 200,000원, 방과후교사 월 100,000원임.

과후반을 편성·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지원은 일반 방과후보육과 같이 방과 후 보육교사나 장애아 전담교사 자격기준에 준하며, 보조교사는 치료사, 특수교사도 가능하다.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은 정부지원시설(서울형 어린이집 포함)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시간연장(야간)교사 포함)로 1인당 월 25,000원(월액)을 지원한다.

라) 서울형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국공립시설에 준하여 시설별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마) 영유아 플라자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목적은 가정내에서 직접 돌보는 아동과 부모 등에게 자녀 출산에서 육아까지 통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자치구별 1개소씩 25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이다.

영유아플라자의 주요 시설은 시간제 보육시설 및 육아정보 나눔터, 놀이시설, 체험학습장, 어린이 도서관, 교재교구 및 장난감 대여실, 육아상담, 보육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정보센터 등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베이비&맘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저출산, 양육 보육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소, 병원,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등과 연계망 구축이다. 그리고 젊은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의 육아카페 기능,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이나 놀이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능, 각종 생활 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을 지원하는 체험학습 기능,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담 및 해결의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경상북도 사례

경상북도의 특수보육시책 사례는 아동별 지원으로 셋째아 이후 다문화자녀 보육료 지원, 저소득보육 아동 간식비, 장애아동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보육시설 운영비로는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다문화보육시설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

〈표 III-1-4〉 경상북도 특수교육시책: 2010

사업명	'10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역	단위: 천원
계	18,642,437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	6,466,000	소득하위 70%이하 아동	500원*43000명*300명	
보육시설차량유지비	290,000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	연 400천원*725개소	
셋째이후,다문화자녀보육료지원	3,000,000	일반아동	셋째이후아동 150천원, 다문화아동-본인부담진액지원	
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6,429,120	정부 미지원, 평균인증여부별 차등지원	월7~9만원, 분기4만 10,789명	
장애아보육시설종사자특별수당	300,000	특수교사, 치료사, 장애전담교사	326명*월 4만원~11만원	
보육아동장애조기검진비	16,667	장애아조기진단, 검사아동	90명*20만원한도	
다문화보육시설차량운영비	110,000	1인이상 다문화아동재원시설	91개소*1인당 1만원	
장애아동보육시설임소료지원	64,000	보육시설임소한 장애아동	800명*8만원	
보육시설환경개선비지원	333,333	평가기능통과시설, 신청시설(당해년도)	333개소*100만원	
정부지원시설교과교구비지원	110,000	정부지원시설	시설당 43만원	
보육업무벤치마킹	100,050	시군보육업무담당공무원	23명	
장애전담보육시설기능보강	350,000	장애전담보육시설 중 승강기미설치시설	7개소*5천만원	
장난감도서관설치	400,000		2개소*2억	
국공립,법인보육시설기능보강	216,667		6개소, 증개축6천만원이내, 개보수, 기계재구입 3천만원내, 장비비 2백만원 이내	

(표 III-1-4 계속)

사업명	'10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역	
	25,000	25,000	보육시설연합회	보육시설연합회	1개소, 사무비, 인건비	경상비
보육시설연합회운영비지원	25,000	25,000	보육시설연합회	보육시설연합회	1개소, 사무비, 인건비	경상비
보육시설분과위원회위크숍	25,000	25,000	보육시설연합회	보육시설연합회	분과별 위크숍개최 5회*500천원	
우수교재교구경진대회지원	20,000	20,000	보육시설연합회	보육시설연합회	2회*1000천원	
장애비장애통합프로그램운영비	8,000	8,000	위탁시행(보육시설연합회)	위탁시행(보육시설연합회)	행사 1회(통합프로그램을 개최)	
경상북도보육시설활성화운영비	23,000	23,000	위탁시행(보육시설연합회)	위탁시행(보육시설연합회)	보육시설지도자연수지원 50명	
보육정책홍보자료제작	10,000	10,000	위탁시행(보육정보센터)	위탁시행(보육정보센터)	TV, 라디오홍보, CD제작	
평가인증준력비지원	50,000	50,000	보육정보센터	보육정보센터	지표교육, 우수시설견학, 현장방문조력	
보육시설아동부모교육지원	30,000	30,000	위탁(보육정보센터)	위탁(보육정보센터)	보육시책홍보, 정보제공 및 부모역할교육	
보육정보센터프로그램운영비	30,000	30,000	위탁(보육정보센터)	위탁(보육정보센터)	도내 보육시설 및 보육담당자 워크샵, 세미나개최	
장애아보육프로그램운영비	40,000	40,000	위탁(보육정보센터)	위탁(보육정보센터)	장애보육시설, 장애아동 부모대상 교육	
보육시설종사자순회교육	10,000	10,000	위탁(보육정보센터)	위탁(보육정보센터)	시설장 및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책홍보, 교육	
다문화가정자녀보육지원	100,000	100,000	위탁(보육정보센터)	위탁(보육정보센터)	매주일제각 및 놀잇감, 동화책맞춤보급	
특수보육프로그램개발지원	5,000	5,000	위탁(구미1대학보육교사교육원)	위탁(구미1대학보육교사교육원)	저소득아동 놀이문화 및 교육매뉴얼제작	
보육인대회	80,000	80,000	보육시설연합회	보육시설연합회	6000명*	
보육아동업무유공무원시상	600	600	시군보육담당공무원	시군보육담당공무원	23명표창	

인력 지원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고, 특수보육 지원은 장애아보육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이 있다. 기능보강은 장애전담보육 시설기능 보강,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기능보강 장난감도서관 설치 등을 한다. 이외 사업은 보육정보센터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다.

다.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시·군·구 특수보육시책은 제2장에서 사업예산을 시·도별로 제시한 바와 같이,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비 총액은 1327억원으로 국고사업비의 4.0%이다.

<표 III-1-5>는 시·도별 아동 1인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 예산사업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보육아동 1인당 최대 265만원부터 전혀 없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크다. 보육특수시책은 시·도별 시책의 차이도 있지만 동일 시·도에서도 시·군·구별 특수시책도 차이가 많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만3천원이지만 최대는 265만원, 최소는 11만원 수준으로 구별 차이가 크다. 시·군·구 정책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다음 절에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표 III-1-5>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아동 1인당 특수보육시책 예산 평균

단위: 천원

지역	평균	최대	최소
전체	151.5	2,652	-
서울	343.2	2,652.0	108.0
부산	21.8	95.0	5.0
대구	34.0	98.0	17.0
인천	288.8	2,082.0	37.0
광주	8.8	14.0	-
대전	21.2	40.0	12.0
울산	72.8	278.0	7.0
경기	219.0	838.0	36.0
강원	96.5	381.0	9.0
충북	305.0	622.0	172.0
충남	106.0	627.0	2.0
전북	44.4	185.0	-
전남	87.1	468.0	-
경북	87.3	312.0	-
경남	205.3	1,024.0	-
제주	-	-	-

2.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우선순위 의견

지방정부의 다양한 특수보육시책 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지 못하는 정책을 지역 특색과 수요에 맞추어 순발력 있게 실시하고 보육 재정 투자를 키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하나는 중앙정부 정책과의 중복성이다. 표준보육료를 산정하여 영아의 경우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총 비용이 표준보육료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식비를 또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등 중복 지원이 있다. 다른 하나는 지역별 격차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도나 시·군·구 재정상태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이에 수많은 지방정부의 다양한 특수보육시책 중에서 일부를 중앙정부 정책으로 흡수하여 지역간 격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곤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지방정부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를 통하여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의 우선순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방정부 정책을 8개 영역 66세부과제로 분류하였다. 우선순위 조사는 먼저 8개 영역에 대하여 필요성과 효과성을 조사한 후에 다시 각 영역별로 8~10개 각 세부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추가하여 영역별, 또는 영역별로 세부사업 중에서도 1순위 시책을 하나 고르게 하였다. 필요성과 효과성 조사는 각 항목에 4점 척도를 적용하여 조사하였고, 세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영역별 점수로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66개 세부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가. 영역별 우선순위

지방정부 보육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 추가 사업, 부모 보육료 추가 지원, 평가인증 통과 시설 지원, 취약보육 운영 추가 지원,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의 8개 영역 특수시책의 필요성과 전반적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특수보육시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점 척도로 2.44~3.08점 사이에 분포하여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 경향을 나타냈다. 최저 점수는 보육시설 운영이 지원이고 최고 점수는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이며 그 다음이 종사자 지원, 취약보육 지원이다(표 III-2-1 참조).

효과성도 최저 2.47점에서 최고 3.05점 사이에 분포하는데 최저 점수는 보육시설

운영이 지원이고 최고 점수는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이며 그 다음이 종사자 지원, 취약보육 지원, 부모보육료 추가 지원이다(표 III-2-1 참조).

〈표 III-2-1〉 영역별 특수시책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특수시책 필요성		전반적 효과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보육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2.57	(0.81)	2.60	(0.80)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44	(0.70)	2.47	(0.73)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2.87	(0.74)	2.88	(0.78)
보육시설 기능 보강 추가 사업	2.69	(0.72)	2.70	(0.72)
부모 보육료 추가 지원	2.80	(0.80)	2.86	(0.77)
평가인증 통과 시설 지원	2.76	(0.74)	2.75	(0.71)
취약보육 운영 추가 지원	2.87	(0.71)	2.86	(0.69)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3.08	(0.77)	3.05	(0.7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표 III-2-2〉 영역별 특수시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단위: %(명)

구분	보육 시설 인건비	보육 시설 운영비	보육 시설 종사자	기능 보강 추가	부모 보육료 추가	인증 통과 시설	취약 보육 운영	출산 및 양육수당	계	(수)
전체	12.2	2.2	21.7	5.2	14.8	5.7	10.0	28.3	100.0	(230)
서울	16.2	5.4	27.0	2.7	16.2	5.4	8.1	18.9	100.0	(37)
부산	20.0	6.7	20.0	13.3	6.7	6.7	-	26.7	100.0	(15)
대구	12.5	-	25.0	-	25.0	25.0	-	12.5	100.0	(8)
인천	18.2	-	36.4	9.1	-	-	18.2	18.2	100.0	(11)
광주	14.3	-	28.6	-	-	-	14.3	42.9	100.0	(7)
대전	40.0	-	60.0	-	-	-	-	-	100.0	(5)
울산	-	-	33.3	-	-	16.7	-	50.0	100.0	(6)
경기	5.4	2.7	13.5	10.8	16.2	5.4	18.9	27.0	100.0	(37)
강원	27.8	5.6	11.1	11.1	5.6	-	16.7	22.2	100.0	(18)
충북	7.7	-	23.1	-	30.8	-	-	38.5	100.0	(13)
충남	6.3	-	12.5	-	6.3	12.5	6.3	56.3	100.0	(16)
전북	-	-	33.3	11.1	-	-	11.1	44.4	100.0	(9)
전남	33.3	-	-	-	22.2	-	11.1	33.3	100.0	(9)
경북	5.6	-	16.7	-	27.8	5.6	11.1	33.3	100.0	(18)
경남	-	-	22.2	5.6	33.3	11.1	5.6	22.2	100.0	(18)
제주	-	-	66.7	-	-	-	33.3	-	100.0	(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이러한 여덟가지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다소 지역별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이 28.3%로 가장 높고 다음이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21.7%, 부모 보육료 추가지원 14.8%, 보육시설 인건비 추가지원 12.2%, 취약보육운영비 추가지원 10.0%의 순이다. 이외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추가 사업은 5%대이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2.2%만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각 항목별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와 거의 같다.

나. 영역별 세부사업 우선순위

영역별 우선순위는 <표 III-2-2>에 나타난 비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서 각 영역별로 세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세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표 III-2-1>에서 제시된 영역별 필요성과 효과성 점수를 적용하여 전체적인 상대적 중요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1)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세부사업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관련 사업으로 출산수당과 양육수당²¹⁾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필요성과 효과성 모두 양육수당이 3.14점이고, 출산수당이 2.94점이다. 여기에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우선순위 점수 3.08, 3.05점을 각각 가중치로 적용하면 2.26점 및 2.42점으로 조정된다.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효과성 점수는 각각 2.19점, 2.36점이다.

<표 III-2-3>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특수시책 필요성			전반적 효과성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출산수당	2.94	(0.85)	2.26	2.87	(0.82)	2.19
양육수당	3.14	(0.84)	2.42	3.09	(0.82)	2.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21) 양육수당에 대한 개념이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일정한 금액을 일시불 또는 월별로 지원하는 경우 등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음.

<표 III-2-4>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관련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출산수당	46.6	61.1	43.8	33.3	63.6	14.3	40.0	33.3	41.0	47.4	53.8	53.8	50.0	30.0	47.6	44.4
양육수당	53.4	38.9	56.3	66.7	36.4	85.7	60.0	66.7	59.0	52.6	46.2	46.2	50.0	70.0	52.4	55.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수)	(234)	(36)	(16)	(9)	(11)	(7)	(5)	(6)	(39)	(19)	(13)	(13)	(8)	(10)	(21)	(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시·도별로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은 서울, 인천, 충청남·북도 공무원들은 출산수당을 선호하고, 전북은 50:50이며 그 이외 지역은 모두 양육수당을 선호한다.

2)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세부사업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관련 사업이다. <표 III-2-5>와 <표 III-2-6>은 지방정부 보육담당 공무원들에게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으로 중식비 지원, 교통비 지원, 명절휴가비 지원, 근속수당 지원, 자기계발비 지원, 교재연구비 지원, 교육 및 연수비 지원, 기타 역량개발 지원, 기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III-2-5>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특수시책 필요성			전반적 효과성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중식비 지원	2.39	(0.75)	1.71	2.38	(0.72)	1.71
교통비 지원	2.48	(0.76)	1.78	2.50	(0.72)	1.80
명절휴가비 지원	2.76	(0.71)	1.98	2.80	(0.65)	2.02
근속수당 지원	3.09	(0.78)	2.22	3.08	(0.75)	2.22
자기계발비 지원	2.53	(0.72)	1.82	2.56	(0.70)	1.84
교재연구비 지원	2.46	(0.71)	1.77	2.49	(0.71)	1.79
교육 및 연수비 지원	2.78	(0.74)	1.99	2.78	(0.74)	2.00
기타 역량개발 지원	2.41	(0.63)	1.73	2.47	(0.67)	1.78
기타 종사자 처우 개선	2.83	(0.77)	2.03	2.84	(0.79)	2.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세부 사업의 필요성 점수는 4점 만점에 2.41점에서 3.09점 사이에 분포한다. 최고는 근속수당이고 점수가 낮은 항목은 역량개발 지원이다. 효과성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이 점수에 종사자 지원 영역 점수를 적용하면 필요성 조정점수는 1.71~2.22로 조정된다. 효과성 점수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세부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하나만 고르도록 질문한 결과는 1위가 종사자 근속수당 지원으로 48.5%이고, 다음이 기타 종사자 처우 개선 15.9%, 교육 및 연수비 지원 12.9%이다. 이들 사업은 필요성 조사에서도 조정점수가 각각 2점 이상이었다. 이러한 응답의 시·도별 차이는 크지 않은데 특히 대구, 광주에서 종사자 근속수당을 주요 사업으로 지정한 비율이 높고,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에서 기타 종사자 처우개선에 우선순위를 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시설장들의 종사자 근속수당 희망은 어린이집 인건비 부담으로 교사가 조기에 퇴직하여 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기대를 나타낸다.

〈표 III-2-6〉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관련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단위: %(명)

구분	중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	근속 수당	자기 개발비	교재 연구비	교육 및 연수비	기타 역량개 발	기타 종사자 처우 개 선	계	(수)
전체	2.6	5.2	7.7	48.5	3.9	2.1	12.9	1.3	15.9	100.0	(233)
서울	8.1	-	2.7	43.2	8.1	2.7	13.5	5.4	16.2	100.0	(37)
부산	6.3	12.5	12.5	31.3	-	-	18.8	6.3	12.5	100.0	(16)
대구	-	-	11.1	77.8	-	-	-	-	11.1	100.0	(9)
인천	-	-	9.1	45.5	9.1	-	9.1	-	27.3	100.0	(11)
광주	-	-	-	71.4	14.3	14.3	-	-	-	100.0	(7)
대전	20.0	-	-	60.0	-	-	20.0	-	-	100.0	(5)
울산	-	-	16.7	50.0	-	-	16.7	-	16.7	100.0	(6)
경기	-	8.1	8.1	67.6	-	5.4	5.4	-	5.4	100.0	(37)
강원	-	10.5	15.8	52.6	-	-	10.5	-	10.5	100.0	(19)
충북	-	-	8.3	33.3	8.3	-	16.7	-	33.3	100.0	(12)
충남	6.3	6.3	6.3	37.5	-	-	12.5	-	31.3	100.0	(16)
전북	-	11.1	11.1	33.3	-	-	11.1	-	33.3	100.0	(9)
전남	-	20.0	10.0	10.0	20.0	-	10.0	-	30.0	100.0	(10)
경북	-	-	5.3	57.9	-	-	21.1	-	15.8	100.0	(19)
경남	-	-	5.9	47.1	-	5.9	29.4	-	11.8	100.0	(17)
제주	-	33.3	-	33.3	33.3	-	-	-	-	100.0	(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3) 보육비용 지원 세부사업

다음은 보육료 지원 영역 7개 세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결과이다.

〈표 III-2-7〉 보육비용 지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특수시책 필요성			전반적 효과성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다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3.22	(0.71)	2.25	3.27	(0.70)	2.34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3.00	(0.70)	2.10	3.06	(0.70)	2.19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3.07	(0.74)	2.15	3.11	(0.71)	2.22
민간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	2.70	(0.76)	1.89	2.75	(0.76)	1.97
입소료 지원	2.29	(0.71)	1.60	2.38	(0.74)	1.70
현장학습비 지원	2.28	(0.67)	1.60	2.40	(0.72)	1.72
특기활동비 지원	2.29	(0.70)	1.60	2.40	(0.75)	1.7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표 III-2-8〉 보육비용 지원 관련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지원 대상

단위: %(명)

구분	다자녀 보육료 추가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료	입양 아동 보육료	민간시설 보육료 차액	입소료	현장 학습비	특기활동비	계	(수)
전체	50.4	18.1	8.0	12.4	4.4	2.2	4.4	100.0	(226)
서울	52.8	8.3	8.3	19.4	2.8	2.8	5.6	100.0	(36)
부산	46.2	23.1	-	-	23.1	7.7	-	100.0	(13)
대구	55.6	-	11.1	33.3	-	-	-	100.0	(9)
인천	-	54.5	9.1	9.1	9.1	18.2	-	100.0	(11)
광주	42.9	28.6	14.3	14.3	-	-	-	100.0	(7)
대전	20.0	-	40.0	-	20.0	-	20.0	100.0	(5)
울산	50.0	50.0	-	-	-	-	-	100.0	(6)
경기	56.8	21.6	2.7	13.5	-	-	5.4	100.0	(37)
강원	38.9	27.8	5.6	5.6	16.7	-	5.6	100.0	(18)
충북	50.0	16.7	-	25.0	-	8.3	-	100.0	(12)
충남	60.0	13.3	13.3	6.7	-	-	6.7	100.0	(15)
전북	25.0	25.0	50.0	-	-	-	-	100.0	(8)
전남	80.0	10.0	-	-	-	-	10.0	100.0	(10)
경북	57.9	5.3	5.3	21.1	5.3	-	5.3	100.0	(19)
경남	61.1	16.7	5.6	11.1	-	-	5.6	100.0	(18)
제주	100.0	-	-	-	-	-	-	100.0	(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다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민간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 입소료 지원, 현장학습비 지원, 특기활동비 지원의 여덟 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4점 만점에 2.28점에서 3.22점 사이에 분포하는데 항목이 3개 집단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3점 이상으로 다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²²⁾,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비의 3개 항목이며, 두 번째는 민간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으로 2.7점이며, 마지막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입소료 지원, 현장학습비 지원, 특기활동비 지원으로 모두 2.3점 수준이다. 효과성 역시 2.4점에서 3.3점 사이로 필요성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영역별 점수로 조정하면 필요성은 1.60~2.25점 사이로 조정되고, 효과성은 1.70~2.34점으로 조정된다.

이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항목을 하나 고르도록 한 조사에서도 1위는 다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으로 50.4%이고 2위는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18.1%이며 3위는 민간 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 4위는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분석되었다. 시·도별로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인천과 울산은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대전과 전북은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충남과 경남은 다자녀 추가 지원, 대구와 충북은 민간시설 보육료와 지원단가 차액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4) 보육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세부사업

보육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중 공인 민간시설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교사 담임수당 지원, 특수근무 교사 지원,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 지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 사무원 인건비 지원,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분류하고, 이들 중 어느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 조사하였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점 척도로 2.11~2.94점 사이에 분포한다. 최고 점수는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며 다음은 특수근무 교사 지원이며, 최저 점수는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다. 효과성도 필요성과 동일하게 최저 2.16점에서 최고 2.94점 사이에 분포하는데, 최고 점수는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며 다음은 특수보육 교사 지원이며 최저 점수가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다. 여기에 인건비 지원의 우선순위 점수를 적용하면 최고 1.81 수준으로 전체 점수는 낮아진다.

22)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료는 2011년부터 전액 지원됨.

〈표 III-2-9〉 보육인력 인건비 지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특수시책 필요성			전반적 효과성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공인 민간시설 인건비 지원	2.63	(0.73)	1.69	2.68	(0.75)	1.74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2.94	(0.69)	1.89	2.94	(0.68)	1.91
교사 담임수당 지원	2.54	(0.76)	1.63	2.59	(0.75)	1.68
특수근무 교사 지원	2.74	(0.70)	1.76	2.78	(0.71)	1.81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 지원	2.45	(0.75)	1.57	2.50	(0.75)	1.63
취사부 인건비 지원	2.61	(0.70)	1.68	2.64	(0.71)	1.72
사무원 인건비 지원	2.24	(0.79)	1.44	2.28	(0.79)	1.48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2.11	(0.69)	1.36	2.16	(0.71)	1.4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표 III-2-10〉 보육인력 인건비 지원 관련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지원 사업 대상

단위: %(명)

구분	공인 민간시설 인건비	대체 교사 인건비	교사 담임 수당	특수근무 교사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	취사부 인건비	사무원 인건비	기타 종사자 인건비	계	(수)
전체	24.1	29.8	15.8	11.8	5.7	6.1	4.4	2.2	100.0	(228)
서울	36.1	16.7	11.1	16.7	2.8	11.1	2.8	2.8	100.0	(36)
부산	37.5	18.8	12.5	6.3	6.3	6.3	12.5	-	100.0	(16)
대구	44.4	22.2	22.2	-	-	11.1	-	-	100.0	(9)
인천	40.0	20.0	-	30.0	-	-	-	10.0	100.0	(10)
광주	-	28.6	42.9	-	14.3	-	14.3	-	100.0	(7)
대전	20.0	20.0	40.0	-	20.0	-	-	-	100.0	(5)
울산	16.7	50.0	16.7	-	-	16.7	-	-	100.0	(6)
경기	14.3	34.3	25.7	17.1	5.7	2.9	-	-	100.0	(35)
강원	15.8	31.6	-	21.1	10.5	-	21.1	-	100.0	(19)
충북	-	46.2	23.1	-	15.4	7.7	-	7.7	100.0	(13)
충남	25.0	43.8	18.8	-	-	6.3	-	6.3	100.0	(16)
전북	28.6	14.3	-	14.3	-	28.6	14.3	-	100.0	(7)
전남	33.3	11.1	22.2	11.1	22.2	-	-	-	100.0	(9)
경북	15.8	42.1	15.8	10.5	5.3	5.3	5.3	-	100.0	(19)
경남	33.3	33.3	11.1	11.1	-	5.6	-	5.6	100.0	(18)
제주	-	66.7	-	33.3	-	-	-	-	100.0	(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이러한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29.8%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공인 민간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24.7%이며 교사 담임수당, 특수교사 지원이 각각 15.8%, 11.7%이었다. 시·도별로는 대구, 인천 등에서 민간 공보육 민간 시설 인건비 지원을 지적한 비율이 높고 광주와 대전에서는 교사 담임수당은 선택한 비율이 높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총 450명 규모로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5) 취약보육 운영 지원 세부사업

취약보육 운영지원은 장애아전담시설, 장애아통합시설, 영아전담시설, 시간연장 보육시설, 방과후보육의 4종의 취약보육에 대하여 인건비(수당) 지원과 운영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4점 만점에 2.34점에서 2.85점 사이에 분포하는데 장애아 전담 및 통합 보육시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인건비나 수당 지원 필요성이 유사하게 높고 그 다음이 영아전담 보육시설이며 가장 낮은 것은 방과후 보육시설이었다. 각 시설 모두 인건비 지원 점수가 운영비 지원 점수보다 다소 높았다. 효과성 점수 역시 2.38점에서 2.89점 사이로 필요성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점수를 영역별 점수로 조정하면 필요성 최고 점수는 2.04점, 효과성은 2.07점이 된다.

〈표 III-2-11〉 취약보육운영 지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특수시책 필요성			전반적 효과성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장애아전담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2.85	(0.70)	2.04	2.89	(0.72)	2.07
장애아전담시설 운영비 지원	2.74	(0.68)	1.97	2.81	(0.71)	2.01
장애아통합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2.85	(0.69)	2.04	2.87	(0.68)	2.05
장애아통합시설 운영비 지원	2.69	(0.73)	1.93	2.75	(0.73)	1.97
영아전담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2.62	(0.68)	1.88	2.61	(0.69)	1.87
영아전담시설 운영비 지원	2.48	(0.67)	1.78	2.52	(0.71)	1.80
시간연장보육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2.84	(0.71)	2.04	2.87	(0.72)	2.05
시간연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71	(0.71)	1.94	2.74	(0.72)	1.96
방과후보육 인건비(수당) 지원	2.42	(0.78)	1.74	2.46	(0.78)	1.76
방과후보육 운영비 지원	2.34	(0.73)	1.68	2.38	(0.75)	1.7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이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항목을 하나 고르도록 한 조사에서는 1위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28.9%이고 2위는 장애아전담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23.6%이고 3순위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4.7%를 차지하며, 4순위는 장애아전담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10.2%이다. 즉, 시간연장형과 장애아전담 시설에 우선순위가 있다. 이는 시·도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표 III-2-12〉 취약보육운영 지원 관련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단위: %(명)

구분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시간연장보육		방과후보육		계	(수)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전체	23.6	7.6	10.2	4.0	4.4	1.8	28.9	14.7	3.6	1.3	100.0	(225)
서울	16.7	13.9	8.3	5.6	2.8	-	33.3	16.7	-	2.8	100.0	(36)
부산	12.5	12.5	25.0	-	6.3	-	18.8	18.8	6.3	-	100.0	(16)
대구	37.5	-	-	-	-	12.5	25.0	12.5	-	12.5	100.0	(8)
인천	40.0	-	20.0	-	-	10.0	30.0	-	-	-	100.0	(10)
광주	50.0	-	16.7	-	-	-	-	33.3	-	-	100.0	(6)
대전	80.0	-	-	-	-	-	-	20.0	-	-	100.0	(5)
울산	16.7	16.7	16.7	-	16.7	-	33.3	-	-	-	100.0	(6)
경기	30.8	2.6	7.7	15.4	-	-	35.9	5.1	2.6	-	100.0	(39)
강원	26.3	5.3	5.3	-	10.5	-	31.6	15.8	5.3	-	100.0	(19)
충북	-	10.0	-	10.0	20.0	10.0	20.0	30.0	-	-	100.0	(10)
충남	26.7	6.7	20.0	-	6.7	-	6.7	26.7	-	6.7	100.0	(15)
전북	-	-	12.5	-	-	-	62.5	-	25.0	-	100.0	(8)
전남	11.1	33.3	11.1	-	-	11.1	11.1	11.1	11.1	-	100.0	(9)
경북	-	-	5.9	-	11.8	-	47.1	29.4	5.9	-	100.0	(17)
경남	44.4	5.6	11.1	-	-	-	22.2	11.1	5.6	-	100.0	(18)
제주	-	33.3	-	-	-	-	66.7	-	-	-	100.0	(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6) 평가인증 지원 세부사업

평가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환경개선비 지원, 장비비 기자재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수당 지원, 시설장 수당 지원, 종사자 교통비 지원, 종사자 교육, 연수 비용 지원,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 기타 운영비 인센티브 지원, 평가인증 조력자 수당 지원 등 12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표 III-2-13〉 평가인증시설 지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특수시책 필요성			전반적 효과성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2.77	(0.72)	1.91	2.81	(0.70)	1.93
장비비 기자재비 지원	2.61	(0.67)	1.80	2.67	(0.67)	1.84
교재교구비 지원	2.71	(0.68)	1.87	2.75	(0.68)	1.89
냉난방비 지원	2.46	(0.70)	1.70	2.49	(0.69)	1.71
차량운영비 지원	2.44	(0.70)	1.68	2.46	(0.70)	1.69
보육교사 수당 지원	3.05	(0.70)	2.10	3.04	(0.69)	2.09
시설장 수당 지원	2.35	(0.74)	1.62	2.38	(0.73)	1.64
종사자 교통비 지원	2.39	(0.71)	1.65	2.41	(0.69)	1.66
종사자 교육, 연수 비용 지원	2.69	(0.71)	1.86	2.71	(0.70)	1.86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	2.50	(0.80)	1.73	2.53	(0.80)	1.74
기타 운영비 인센티브 지원	2.63	(0.72)	1.81	2.65	(0.71)	1.82
평가인증 조력자 수당 지원	2.45	(0.71)	1.69	2.48	(0.71)	1.7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표 III-2-14〉 평가인증시설 지원 관련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단위: %(명)

구분	환경 개선 비	장비비 기자재 비	교재 교구 비	냉난 방비	차량 운영 비	보육 교사 수당	교사 교통 비	교사 교육, 연수 비용	평가 인증 수수 료	기타 운영 인센 티브	조력 자 수당	계 (수)
전체	21.7	3.4	6.4	2.1	3.0	36.6	1.3	8.5	4.3	9.4	3.4	100.0 (235)
서울	35.1	-	2.7	-	-	35.1	-	13.5	-	8.1	5.4	100.0 (37)
부산	25.0	6.3	12.5	-	-	31.3	-	12.5	-	12.5	-	100.0 (16)
대구	22.2	-	-	-	-	44.4	-	-	11.1	11.1	11.1	100.0 (9)
인천	18.2	-	18.2	-	-	54.5	-	-	9.1	-	-	100.0 (11)
광주	14.3	-	14.3	14.3	-	42.9	-	-	-	14.3	-	100.0 (7)
대전	-	-	-	-	-	100.0	-	-	-	-	-	100.0 (5)
울산	16.7	-	16.7	-	-	50.0	-	-	-	-	16.7	100.0 (6)
경기	28.9	-	13.2	2.6	2.6	36.8	-	5.3	2.6	2.6	5.3	100.0 (38)
강원	10.5	-	5.3	5.3	5.3	47.4	5.3	5.3	-	15.8	-	100.0 (19)
충북	30.8	7.7	-	-	-	30.8	7.7	15.4	-	7.7	-	100.0 (13)
충남	-	18.8	12.5	-	18.8	6.3	-	12.5	6.3	18.8	6.3	100.0 (16)
전북	22.2	-	-	-	-	11.1	-	11.1	-	44.4	11.1	100.0 (9)
전남	10.0	10.0	-	-	10.0	40.0	10.0	10.0	10.0	-	-	100.0 (10)
경북	22.2	-	-	-	5.6	33.3	-	11.1	11.1	16.7	-	100.0 (18)
경남	22.2	11.1	-	5.6	-	38.9	-	11.1	11.1	-	-	100.0 (18)
제주	-	-	-	33.3	-	33.3	-	-	33.3	-	-	100.0 (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그 결과, 4점 만점에 2.35점에서 3.05점 사이에 분포한다. 점수가 높은 순서는 보육교사 지원, 환경개선비 지원 등이고 점수가 낮은 것은 시설장 수당이고 그 다음은 차량운영비, 종사자 교통비, 조력비 지원 등이다. 효과성은 2.41점에서 3.04점 사이에 분포하여 필요성보다는 다소 항목간의 차이가 감소하였으나 전반적 우선순위 경향은 유사하였다. 가중치 조정점수는 최고점은 필요성은 2.10점, 효과성은 2.09점이다. 보육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세부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지적한 사업은 보육교사 수당 지원으로 36.6%이고 2위는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으로 21.7%이다. 이외는 모두 10% 미만이다. 시·도별로는 일부 충청남도 등에서 다른 의견을 나타냈으나 이러한 우선순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7) 보육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

지방정부 보육담당 공무원들에게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공립시설 확충, 공립시설 증개축, 공립시설 환경개선, 장비비, 개보수비 등 지원, 민간시설 증개축, 민간시설 환경개선, 장비비, 개보수비 등 지원,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육아지원기관(영유아플라자) 설치, 장난감 대여점 설치 운영으로 세분하여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4점 만점에 2.22점에서 3.06점 사이에 분포한다. 최고는 공립시설 확충과 공립시설 환경개선, 장비비, 개보수비 등 지원이며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은 민간시설 증개축이다. 영역 가중치로 조정하면 최고점은 각각 2.06점이다.

<표 III-2-15> 보육시설 기능 보강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특수시책 필요성			전반적 효과성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공립시설 확충	3.06	(0.86)	2.06	3.14	(0.82)	2.12
공립시설 증개축	2.98	(0.80)	2.00	3.04	(0.77)	2.05
공립시설 환경개선	3.07	(0.69)	2.06	3.14	(0.63)	2.12
민간시설 증개축	2.22	(0.73)	1.49	2.31	(0.76)	1.56
민간시설 환경개선	2.49	(0.76)	1.67	2.58	(0.77)	1.74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2.80	(0.78)	1.88	2.90	(0.79)	1.96
육아지원기관(영유아플라자) 설치	2.81	(0.78)	1.89	2.91	(0.79)	1.96
장난감 대여점 설치 운영	2.83	(0.78)	1.90	2.89	(0.77)	1.9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효과성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한데 국공립시설 관련 과제, 정보센터나 서울시 영유아플라자와 같은 육아지원기관, 장난감도서관에 대해 효과성은 필요성보다

점수가 다소 높았다. 영역 가중치로 조정하면 최고점은 2.12점이다.

이러한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1위가 공립시설 확충으로 다수인 40.2%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선택하였고, 다음이 공립시설 환경개선, 장비비, 개보수비 등 지원으로 15.6%이며 3위는 육아지원기관 설치이며 4위는 민간시설 환경개선, 장비비, 개보수비 지원으로 10% 수준이다. 즉, 기능보강비는 공립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그런데 이 응답은 시·도별로 편차가 매우 있어서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에서 기타 종사자 처우개선에 우선순위를 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III-2-16〉 보육시설 기능 보강 관련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대상

단위: %(명)

구분	공립시설 확충	공립시설 증개축	공립시설 환경개선	민간시설 증개축	민간시설 환경개선	보육정보센터 설치	육아지원기관 설치	장난감 대여점 설치	계	(수)
전체	40.2	5.4	15.6	2.7	10.7	8.9	12.5	4.0	100.0	(224)
서울	60.0	8.6	2.9	-	5.7	8.6	14.3	-	100.0	(35)
부산	40.0	6.7	13.3	-	26.7	6.7	-	6.7	100.0	(15)
대구	42.9	14.3	-	-	-	28.6	14.3	-	100.0	(7)
인천	30.0	-	-	-	40.0	10.0	-	20.0	100.0	(10)
광주	14.3	-	28.6	-	-	-	28.6	28.6	100.0	(7)
대전	60.0	-	20.0	-	-	20.0	-	-	100.0	(5)
울산	33.3	16.7	16.7	-	-	-	33.3	-	100.0	(6)
경기	45.9	5.4	16.2	-	5.4	10.8	13.5	2.7	100.0	(37)
강원	42.1	-	26.3	-	10.5	5.3	15.8	-	100.0	(19)
충북	18.2	-	27.3	18.2	18.2	-	18.2	-	100.0	(11)
충남	56.3	-	12.5	6.3	12.5	6.3	-	6.3	100.0	(16)
전북	12.5	-	12.5	-	-	37.5	25.0	12.5	100.0	(8)
전남	33.3	11.1	11.1	22.2	11.1	-	-	11.1	100.0	(9)
경북	21.1	-	31.6	-	21.1	10.5	15.8	-	100.0	(19)
경남	35.3	17.6	23.5	-	5.9	5.9	11.8	-	100.0	(17)
제주	33.3	-	-	33.3	-	-	33.3	-	100.0	(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8)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세부사업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은 교재교구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영아 간식비 지원, 유아 간식비 지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차량 운영비 지원,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건강, 안전 관련 운영비 지원, 공공요금 지원, 기타 포괄적 운영비 지원 등으로 나누

어 필요성 우선순위를 지방정부 보육담당 공무원들에게 질문하였다.

〈표 III-2-17〉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특수시책 필요성			전반적 효과성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교재교구비 지원	2.71	(0.74)	1.65	2.73	(0.72)	1.69
냉난방비 지원	2.61	(0.74)	1.59	2.62	(0.75)	1.62
영아 간식비 지원	2.47	(0.74)	1.51	2.47	(0.78)	1.53
유아 간식비 지원	2.52	(0.76)	1.54	2.52	(0.78)	1.56
친환경 급식비 지원	2.72	(0.77)	1.66	2.72	(0.82)	1.68
차량 운영비 지원	2.63	(0.76)	1.60	2.62	(0.77)	1.62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2.65	(0.81)	1.62	2.66	(0.81)	1.64
건강, 안전 관련 운영비 지원	2.53	(0.77)	1.54	2.53	(0.76)	1.56
공공요금 지원	1.97	(0.65)	1.20	2.00	(0.67)	1.24
기타 포괄적 운영비 지원	2.10	(0.69)	1.28	2.12	(0.67)	1.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표 III-2-18〉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

단위: %(명)

구분	교재 교구비	냉 난방비	영아 간식비	유아 간식비	친환경 급식비	차량 운영비	아동 상해 보험료	건강, 안전 운영비	기타 포괄적 운영비	계	(수)
전체	18.1	10.6	3.5	3.5	24.3	12.4	15.0	11.1	1.3	100.0	(226)
서울	18.9	2.7	2.7	2.7	37.8	-	18.9	16.2	-	100.0	(37)
부산	7.7	30.8	-	-	23.1	23.1	7.7	-	7.7	100.0	(13)
대구	33.3	-	-	-	11.1	11.1	22.2	11.1	11.1	100.0	(9)
인천	-	-	-	-	45.5	18.2	-	36.4	-	100.0	(11)
광주	28.6	28.6	-	-	14.3	-	14.3	14.3	-	100.0	(7)
대전	-	-	-	-	60.0	20.0	20.0	-	-	100.0	(5)
울산	-	16.7	16.7	16.7	16.7	-	16.7	16.7	-	100.0	(6)
경기	42.4	9.1	-	6.1	21.2	6.1	6.1	9.1	-	100.0	(33)
강원	-	31.6	15.8	-	15.8	26.3	5.3	5.3	-	100.0	(19)
충북	7.7	-	7.7	7.7	53.8	7.7	15.4	-	-	100.0	(13)
충남	26.7	-	-	-	6.7	6.7	46.7	13.3	-	100.0	(15)
전북	33.3	11.1	-	-	22.2	33.3	-	-	-	100.0	(9)
전남	10.0	10.0	10.0	-	30.0	30.0	-	10.0	-	100.0	(10)
경북	11.1	5.6	5.6	11.1	11.1	27.8	22.2	5.6	-	100.0	(18)
경남	16.7	16.7	-	5.6	11.1	5.6	22.2	22.2	-	100.0	(18)
제주	-	33.3	-	-	-	-	33.3	-	33.3	100.0	(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임.

10개 항목에 대한 필요성 점수는 1.97점에서 2.71점 사이에 분포한다. 최고는 교재 교구 지원, 친환경 비용 지원이고 점수가 낮은 항목은 포괄적 지원, 공공요금 지원 등이다. 효과성에 대한 질문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이러한 응답에 영역 가중치를 주면 필요성과 효과성 모두 2.0점 미만으로 낮아진다. 운영비 지원 영역이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이다.

세부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는 1위가 친환경 급식비 지원으로 24.3%를 차지하고 다음이 교재교구비 지원 18.1%이며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5.0%, 건강, 안전 관련 운영비 지원 11.2%, 냉난방비 지원 10.6%, 차량 운영비 지원 12.4%, 순이다. 지방정부가 많이 지원하는 간식비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다.

3. 요약 및 시사점

이상과 같은 결과를 요약하면, 총 66개 세부과제의 상위 10%인 11개 과제는 양육수당, 출산수당, 다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보육인력 근속수당 지원,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평가인증 보육교사 수당 지원,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공립시설 확충, 공립시설 환경개선, 장애아전담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장애아통합시설 인건비(수당) 지원의 순이다.

다음으로 하위 11대 과제는 공공요금 지원,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타 포괄적 운영비 지원, 사무원 인건비 지원, 민간시설 증개축,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건강, 안전 관련 운영비 지원, 영아 간식비 지원, 유아 간식비 지원, 건강, 안전 관련 운영비 지원,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현장학습비 지원 등이다.

우선과제는 부모 지원, 교사 등 인력 지원, 공공보육시설, 특수보육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보육정책의 재정투자가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부수적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필요성 우선순위가 약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 현황과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에서 나타난 정책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몇 가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시·도 및 시·군·구 지방정부간의 특수시책 예산의 차이가 매우 커서 중앙정부가 이러한 차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지방시대에 아동이나 부모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 예산의 지역간 차이 조정은 중앙정부의 중요 기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I-3-1〉 우선순위 상하위 11대 세부과제 4점 척도

단위: 점

상위 11대 세부과제			하위 11대 세부과제		
세부과제	평균	조정 점수	세부과제	평균	조정 점수
양육수당	3.14	2.42	현장학습비 지원	2.28	1.60
출산수당	2.94	2.26	냉난방비 지원	2.61	1.59
다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3.22	2.25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 지원	2.45	1.57
근속수당 지원	3.09	2.22	건강, 안전 관련 운영비 지원	2.53	1.54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3.07	2.15	유아 간식비 지원	2.52	1.54
보육교사 수당 지원	3.05	2.10	영아 간식비 지원	2.47	1.51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3.00	2.10	민간시설 증개축	2.22	1.49
공립시설 환경개선	3.07	2.06	사무원 인건비 지원	2.24	1.44
공립시설 확충	3.06	2.06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2.11	1.36
장애아전담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2.85	2.04	기타 포괄적 운영비 지원	2.10	1.28
장애아통합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2.85	2.04	공공요금 지원	1.97	1.20

둘째,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의 하나로 현금 지원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양육수당제도는 보육시설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대체적 성격이 강한데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미이용과 여성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수준이 적절하여야 하고 동시에 보편적 수당의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 공무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양육수당을 선정하였다.

셋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일반 보육료 추가 지원보다는 다자녀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상위 11대 세부과제 중에 이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모두 포함되었다. 다문화 가족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은 2011년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넷째, 교사에 대한 수당의 지원에도 정책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보육교사 근속수당이나 평가인증과 연계한 보육교사 수당 등은 전국적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수당 지원은 평가인증과 관련된 지원정책으로 필요도나 효과성이 가장 높았다.

다섯째, 공무원들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의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도와 효과성도 높이 평가하였다. 이는 공무원들도 국민들이 그토록 요구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전면적 정책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구조적으로 민간시설 우위 상태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가급적 삼가야 할 정책임을 시사하며, 동시에 현재 채택한 아동 간식비, 냉난방비 등 부가적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도 하위 11대 과제에 포함되어 공무원들이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중 상당부분은 표준보육단가에 반영되어 있어서 중복된다고 하겠다. 특히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보육비용이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하고 있는 영아의 간식비 추가 지원은 대표적 지원 사례라고 하겠다.

일곱째, 특수보육시책에 대한 요구나 우선순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보육정책은 지역 고유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IV. 공인 어린이집 운영과 효과

제4장에서는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 중에서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높여서 국공립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서울형 어린이집과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제도를 검토하고, 정책이 어린이집 운영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에 미치는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 공인 어린이집 개요

가.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사업 개요

1) 대상 및 절차 개요

서울형 공인 어린이집 대상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시 소재 보육 시설로, 방과후 전담시설, 참여 신청마감일 현재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²³⁾ 중인 시설은 제외한다.

서울형어린이집 신청서는 관할 자치구에 접수하며, 자치구에서는 신청 시설의 기본요건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한다. 확인할 기본요건은 정부평가인증 여부, 1가지 이상의 맞춤형보육서비스 실시, 기타 민원 및 부정적 보도사례 여부, 행정처분 여부 등이다. 신청서를 받은 서울시에서는 민원야기 사실 및 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실사단에게 시설을 방문하여 평가항목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추천, 신청서, 현장실사단의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자치구를 통해 해당시설에 공인 결과를 통보하고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 및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공인기간은 평가인증 취소 등 기타 취소사유 발생 시까지이고, 참여 수수료는 없다.

서울시는 공인받은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2) 평가 기준

서울어린이집 공인 심사 기준은 평가인증 통과를 기본 점수로 부여하고, 이외에 45문항으로 추가 관찰 평가하여 합산한다. 서울형 공인어린이집 평가 기준의 특성은 세 가지 필수항목과 주요 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이다.

세 가지 필수항목은 첫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여부이다. 2층 이상에는 층별로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²⁴⁾ 실제 소방훈련에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1층은 주 출입구 외의 창문, 베란다 등 사람 출입 가능한 비상용 출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시설명령의 1시설 1계좌 세입세출의 현금통장(4대 보험, 소득세 납입용)인데, 퇴직적립금 통장은 별도 관리를 인정한다. 세 번째는 회계 투명성을 보육료와 기타경비의 수납내역 공지와 투명한 수납방식에 대해 확인하여 평가한다.

추가 평가 총 45문항 중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대책 관련 5개 문항과 시설명령의 1계좌 사용 및 회계 관리 투명성 관련 5개 문항 중 10개 문항은 문항 당 2점으로 일반 문항 배점 1점에 비하여 가중치를 두고 있다.

〈표 IV-1-1〉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 기준 및 배점

분야	영역	평가 기준	배점
기본요건	7	-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	자치구
맞춤보육	1	-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여건	5
안심보육	5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필수항목) - 보육시설내 안전사고 예방조치 - 양질의 급간식 제공 - 보육시설의 청결과 위생	25
클린운영	4	- 1시설 1계좌 개설 운영(필수항목) - 보육료 및 기타경비 관리(필수항목) - 보육시설 운영 투명성	20
보육인력의 전문성	1	- 종사자 자질향상	5
종합평가			10

3) 운영 관리

가)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

공인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간연장, 시간제, 휴일, 장애아, 다문화

24) 나선형 돌음계단, 자동설치식 미끄럼대, 구조대, 완강기는 불인정

가정 자녀보육 등 맞춤형(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할 구청에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류한 경우는 예외이다.

나)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안심 보육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치를 시행한다.

첫째,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의 정기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실태 및 공인기준 이행여부 확인한다. 확인 내용은 급식 위생, 시설안전, 아동인권, 맞춤형보육, 보육인력의 전문성, 클린보육 등 43개 항목이다.

둘째, 어린이집 주치의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 거리,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체결 후 서울시보육포털에 주치의 정보를 등록한다. 자치구에서는 관내 병·의원(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보건소 및 대형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치의 협약 및 의료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셋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모서리보호대, 바닥미끄럼방지 등과 같은 시설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미끄럼틀,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고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넷째, 아동급식은 자체 조리하고 학부모에게 급간식 내용을 공개한다. 그리고 자치구 단위로 식재료 공동구매를 시행한다.

다섯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시설장 및 교사는 의무보수교육을 이행한다. 2009년부터 보수교육과정에 아동인권 관련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편성되었다. 기타 종사자는 아동인권,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연 6시간 교육을 받는다.

다) 클린운영

보조금과 보육료 등 일체의 수입·지출은 시설명의로 1개 계좌에 통합관리하여 모든 수입, 지출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로 특기교육비 등 일부 수입금의 누락을 방지한다. 또한 신규 공인받은 서울형 어린이집 및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받아 회계관리시스템으로 회계관리하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다.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예산·결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기타

민간 보육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소 우선순위와 보육료 및 입소료 등 수납, 종사자 급여 등 필요경비 지출과 시설

운영 및 관리기준 등을 국·공립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차량운행은 예외이다.

4) 지원

가) 지원조건

공인보육시설은 정부에서 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급, 4대 보험 종사자 전원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퇴직급여 제도 운영,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단가 범위 내 보육료 수납, 교사대 이동비용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조건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나) 지원내용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부모 보육료 수입의 10% 추가 지원 등으로 정원 77인 현원 65인 시설을 기준으로 보면 기본보육료 이외 인건비로 6,596천원, 처우개선비 1,385천원, 운영비 1,769천원으로 총 975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IV-1-2 참조).

이러한 추가 지원은 보육료 인하로 낮아지는 수입을 보충 기재로 부족하지 않게 설계되었다. 인건비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1-2〉 서울형 어린이집 재정지원 : 2010

사업내용	일반	서울형	증감
인건비	-	9,092	
기본보육료	2,496	-	
처우개선비		1,385	
보육료 수입 10% 추가		1,769	
계	2,496	12,246	9,750

주: 영아반 4반 유아반 3반으로 교사 7인, 현원 66인인 시설 기준임.

(1) 인건비 지원

민간시설의 인건비 지원 대상 및 비율은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다.²⁵⁾ 특수보육 지정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는 19시 30분 이후 보육아동 3명이상 그리고 21시 이후까지

25) 시설장은 인건비의 80%(21인 이상 시설에 한함),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 취사부(1인)는 인건비의 100%(현원 40인 이상 시설에 한함)를 지원함. 인건비 지원비율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의 사업자 부담금도 지원함. 다만, 시설장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고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한하여서는 전부를 지원함.

1명이상 보육한 경우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교사 1인당 100만원이 국비보조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지원한다. 민간시설은 교사 배치 3명 이상시 부터, 가정시설은 교사배치 2명 이상시 부터 전액을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로 지원한다. 또한 19시 30분 이후 21시 이후까지 1명이상 보육한 경우 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시 급여기준을 1호봉을 적용하고, 보육교사와 취사부는 매년 호봉을 승급하고 시설장은 승급 없이 계속 1호봉을 적용한다.²⁶⁾²⁷⁾

(2) 보육료 수입의 10% 지원

기타 운영비는 현원 기준으로 평균보육료 수입의 10%가 지원된다. 아동 현원은 매월 신청일 기준 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등재된 수를 기준으로 하며 방과후 아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하는데, 이는 연령별 보육료가 아니라 보육료 평균으로 2010년은 27,000원을 적용한다.

(3) 기타 운영비 등

처우개선비, 중식비 등도 정부지원시설과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교재교구비 등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국고사업은 서울형어린이집도 동일 적용된다.

이외 환경개선비, 도우미, IP-TV 설치, 급식 조리기구 등을 지원한다.²⁸⁾

5) 공인 취소 등 사후관리

서울형어린이집은 매년 1회 자체 운영보고서를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평가인증 취소 또는 기간만료 시에는 공인자격도 상실되며, 지원조건 미이행 시 공인이 취소된다. 공인취소 사유 중 변경을 제외하고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인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26) 시설장의 실제 경력이 지원기준(1호봉)보다 높은 경우 실제 경력 인정하여 지급을 하고 보육교사 등은 지원기준을 적용하되, 서울형 공인이전의 급여가 보조금 지원기준보다 높은 경우 시설 부담으로 조정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27)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연 2회 시행하고, 호봉 승급시에는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 시설간 보육교사의 이동시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이후 경력만 급여호봉으로 인정함.

28) 환경개선비는 시설규모별로 지원한도액을 차등함. 또한 보육아동 현원 40인 이상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도우미 비용으로 월 80만원을 지원하는데, 4대보험은 별도로 지원하고 퇴직금은 시설이 부담함. IP-TV는 시설장, 교사 전원이 동의하에 설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급식 조리기구(오븐기) 지원은 100인 미만 시설의 경우 가정용 오븐기 구입비용의 80%(시설당 최대 40만원), 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 단체급식용 오븐기(100인용) 구입비용의 90%(시설당 최대 900만원)를 지원함.

6) 서울형 어린이집 현황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 중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은 보육시설 현황은 <표 IV-1-3>과 같다. 2010년 10월말 현재 총 2,550개소가 공인을 받아 운영 중이다. 보육시설의 44.9%이다.²⁹⁾ 총 2,592개소가 공인을 받았으나 42개소가 공인이 취소되었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 1,041개소, 가정 903개소, 국공립 561개소이며, 직장/부모협동이 23개소, 법인 22개소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는 총 120,194명으로, 전체 아동의 62.0%가 서울형 어린이집에 다닌다. 아동을 시설유형별로 보면 민간 가정은 51.4%, 가정은 47.6%가 서울형을 이용한다. 서울형 공인으로 새로이 인건비 지원을 받게된 시설 이용 아동은 약 69,000명이다.

〈표 IV-1-3〉 서울형어린이집 시설 및 아동수 현황 : 2010. 10

단위: 개소, 명, %

구 분	계	국공립	법 인	민 간	가 정	직 장 부모협동
보육시설						
총 시설수(A)	5,684	626	44	2,497	2,404	113
서울형(B)	2,550	561	22	1,041	903	23
비율(B/A)	44.9	89.6	50.0	41.7	37.6	20.4
아동						
총정원	230,888	53,755	2,752	126,472	41,028	6881
총현원(C)	193,723	49,338	2,364	103,965	32,578	5478
서울형 정원	127,767	50,363	2,255	57,092	16,168	1,889
서울형 현원(D)	120,194	47,405	2,135	53,464	15,511	1,679
현원 비율(D/C)	62.0	96.1	90.3	51.4	47.6	30.6

자료: 보건복지부(2009.12). 보육통계.
서울시(2010. 10). 내부자료.

나. 부산 공보육어린이집

1) 사업 목적 및 신청 자격

부산시는 2009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민간·가정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일정 기준을 통과한 시설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료는 인하하고 보육교사의 임금은 인상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 부산형 공보육

29) 통계작성 시점이 다소 차이가 있음.

어린이집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시설이 취약지역 위주의 확충으로 축소되고, 신축시 소요되는 신축부지제공, 시설비 및 인건비 부담으로 기피됨에 따라 대안으로 민간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정부지원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하여 교사의 만족도는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다.

부산시 공보육의 신청자격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가정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시설로 지원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원 96인 이하, 시설장 포함 종사자 13인 이하 시설³⁰⁾ 중 동일 장소에서 3년 이상 운영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 지자체 사업의 특성 상 영유아 현원 2/3이상이 주민등록 기준 부산시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장 역시 신청일 기산 1년 이상 부산시내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시설운영비리 및 아동학대 등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조사중에 있거나, 대표자 또는 시설장이 2개소 이상의 영유아 관련 학원이나 보육시설 외에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

2) 사업 절차 및 지표

<표 IV-1-4>, <표 IV-1-5>는 부산시 공보육 시설의 주요 신청절차와 평가기준이다.

<표 IV-1-4> 부산시 공보육 평가 및 지정조건

구분	1차 실무 평가		2차 심화 평가	
배점	100점		100점	
평가항목/지표수	7개 항목 46개 지표		7개 항목 36개 지표	
항목별 배점	소 계	100점	소 계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아동현황 · 취약보육운영 상황 · 종사자 현황 · 비상재해대비, 안전관리 · 건물 현황 · 물리적 환경 · 운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설비기준 준수 · 종사자 전문성 향상 · 영유아 건강·급식·위생 · 보육과정 · 가정,지역사회와협력 · 시설장의 전문성 · 운영실적 및 계획 	
결과처리	· 신청시설 중 고득점 순으로 지정예정수의 2배수 추천		· 1차평가점수40%+2차평가점수40%+평가인증점수20%를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내 지정	

30) 정원 120인 교사 15인 기준에서 축소 조정함.

〈표 IV-1-5〉 부산시 공보육 사업 선정을 위한 1, 2차 평가 배점

1차 평가	총점	보육아동	취약보육	종사자 현황	비상재해대비 · 안전관리	건물 현황	물리적 환경	운영 관리
배점	60	10.0	10.0	10.0	12.0	20.0	20.0	18.0
2차 평가	총점	설비기준	종사자 전문성	건강 급식위생	보육과정	지역사회와 협력	원장 전문성	운영실적 향후계획
배점	40	8.0	3.0	8.0	6.0	5.0	5.0	5.0

시설장이 부산시에 신청하여 1차 실무평가를 통해 2배수를 추천하고 2차 심화평가를 통해 시장이 지정한다.³¹⁾ 1차 실무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보육아동 및 종사자 현황, 취약보육운영 상황, 비상재해대비·안전관리, 건물 현황, 물리적 환경, 운영 관리 등 7개 항목 46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1차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2배수를 선정하여 2차 심화평가에서 최종 선정하는데 이 때는 보육시설의 설비 기준 준수 정도, 종사자 전문성 향상, 영유아 건강·급식·위생, 보육과정,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시설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및 계획 등 7개 항목 36개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최종 선정을 위한 점수 배분은 1차 평가점수 40%, 2차 평가점수 40%, 평가인증 점수 20%를 반영한다.

평가위원 구성은 현장, 전문가, 공무원 등이 고루 포함되도록 하며, 외부 평가위원은 2배수로 추천받아 구성한다.³²⁾

3) 준수 조건

부산시 공보육 사업에 선정된 시설은 조건으로 국공립시설 보육료 단가로 수납, 국공립시설 1호봉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급, 종사자 전원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제도를 실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³³⁾으로 정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도 의무사항은 아니나 시간연장, 장애아통합, 24시간보육 등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31) 2009년도에는 구군 단위로 1차 평가를 시행하고 시에서 2차로 평가하던 것을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10년부터는 1차부터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32) 1차 실무 평가단은 국공립원장 1명, 대학교수 1명, 보육지원센터 1명, 여성개발원 1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고, 2차 심화 평가단은 국공립원장이 제외되고 시의원 1명이 들어감.

33)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임.

4) 지원

이상의 조건을 준수하는 시설에 대해 부산시는 시설장·영아반 교사 80%, 유아반 교사 30%, 취사부 100%의 인건비를 지원하고³⁴⁾ 영아전문 보육도우미를 우선 배치하는 등 인력을 지원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환경개선 등 기능보강비도 지원한다.

5) 사후관리 및 취소

부산시는 공보육 사업에 선정된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말 정기평가 및 3년 단위 종합평가를 통해 재지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 3회 연속 하위 10% 시설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대표자 또는 시설장 변경 및 시설의 매매, 장소 이전, 중대한 행정처분, 시정조치명령 미이행 등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되며, 지정서, 지정현판을 환수하고 취소 사실을 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이를 공고한다. 또한 상기 취소사유 발생으로 취소된 시설은 향후 3년간 재지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6) 부산시 지정 공보육어린이집 현황

부산시 소재 보육시설 중 부산시 지정 공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보육시설은 2010년 10월 현재 총 29개소이다. 2009년 시범사업기간에는 민간보육시설 14개소와 가정보육시설 4개소로 총 18개소가 참가였으며, 2010년에는 11개소가 추가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이다.

다. 비교

부산시 공보육 사업은 일정 기준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서울형 어린이집과 기본 발상 및 골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공인평가를 실시하는 서울형 어린이집과는 추진 대상 및 규모나 운영방식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4) 단, 인건비 지원 중 영아기본보조금 차액분 및 교사처우개선비(월5~10만원)는 미지급함.

〈표 IV-1-6〉 부산시와 서울시 사례 비교

구분	부산시 민간·가정 공보육 어린이집	서울시 서울형 어린이집
추진목표	민간·가정보육시설 (민선5기내 150개 지정)	전체 보육시설 서울형 공인('12년까지)
평가지표 및 점수	- 1차 7개항목 46개, 2차 7개항목 36개지표 - 1차 100점(예정수의 2배수추천), 2차 100점(1차점수 40%+ 2차 점수 40% + 평가인증점수 20%)	- 정부평가인증(80개 지표), 클린운영 (12개 지표), 맞춤보육, 안심보육
지정심의	- 심사위원 구성(1차5명, 2차5명) 심의 및 현장평가 병행	- 심의위원회 구성(15명) - 공개모집 - 현장평가단 선발(40명) - 공채모집
공인기간	- ' 10년부터 3년단위 지정	- 기준 없음
예산지원	- 종사자 인건비 30~100% 지원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 종사자 인건비 30~100% 지원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 운영비 10%(평균보육료수입 10%)
급여호봉	- 급여 호봉 : 최초 1호봉(매년승급)	- 급여 호봉 : 최초 1호봉(매년승급)
사후관리	- 매년말 평가 및 3년 단위 평가	- 안심보육 모니터링

첫째, 평가인증 활용방법이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평가인증 통과여부를 기본점으로 반영하고 이외 일부 지표를 추가하지만, 부산시는 77개 항목의 1, 2차 평가결과와 함께 총점에 20%를 평가인증 점수로 반영한다. 즉, 부산시는 평가인증 점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서울과 부산시 공인 어린이집은 신청대상에서의 차이가 있다. 서울시가 시설 규모 등 제한이 없는 것에 비하여 부산시에서는 정원 96인 이하, 시설장 포함 종사자 13인 이하 시설 중 동일 장소에서 3년 이상 운영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영유아 현원 2/3이상이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해야 하고, 시설장 역시 신청일 기산 1년 이상 부산시내 거주자이어야 하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이 2개소 이상의 영유아 관련 학원이나 보육시설 외에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신청자격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서울은 국공립, 법인을 공인시설에 포함하나 부산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평가기준의 차이에서 가정 두드러지는 점이 시설 건물 소유상태이다. 서울시가 시설 소유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비하여 부산시에서는 임대시설이나 자기 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상당한 마이너스 점수를 주어 사실상 선정이 불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넷째, 지원에서의 기타운영비 10% 지원여부이다. 서울시가 부모가 부담하는 평균보육료 270,000원을 기준으로 아동수 만큼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비하여 부산

시 공보육 어린이집은 이러한 요인이 없다.

다섯째, 공인 기간이 서울시는 없으나 부산은 3년으로 둔다.

이상과 같은 점을 두고 볼 때 부산형 공보육 어린이집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소수 정예를 지향한다면 서울형 공인 어린이집은 민간 시설들의 이해를 수용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조건과 예산 지원으로 다수를 포괄하려는 차이를 보인다. 부산형이 공공성이 높은 공보육 어린이집 모형이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수용성은 한계가 있다.

2. 공인 어린이집 수용 및 부모 인지

가. 서울형 어린이집 수용 및 부모 인지

1) 보육시설에서의 수용

2010년 10월 현재 전체시설의 45.6%인 2,592개소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었으며 이중 42개소는 대표자 변경, 행정처분 등으로 취소되어 현재 2,550개소에서 120,194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이는 총 보육아동 193,723명의 62%이다.

본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서울형어린이집은 47.2%로 전체 통계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들 시설의 공인시기는 2009년 상반기가 43.1%, 하반기 32.0%, 2010년 상반기 24.8%이었다(표 IV-2-1 참조).

〈표 IV-2-1〉 서울형 비율 및 비서울형 시설유형별 앞으로 공인 신청 계획

단위: %(명)

구 분	서울형 비율	비서울형 공인 신청 계획				계(수)	X ² (df)
		받을 것임	안받을 것임	잘 모르겠음			
전체	47.2	47.6	25.5	27.0	100.0(664)		
국공립	91.9	66.7	16.7	16.7	100.0(12)		
법인	73.9	83.3	0.0	16.7	100.0(6)		
민간	43.7	47.6	23.9	28.5	100.0(309)	15.182(8) [#]	
가정	38.0	47.2	26.1	26.7	100.0(322)		
직장	28.6	26.7	60.0	13.3	100.0(15)		

주: # p < .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 받지 않는 시설을 대상으로 향후 공인받을 계획 여부를 알아본 결과, 47.6%가 공인 받을 계획이며, 25.5%는 받지 않을 것이며, 27.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 소수인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이 공인을 받을 계획이 높았으며,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은 50% 정도만이 공인 받겠다고 응답하였다. 직장보육시설은 60%가 공인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공인을 받지 않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표 IV-2-1 참조).

공인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공인을 받는 것이 시설에 도움이 되지 않음이 41.9%로 가장 높고, 현재에 만족하기 때문에 25.7%, 조건이 까다로움 20.4% 순으로 나타났다. 공인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는 시설유형에 따라 응답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IV-2-2〉 시설유형별 서울형으로 공인 받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조건이 까다로움	시설에 도움이 되지 않음	현재에 만족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20.4	41.9	25.7	12.0	100.0(664)	5.923(9)
국공립	-	50.0	-	50.0	100.0(2)	
민간	19.2	41.1	24.7	15.1	100.0(73)	
가정	22.6	42.9	26.2	8.3	100.0(84)	
직장	12.5	37.5	37.5	12.5	100.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2) 부모의 인식

가) 서울형 어린이집 인지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인지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IV-2-3〉은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일반적 부모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인데, 80% 이상이 서울형 어린이집을 알고 있었으며 18.8%만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알고 있는 경우 12.7%가 매우 잘 알고 있고, 36.5%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이며, 32.0%는 있다는 것만 아는 정도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는 자녀가 영아인 부모보다 유아인 부모의 서울형 어린이집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는 취약계층이 더 낮아서 모부재 집단은 75%가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소득계층별로는 200만원 이하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2-3〉 서울형 어린이집 인지 여부

단위: %(명)

구 분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있다는 것만 안다	전혀 모른다	계(수)	X ² (df)
전체	12.7	36.5	32.0	18.8	100.0(1,561)	
자녀연령						
영아	11.3	34.7	33.8	20.2	100.0(1,029)	13.50(3)**
유아	15.5	39.8	28.7	16.0	100.0(530)	
모취업						
취업	13.0	34.9	35.2	16.9	100.0(562)	29.71(6)***
미취업	12.7	37.7	30.5	19.2	100.0(985)	
모부재	-	8.3	16.7	75.0	100.0(1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9.0	21.4	33.3	26.2	100.0(42)	23.44(15)#
100~199만원	13.2	38.5	25.9	22.4	100.0(205)	
200~299만원	12.0	37.0	33.6	17.4	100.0(351)	
300~399만원	15.1	33.3	34.1	17.5	100.0(417)	
400~499만원	9.4	45.0	30.7	14.9	100.0(202)	
500만원 이상	11.3	35.2	32.3	21.2	100.0(344)	

주: # p< .1, ** p< .01,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표 IV-2-4〉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료 인지 여부

단위: %(명)

구 분	보육료			인건비 지원			계(수)
	잘 안다	대략 안다	모른다	잘 안다	대략 안다	모른다	
전체	19.2	37.4	43.5	16.0	31.3	52.7	100.0(1,560)
자녀연령							
영아	18.1	36.5	45.4	14.8	30.0	55.2	100.0(1,029)
유아	21.3	39.1	39.6	18.3	33.9	47.8	100.0(530)
X ² (df)	5.19(2)#			7.96(2)*			
모취업							
취업	20.2	35.5	44.2	16.5	30.6	52.8	100.0(563)
미취업	18.8	38.7	42.5	15.7	32.1	52.2	100.0(986)
모부재	-	9.1	90.9	-	9.1	90.9	100.0(11)
X ² (df)	11.89(4)*			7.01(4)			

주: # p< .1, * p<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서울시가 교사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을 지원하므로 보육료가 국공립시설과 동일하다. 부모들은 이에 대하여 대해서 잘 알고 있음 19.2%, 대략 알고 있음 37.4%, 모름 43.5%로,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모 부재 집단의 90.9%가 몰랐으며, 소득이 낮거나 높은 경우 모른다는 응답이 높아, 앞서 살펴본 서울형 어린이집 인지 여부와 비슷한 응답경향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서울형 어린이집 홍보를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인지율은 높지 않다. 서울시의 서울형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음 16.0%, 대략 알고 있음 31.3%, 모름 52.7%로 모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는 유아 부모가 영아 부모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모취업여부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표 IV-2-4 참조).

나) 서울형 어린이집 이용

현재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서울형 공인어린이집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54.7%가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하였고, 37.2%가 아니라고 응답하였고, 8.1%는 서울형 어린이집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자녀연령별로 보면 유아보다 영아보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다. 시설유형별로는 서울형이라는 응답이 국공립보육시설 90.8%, 법인 66.7%, 민간 34.3%, 가정 38.7%, 직장 21.4%이었다(표 IV-2-5 참조).

〈표 IV-2-5〉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서울형어린이집 여부

단위: %(명)

구분	서울형 공인	아님	모름	계(수)	X ² (df)
전체	54.7	37.2	8.1	100.0(828)	
자녀연령					
영아	50.1	41.1	8.9	100.0(531)	13.14(2)**
유아	63.2	30.1	6.8	100.0(296)	
설립유형					
국공립	90.8	4.6	4.6	100.0(284)	246.64(8)***
법인	66.7	27.8	5.6	100.0(18)	
민간	34.3	54.4	11.3	100.0(417)	
가정	38.7	53.8	7.5	100.0(93)	
직장	21.4	78.6	0.0	100.0(14)	

주: ** p< .01,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현재 자녀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체 응답자 중 57.8%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기 전부터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은 후에 현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 서울형 공인 여부가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64.2%가 서울형 공인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30.2%는 공인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연령별로는 영아 69.7%, 유아 51.0%로 자녀가 영아인 경우 서울형 공인 여부가 보육시설 선택에 더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표 IV-2-6 참조).

〈표 IV-2-6〉 공인 이후 이용자의 보육시설 선택시 서울형 공인 여부 영향

단위: %(명)

구분	공인여부 인식하지 못함	어느정도 미침	많이 미침	잘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30.2	48.0	16.2	5.6	100.0(180)	
자녀연령						
영아	24.2	49.2	20.5	6.1	100.0(132)	9.93(3)*
유아	44.9	44.9	6.1	4.1	100.0(49)	
설립유형						
국공립	34.3	44.4	17.6	3.7	100.0(108)	18.42(12)
법인	60.0	20.0	0.0	20.0	100.0(5)	
민간	21.4	57.1	17.9	3.6	100.0(56)	
가정	20.0	60.0	0.0	20.0	100.0(10)	
직장	100.0	0.0	0.0	0.0	100.0(1)	

주: * p<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본 조사에서는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서울형 어린이집 미이용 이유, 향후 이용 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서울형 어린이집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서비스가 좋기 때문이 39.5%로 가장 높았으며 질적 수준이 서울형과 별 차이 없음이 17.0%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형 어린이집을 모르거나 이용하고 싶어도 대기자가 많고, 주변에 서울형이 없기 때문에 못 이용한다는 응답도 11~16% 수준으로 고르게 나타나,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이용 요구가 있으며 서울형 어린이집 홍보가 더욱 필요함을 나타냈다. 모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인 경우 서울형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미취업모보다 높았으며, 미취업모의 경우 서울형 어린이집의 대기자가 많거나 주변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없다는 응답이 취업모보다 높아 차이를 나타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서울형을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서비스가 좋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저소득층이 보육시설 관련 정보를 얻는데 취약하다는 점과 고소득자는 서울형 이상의 고급화된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7 참조).

〈표 IV-2-7〉 서울형 어린이집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다니던 곳 서비스 좋음	별차이 없음	주변에 서울형 없음	서울형 대가가 많음	서울형 잘모름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39.5	17.1	11.8	13.4	16.6	1.6	100.0(341)	
자녀연령								
영아	38.4	17.4	10.3	15.3	16.5	2.1	100.0(242)	6.50(5)
유아	42.4	17.2	15.2	8.1	17.2	0.0	100.0(99)	
모취업								
취업	40.0	21.8	9.4	7.6	18.8	2.4	100.0(170)	17.67(5)**
미취업	40.1	12.6	14.4	19.2	13.2	0.0	100.0(167)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7.5	12.5	12.5	0.0	25.0	12.5	100.0(8)	48.98(25)**
200만원 미만	40.6	10.9	10.9	9.4	28.1	0.0	100.0(64)	
300만원 미만	41.6	13.5	12.4	15.7	15.7	1.1	100.0(89)	
400만원 미만	35.7	15.5	16.7	14.3	17.9	0.0	100.0(84)	
500만원 미만	23.8	23.8	14.3	26.2	7.1	4.8	100.0(42)	
500만원 이상	52.7	27.3	3.6	5.5	9.1	1.8	100.0(55)	

주: ** p <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표 IV-2-8〉 인근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옮길 의향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잘모르겠음	계(수)	X ² (df)
전체	39.4	52.8	7.8	100.0(341)	
국공립	20.8	58.3	20.8	100.0(24)	
법인	40.0	60.0	0.0	100.0(5)	
민간	40.7	52.0	7.3	100.0(246)	15.94(8)*
가정	47.1	47.1	5.9	100.0(51)	
직장	9.1	90.9	0.0	100.0(11)	

주: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서울형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인근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형 어린이집

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는 한편, 아직까지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여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표 IV-2-8 참조).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를 향후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을 우선 선택할 것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71.8%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우선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자녀연령별로는 영아 73.5%, 유아 33.3%로 영아가 유아보다 2배 이상 높아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경우 보육시설을 선택할 경우 서울형 공인여부보다 프로그램 등의 다른 요인들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표 IV-2-9 참조).

〈표 IV-2-9〉 서울형 어린이집을 우선 선택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모름	계(수)	X ² (df)
전체	71.8	18.8	9.4	100.0(110)	9.15(2)*
영아	73.5	16.7	9.8	100.0(102)	
유아	33.3	66.7	0.0	100.0(6)	

주: * p<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나.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수용 및 부모 인지

1) 보육시설의 수용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에 참여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29개소에 불과하다. 임대시설과 낮은 자기자본 비율 불이익 부여, 보육시설 다수 운영 및 기타 기관 동시 운영자 제외 등 신청 및 선정 조건이 까다로운데 비하여 인건비 지원 이외의 서울과 같은 운영비 추가 지원 혜택이 없다.

〈표 IV-2-10〉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참여 이유

단위: %(명)

구분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안정된 교사 채용을 위해서	원아모집을 위해서	기타	계(수)
전체	17.4	47.8	4.3	30.4	100.0(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조사에 응답한 23개 공보육 어린이집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안정된 교사채용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7.8%로 과반수에 조금 못 미치고, 인건비 지원, 원아 모집 등이 각각 17.4%, 4.3%이고 30.4%는 기타를 이유로 들었다. 시설장 간담회에서 도 교사 채용 등 안정된 운영을 공보육 어린이집 참여 이유로 드는 사례가 많았다.

2) 부모의 인식

공보육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부모에게 다니는 어린이집이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인지, 공보육 지정일인지 아닌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공보육 어린이집임을 알고 있었고 공보육 지정일까지 아는 부모도 36.7%가 되었다. 영아 부모보다 유아 부모의 인식 정도가 높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보육 어린이집이 무엇인지를 아는가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응답은 7.7%에 불과하고, 어느 정도 안다가 58.7%이며 31.6%는 이름 정도만 아는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영유아의 차이는 미미하다.

〈표 IV-2-11〉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과 공보육 지정일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공보육 어린이집 인지, 지정일 인지	공보육 어린이집 인지, 지정일 미인지	공보육 어린이집 미인지	계(수)
전체	36.7	61.6	1.7	100.0(411)
영아	29.0	68.6	2.4	100.0(207)
유아	44.8	54.2	1.0	100.0(2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표 IV-2-12〉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인지

단위: %(명)

구분	매우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음	전혀 모름	계(수)
전체	7.7	58.7	31.6	1.9	100.0(414)
자녀연령					
영아	6.9	56.9	33.8	2.5	100.0(204)
유아	8.2	60.4	30.0	1.4	100.0(207)
모취업					
취업	9.2	54.2	35.9	0.7	100.0(142)
미취업	6.3	61.5	30.7	1.6	100.0(19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공보육 어린이집의 부모 부담 기준 보육료가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하고 교사 인건비도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 대한 인지 정도를 보면, 보육료가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34.1%가 잘 알고 있으나 17.9%는 모른다고 하였고, 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27.0%가 잘 안다고 응답한 반면에 21.4%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표 IV-2-13 참조). 이 역시 영유아의 차이나 모 취업 특성별 차이는 없다.

〈표 IV-2-13〉 국공립 어린이집과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보육료 및 교사 인건비 동일 인지

단위: %(명)

구분	보육료			교사 인건비			계(수)
	잘 알고 있음	대략 알고 있음	모름	잘 알고 있음	대략 알고 있음	모름	
전체	34.1	47.9	17.9	27.0	51.6	21.4	100.0(413)
영아	32.2	50.2	17.6	28.4	51.2	20.4	100.0(205)
유아	35.6	45.9	18.5	25.6	51.7	22.7	100.0(205)
X ² (df)	0.818(2)			0.52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한편 공인 받은 이후에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였다는 경우 공보육여부가 어린이집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였는데, 부모의 20.0%는 많은 영향을, 59.0%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유아보다 영아 부모가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고, 취업모보다 비취업모가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표 IV-2-14〉 공보육 어린이집 여부가 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단위: %(명)

구분	공보육 여부를 인식하지 못함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많은 영향을 미침	잘 모르겠음	계(수)	X ² (df)
전체	11.0	59.0	20.0	10.0	100.0(200)	
자녀연령						
영아	9.6	58.3	23.5	8.7	100.0(115)	2.604(3)
유아	13.1	59.5	15.5	11.9	100.0(84)	
모취업						
취업	19.5	57.1	18.2	5.2	100.0(77)	9.687(3)*
미취업	5.4	60.2	22.6	11.8	100.0(93)	

주: * p<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3. 공인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의 적절성

가.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1) 선정 조건의 적절성

가)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지표 기준 및 조건의 적절성

(1) 전체 개요

현재 10여 가지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지표 기준이나 조건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3-1>과 [그림 IV-3-1]과 같다.

적절하다는 응답, 즉 7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을 합한 비율을 보면 90% 이상으로는 보육시설 청결과 위생, 시설명의의 1계좌로 회계관리가 투명,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양질의 급간식을 위생적으로 제공, 영유아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 등이다. 즉 회계 투명성과 더불어 안전, 위생, 청결, 급간식이 주요 덕목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80점 대의 조건으로는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대책 마련, 보육료 및 기타경비 규정에 따라 수납, 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 평가인증 통과 기준이며, 이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기적 운영이 조건으로 적절하다는 비율은 69.8%이고 맞춤형 보육서비스(시간연장, 시간제, 장애아통합보육) 중 1가지 이상 실시 조건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62.9%로 상대적으로 낮다.

<표 IV-3-1>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지표 기준 및 조건의 적절성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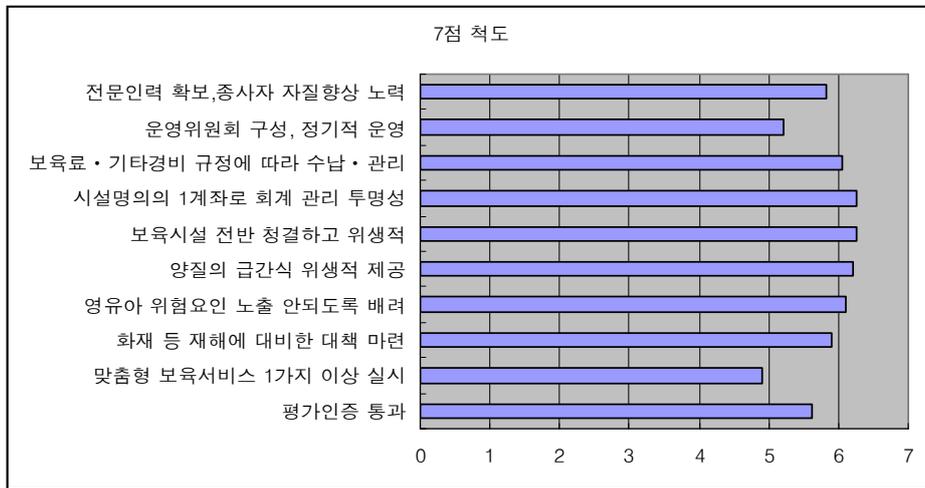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 분	매우 부적절 ←-----→ 매우 적절							계(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평가인증 통과	2.4	1.7	4.4	11.3	18.4	25.9	36.0	100.0(1,268)	5.63(1.4)
맞춤형 보육서비스 실시	6.1	5.7	8.4	16.8	19.1	21.6	22.2	100.0(1,259)	4.91(1.7)
화재 등 재해 대비한대책 마련	0.6	0.9	2.6	8.4	17.0	31.3	39.3	100.0(1,266)	5.91(1.1)
영유아 위험요인 배려	0.2	0.4	2.0	6.6	13.9	29.9	47.1	100.0(1,266)	6.11(1.0)
양질의 급간식 위생적 제공	0.2	0.5	1.8	5.6	11.9	27.9	52.1	100.0(1,268)	6.21(1.0)
청결하고 위생적	0.2	0.3	1.6	4.3	11.4	29.1	53.2	100.0(1,266)	6.27(0.9)
시설명의 1계좌로 회계 관리	0.6	0.6	2.0	60.0	9.6	23.4	57.9	100.0(1,265)	6.25(1.1)
보육료·기타경비 수납 규정 준수	1.7	1.3	2.4	6.9	11.3	26.1	50.4	100.0(1,267)	6.05(1.3)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3.6	3.6	5.6	17.4	20.7	22.7	26.4	100.0(1,244)	5.21(1.5)
전문인력 확보·자질향상 노력	0.9	1.7	3.2	10.3	16.6	28.0	39.4	100.0(1,268)	5.82(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7점 척도로는 6점 이상이 5가지이고 5점 이하가 한가지이다. 시설명의 1계좌로 회계관리 투명성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다음이 청결, 위생, 급간식, 안전 등이 6.2점 이상이며,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맞춤형 보육서비스 실시이고 다음이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각각 4.91점, 5.21점이다.

이상의 10개의 조건 중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성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49.1%가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응답하였고, 11.8%는 평가인증 통과, 10.1%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양질의 급간식 위생적 제공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IV-3-2 참조).



[그림 IV-3-1]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지표 기준 및 조건의 적절성 총괄

<표 IV-3-2> 시설유형별 서울형 어린이집의 성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조건

단위: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11.8	4.0	1.7	7.3	10.1	5.6	8.3	1.7	0.5	49.1	100.0(1,266)
국공립	11.5	0.7	-	6.1	10.1	1.4	10.8	2.7	-	56.8	100.0(148)
법인	4.3	8.7	-	8.7	8.7	4.3	17.4	-	-	47.8	100.0(23)
민간	12.2	2.7	2.0	7.3	9.5	7.1	8.7	2.0	0.5	47.9	100.0(549)
가정	11.8	6.1	1.7	7.6	10.5	5.3	6.5	1.3	0.6	48.6	100.0(525)
직장	9.5	4.8	4.8	4.8	19.0	4.8	14.3	-	-	38.1	100.0(21)

주: 번호는 [그림 IV-3-1] 아래부터 위쪽으로 1~10임을 참조.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2) 각 조건별 적절성

다음은 10개 조건 각각의 적절성에 대한 시설장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설 유형별 차이를 보고 이어서 민간·가정 시설만을 대상으로 서울형과 비서울형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 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시설 유형별 차이는 거의 없다. 10개 항목 중 7점 척도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개 조건이다. 하나는 보육료 및 기타경비 규정에 따라 수납, 관리조건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7점 척도에서 민간이 5.85점으로 낮고,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이 적절하다는 평가는 민간과 가정이 각각 5.17점, 4.94점으로 국공립, 법인 등 인건비 지원 시설에 비하여 낮다. 이외 10개 중 8개 항목이 유형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보육시설 유형별로 서울 공보육 어린이집 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표 IV-3-3 참고).

〈표 IV-3-3〉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유형별 공인 조건 적절성에 대한 의견

단위: 점(점)

구분	전체(표준편차)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F
평가인증	5.63(1.4)	5.82	6.00	5.54	5.67	5.67	1.76
맞춤형 서비스	4.91(1.7)	5.02	5.30	4.80	4.98	4.55	1.38
재해대비	5.91(1.1)	5.95	6.00	5.58	5.95	6.05	0.61
위험요인	6.11(1.0)	6.04	6.04	6.11	6.12	6.52	0.96
급간식	6.21(1.0)	6.26	6.22	6.18	6.22	6.57	0.84
시설위생	6.27(0.9)	6.28	6.35	6.22	6.29	6.57	0.86
투명한 회계	6.25(1.1)	6.35	6.57	6.19	6.27	6.62	1.79
비용규정	6.05(1.3)	6.29	6.04	5.85	6.17	6.52	6.40***
운영위원회	5.21(1.5)	6.06	6.09	5.17	4.94	6.20	18.84***
전문인력	5.82(1.3)	6.00	6.09	5.76	5.80	6.24	1.79
(수)	(1,268)	(148)	(23)	(551)	(525)	(21)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그러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공인 어린이집과 비공인 어린이집간에는 의견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는 민간·가정시설 중 비서울형 시설보다 적용 당사자인 서울형 시설이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구체적으로 민간, 가정 시설 모두에서 서울형과 비서울형이 차이를 보이는 조건은 6개 조건으로 평가인증 통과, 영유아 위험요인 노출 배려, 양질의 급간식 위생적 제공, 청결과 위생, 시설명명의 1계좌 회계관리 투명, 보육료 및 기타경비 규정에 따라 수납, 관리 조건 등이다.

〈표 IV-3-4〉 민간가정시설 서울형여부별 공인 조건 적절성에 대한 의견

단위: 점(명)

구 분	전체		민간	가정	구 분	전체		민간	가정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평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평균
평가인증					시설위생				
서울형	5.95	1.20	5.84	6.12	서울형	6.43	0.87	6.39	6.56
비서울형	5.35	1.59	5.29	5.39	비서울형	6.12	1.06	6.10	6.12
전체	5.63	1.45	5.53	5.67	전체	6.27	0.99	6.22	6.29
t	7.45***		4.54***	5.65***	t	5.64***		3.61***	5.01***
맞춤형 서비스					투명한 회계				
서울형	5.95	1.20	5.84	6.12	서울형	6.47	0.97	6.42	6.57
비서울형	5.35	1.59	5.29	5.39	비서울형	6.06	1.20	6.01	6.08
전체	5.63	1.45	5.53	5.67	전체	6.25	1.12	6.19	6.27
t	1.93#		0.19	2.42*	t	6.52***		4.29***	4.86***
재해대비					비용규정				
서울형	5.95	1.20	5.84	6.17	서울형	6.24	1.28	6.04	6.44
비서울형	5.35	1.59	5.29	5.82	비서울형	5.87	1.31	5.70	6.01
전체	5.63	1.45	5.53	5.67	전체	6.05	1.31	5.85	6.17
t	3.04**		1.17	3.30**	t	5.04***		2.94**	3.87***
위험요인					운영위원회				
서울형	6.25	1.00	6.26	6.36	서울형	5.44	1.58	5.38	5.01
비서울형	5.99	1.12	6.00	5.97	비서울형	5.01	1.57	5.00	4.91
전체	6.11	1.07	6.11	6.12	전체	5.21	1.59	5.17	4.94
t	4.24***		2.97**	3.97***	t	4.81***		2.93**	0.64
급간식					전문인력				
서울형	6.36	0.9	6.31	6.48	서울형	5.93	1.27	5.84	5.96
비서울형	6.07	1.1	6.07	6.05	비서울형	5.72	1.30	5.70	5.70
전체	6.21	1.0	6.18	6.22	전체	5.82	1.30	5.76	5.80
t	4.84***		2.82**	4.53***	t	2.93**		1.29	2.17#
(수)	(1,268)		(551)	(525)	(수)	(1,268)		(551)	(525)

주: # p< .1, * p< .05, ** p< .01,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자질향상 노력, 맞춤형 보육서비스 1가지 이상 실시, 재해 대비책 마련에 관한 항목은 가정보육시설에서 서울형이 비서울형보다 높은 방향으로 차이를 보였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기적 운영 등은 민간 보육시설에서 서울형과 비서울형이 차이를 보였다(표 IV-3-4 참고).

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조건 강화에 대한 의견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조건이 현재보다는 강화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5.3%이고, 64.7%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시설유형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형과 비서울형을 비교해보면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서울형은 49.5%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비서울형은 27.7%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여 서울형과 비서울형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당사자들이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민간시설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표 IV-3-5, 표 IV-3-6 참조).

〈표 IV-3-5〉 시설유형별 서울형 공인 조건이 강화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절대로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필요한 편	매우 필요	계(수)	X ² (df)
전체	11.0	53.7	27.7	7.6	100.0(1,267)	
국공립	10.1	52.0	23.0	14.9	100.0(148)	
법인	13.0	52.2	26.1	8.7	100.0(23)	
민간	12.0	54.8	27.6	5.6	100.0(551)	21.10(12) [#]
가정	10.3	53.6	29.0	7.1	100.0(524)	
직장	4.8	42.9	33.3	19.0	100.0(21)	

주: # p< .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3-6〉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서울형 공인 조건 강화 필요성

단위: 점(명)

구분	절대로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필요한 편	매우 필요	계(수)	X ² (df=3)
전체						
서울형	8.6	49.7	33.1	8.6	100.0(441)	19.59 ^{***}
비서울형	12.9	57.4	24.9	4.7	100.0(634)	
민간						
서울형	9.5	55.2	27.8	7.5	100.0(241)	4.72
비서울형	13.9	54.5	27.4	4.2	100.0(310)	
가정						
서울형	7.5	43.0	39.5	10.0	100.0(200)	25.51 ^{***}
비서울형	12.0	60.2	22.5	5.2	100.0(324)	

주: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2) 재정 지원의 적절성

서울시가 민간과 가정 서울형 어린이집에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를 추가 지원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8%이고, 적절하지 않다가 42.6%, 잘 모르겠다는 38.6%로 전체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립유형별로는 차이가 커서, 인건비 지원시설은 적절하다는 비율이 26% 수준인 반면에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에서는 약 17~18%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인건비 지원시설에서는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표 IV-3-7 참조).

이러한 응답 이유의 이유는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시설은 10% 추가지원이 결국 개인의 용자, 임대료 등 어린이집 설치 투자에 대한 댓가이므로 민간 투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반면에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들은 총 수입 기준이 아니고 인건비 보조금은 제외한 부모 부담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3-7〉 시설유형별 추가 지원 수준의 적절성

단위: %(명)

구 분	적절하지 않음	적절함	잘 모름	계(수)
전체	42.6	18.8	38.6	100.0(1,269)
국공립	11.5	26.4	62.2	100.0(148)
법인	13.0	26.1	60.9	100.0(23)
민간	52.5	17.1	30.5	100.0(551)
가정	43.0	18.4	38.6	100.0(526)
직장	23.8	14.3	61.9	100.0(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서울형과 비서울형으로 비교해서 보면 적절하다는 비율은 차이가 없으나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은 서울형 민간·가정의 경우 67.6%, 비서울형 민간·가정의 경우 40.6%로, 추가 지원을 받고 있는 해당 시설인 서울형에서 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8 참조). 이는 전체 수입이 아닌 부모 부담 보육료를 기준으로 10%를 산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표 IV-3-8〉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추가 지원 수준의 적절성

단위: 점(명)

구 분	적절하지 않음	적절함	잘 모름	계(수)	$\chi^2(df)$
전체					
서울형	68.7	17.0	14.3	100.0(441)	156.50(2)***
비서울형	33.3	18.2	48.4	100.0(636)	
민간					
서울형	67.6	17.0	15.4	100.0(241)	51.02(2)***
비서울형	40.6	17.1	42.3	100.0(310)	
가정					
서울형	70.0	17.0	13.0	100.0(200)	110.02(2)***
비서울형	26.4	19.3	54.3	100.0(326)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3) 관리 및 관련 조치의 적정성

가) 서울형 어린이집 사후관리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사후관리로 교차점검, 안심보육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점차 그 강도를 더해가는 경향을 보인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서울형 어린이집 대상사후관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하였다.

이에 일반적으로 사후관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9.9%인 것으로 나타났고, 33.5%는 지나치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 법인시설이 73.9%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시설은 약 50%정도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지나치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시설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국공립, 민간, 가정시설은 약 33.7%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법인은 17.4%, 직장은 4.8%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V-3-9 참조).

민간, 가정과 전체 시설 중 서울형과 비서울형을 비교해보았을 때, 사후관리가 지나치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서울형 50.6%, 비서울형 25.4%로 서울형에서 지나치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서울형보다 서울형이 더 많은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표 IV-3-10 참조).

〈표 IV-3-9〉 시설유형별 사후관리의 충분성

단위: %(명)

구 분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강화 필요	완화 필요	잘 모름	계(수)
전체	7.9	42.0	5.5	33.5	11.2	100.0(1,270)
국공립	5.4	48.6	8.8	32.4	4.7	100.0(148)
법인	26.1	47.8	-	17.4	8.7	100.0(23)
민간	6.3	40.6	6.2	36.4	10.5	100.0(552)
가정	9.3	40.9	3.8	32.5	13.5	100.0(526)
직장	9.5	52.4	14.3	4.8	19.0	100.0(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3-10〉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사후관리의 충분성

단위: 점(명)

구 분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강화 필요	완화 필요	잘 모름	계(수)	X ² (df=4)
전체							
서울형	7.5	41.3	0.9	46.7	3.6	100.0(441)	100.79***
비서울형	8.0	40.3	7.8	26.1	17.7	100.0(637)	
민간							
서울형	6.6	39.0	0.4	50.6	3.3	100.0(241)	67.99***
비서울형	6.1	41.8	10.6	25.4	16.1	100.0(311)	
가정							
서울형	8.5	44.0	1.5	42.0	4.0	100.0(200)	36.01***
비서울형	9.8	39.0	5.2	26.7	19.3	100.0(326)	

주: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나) 주치의 제도

(1) 시설장

서울시 어린이집은 주치의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 의료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 아동 건강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치의 제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주치의 전문과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소아과 전문의 65.6%, 일반의 12.6%, 내과 전문의 12.1%, 기타 전문의 7.8%, 잘 모름 1.9%로 조사되었다(표 IV-3-11 참조).

2010 1월부터 현재까지 주치의 서비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시설장의 43.9%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9.0%가 주치의의 시설 방문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시설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서비스를 받았다는 비율은 인건비 지원 시설이 높고, 방문은 특히 법인시설이 23.5%로 가장 높고 가정보육시설은 3.0%로 가장 낮았다(표 IV-3-12 참조).

〈표 IV-3-11〉 시설유형별 주치의 전문과목

단위: %(명)

구 분	소아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기타 전문의	일반의(원)	잘 모름	계(수)
전체	65.6	12.1	7.8	12.6	1.9	100.0(588)
국공립	60.0	18.5	11.1	9.6	0.7	100.0(135)
법인	76.5	-	11.8	11.8	-	100.0(17)
민간	63.0	12.3	5.1	16.6	3.0	100.0(235)
가정	71.3	8.7	8.7	10.3	1.0	100.0(195)
직장	83.3	-	-	-	16.7	100.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3-12〉 시설유형별 주치의로부터 받은 서비스: 2010

단위: %(명)

구 분	서비스 여부			시설방문여부			계(수)
	있음	없음	X ² (df)	있음	없음	X ² (df)	
전체	43.9	56.1		9.0	91.0		100.0(600)
국공립	62.2	37.8		14.7	85.3		100.0(136)
법인	58.8	41.2		23.5	76.5		100.0(17)
민간	39.0	61.0	27.4(4)***	10.0	90.0	19.4(4)**	100.0(241)
가정	36.0	64.0		3.0	97.0		100.0(200)
직장	50.0	50.0		-	100.0		100.0(6)

주: ** p< .01,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3-13〉 시설유형별 주치의 제도의 유용성 및 필요성

단위: %(명)

구 분	건강관리에 도움				필요성			계(수)
	별 도움 안됨	어느정도 도움	실제 많은 도움	잘 모름	불필요	필요	잘 모름	
전체	54.8	32.8	3.8	8.5	47.7	37.5	14.8	100.0(600)
국공립	55.9	38.2	2.9	2.9	52.9	36.8	10.3	100.0(136)
법인	47.1	47.1	-	5.9	35.3	47.1	17.6	100.0(17)
민간	51.9	33.2	4.1	10.8	46.1	36.5	17.4	100.0(241)
가정	57.5	28.0	4.5	10.0	46.5	38.5	15.0	100.0(200)
직장	83.3	16.7	-	-	66.7	33.3	-	100.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이동 건강관리에 대해서 주치의 제도의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별 도움 안 됨 54.8%, 어느 정도 도움 32.8%, 잘 모름 8.5%, 실제 많은 도움 3.8%로 나타났다.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에는 불필요가 47.7%로 가장 높고, 필요 37.4%, 잘 모름 14.8%로 나타났다. 즉, 주치의 역할이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아서 주치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과제임을 나타냈다. 그런데 시설유형별로는 법인시설이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불필요하다는 비율은 직장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V-3-13 참조).

(2) 부모

한편, 자녀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50.7%만이 보육시설에 주치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49.3%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모른다는 응답이 65.5%로 다른 시설에 비해 높았다(표 IV-3-14 참조).

〈표 IV-3-14〉 서울형 보육시설 주치의 유무 인지 및 서비스 경험

단위: %(명)

구분	인지			서비스 경험		
	알고 있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50.7	49.3	100.0(453)	29.9	70.1	100.0(229)
국공립	57.9	42.1	100.0(259)	32.2	67.8	100.0(149)
법인	58.3	41.7	100.0(12)	14.6	85.7	100.0(7)
민간	34.5	65.5	100.0(142)	32.7	67.3	100.0(49)
가정	55.6	44.4	100.0(36)	15.0	85.0	100.0(20)
직장	100.0	0.0	100.0(3)	0.0	100.0	100.0(3)
X ² (df)	23.82(4) ^{***}			4.77(4)		

주: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주치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주치의 서비스를 받은 경험은 29.9%에 머물렀다. 시설유형별로는 인지율은 민간시설이 낮으나 인지자 중 서비스 이용 경험은 국공립과 민간시설이 3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표 IV-3-14 참조).

다) IP-TV 설치

(1) 시설장

부모가 인터넷을 통하여 아이 활동을 실 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IP-TV는 시설

장, 교사 전원이 동의하에 설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조사 당시 응답시설 중 IP-TV를 설치한 시설은 8.0%, 설치하지 않은 시설은 89.9%이었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과 법인 설치율이 민간과 가정시설보다 높다(표 IV-3-15 참조). 서울형과 비서울형을 비교해본 결과 시설 전체, 민간, 가정 모두 서울형의 경우 설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P-TV 설치시 시설 중 64.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5.2%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이 36.0%, 법인은 100.0%, 민간이 68.4%, 가정이 100.0%, 직장이 50.0%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설립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IV-3-15 참조).

〈표 IV-3-15〉 시설유형별 IP-TV 설치 여부 및 설치시 만족도

단위: %(명)

구 분	설치여부				만족도				
	설치	미설치	잘 모름	계(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전체	8.0	89.9	2.1	100.0(1,268)	2.8	32.4	59.2	5.6	100.0(71)
국공립	27.7	72.3	-	100.0(148)	-	64.0	36.0	-	100.0(25)
법인	21.7	78.3	-	100.0(23)	-	-	100.0	-	100.0(3)
민간	8.7	89.5	1.8	100.0(551)	5.3	18.4	68.4	7.9	100.0(38)
가정	0.8	96.0	3.2	100.0(525)	-	-	100.0	-	100.0(3)
직장	14.3	85.7	-	100.0(21)	-	-	50.0	50.0	100.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그러나 시설장들은 전반적으로 IP-TV가 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다. IP-TV 설치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4.6%이고 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3.2%인 것이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민간과 가정, 직장시설이 국공립과 법인시설보다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P-TV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8.2%이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8.4%이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법인시설의 경우 8% 정도만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민간, 가정, 직장 시설의 경우 약 2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시설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표 IV-3-16 참조).

또한 시설장들은 대체로 교사와 아동 인권 침해 요인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IP-TV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92.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84%이다. 아동보다는 교사 인권 침해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표 IV-3-17 참조).

〈표 IV-3-16〉 시설유형별 IP-TV의 유용성 및 필요성

단위: %(명)

구 분	질 제고 도움					필요성				
	실제 많은 도움	어느 정도 도움	별로 도움 안됨	잘 모름	계(수)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잘 모름	계(수)
전체	2.2	22.4	63.2	12.2	100.0(1,268)	68.4	17.2	1.0	13.4	100.0(1,264)
국공립	0.7	13.5	79.7	6.1	100.0(148)	83.0	8.8	0.7	7.5	100.0(147)
법인	-	17.4	78.3	4.3	100.0(23)	87.0	8.7	-	4.3	100.0(23)
민간	2.2	26.5	61.0	10.3	100.0(551)	65.8	21.7	0.9	11.7	100.0(551)
가정	2.9	20.4	60.8	16.0	100.0(525)	66.6	14.9	1.3	17.2	100.0(525)
직장	-	33.3	47.6	19.0	100.0(21)	61.9	23.8	-	14.3	100.0(21)
X ² (df)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3-17〉 시설유형별 IP-TV의 교사와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교사					아동				
	매우 침해	어느 정도 침해	침해 하지 않음	모름	계(수)	매우 침해	어느 정도 침해	침해 하지 않음	모름	계(수)
전체	43.4	49.4	2.4	4.8	100.0(1,270)	26.5	57.5	10.6	5.4	100.0(1,270)
국공립	60.1	39.9	-	-	100.0(148)	41.2	51.4	6.8	0.7	100.0(148)
법인	56.5	34.8	8.7	-	100.0(23)	52.2	43.5	4.3	-	100.0(23)
민간	42.6	50.4	2.9	4.2	100.0(552)	26.1	57.2	11.8	4.9	100.0(552)
가정	39.0	51.7	2.5	6.8	100.0(526)	21.3	60.3	11.0	7.4	100.0(526)
직장	42.9	47.6	-	9.5	100.0(21)	33.3	52.4	4.8	9.5	100.0(21)
X ² (df)	-					42.74(12) ^{***}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2) 부모

서울형 비서울형에 관계없이 현재 자녀가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IP-TV의 필요성과 인권침해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시설장에 비하여 IP-TV에 대한 필요성은 높고 아동 및 교사 인권침해 인식은 약하다.

구체적으로, 먼저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부모의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부모들의 요구가 높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연령별로는 영아가 유아보다 10% 정도 높게 응답하여 차이를 나타냈다(표 IV-3-18 참조). 모취업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³⁵⁾

〈표 IV-3-18〉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IP-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부모 인식

단위: %(명)

구 분	매우 필요	필요	불필요	잘 모름	계(수)	X ² (df)
전체	28.2	55.7	14.4	1.7	100.0(1,559)	25.33(3) ^{***}
영아	31.1	55.8	11.9	1.3	100.0(1,029)	
유아	22.8	55.4	19.4	2.4	100.0(531)	

주: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표 IV-3-19〉 IP-TV의 교사와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한 부모 인식

단위: %(명)

구 분	교사				아동				계(수)
	매우 침해	침해	침해하지 않음	잘 모름	매우 침해	침해	침해하지 않음	잘 모름	
전체	5.1	43.7	49.6	1.7	1.4	15.0	82.0	1.6	100.0(1,558)
영아	5.1	40.3	53.0	1.7	1.2	12.2	85.2	1.5	100.0(1,028)
유아	5.1	50.4	42.8	1.7	2.1	20.2	75.8	1.9	100.0(530)
X ² (df)	15.33(3) ^{**}				21.23(3) ^{***}				

주: ** p< .01,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IP-TV 설치가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가에 대하여 침해한다 48.8%, 침해하지 않는다 49.6%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별로는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응답이 유아보다 자녀가 10% 가량 높게 응답하였다. IP-TV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부모의 82.0%가 침해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교사 인권 침해의 경우 침해한다와 침해하지 않는다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아동 인권 침해는 침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표 IV-3-19 참조).

현재 자녀가 서울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의 IP-TV 설치 여부와 이용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IP-TV를 설치한 시설은 11.6%에 불과하였다. 또한 현재 자녀가 이용하는 서울형어린이집이 IP-TV를 설치한 경우, 12.1%의 부모만이 이용자 가입을 하였다고 응답하여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앞서 IP-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전체 부모의 80%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한 것과 비교해 보면,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이용은 많이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가 20.0%, 미취업모 3.7%로 가입하여 취업모가 미취

업모에 비해 가입을 많이 한 것으로, 요구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표 IV-3-20 참조).
 자녀가 이용하는 서울형어린이집에서 IP-TV를 설치한 경우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미이용이 76.2%로 다수이고, 이용할 경우 주 2~3회 이용이 9.5%, 가끔 이용이 8.4%, 매일 이용이 5.9% 순으로 나타났다(표 IV-3-20 참조).

〈표 IV-3-20〉 IP-TV 이용자 가입 여부 및 가입시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가입		가입시 이용빈도					
	가입비율	(수)	매일이용	주2-3회	주1회	가끔	미이용	계(수)
전체	12.1	(53)	5.9	9.5	-	8.4	76.2	100.0(24)
자녀연령								
영아	9.1	(33)	6.7	6.7	0.0	6.7	80.0	100.0(15)
유아	20.0	(20)	0.0	11.1	0.0	11.1	77.8	100.0(9)
X ² (df)	1.29(1)							
모취업								
취업	20.0	(25)	7.1	7.1	0.0	0.0	85.7	100.0(14)
미취업	3.7	(27)	0.0	10.0	0.0	20.0	70.0	100.0(10)
X ² (df)	3.37(1) [#]							

주: # p< .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표 IV-3-21〉 설치한 경우 타 부모 관찰시 걱정에 대한 응답

단위: %(명)

구분	전혀아님	아님	걱정됨	매우걱정됨	계(수)	X ² (df)
전체	29.6	60.4	10.0	0.0	100.0(53)	
자녀연령						
영아	42.4	45.5	12.1	0.0	100.0(33)	7.61(2) [*]
유아	10.5	84.2	5.3	0.0	100.0(19)	
모취업						
취업	26.9	65.4	7.7	0.0	100.0(26)	0.55(2)
미취업	33.3	55.6	11.1	0.0	100.0(27)	

주: * p<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자녀가 이용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IP-TV를 설치한 경우, 자녀의 활동을 자녀 부모 이외에 다른 부모나 성인들도 관찰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해 걱정된다고 응답한 부모는 10.0%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부모들은 IP-TV를 통한 자녀의 활동 공개를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자녀가 타인에게 노출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부모는 소수임을 알 수 있다. 자녀연령별로는 유아 부모에 비하여 영아의 부모가 걱정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나타냈다. 모취업여부별 차이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취업모가 걱정한다는 비율이 약간 낮다(표 IV-3-21 참조).

라) 자율장학

서울 시설장들은 자율장학에 대하여 긍정적 사고를 하고 있으며, 잘 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된 서울형 어린이집 중 2009년 자율장학모임 참여 시설은 전체의 64.6%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법인 94.1%, 직장 66.7%, 가정 55.5%, 민간 53.3% 순으로 자율장학모임 참여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IV-3-22 참조).

〈표 IV-3-22〉 시설유형별 자율장학 모임 참여 여부 및 보육 질적 수준 제고에 도움 효과 의견

단위: %(명)

구 분	참여여부		보육의 질 제고에 도움					계(수)
	참여	미참여	도움 안됨	약간 도움	많은 도움	잘 모르겠음	비해당	
전체	64.6	35.4	11.0	33.9	13.9	5.8	35.4	100.0(599)
국공립	94.1	5.9	19.1	55.9	16.2	2.9	5.9	100.0(136)
법인	94.1	5.9	11.8	64.7	11.8	5.9	5.9	100.0(17)
민간	53.3	46.7	7.9	25.8	14.6	5.0	46.7	100.0(240)
가정	55.5	44.5	9.5	25.5	11.5	9.0	44.5	100.0(200)
직장	66.7	33.3	-	50.0	16.7	-	33.3	100.0(6)
$X^2(df)$	78.88(4)***							

주: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3-23〉 시설유형별 자율장학의 필요성

단위: %(명)

구 분	전혀 불필요	별 필요 없음	필요한 편	매우 필요	잘 모름	계(수)
전체	3.2	19.8	57.5	12.9	6.5	100.0(1,270)
국공립	2.7	17.6	56.8	22.3	0.7	100.0(148)
법인	-	13.0	69.6	17.4	-	100.0(23)
민간	2.2	16.7	60.7	14.1	6.3	100.0(552)
가정	4.8	24.3	54.4	7.6	8.9	100.0(526)
직장	-	14.3	42.9	42.9	-	100.0(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자율장학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필요한 지를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자율장학이 질적 수준 제고에 도움을 주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도움이 되는지는 전체를 기준으로 약간 도움이 됨 33.9%, 많은 도움이 됨 13.9%로 참여자의 약 7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육시설 자율장학 필요성에는 필요하다고 70.4%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시설 유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V-3-22, 표 IV-3-23 참조).

보육시설 자율장학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9.0%가 전문가 지원이라고 응답하였고, 25.5%가 교사연수, 21.7%는 보조(대체)교사 지원, 16.6%는 소요비용 지원 순이었다. 시설유형별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에 국공립은 보조(대체)교사 35.8%, 법인은 교사연수39.1%, 민간, 가정, 직장은 전문가 지원 31.0%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민간, 가정, 전체시설 중 서울형 비서울형을 비교해 보면 서울형은 전문가 지원을 지정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비서울형은 교사연수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24 참조).

〈표 IV-3-24〉 시설유형별 자율장학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명)

구 분	비용 지원	전문가 지원	교사 연수	보조 (대체)교사	기타	별로 없음	잘모름	계(수)
전체	16.6	29.0	25.5	21.7	0.5	1.3	5.4	100.0(1,270)
국공립	10.1	33.8	17.6	35.8	-	2.0	0.7	100.0(148)
법인	13.0	30.4	39.1	17.4	-	-	-	100.0(23)
민간	18.8	31.0	27.9	15.4	0.4	0.9	5.6	100.0(552)
가정	16.2	24.9	25.1	24.5	0.8	1.7	6.8	100.0(526)
직장	19.0	42.9	14.3	19.0	-	-	4.8	100.0(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마) 공동구매

서울시는 보육시설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필요 여부에 대한 시설장 의견조사 결과는 <표 IV-3-25>과 같이 응답자 중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40.3%이고, 필요 없다 53.1%로 필요없다는 의견이 다소 높다.

공동구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로는 43.1%가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28.4%가 소량으로 구하기 힘든 재료 구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15.9%는 공동구매에 기업 참여로 재료의 안전과 신선도 등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11.6%는 식재료가 어린이집으로 직접 배달되어 편리하기 때문으로 응답하

였다(표 IV-3-26 참조).

〈표 IV-3-25〉 시설유형별 공동구매의 필요성

단위: %(명)

구 분	전혀 불필요	별로 필요없음	필요한 편	매우 필요	잘 모름	계(수)
전체	13.1	40.0	33.6	6.7	6.5	100.0(1,270)
국공립	19.6	48.0	23.0	6.8	2.7	100.0(148)
법인	21.7	43.5	30.4	-	4.3	100.0(23)
민간	11.8	42.2	32.8	6.7	6.5	100.0(552)
가정	12.4	35.2	38.0	7.0	7.4	100.0(526)
직장	14.3	42.9	23.8	4.8	14.3	100.0(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3-26〉 시설유형별 공동구매가 필요한 이유

단위: %(명)

구 분	비용 절약	소량 구입 용이	배달로 편리	재료 신뢰	기타	계(수)
전체	43.1	28.4	11.6	15.9	1.0	100.0(510)
국공립	34.9	18.6	16.3	27.9	2.3	100.0(43)
법인	42.9	28.6	28.6	-	-	100.0(7)
민간	48.2	26.6	9.6	14.2	1.4	100.0(218)
가정	40.3	32.2	12.3	14.8	0.4	100.0(236)
직장	33.3	16.7	-	50.0	-	100.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3-27〉 시설유형별 공동구매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 분	비용 절약 효과 없음	고급 식재료 선택 제한	배달시간 등 불편	1개 기업 집중 구매	기타	계(수)
전체	26.7	21.7	22.0	24.8	4.9	100.0(674)
국공립	20.0	27.0	12.0	37.0	4.0	100.0(100)
법인	6.7	26.7	33.3	33.3	-	100.0(15)
민간	27.2	18.8	21.1	26.8	6.0	100.0(298)
가정	29.7	22.5	26.9	16.9	4.0	100.0(249)
직장	33.3	25.0	8.3	25.0	8.3	100.0(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공동구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경우 그 이유로는 26.7%가 공동구매의 가장 큰 장점인 비용 절약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24.8%는 1개 기업에 집중 구매를 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고, 22.0%는 야간배달 등 배달시간 등이 불편하고

21.7%가 고급 식재료 선택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27 참조).

공동구매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곧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므로 참여 기업 복수화로 선택권 보장 등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육시설 급식재료 공동구매 시행이 하반기 이후 본격 추진되어 대부분 9, 10월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시설장들이 공동구매에 대한 평상시의 생각으로 답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나. 부산 공보육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1) 선정조건의 적절성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평가지표 중 서울시 공인 어린이집 선정시 반영하지 않는 엄격한 수준의 4개 항목인 시설 규모 제한, 동일 장소 3년 이상, 2개 이상 기관 운영 제한, 임대시설 마이너스 점수 반영에 대하여 적절성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원장들은 다수가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5점 척도로도 5.0~6.4점에 분포한다. 항목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동일 장소 3년 이상, 2개 이상 기관 운영 제한 조건이 시설 규모 제한이나 임대시설 마이너스 점수 부여보다는 적절성 점수가 높은 편이다(표 IV-3-28 참조).

〈표 IV-3-28〉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평가지표 기준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부적절 ←-----→ 매우 적절							계(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시설 규모 제한	4.0	4.0	16.0	-	20.0	36.0	20.0	100.0(25)	5.2(1.7)
동일 장소 3년 이상	-	-	4.0	8.0	4.0	36.0	48.0	100.0(25)	6.2(1.1)
2개 이상 기관 운영 제한	-	-	12.5	-	4.2	-	83.3	100.0(24)	6.4(1.4)
임대시설 마이너스 점수 반영	8.7	-	17.4	8.7	17.4	21.7	26.1	100.0(23)	5.0(1.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표 IV-3-29〉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공보육 조건의 강화완화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강화할 필요성	22.7	77.3	100.0(22)
완화할 필요성	52.4	47.6	100.0(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완화가 52.4%, 강화가 22.7%로 완화가야 한다는 의견이 두배 정도로 더 많다. 그러나 강화하여야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다(표 IV-3-29 참조).

2) 재정지원의 적절성

재정 지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2.5%이고 37.5%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만은 인건비 지원 기준 호봉이 1호봉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에 대한 현실화 및 서울시와 같이 기타 운영비 10% 등 보조금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소리로 구체화 된다

〈표 IV-3-30〉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지정시설에 대한 지원 수준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잘 모름	계(수)
전체	-	62.5	37.5	-	-	100.0(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3) 사후관리의 적절성

부산시는 공보육 사업은 사후관리로 매년말 정기평가 및 3년 단위 종합평가를 통해 재지정하고, 평가 결과 3회 연속 하위 10% 시설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후관리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44.0%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보는 반면에 52.0%는 지나치므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으로, 부정적 응답이 다소 많으나 적절하다는 비율도 적지 않아서 두 의견이 공존한다.

사후관리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경우 비교 대상은 서울시 공인 어린이집으로 서울시는 3년단위 종합평가나 퇴출 제도가 없고 안심모니터링 평가만 하는데 비하여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사후관리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표 IV-3-31〉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지정시설 평가의 적절성

단위: %

구분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강화 필요	완화 필요	잘 모름	계(수)
전체	-	44.0	-	52.0	4.0	10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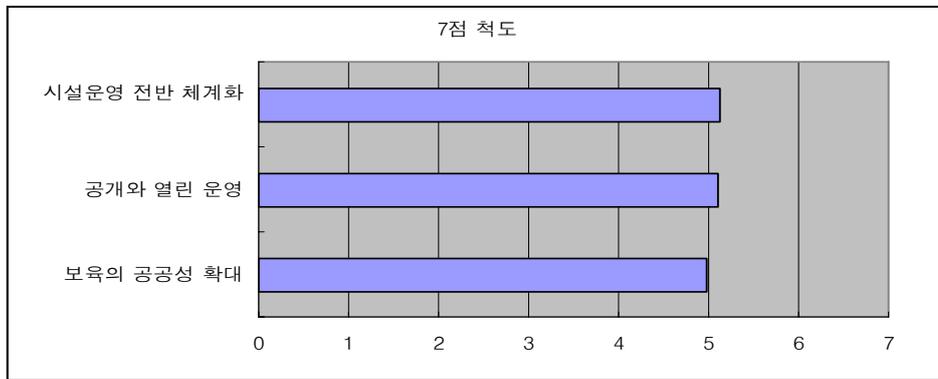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4. 공인 어린이집의 운영 개선 효과

가. 서울형 어린이집의 운영 개선 효과

1) 공공성 및 운영 전반

최근 1년간 서울시 보육정책의 영향으로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3가지 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변화가 있다는 비율은 시설운영 체계화 72.2%, 어린이집 열린 운영 71.7%, 보육의 공공성 확대 69.4%이다.



[그림 IV-4-1] 보육의 공공성 및 운영 개선 7점척도 평균

<표 IV-4-1> 보육의 공공성 및 운영 개선 개요

구분	변화 없음 ←-----→ 변화 많음							계(수)	평균(표준편차)
	1	2	3	4	5	6	7		
공공성확대	7.2	5.7	4.9	12.8	21.6	29.0	18.8	100.0(1,266)	4.98(1.7)
열린 운영	8.1	5.3	5.0	10.7	17.0	28.7	25.3	100.0(1,267)	5.10(1.8)
시설체계화	7.0	5.7	4.9	10.3	18.7	30.5	23.0	100.0(1,266)	5.12(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7점 척도로는 평균 4.98~5.12점이다. 전체적으로 상위 점수는 아니지만 다수가 어린이집 운영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보육의 공

공성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법인, 가정 시설 순으로 점수가 높았고, 국공립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이 공개되고 열린 운영 되고 있다는 응답은 민간, 가정, 직장이 가장 높았고, 국공립은 전체 응답보다도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시설운영 체계화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상당한 수준에 있는 국공립을 제외한 시설유형에서는 열린 운영 등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IV-4-2 참조).

〈표 IV-4-2〉 시설유형별 보육의 공공성 및 운영 개선 7점 척도 평균

구 분	단위:%(명)			
	공공성 확대	열린 운영	시설체계화	(수)
전체	4.98(1.7)	5.10(1.8)	5.12(1.7)	(1,266)
국공립	4.32(2.2)	4.45(2.3)	4.25(2.2)	(147)
법인	5.17(1.6)	5.17(1.8)	5.30(1.7)	(23)
민간	5.09(1.5)	5.22(1.6)	5.24(1.6)	(551)
가정	5.06(1.6)	5.16(1.7)	5.24(1.7)	(524)
직장	4.67(2.1)	5.05(2.0)	4.76(1.9)	(21)
F	6.44 ^{***}	5.51 ^{***}	10.70 ^{***}	

주: *** p< .001.

그러나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공인 어린이집과 비공인 어린이집 간에 의견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 어린이집의 열린 운영, 시설운영 체계화 항목 모두에서 공인 어린이집과 비공인 어린이집이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표 IV-4-3 참조).

〈표 IV-4-3〉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공개와 열린 운영의 개선 정도

구 분	단위: 점(명)					
	공공성 확대		열린 운영		시설체계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98	1.74	5.10	1.83	5.12	1.77
서울형	4.98	1.88	5.07	1.98	5.12	1.91
비서울형	4.98	1.60	5.13	1.69	5.11	1.63
(수)	(1,266)		(1,267)		(1,266)	
t	-0.004		-0.54		0.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2) 아동 모집 및 수입

서울형 공인 이후 일부 어린이집에서 입소아동과 대기 아동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IV-4-4 참조).

입소아동의 증가율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77.0%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18.7%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시설유형별로 보았을 때 민간은 29.5%, 가정은 18.5%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국공립은 0.7%가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여 민간과 가정 시설에 비해 국공립은 공인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서울형 공인 이후 대기아동 증가율은 전체 26.7%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은 37.3%, 가정은 30.5%, 직장은 33.3%로 전체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국공립은 2.9%로 국공립은 공인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공인 받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많아지면서 국공립에만 영유아가 몰리는 현상이 약간은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IV-4-4> 시설유형별 서울형 공인 이후 입소아동 및 대기아동 변동

단위: %(명)

구 분	입소 아동				대기 아동					계(수)
	증가	감소	별 차이 없음	잘 모름	증가	감소	별 차이 없음	잘 모름	대기자 없음	
전체	18.7	0.5	77.0	3.8	26.7	0.3	64.2	3.5	5.3	100.0(600)
국공립	0.7	-	97.8	1.5	2.9	1.5	94.1	1.5	-	100.0(136)
법인	11.8	-	88.2	-	17.6	-	82.4	-	-	100.0(17)
민간	29.5	0.8	66.0	3.7	37.3	-	51.5	4.1	7.1	100.0(241)
가정	18.5	0.5	75.0	6.0	30.5	-	57.5	4.5	7.5	100.0(200)
직장	16.7	-	83.3	-	33.3	-	66.7	-	-	100.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4-5>는 서울형 공인 이후 보육시설의 총 수입 변화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로, 차이 없음은 60.8%, 증가는 31.8%, 감소는 7.4%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직장은 50.0%, 민간은 40.1%, 가정은 38.2%가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국공립은 9.6%만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민간, 가정 시설의 경우 감소한 비율이 9%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소수이지만 공인 되면서 수입 감소가 나타난 시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출은 국공립에 비해 민간, 가정, 직장 시설에서 약 50%가 넘는 비율이 지

출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여 이는 시설이 인건비 지원 등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였고, 동시에 지출도 역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표 IV-4-5 참조).

〈표 IV-4-5〉 시설유형별 서울형 공인 이후 보육시설의 총 수입과 지출

단위: %(명)

구 분	수입			지출			계(수)
	증가함	감소함	불변	증가함	감소함	불변	
전체	31.8	7.4	60.8	47.0	1.3	51.7	100.0(595)
국공립	9.6	1.5	89.0	10.3	0.7	89.0	100.0(136)
법인	11.8	-	88.2	29.4	-	70.6	100.0(17)
민간	40.1	10.5	49.4	59.9	0.8	39.2	100.0(237)
가정	38.2	8.5	53.3	58.1	2.5	39.4	100.0(199)
직장	50.0	-	50.0	50.0	-	50.0	100.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3) 교사

교사와 관련해서는 처우 개선 및 관리 체계화 개선 효과가 있다는 시설은 다수이나 아직 교사의 이직 등 관리와 태도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관리 체계화에 대한 7점 척도 조사에서 개선이 있었는지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69.4%는 변화가 있었고, 17.8%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국공립은 53.7%로 다른 시설보다도 다소 낮았다. 7점 척도로 보면 국공립은 3.74점이고, 민간 가정은 5.3점 수준이다(표 IV-4-6 참조).

〈표 IV-4-6〉 시설유형별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관리 체계화의 개선 정도

단위: %(명)

구 분	변화 없음 ←-----→ 변화 많음							계(수)	평균(표준편차)
	1	2	3	4	5	6	7		
전체	7.2	5.7	4.9	12.8	21.6	29.0	18.8	100.0(1,267)	5.11(1.8)
국공립	17.0	13.6	6.1	9.5	12.2	20.4	21.1	100.0(148)	3.74(2.2)
법인	8.7	-	4.3	8.7	30.4	26.1	21.7	100.0(23)	5.30(1.7)
민간	4.7	4.7	4.2	16.7	20.9	30.7	18.1	100.0(551)	5.30(1.6)
가정	6.9	4.2	5.5	10.1	24.6	30.2	18.5	100.0(524)	5.31(1.7)
직장	9.5	19.0	-	4.8	23.8	19.0	23.8	100.0(21)	4.81(1.9)
X ² (df)/F									25.55 ^{***}

주: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공인 어린이집과 비공인 어린이집 간 7점 척도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공인 어린이집은 5.68점, 비공인 어린이집은 5.04점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결과에 차이를 보인 이유는 공인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임금이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IV-47 참조).

〈표 IV-4-7〉 민간·가정 서울형여부별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관리 체계화의 개선 정도
단위: 점(명)

구 분	민간·가정 전체		민간		가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서울형	5.68	2.00	5.60	1.6	5.79	1.68
비서울형	5.04	1.68	5.07	1.6	5.01	1.69
전체	5.35	1.81	5.30	1.6	5.31	1.72
(수)	873		507		366	
t	1.90 [#]		3.68 ^{***}		5.14 ^{***}	

주: # p< .1,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다음은 서울형 공인 이후 교사관리와 교사태도가 달라졌는지에 응답한 결과로, 달라졌다는 항목은 교사의 자존감은 6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61.7%가 교사의 심리적 안정감, 55.5%는 교사의 업무 적극성이 변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교사 채용과 교사이직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와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공인제도가 아직까지는 교사채용과 이직에 관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 IV-48 참조).

〈표 IV-4-8〉 서울형 공인 이후 교사관리 및 태도

단위: %(명)

구 분	매우 개선	비교적 개선	별 차이 없음	잘 모름	계(수)
교사 이직	15.3	31.5	48.2	5.0	100.0(600)
교사 채용 어려움	16.7	30.8	46.3	6.2	100.0(600)
교사의 심리적 안정	21.0	40.7	36.0	2.3	100.0(600)
교사의 자존감	24.2	41.5	32.2	2.2	100.0(600)
교사의 업무 적극성	16.5	39.0	42.2	2.4	100.0(6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시설유형별로 보면, 먼저 민간과 가정 시설은 교사이직, 교사채용 어려움, 교사 심리적 안정, 교사의 자존감, 교사 업무 적극성 문항에서 개선이 되었다는 응답이 약 70%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국공립의 경우는 대부분 문항에서 약 15% 미만만이 개

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국공립과 민간, 가정시설과 차이가 나타난 것은 민간 시설이 공인 어린이집이 되면서 국공립 수준의 인건비를 받게 되어 교사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표 IV-4-9 참조).

〈표 IV-4-9〉 시설유형별 서울형 공인 이후 교사관리 및 태도 개선 비율

단위: %(명)

구분	교사이직		교사채용 어려움		심리적 안정		교사 자존감		업무 적극성		(수)
	매우	비교적	매우	비교적	매우	비교적	매우	비교적	매우	비교적	
	전체	15.4	31.6	16.7	30.8	21.0	40.7	24.2	41.6	16.5	
국공립	-	8.1	-	5.9	1.5	11.0	4.4	18.4	2.9	19.9	(136)
법인	5.9	29.4	-	41.2	17.6	23.5	5.9	41.2	5.9	47.1	(17)
민간	18.3	39.2	19.5	39.4	20.7	52.7	24.6	52.1	17.4	44.0	(240)
가정	23.6	38.7	26.5	36.5	35.5	47.0	39.0	44.5	26.1	44.7	(199)
직장	-	33.3	-	33.3	-	66.7	16.7	50.0	-	66.7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4) 재정 운영

가) 재정운영 안정화

서울시 보육정책은 보육시설의 재정운영 안정화와 투명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IV-4-10>를 보면 조사 대상 시설장 중 재정운영 안정화에 개선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2%이고,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응답은 23.3%이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민간, 가정시설은 60%대이고 법인, 직장은 70%대로 약간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국공립은 47.3%로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회계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재정 운영 투명화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73.5%이고 거의 변화가 없다는 17.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유형에서는 전체 응답비율과 비슷하게 나왔으나 국공립은 52.7%로 다소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국공립이 다른 유형 시설보다 재정 운영 안정화 및 투명화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이유는 국공립시설은 운영 이후 지속적으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 받으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에 대한 재정 감사를 받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V-4-10〉 시설유형별 시설의 재정운영 안정화와 투명화 개선 정도

단위: %(명)

구 분	변화 없음 ←-----→			변화 많음				계(수)	평균(표준편차)
	1	2	3	4	5	6	7		
안정화									
전체	10.6	6.5	6.2	12.6	19.3	27.1	17.8	100.0(1,266)	4.76(1.9)
국공립	23.0	12.8	4.1	12.8	8.8	21.6	16.9	100.0(148)	4.04(2.2)
법인	8.7	4.3	-	8.7	34.8	21.7	21.7	100.0(23)	5.09(1.7)
민간	7.5	6.2	7.1	12.2	20.4	29.5	17.3	100.0(550)	4.89(1.7)
가정	10.5	4.8	6.3	13.5	20.2	26.1	18.5	100.0(524)	4.81(7.8)
직장	9.5	14.3	-	4.8	23.8	33.3	14.3	100.0(21)	4.76(1.9)
X ² (df)/F				-					6.39***
투명화									
전체	8.1	4.7	4.6	9.1	12.5	25.7	35.3	100.0(1,267)	5.31(1.8)
국공립	23.6	9.5	4.1	10.1	4.7	16.2	31.8	100.0(148)	4.39(2.4)
법인	8.7	4.3	-	8.7	8.7	39.1	30.4	100.0(23)	5.43(1.8)
민간	5.4	3.4	5.1	9.6	14.3	27.2	34.8	100.0(551)	5.45(1.7)
가정	6.5	4.6	4.4	8.6	12.8	26.3	36.8	100.0(524)	5.43(1.8)
직장	9.5	9.5	4.8	-	14.3	23.8	38.1	100.0(21)	5.24(2.1)
X ² (df)/F				-					10.47***

주: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4-11〉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시설의 재정운영 개선 정도

단위: 점(명)

구 분	안정화						투명화					
	전체		민간		가정		전체		민간		가정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서울형	4.78	2.04	5.1	1.82	4.91	2.01	5.29	2.07	5.63	1.77	5.56	1.90
비서울형	4.74	1.74	4.73	1.71	4.74	1.76	5.33	1.71	5.31	1.65	5.35	1.74
전체	4.76	1.89	4.89	1.77	4.81	1.86	5.31	1.89	5.45	1.71	5.43	1.80
(수)	(1,266)		(550)		(524)		(1267)		(551)		(524)	
t	0.46		2.38*		0.99		-0.35		2.23*		1.25	

주: * p<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공인 어린이집과 비공인 어린이집을 살펴보면 이들 간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 공인 어린이집의 경우 재정운영 안정화 및 투명화 개선 점수가 평균 5점대였고, 비공인 어린이집은 평균 4점대인 것으로 나타나 공인 이후 재정지원과 재정감사가 재정운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

단된다(표 IV-4-11 참조).

나) 재무회계규칙 지출 준수

어린이집에서 재무회계규칙 지출에서 기타 운영비 항목 10%를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4%이고, 지키지 못한다는 25.6%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설종류별로 보면 국공립이나 직장의 경우 잘 지킨다가 96.2%인 반면에 법인, 민간, 가정의 경우는 약 73.4% 만이 잘 지킨다고 응답하여 국공립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표 IV-4-12 참조).

〈표 IV-4-12〉 시설유형별 ‘기타 운영비 항목 10%’ 지출 준수 여부

단위: %(명)

구 분	잘 지키	지키지 못함	계(수)	X ² (df)
전체	74.4	25.6	100.0(1,268)	
국공립	97.3	2.7	100.0(148)	
법인	78.3	21.7	100.0(23)	
민간	63.3	36.7	100.0(551)	86.22(4) ^{***}
가정	78.7	21.3	100.0(525)	
직장	95.2	4.8	100.0(21)	

주: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4-13〉 민간·가정 시설 서울형·비서울형·민간·가정 서울형·비서울형 ‘기타 운영비 10%’ 지출 준수 여부

단위: %(명)

구 분	전체		민간		가정	
	서울형	비서울형	서울형	비서울형	서울형	비서울형
잘 지키	69.8	71.5	62.2	64.2	79.0	78.5
지키지 못함	30.2	28.5	37.8	35.8	21.0	21.5
전체(수)	100.0(441)	100.0(635)	100.0(241)	100.0(310)	100.0(200)	100.0(325)
X ² (df=1)	0.34		0.22		0.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공인 어린이집과 비공인 어린이집 간을 비교해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표 IV-4-13 참조). 미미하지만 기타 운영비 10%를 지키지 못한다는 비율이 서울형이 비서울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형의 경우 보육료가 국공립 수준으로 인하여 기타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운영비’ 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재무회계 관련 사항 준수는, 완벽하게 지킨다는 비율은 결산서 및 수입·지출에 관

한 서류 구비 48.2%,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입·지출에 포함하여 관리 62.3%, 시설명의 통장과 법인카드 사용 62.3%, 지출에 따른 영수증 및 근거서류 및 보관 57.5%로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건비 지원 시설들이 준수 비율이 높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표 IV-4-14 참조).

〈표 IV-4-14〉 시설유형별 재무회계 관련 사항 준수 비율

구 분	서류구비	수입지출서류	통장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보관	(수)
전체	48.2	51.4	62.3	57.5	(1,270)
국공립	86.5	87.8	91.9	89.9	(148)
법인	78.3	82.6	91.3	87.0	(23)
민간	40.9	44.4	56.5	50.5	(552)
가정	42.4	46.2	57.8	53.4	(526)
직장	81.0	76.2	85.7	81.0	(21)
X ² (df=16)	136.45**	126.13***	96.91***	107.10***	

주: ** p< .01, *** p< .001.
 X² 값은 5개 보기에 대한 응답을 기준 것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4-15〉 민간가정 보육시설 재무회계 관련 사항 준수 비율

단위: 점(명)

구 분	서류구비	수입지출서류	통장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보관	(수)
전체					
서울형	61.7	66.0	78.5	70.2	(600)
비서울형	36.1	38.4	47.8	46.1	(670)
X ² (df=4)	114.81***	129.37***	177.35***	110.57***	
민간					
서울형	52.3	56.0	71.0	61.4	(241)
비서울형	32.2	35.4	45.3	42.1	(311)
X ² (df=4)	38.18***	40.84***	57.70***	35.59***	
가정					
서울형	54.5	61.5	78.0	66.5	(200)
비서울형	35.0	36.8	45.4	45.4	(326)
X ² (df=4)	27.97***	38.52***	71.23***	32.85***	

주: *** p< .001.
 X² 값은 5개 보기에 대한 응답을 기준 것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그러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공인 어린이집과 비공인 어린이집 간에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공인 어린이집은 모든 문항에서 잘 지키고 있다고 52.3%~78.5%가 응답한 반면 비공인 어

린이집은 32.2%~47.8%에 분포한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인 어린이집의 경우 안심모니터링, 교차장학 등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받기 때문에 비공인 어린이집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보인다(표 IV-4-15 참조).

5) 일과 운영

다음은 일과 운영의 실태 차이를 조사하였다. 대부분 시설에서 표준보육과정을 지침에 따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7점 척도에서 5점부터 7점까지 합한 비율을 보면 정기적으로 보육과정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운영에 반영한다는 91.6%가, 일과를 교과목 형태로 구분하지 않으며, 대부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94.6%, 대집단 활동과 소집단·개별 활동, 정적활동과 동적활동, 실내활동과 실외활동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 있다는 96.8%였다.

39인 이하 어린이집도 7점 척도에서 5점부터 7점까지 합한 비율이 일상적 양육과 자유선택활동, 정적활동과 동적활동, 활동과 전이시간 등이 일과 내에 균형 있게 계획되어 있다는 96.9%, 실외활동이나 일상생활 관련 활동이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94.0%, 영유아가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을 연령별로 다르게 계획하여 실시한다는 95.9%가 응답하였다(표 IV-4-16 참조).

〈표 IV-4-16〉 표준보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							계(수)	평균(표준편차)
	1	2	3	4	5	6	7		
40인 이상									
평가반영	0.7	0.7	1.8	5.4	16.0	36.0	39.6	100.0(445)	6.01(1.1)
통합일과운영	0.9	0.7	1.6	4.3	14.1	35.2	43.3	100.0(446)	6.09(1.1)
활동계획	0.7	-	1.1	1.3	11.9	34.5	50.4	100.0(446)	6.29(0.9)
39인 이하									
일과계획	-	-	0.2	2.9	17.4	39.3	40.2	100.0(824)	6.16(0.8)
활동 운영	-	0.2	1.2	4.5	17.7	34.6	41.7	100.0(824)	6.10(0.9)
영유아 선택	-	0.1	0.5	3.5	17.4	36.1	42.4	100.0(823)	6.16(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이러한 결과는 시설유형에서 40인 이상 시설은 민간과 법인 시설이 대체로 6점 미만으로 타 유형 시설에 비하여 점수가 낮은 쪽으로 차이를 보였고, 39인 이하 시설

은 민간 어린이집 점수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시설유형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V-4-17 참조).

〈표 IV-4-17〉 시설유형별 표준보육과정 운영 7점 척도 평균

단위: %(명)

구 분	40인 이상				39인 이하			
	평가반영	통합일과 운영	활동계획	(수)	일과계획	활동 운영	영유아 선택	(수)
전체	6.01(1.1)	6.09(1.1)	6.29(0.9)	(445)	6.16(0.8)	6.10(0.9)	6.16(0.8)	(824)
국공립	6.31(0.9)	6.44(0.7)	6.56(0.7)	(140)	6.38(0.5)	6.13(0.9)	6.25(1.0)	(8)
법인	5.85(1.7)	5.95(1.2)	5.95(1.5)	(20)	6.67(0.5)	6.33(1.1)	6.33(0.5)	(3)
민간	5.83(1.1)	5.91(1.1)	6.16(0.7)	(269)	6.13(0.8)	6.00(1.0)	6.18(0.9)	(282)
직장	6.69(0.6)	6.19(1.5)	6.29(0.9)	(16)	6.80(0.4)	6.40(0.8)	6.60(0.8)	(5)
가정	-	-	-	-	6.17(0.8)	6.16(0.9)	6.14(0.8)	(526)
F	8.56***	7.75***	7.20***		1.25	1.47	0.45	

주: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그리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공인 어린이집과 비공인 어린이집 간을 비교해본 결과 40인 이상 시설은 공인 어린이집이 비공인 어린이집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39인 이하 시설은 일과계획에서는 민간과 가정 모두에서 공인 어린이집이 비공인 어린이집보다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고, 활동운영은 가정시설에서만 공인 어린이집이 비공인 어린이집 보다 높았고 선택활동은 두 유형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IV-1-18, 표 IV-1-19 참조).

〈표 IV-4-18〉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표준보육과정 운영: 40인 이상

단위: 점(명)

구 분	평가 반영		통합일과운영		활동계획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서울형	5.86	1.09	6.02	1.18	6.19	0.98
비서울형	5.80	1.13	5.80	1.16	6.14	0.90
전체	5.83	1.11	5.91	1.17	6.16	0.94
(수)		(269)		(270)		(270)
t		0.50		1.57		0.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4-19〉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표준보육과정 운영: 39인 이하
단위: 점(명)

구 분	민간·가정 전체		민간		가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과계획						
서울형	6.24	0.75	6.25	0.77	6.23	0.75
비서울형	6.11	0.87	6.06	0.90	6.13	0.85
전체	6.16	0.82	6.13	0.86	6.17	0.81
t	2.23*		1.81#		1.48	
활동운영						
서울형	6.16	0.93	5.96	1.10	6.25	0.81
비서울형	6.07	0.96	6.02	0.94	6.10	0.97
전체	6.10	0.95	6.00	1.01	6.16	0.92
t	1.28		-0.43		1.80#	
영유아선택						
서울형	6.24	0.78	6.29	0.74	6.21	0.78
비서울형	6.11	0.93	6.11	1.00	6.10	0.90
전체	6.16	0.88	6.18	0.91	6.14	0.86
t	2.07*		1.64		1.40	
(수)	(823)		(281)		(526)	

주: # p< .1, * p<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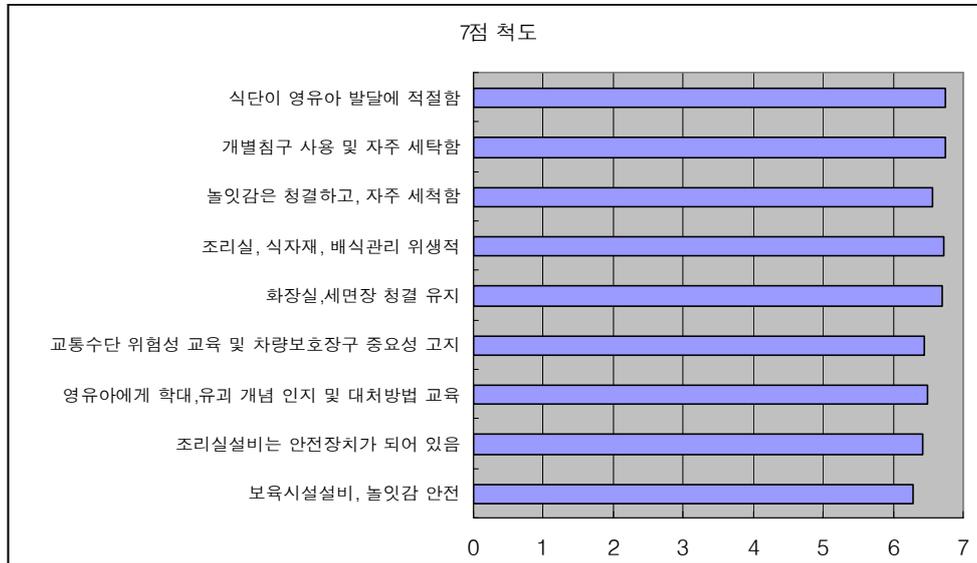
6) 안전, 위생 등

보육시설 안전과 시설의 청결과 위생, 건강 및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변화정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모든 문항의 5점 이상의 긍정적 응답비율이 90%로 나타났다.

〈표 IV-4-20〉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설비와 놀잇감 안전
단위: %(명)

구 분	변화 없음 ←-----→ 변화 많음							계(수)	평균(표준편차)
	1	2	3	4	5	6	7		
놀잇감안전	0.4	0.3	0.4	2.7	10.4	37.2	48.7	100.0(1,270)	6.29(0.8)
조리실안전	0.8	0.6	0.9	2.1	8.4	23.1	64.0	100.0(1,270)	6.42(1.0)
유괴확대안전	0.5	0.2	0.3	1.7	7.4	26.3	63.5	100.0(1,261)	6.49(0.6)
교통안전	0.6	0.2	0.6	2.1	8.2	29.1	59.2	100.0(1,251)	6.44(0.9)
세면장 관리	0.2	0.2	0.2	0.5	2.5	19.1	77.2	100.0(1,260)	6.71(0.6)
급식관리	0.3	0.2	0.2	0.4	1.5	19.5	77.9	100.0(1,257)	6.73(0.6)
놀잇감위생관리	0.2	0.3	0.3	0.9	4.6	27.3	66.3	100.0(1,257)	6.57(0.7)
침구위생관리	0.3	0.2	0.1	0.8	1.8	15.2	81.6	100.0(1,253)	6.75(0.6)
조리법이용식단	0.3	0.2	0.2	0.6	1.4	16.7	80.6	100.0(1,254)	6.75(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그림 IV-4-2]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설비와 놀잇감 안전 운영 7점 평균

7점 평균으로는 최저 놀이감 안전이 6.20이고, 최고는 침구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와 발달단계에 적절한 식단으로 조리하여 제공된다 6.75점이다(표 IV-4-20 참조).

시설유형별로는 법인시설이 다소 낮고, 민간 가정 공인 어린이집이 비공인 어린이 집에 비해 높은 방향으로 차이가 모두 유의하였다(표 IV-4-21, IV-4-22 참조).

<표 IV-4-21>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설비 실태 7점 척도

단위: %(명)

구분	놀이감 안전	조리실 안전	유괴학대 안전	교통 안전	세면장 관리	급식 관리	놀이감 위생관리	침구위생 관리	조리법 이용식단	(수)
전체	6.29	6.42	6.49	6.44	6.71	6.73	6.57	6.75	6.75	(1,270)
(표준편차)	(0.8)	(1.0)	(0.6)	(0.9)	(0.6)	(0.6)	(0.6)	(0.7)	(0.6)	
국공립	6.33	6.59	6.68	6.66	6.76	6.86	6.71	6.85	6.85	(148)
법인	5.91	5.96	6.35	6.13	6.48	6.48	6.52	6.52	6.61	(23)
민간	6.17	6.36	6.47	6.41	6.65	6.68	6.46	6.71	6.71	(552)
가정	6.40	6.45	6.46	6.41	6.76	6.73	6.62	6.78	6.77	(526)
직장	6.52	6.76	6.76	6.67	6.90	6.95	6.86	6.90	6.86	(21)
F	5.81***	3.57**	0.60*	3.22*	3.57**	3.66**	5.52***	2.65*	2.11#	

주: # p< .1, * p< .05, ** p< .01,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4-22〉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보육시설 설비 실태 7점 척도 평균
단위: 점(명)

구 분	전체		민간	가정	구 분	전체		민간	가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놀이감안전					급식관리				
서울형	6.37	0.82	6.32	6.46	서울형	6.79	0.60	6.75	6.82
비서울형	6.21	0.95	6.06	6.36	비서울형	6.67	0.67	6.63	6.68
전체	6.29	0.89	6.17	6.40	전체	6.73	0.64	6.68	6.73
t	3.14**		3.24**	1.27	t	3.36**		2.03*	2.46*
조리실안전					놀이감위생관리				
서울형	6.59	0.78	6.49	6.74	서울형	6.64	0.68	6.55	6.71
비서울형	6.27	1.14	6.25	6.28	비서울형	6.50	0.80	6.40	6.57
전체	6.42	1.00	6.36	6.45	전체	6.57	0.75	6.46	6.62
t	5.67***		2.89*	4.97***	t	3.12**		2.08*	2.31*
유괴학대안전					침구위생관리				
서울형	6.63	0.75	6.58	6.63	서울형	6.80	0.60	6.76	6.85
비서울형	6.38	0.93	6.40	6.36	비서울형	6.71	0.68	6.67	6.73
전체	6.49	0.86	6.47	6.46	전체	6.75	0.65	6.71	6.78
t	5.16***		2.50*	3.44**	t	2.63**		1.58	2.30*
교통안전					조리법이용식단				
서울형	6.52	0.89	6.48	6.48	서울형	6.80	0.59	6.76	6.84
비서울형	6.36	0.96	6.36	6.36	비서울형	6.71	0.67	6.66	6.73
전체	6.44	0.93	6.41	6.41	전체	6.75	0.64	6.71	6.77
t	3.06**		1.67#	1.27	t	2.61**		1.77#	1.98*
세면장관리									
서울형	6.76	0.60	6.72	6.84					
비서울형	6.66	0.69	6.59	6.71					
전체	6.71	0.65	6.65	6.76					
t	2.67**		2.14*	2.31*					
(수)	(1,270)		(552)	(526)	(수)	(1,254)		(546)	(516)

주: # p< .1, * p< .05, ** p< .01,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7) 취약보육

현재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야간연장보육은 26.6%, 시간제보육은 6.1%, 24시간보육은 2.3%, 휴일보육은 3.9%, 장애아보육은 6.9%로 야간연장보육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야간연장보육은 모든 시설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고, 시간제보육은 직장보육 시설이 9.5%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다. 24시간보육과 휴일보육은 민간 시설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장애아보육은 국공립이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IV-4-23 참조).

이러한 맞춤형 보육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응답은 야간연장보육은 38.7%가, 시간제보육은 19.7%, 24시간보육 10.0%, 휴일보육 10.6%, 장애아보육 16.1%가 확대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실시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은 아니지만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4-23> 시설유형별 맞춤형보육 실시 및 확대 필요 비율

단위: %(명)

구 분	실시					확대 필요				
	야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야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전체	26.6	6.1	2.3	3.9	6.9	38.7	19.7	10.0	10.6	16.1
국공립	37.8	2.0	2.7	2.0	32.4	32.4	10.1	5.4	6.1	29.7
법인	26.1	-	-	-	8.7	26.1	8.7	0.0	4.3	21.7
민간	24.1	6.0	3.3	5.3	5.4	38.8	18.5	10.0	12.0	15.0
가정	25.1	7.4	1.3	3.2	1.3	41.4	24.5	12.2	11.0	13.5
직장	52.4	9.5	-	-	4.8	28.6	9.5	0.0	4.8	4.8
(수)	(338)	(77)	(29)	(49)	(88)	(492)	(250)	(127)	(135)	(204)
X ² (df=4)	19.10**	7.85#	5.64	6.55	177.***	6.56	19.96**	11.10*	6.05	26.04***

주: # p< .1, * p< .05, ** p< .01,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시설유형별로 보면 야간연장보육이나 장애아보육은 시설유형별 차이가 없으나, 시간제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은 상대적으로 민간과 가정 시설에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4-23 참조).

다음 <표 IV-4-24>에서 민간 가정의 공인 어린이집과 비공인 어린이집을 비교해 본 결과 실시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실시율은 야간연장보육은 서울형 33.7%, 비서울형은 20.3%로 차이를 보였다. 민간과 가정 시설을 구분해 보면 민간 서울형은 28.6%, 비서울형은 20.6%, 가정 서울형은 36.5%, 비서울형 18.1%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간제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에서 서울형이 약간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체로 서울형이 비서울형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서울형으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맞춤형보육을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취약보육 필요성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공인 어린이집과 비공인 어린이집 간 비교한 결과 의견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연장보육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시간제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비공인 어린이집이 공인 어린이집보다 맞춤형보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4〉 민간·가정 보육시설 맞춤형보육 실시 및 확대 필요 비율

단위: %(명)

구 분	실시					확대 필요				
	야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야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전체										
서울형	33.7	5.5	2.3	3.5	11.2	39.5	16.8	6.8	7.0	15.2
비서울형	20.3	6.6	2.2	4.2	3.1	38.1	22.2	12.8	13.9	16.9
(수)	(338)	(77)	(29)	(49)	(88)	(492)	(250)	(127)	(135)	(204)
X ² (df=1)	28.96***	0.63	0.01	0.39	31.66***	0.27	5.85*	12.67***	15.77***	0.67
민간										
서울형	28.6	5.4	3.3	5.0	6.2	39.0	15.4	6.6	7.9	11.2
비서울형	20.6	6.4	3.2	5.5	4.8	38.6	20.9	12.5	15.1	18.0
(수)	(133)	(33)	(18)	(29)	(30)	(214)	(102)	(55)	(66)	(83)
X ² (df=1)	4.81*	0.26	0.01	0.06	0.05	0.01	2.77#	5.27	6.74**	4.91*
가정										
서울형	36.5	8.5	1.5	3.0	1.0	47.0	23.5	9.0	8.0	9.5
비서울형	18.1	6.7	1.2	3.4	1.5	38.0	25.2	14.1	12.9	16.0
(수)	(132)	(39)	(7)	(17)	(7)	(218)	(129)	(64)	(58)	(71)
X ² (df=1)	22.33***	0.55	0.07	0.05	0.26	4.10*	0.18	3.02#	3.01#	4.41*

주: # p< .1, * p< .05, ** p< .01,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맞춤형보육을 실시할 경우 평균 이동수는 야간연장보육은 5명이 19.2%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은 각각 1명인 비율이 가장 많았다(표 IV-4-25 참조).

〈표 IV-4-25〉 시설유형별 맞춤형보육 평균 아동 수

단위: %(명)

구 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7명	7명 이상	계(수)
야간연장보육	10.7	18.6	14.8	11.5	19.2	7.6	17.6	100.0(338)
시간제보육	35.1	27.3	15.6	5.2	14.3	1.3	1.3	100.0(77)
24시간보육	20.7	13.8	13.8	10.3	17.2	6.8	17.2	100.0(29)
휴일보육	25.0	25.0	12.5	12.5	16.7	4.2	4.2	100.0(48)
장애아보육	33.3	16.1	13.8	2.3	4.6	11.5	18.0	100.0(8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그리고 시설유형별로 본 결과와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공인 어린이집과 비공인 어린이집을 비교한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³⁶⁾.

8) 특별활동

조사대상 보육시설에서 추가 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는 3개가 31.3%로 가장 많고 다음 순으로 4개 16.5%로 나타나 보통 3~4개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3~4개가 가장 많았고, 한편 가정보육시설은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다(표 IV-4-26 참조).

〈표 IV-4-26〉 시설유형별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단위: %(명)

구 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계(수)	X ² (df)
전체	16.9	5.7	17.6	31.3	16.5	8.3	1.7	1.0	0.4	0.2	0.2	100.0(1,270)	
국공립	4.1	4.1	16.9	29.1	23.0	18.9	1.4	1.4	-	0.7	0.7	100.0(148)	
법인	4.3	-	4.3	21.7	56.5	4.3	4.3	4.3	-	-	-	100.0(23)	
민간	8.2	2.2	10.7	34.8	24.5	13.2	3.3	1.8	0.9	0.4	0.2	100.0(552)	383.46(40)***
가정	30.4	9.9	25.9	28.7	4.8	0.2	0.2	-	-	-	-	100.0(526)	
직장	14.3	14.3	14.3	28.6	14.3	14.3	-	-	-	-	-	100.0(21)	

주: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4-27〉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단위: 점(명)

구 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계(수)	X ² (df)
전체													
서울형	6.3	4.5	17.0	34.7	20.7	12.2	2.2	1.3	0.7	0.2	0.3	100.0(600)	121.54(10)***
비서울형	26.4	6.9	18.2	28.2	12.8	4.9	1.3	0.7	0.1	0.3	-	100.0(670)	
민간													
서울형	3.7	2.1	7.5	34.9	26.1	17.4	4.1	2.1	1.7	-	0.4	100.0(241)	27.34(10)**
비서울형	11.6	2.3	13.2	34.7	23.2	10.0	2.6	1.6	0.3	0.6	-	100.0(311)	
가정													
서울형	11.5	8.0	31.5	40.5	8.0	0.5	-	-	-	-	-	100.0(200)	68.14(6)***
비서울형	42.0	11.0	22.4	21.5	2.8	-	0.3	-	-	-	-	100.0(326)	

주: ** p< .01,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이러한 결과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서울형과 비서울형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와 비슷하였다(표 IV-4-27 참조).

특별활동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74.8%가 선택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17.9%는 일부 선택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법인, 가정시설은 약 80%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직장은 77.8%, 민간은 65.5%만이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표 IV-4-28 참조).

〈표 IV-4-28〉 시설유형별 부모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선택 여부

단위: %(명)

구 분	모두 선택 가능	일부 선택 가능	모두 의무 수강	계(수)	X ² (df)
전체	74.8	17.9	7.2	100.0(1,049)	
국공립	80.9	9.2	9.9	100.0(141)	
법인	86.4	4.5	9.1	100.0(22)	
민간	65.5	25.1	9.4	100.0(502)	54.35(8)***
가정	84.4	12.6	3.0	100.0(366)	
직장	77.8	11.1	11.1	100.0(18)	

주: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서울형과 비서울형간에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특별활동을 선택이 가능하다는 비율이 서울형이 더 높고, 일부 선택 가능은 비서울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형이 비서울형보다는 선택 가능성이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인다(표IV-4-29 참조).

〈표 IV-4-29〉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비서울형 부모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선택 여부

단위: 점(명)

구 분	모두 선택 가능	일부 선택 가능	모두 의무 수강	계(수)	X ² (df)
전체					
서울형	78.1	14.5	7.3	100.0(558)	9.471(2)**
비서울형	71.1	21.8	7.1	100.0(491)	
민간					
서울형	67.2	21.8	10.9	100.0(229)	3.064(2)
비서울형	64.1	27.8	8.1	100.0(273)	
가정					
서울형	88.7	10.2	1.1	100.0(177)	6.323(2)*
비서울형	80.4	14.8	4.8	100.0(189)	

주: * p< .05, ** p<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특별활동 실시 시간이다.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오전은 보육과정에 충실하고 특별활동은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는데³⁷⁾, 조사결과를 보면 오후에만 한다는 비율은 33.4%이고 오전·오후 모두 한다는 비율이 41.2%로 가장 많았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오후에만 한다는 비율이 민간과 가정 시설이 각각 33.2%, 27.7%로 타 유형보다 낮다(표 IV-4-30 참조).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서울형과 비서울형을 비교한 결과는 민간은 차이가 없으나 가정 시설은 서울형이 오후에만 실시한다는 비율이 비서울형에 비하여 10%p 정도가 높다(표 IV-4-31 참조).

〈표 IV-4-30〉 시설유형별 특별활동 실시 시간

단위: %(명)

구 분	오전에만	오후에만	오전 오후 모두	계(수)	X ² (df)
전체	25.3	33.4	41.2	100.0(1,050)	
국공립	12.7	42.3	45.1	100.0(142)	
법인	18.2	50.0	31.8	100.0(22)	
민간	18.1	33.2	48.7	100.0(503)	90.14(8)***
가정	41.1	27.7	31.2	100.0(365)	
직장	16.7	66.7	16.7	100.0(18)	

주: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4-31〉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특별활동 실시 시간

단위: 점(명)

구 분	오전에만	오후에만	오전 오후 모두	계(수)	X ² (df)
전체					
서울형	21.5	36.7	41.9	100.0(559)	
비서울형	29.7	29.7	40.5	100.0(491)	10.930(2)**
민간					
서울형	16.2	33.6	50.2	100.0(229)	
비서울형	19.7	32.8	47.4	100.0(274)	1.089(2)
가정					
서울형	37.9	32.8	29.4	100.0(177)	
비서울형	44.1	22.9	33.0	100.0(188)	4.484(2)

주: ** p<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의 경우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 질문한 결과, 13%대 응답한 비용은 5만원이상~6만원 미만, 6만원이상~7만원미만, 8만원이상~9만원미만,

37) 오후에만 실시할 경우 외부강사의 방문횟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비용도 증가할 것임.

10만원이상~15만원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전체가 72,200원인데 시설유형별 차이가 커서 민간이 92,000원, 직장 100,000원으로 국공립, 법인, 및 가정 시설의 5만원 내외와 비교된다(표 IV-4-32 참조).

〈표 IV-4-32〉 시설유형별 특별활동 비용

단위: %(명), 천원

구 분	3만원 미만	3만원 ~	4만원 ~	5만원 ~	6만원 ~	7만원 ~	8만원 ~	9만원 ~	10만원 ~	15만원 이상	계(수)	평균
		4만원 미만	5만원 미만	6만원 미만	7만원 미만	8만원 미만	9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5만원 미만			
전체	5.7	10.2	9.4	13.2	13.1	8.5	13.9	8.7	13.2	4.2	100.0(1,052)	72,2
국공립	12.7	26.1	21.8	25.4	7.0	4.2	2.8	-	-	-	100.0(142)	43,8
법인	-	22.7	18.2	22.7	9.1	13.6	-	4.5	9.1	-	100.0(22)	55,0
민간	1.4	2.6	2.8	5.7	7.9	9.9	21.6	15.4	24.2	8.5	100.0(505)	92,6
가정	8.2	13.7	13.1	18.3	23.5	6.8	8.7	3.3	4.1	0.3	100.0(366)	54,5
직장	29.4	11.8	11.8	11.8	-	29.4	5.9	-	-	-	100.0(17)	10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서울형과 비서울형간 특별활동 비용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민간시설은 서울형은 평균 89,976원이고 비서울형은 94,826원이었고, 가정시설은 서울형은 57,080원, 비서울형은 51,989원이었다. 민간 시설의 경우, 비서울형의 경우 표준편차가 다소 큰 편인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서울형보다는 비서울형이 특별활동 비용이 많이 내는 보육시설이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은 반대로 서울형에서 특별활동 비용이 더 높다(표 IV-4-33 참조).

〈표 IV-4-33〉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비서울형 특별활동 비용

단위: 원(명)

구 분	민간·가정 전체		민간		가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서울형	75,7	31,3	90,0	30,8	57,1	20,3
비서울형	77,4	69,9	94,8	84,3	52,0	24,1
전체	76,6	55,3	92,6	65,5	54,5	22,4
(수)	(873)		(507)		(36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나.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의 운영 개선 효과

1) 공공성 및 운영 전반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시설장들은 공보육으로 달라진 점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 어린이집의 열린 운영, 시설운영 체계화 항목 모두에서 평균 약 5.7~5.8점대로 공보육 어린이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수는 서울시 민간 가정 공보육 어린이집의 평가인 5.0~5.1 점 수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표 IV-4-34〉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운영 개선 정도

단위: %

구분	변화 없음 ←-----→ 변화 많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서울형 시설 평가
	1	2	3	4	5	6	7			
보육의 공공성 확대	-	-	4.0	8.0	28.0	32.0	28.0	100.0(24)	5.7(1.1)	4.98
시설운영 전반 체계화	-	-	-	16.0	20.0	36.0	28.0	100.0(24)	5.8(1.0)	5.12
공개와 열린 운영	4.0	-	4.0	8.0	12.0	28.0	44.0	100.0(24)	5.8(1.5)	5.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2) 아동 모집 및 수입

부산시 공보육 이후 입소아동의 증가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4%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47.6%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였다. 공보육 어린이집 지정 이후 대기아동 증가에는 전체 69.6%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IV-4-35 참조).

이러한 응답은 서울시에서 공보육어린이집이 입소아동 증가 18.7%, 대기아동 증가 26.7%와 비교하면 부산시 공보육어린이집이 그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증가하였다는 경우 아동은 평균 11~12명 수준이었다.

〈표 IV-4-35〉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입소아동·대기자 증가여부

단위: %

구분	증감 여부					증가시 아동수				
	증가	감소	차이 없음	잘 모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입소아동	52.4	-	47.6	-	100.0(21)	12.6	6.3	4	20	(9)
대기자	69.6	-	26.1	4.3	100.0(23)	11.4	10.1	2	35	(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공보육 이후 보육시설의 총 수입 변화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차이 없음은 16.7%, 증가는 79.2%, 감소는 4.2%로 나타났다. 총 수입이 증가되었다는 시설의 평균 증가액은 월평균 700만원 정도이었다. 보육시설의 총 지출 변화도 차이 없음은 4.37%, 증가는 91.3%, 감소는 4.3%로 나타났다. 지출이 증가되었다는 시설의 평균 증가액은 수입과 마찬가지로 월 평균 700만원 정도이었다(표 IV-4-36 참조).

<표 IV-4-36>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총수입·총지출 변화

단위: %

구분	증감 여부				증가시 액수				
	증가	감소	차이 없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총수입	79.2	4.2	16.7	100.0(24)	7,131	11,307	500	44,000	(13)
총지출	91.3	4.3	4.3	100.0(23)	7,150	10,984	500	44,000	(14)

주: 감소한 한 사례는 수입 1,500천원, 지출 5,000천원 응답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3) 교사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관리 체계화에 개선 정도 응답을 보면 7점 척도에서 3점 이하는 없고 긍정적인 평가인 5~7점이 84.0%로 평균 점수는 6.0점으로 비교적 높았다(표 IV-4-37 참조). 동일 문항에 대한 민간·가정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의 평가는 5.22점이었다.

<표 IV-4-37>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관리 체계 변화

단위: %

구분	변화 없음 ←-----→ 변화 많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관리 체계화	-	-	-	16.0	12.0	36.0	36.0	100.0(24)	6.0(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다음 <표 IV-4-38>은 부산시 공보육 이후 교사관리와 교사태도가 달라졌다고 응답한 결과로, 매우 개선 비율은 교사의 자존감이 5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사 업무의 적극성이 48.0%, 교사 이직 44.0%이고 교사의 심리적 안정감과 교사 채용 어려움이 각각 36.0%, 32.0%이다. 비교적 개선까지 합하면 개선 비율은 88~92% 수

준이다.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이후 가장 좋아진 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도 안정된 교사라는 응답이 69.6%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심층면접에서도 확인되었다. 면접에서 여러 원장들이 공보육 어린이집 신청 동기로 질 높은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들었다.

〈표 IV-4-38〉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교사 관리와 교사의 태도 변화

단위: %(명)

구분	매우 개선	비교적 개선	별 차이 없음	잘 모름	계(수)
교사 이직	44.0	44.0	12.0	-	100.0(25)
교사 채용 어려움	32.0	56.0	12.0	-	100.0(25)
교사의 심리적 안정	36.0	56.0	8.0	-	100.0(25)
교사의 자존감	56.0	32.0	8.0	4.0	100.0(25)
교사의 업무 적극성	48.0	44.0	8.0	-	100.0(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표 IV-4-39〉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지정 이후 가장 좋아진 점

단위: %(명)

구분	재정 안정	안정된 교사	사회적 위상	아동모집	기타	계(수)
전체	8.7	69.6	8.7	8.7	4.3	100.0(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4) 재정운영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후에 인건비 지원으로 시설의 재정운영 안정화에 개선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0.8%이고,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8.23%인 것으로 나타났다. 7점 척도로 5.3점이다. 시설의 재정운영 투명화는 개선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안정화보다 거의 10% 포인트가 높은 84.0%이고,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8.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7점 척도로 5.9점이다. 보육시설장은 재정영역에서 안정화보다는 투명화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 점수는 민간가정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의 평가인 재정 안정화 4.78점, 투명화 5.29점에 비하여 높은 점수이다.

〈표 IV-4-40〉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운영 개선 정도

단위: %(명)

구분	변화 없음 ←-----→					변화 많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재정운영 안정화	4.2	4.2	-	20.8	20.8	20.8	29.2	100.0(23)	5.3(1.6)
회계관리시스템으로 투명화	8.0	-	4.0	4.0	8.0	16.0	60.0	100.0(24)	5.9(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6) 취약보육

취약보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25개 시설 중 40.0%가 야간연장보육을 실시하여 다른 취약보육에 비해 실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간제보육과 24시간 보육, 장애아보육 실시비율은 4% 수준으로 낮았으며, 휴일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은 없었다.

〈표 IV-4-41〉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취약보육 실시 여부

단위: %(명)

구분	야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수)
전체	40.0	4.0	4.0	-	4.0	(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7) 특별활동

시설에서 추가 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는 3개 실시가 42.1%로 가장 많고 다음 순으로 4개 15.8%이며 소수인 5.3%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은 3.2개로 산출되었다. 특별활동을 위하여 외부에서 강사가 오는 수도 3명이 40.9%로 가장 많고 다음 2명 22.7%, 5명 18.2%의 순으로, 평균 3.1명의 외부 강사가 보육시설에 와서 활동을 지도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IV-4-42 참조).

〈표 IV-4-42〉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수

단위: %

구분	0	1	2	3	4	5	7	계(수)	평균(표준편차)
프로그램	5.3	5.3	15.8	42.1	15.8	10.5	5.3	100.0(19)	3.2(1.5)
외부강사	4.5	4.5	22.7	40.9	4.5	18.2	4.5	100.0(22)	3.1(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보육시설 특별활동 선택여부는 71.4% 시설에서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19.0%는 일부 활동만 선택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표 IV-4-43 참조). 활동 시간대는 오후에만 한다는 비율은 52.2%이다. 이는 서울 서울형 어린이집의 36.7%보다 높은 비율이다(표 IV-4-44 참조).

〈표 IV-4-43〉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특별활동 선택 가능 여부

단위: %

구분	모두 선택 가능	일부 선택 가능	모두 의무 수강	비해당	계(수)
전체	71.4	19.0	4.8	4.8	100.0(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표 IV-4-44〉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시간

단위: %

구분	오전에만	오후에만	오전, 오후 모두	비해당	계(수)
전체	13.0	52.2	30.4	4.3	100.0(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5. 공인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 효과

가. 서울 공인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 효과

1) 시설장 평가

가) 총괄 평가

서울형 어린이집 투자 대비 개선 정도에 대한 시설장의 인식은 부족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최근 1년간 서울시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서울시가 재정을 투자한 만큼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사 대상 원장들은 개선이 되었으나 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29.3%, 개선을 되었으나 투자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은 18.4%, 투자에 비해 개선은 미미하다가 12.9%로 다수가 부정적이고 투자한 만큼 개선이 있었다는 20.9%에 불과하였다(표 IV-5-1 참조).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서울형과 비서울형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을 비교해 보면,

투자한 만큼 개선이 있었다는 비율이 서울형 35.1%, 비서울형 14.1%로 차이를 보였다. 민간과 가정 시설을 나누어 보면 가정어린이집 평가가 더 긍정적이고, 가정보다 민간에서 서울형과 비서울형 어린이집 원장들의 인식 차이가 더 컸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IV-5-2 참조).

〈표 IV-5-1〉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의 개선 정도

단위: %(명)

구 분	투자에 비해 미미	투자에 비해 크게 부족	투자에 비해 다소 부족	투자한 만큼 개선	잘 모름	계(수)
전체	12.9	18.4	29.3	20.9	18.4	100.0(1,270)
국공립	18.2	16.9	29.7	12.2	23.0	100.0(148)
법인	13.0	21.7	39.1	8.7	17.4	100.0(23)
민간	13.8	19.0	30.8	20.5	15.9	100.0(552)
가정	10.3	18.1	27.4	24.9	19.4	100.0(526)
직장	19.0	19.0	23.8	9.5	28.6	100.0(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5-2〉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비서울형·가정·직장·법인·국공립 시설 서비스 수준의 개선 정도

단위: 점(명)

구 분	투자에 비해 미미	투자에 비해 크게 부족	투자에 비해 다소 부족	투자한 만큼 개선	잘 모름	계(수)	X ² (df)
전체							
서울형	6.3	15.2	32.2	35.1	11.1	100.0(441)	96.73(4)***
비서울형	16.0	20.9	27.0	14.0	22.1	100.0(637)	
민간							
서울형	7.5	14.9	32.8	33.6	11.2	100.0(241)	58.72(4)***
비서울형	18.6	22.2	29.3	10.3	19.6	100.0(311)	
가정							
서울형	5.0	15.5	31.5	37.0	11.0	100.0(200)	42.56(4)***
비서울형	13.5	19.6	24.8	17.5	24.5	100.0(326)	

주: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나) 항목별

보육서비스의 질은 나타내는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는 항목별로 7점 척도 평균이 4.81점에서 5.44점 사이에 분포한다. 점수가 비교적 높은 안전위생관리,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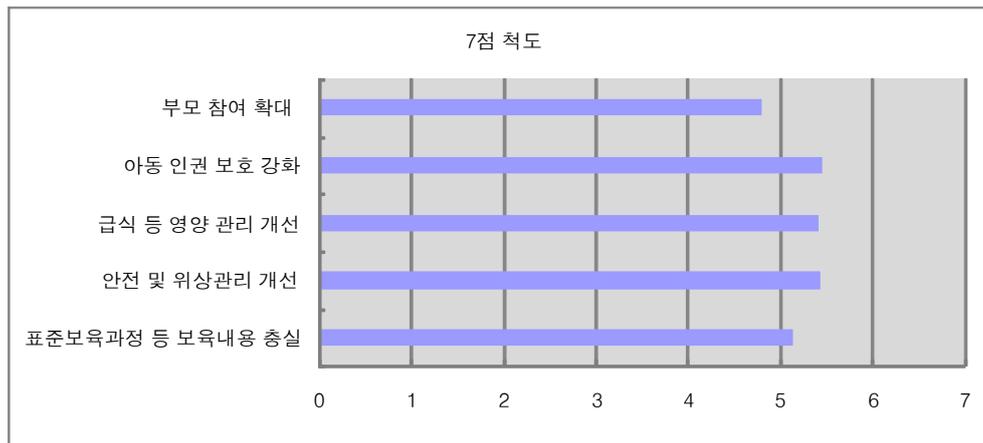
관리, 아동보호나 아동권리는 서울시 안심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으로 안심모니터링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표 IV-5-3 참조).

〈표 IV-5-3〉 시설유형별 보육서비스 질 개선 총괄

단위: %(명)

구 분	변화 없음		←-----→					변화 많음	계(수)	평균(표준편차)
	1	2	3	4	5	6	7			
보육내용충실	5.7	5.0	4.5	9.9	22.0	34.1	18.9	100.0(1,267)	5.15(1.6)	
안전위생관리개선	5.1	4.7	3.5	7.9	16.1	31.3	31.3	100.0(1,267)	5.44(1.6)	
영양관리개선	6.4	4.7	3.6	8.2	14.2	29.4	33.5	100.0(1,264)	5.41(1.7)	
아동보호강화	5.6	4.4	4.2	7.5	14.5	31.1	32.6	100.0(1,265)	5.45(1.7)	
부모참여확대	7.3	5.9	7.2	15.7	22.2	25.6	16.1	100.0(1,267)	4.81(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그림 IV-5-1] 시설유형별 보육서비스 질 개선 7점 평균

이러한 결과는 시설유형별로도 전반적으로 이미 안정된 국공립이나 직장 시설에 비하여 법인, 민간, 가정에서 많은 변화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4 참조).³⁸⁾ 그러나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공보육과 비공보육 어린이집간의 평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IV-5-5 참조).

38) 인건비 지원이 추가되는 가정이나 민간 시설보다 인건비를 지원 받던 법인시설에서 더 많은 변화를 보고한 것은 구체적 이유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표 IV-5-4〉 시설유형별 보육서비스 질 개선 7점 척도 평균

단위: %(명)

구 분	보육내용 충실	안전위생 관리개선	영양관리 개선	아동보호 강화	부모참여 확대	(수)
전체	5.15(1.6)	5.44(1.6)	5.41(1.7)	5.45(1.7)	4.81(1.7)	(1,267)
국공립	4.68(1.9)	4.94(1.9)	4.92(2.0)	5.08(1.9)	4.67(1.9)	(148)
법인	5.65(1.3)	5.65(1.5)	5.39(1.9)	5.61(1.6)	5.35(1.8)	(23)
민간	5.25(0.6)	5.57(1.4)	5.54(1.5)	5.54(1.5)	4.97(1.6)	(551)
가정	5.17(0.0)	5.46(1.7)	5.44(1.8)	5.47(1.7)	4.65(1.7)	(524)
직장	4.86(2.1)	4.95(2.1)	4.95(2.1)	4.95(2.0)	4.81(2.1)	(21)
X ² (df)	4.26 ^{***}	4.74 ^{***}	4.00 ^{***}	2.58 [*]	3.15 [*]	

주: * p< .05, ** p<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IV-5-5〉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서비스 질 개선 7점 척도 평균

단위: 점(명)

구 분	전체		민간	가정	구 분	전체		민간	가정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보육내용충실					아동보호강화				
서울형	5.11	1.71	5.29	5.14	서울형	5.41	1.78	5.52	5.50
비서울형	5.19	1.58	5.22	5.20	비서울형	5.48	1.65	5.55	5.45
전체	5.15	1.64	5.25	5.17	전체	5.45	1.72	5.54	5.47
t		-0.91	0.54	-0.41	t		-0.67	-0.21	0.33
안전위생관리개선					부모참여확대				
서울형	5.39	1.76	5.60	5.44	서울형	4.88	1.79	5.01	4.81
비서울형	5.49	1.60	5.55	5.48	비서울형	4.74	1.68	4.94	4.55
전체	5.44	1.68	5.57	5.46	전체	4.81	1.73	4.97	4.65
t		-1.02	0.38	-0.27	t		1.44	0.48	1.60
영양관리개선									
서울형	5.35	1.85	5.56	5.42					
비서울형	5.47	1.68	5.52	5.46					
전체	5.41	1.77	5.54	5.44					
t		-1.16	0.23	-0.24					
(수)	(1,267)		(551)	(524)	(수)	(1,265)		(551)	(5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2) 부모의 평가

서울시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표방한 이후 보육정책이 서울시 보육수준 향상에 기여를 하였는지 부모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잘 모르겠다 39.6%, 좋아졌다 33.8%, 별로 달라진 것 없다 26.6%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으로 부모의 1/3은 서울시 정책으로 보육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자녀연령별로는 보육수

준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유아 38.4%, 영아 31.5%로 유아가 높았으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응답도 유아가 영아보다 높았다(표 IV-5-6 참조).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는 없었다.

〈표 IV-5-6〉 서울형어린이집 정책 이후 서울시 보육수준 향상 기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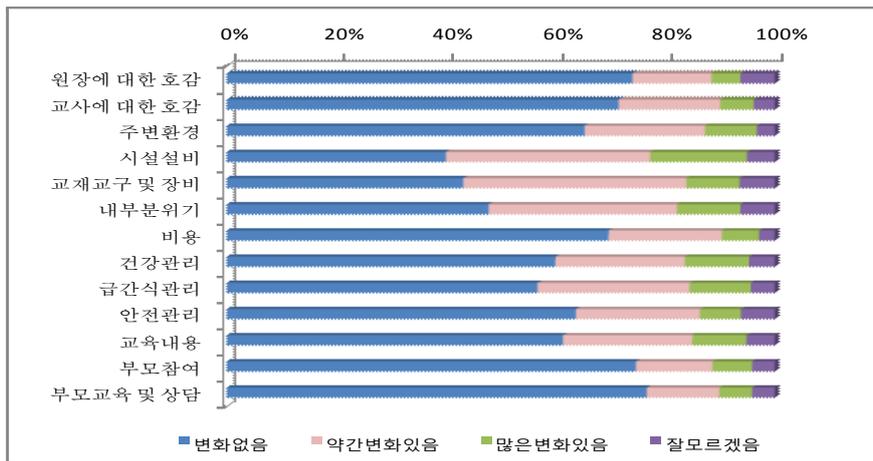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매우 좋아졌다	어느 정도 좋아졌다	별로 달라진 것 없다	잘 모름	계(수)	X ² (df)
전체	2.4	31.4	26.6	39.6	100.0(1,560)	
영아	1.6	29.9	24.8	43.8	100.0(1,028)	25.83(3) ^{***}
유아	3.8	34.5	29.9	31.8	100.0(531)	

주: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다음은 자녀가 현재 이용하는 보육시설이 서울형으로 공보육받기 전부터 다닌 경우, 서울형 공보육 이후 시설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조사한 13가지 항목 중에서 시설설비, 교재교구 및 장비, 내부분위기의 3개 항목은 약 50% 이상의 부모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주변환경, 건강관리,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은 약 30%의 부모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원장에 대한 호감, 교사에 대한 호감, 비용,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 항목은 약 20% 수준으로 타 항목에 비해서 약간 낮았다(표 IV-5-7, 그림 IV-5-2 참조).



[그림 IV-5-2] 서울형 공인 이후 변화

〈표 IV-5-7〉 서울형 공보육 이후 변화

단위: %(명)

구분	변화없음	약간변화있음	많은변화있음	잘모르겠음	계(수)
원장에 대한 호감	75.5	14.7	5.4	6.3	100.0(261)
교사에 대한 호감	71.6	18.6	6.1	3.8	100.0(261)
주변환경	65.3	22.0	9.5	3.2	100.0(261)
시설설비	40.0	37.3	17.7	5.0	100.0(261)
교재교구 및 장비	43.2	40.7	9.7	6.4	100.0(261)
내부분위기	47.8	34.3	11.6	6.2	100.0(261)
비용	69.7	20.7	6.8	2.8	100.0(261)
건강관리	60.0	23.6	11.8	4.6	100.0(261)
급간식관리	56.8	27.8	11.2	4.3	100.0(261)
안전관리	63.8	22.7	7.5	6.1	100.0(261)
교육내용	61.4	23.6	9.9	5.1	100.0(261)
부모참여	74.7	14.0	7.2	4.1	100.0(261)
부모교육 및 상담	76.6	13.2	6.0	4.1	100.0(26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시설유형별로는 항목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대체로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에서 변화가 많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표 IV-5-8 참조).

〈표 IV-5-8〉 항목별 서울형 공인 이후 변화

단위: %(명)

구분	변화 없음	약간 변화	많은 변화	잘모름	X ² (df=12)	구분	변화 없음	약간 변화	많은 변화	잘모름	X ² (df=12)	계(수)
원장에 대한 호감						건강관리						
국공립	78.2	11.6	6.1	4.1	18.2	국공립	63.9	23.8	10.9	1.4	24.3*	100.0(147)
법인	83.3	16.7	0.0	0.0		법인	100.0	0.0	0.0	0.0		100.0(6)
민간	67.1	20.7	4.9	7.3		민간	52.4	29.3	9.8	8.5		100.0(82)
가정	66.7	12.5	4.2	16.7		가정	50.0	12.5	25.0	12.5		100.0(24)
직장	50.0	0.0	50.0	0.0		직장	50.0	0.0	50.0	0.0		100.0(2)
교사에 대한 호감						급간식 관리						
국공립	79.5	13.7	4.8	2.1	22.5*	국공립	64.4	25.3	8.9	1.4	20.2#	100.0(146)
법인	66.7	33.3	0.0	0.0		법인	66.7	33.0	0.0	0.0		100.0(6)
민간	64.2	25.9	6.2	3.7		민간	48.1	32.1	12.3	7.4		100.0(81)
가정	56.0	24.0	8.0	12.0		가정	41.7	25.0	20.8	12.5		100.0(25)
직장	50.0	0.0	50.0	0.0		직장	50.0	0.0	50.0	0.0		100.0(2)

구분	변화 없음	약간 변화	많은 변화	잘모름	X ² (df=12)	구분	변화 없음	약간 변화	많은 변화	잘모름	X ² (df=12)	계(수)
주변 환경						안전관리						
국공립	68.5	20.5	10.3	0.7	20.0 [#]	국공립	69.0	22.8	5.5	2.8	24.6 [*]	100.0(146)
법인	66.7	33.3	0.0	0.0		법인	83.3	16.7	0.0	0.0		100.0(6)
민간	60.5	27.2	7.4	4.9		민간	54.3	28.4	7.4	9.9		100.0(81)
가정	66.7	8.3	12.5	12.5		가정	68.0	4.0	16.0	12.0		100.0(24)
직장	50.0	0.0	50.0	0.0		직장	0.0	50.0	50.0	0.0		100.0(2)
시설설비						교육내용						
국공립	37.0	41.1	20.5	1.4	20.1 [#]	국공립	66.4	19.2	11.6	2.7	16.6	100.0(146)
법인	50.0	50.0	0.0	0.0		법인	66.7	33.3	0.0	0.0		100.0(6)
민간	46.9	32.1	13.6	7.4		민간	53.1	32.1	7.4	7.4		100.0(81)
가정	32.0	32.0	20.0	16.0		가정	60.0	16.0	12.0	12.0		100.0(25)
직장	0.0	50.0	50.0	0.0		직장	50.0	0.0	50.0	0.0		100.0(2)
교재교구 및 장비						부모참여						
국공립	44.5	41.1	11.0	3.4	16.7	국공립	76.9	14.3	7.5	1.4	15.7	100.0(146)
법인	16.7	83.3	0.0	0.0		법인	83.3	16.7	0.0	0.0		100.0(6)
민간	48.1	34.6	7.4	9.9		민간	73.2	13.4	6.1	7.3		100.0(81)
가정	32.0	44.0	12.0	12.0		가정	61.5	15.4	11.5	11.5		100.0(25)
직장	0.0	50.0	50.0	0.0		직장	50.0	0.0	50.0	0.0		100.0(2)
내부 분위기						부모교육 및 상담						
국공립	49.3	32.2	15.1	3.4	21.8 [*]	국공립	79.5	13.0	6.2	1.4	21.8 [*]	100.0(146)
법인	33.3	66.7	0.0	0.0		법인	66.7	33.3	0.0	0.0		100.0(6)
민간	53.1	32.1	4.9	9.9		민간	75.3	13.6	3.7	7.4		100.0(81)
가정	25.0	50.0	12.5	12.5		가정	72.0	4.0	12.0	12.0		100.0(24)
직장	0.0	50.0	50.0	0.0		직장	50.0	0.0	50.0	0.0		100.0(2)
비용												
국공립	78.8	18.5	2.1	0.7	44.4 ^{***}							100.0(147)
법인	50.0	50.0	0.0	0.0								100.0(6)
민간	52.4	28.0	15.9	3.7								100.0(82)
가정	76.0	8.0	4.0	12.0								100.0(24)
직장	50.0	0.0	50.0	0.0								100.0(2)

주: # p< .1, * p< .05,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다) 보육비용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받도록 하는데, 본 조사에서 보육비용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서울형 어린이집은 공인 이후 보육비용이 월평균 얼마정도 부담이 줄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시설들의 응답 결과는 <표 IV-5-21>과 같이 전체 응답자 중 6만원미만 감소했다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고, 2만원 미만 26.9%, 4만원 미만 19.6%, 8만원 이상 13.3%, 8만원 미만 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5-9〉 서울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월평균 보육비용 감소

단위: %(명)

구분	2만원 미만	4만원 미만	6만원 미만	8만원 미만	8만원 이상	계(수)	X ² (df)
전체	26.9	19.6	30.6	9.7	13.3	100.0(82)	
자녀연령							
영아	27.0	21.6	35.1	2.7	13.5	100.0(37)	4.07(4)
유아	26.7	17.8	26.7	15.6	13.3	100.0(45)	
설립유형							
국공립	32.4	21.6	35.1	2.7	8.1	100.0(37)	18.64(16)
법인	50.0	0.0	0.0	50.0	0.0	100.0(2)	
민간	18.9	21.6	27.0	16.2	16.2	100.0(37)	
가정	0.0	0.0	66.7	0.0	33.3	100.0(3)	
직장	50.0	0.0	0.0	0.0	50.0	100.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나.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 효과

1) 시설장 평가

투자한 만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원장의 평가는 66.7%로, 동일한 질문에 대한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의 응답 35% 수준보다 높았다.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원장의 평가를 보면 다수인 66.7%가 투자한 만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12.5%는 개선은 되었으나 투자 규모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고 하였으며 8.3%는 개선은 되었으나 투자 규모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12.5%는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였다(표 IV-5-10 참조).

〈표 IV-5-10〉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투자 대비 서비스 수준 개선 정도

단위: %(명)

구분	투자에 비하여 개선 정도 미미함	투자 규모에 비해서 크게 부족함	투자 규모에 비해서 다소 부족함	투자한 만큼 개선됨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	8.3	12.5	66.7	12.5	100.0(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구체적으로 표준보육과정 등 보육내용 충실, 안전 및 위생관리 개선, 급식 등 영

양 관리 개선, 아동 인권 보호 강화, 부모 참여 확대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공보육 어린이집 이후 변화 정도를 알아보았다. 종합적으로 보면 개선되었다는 비율이 높는데, 항목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7점 척도로 보육내용 충실, 안전 및 위생관리 개선, 급식 등 영양 관리 개선의 3개 항목은 5.6~5.7점 수준으로 비교적 높고, 아동 인권 보호 강화는 5.1점이며 부모 참여의 개선 정도는 4.9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5-11〉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개선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변화 없음 1	2	3	4	5	6	변화 많음 7	계(수)	평균 (표준 편차)
표준보육과정 등 보육내용 충실	4.0	-	8.0	4.0	16.0	36.0	32.0	100.0(25)	5.6(1.5)
안전 및 위생관리 개선	4.0	-	12.0	8.0	4.0	32.0	40.0	100.0(25)	5.6(1.7)
급식 등 영양 관리 개선	8.0	4.0	8.0	-	8.0	12.0	60.0	100.0(25)	5.7(2.0)
아동 인권 보호 강화	8.0	4.0	12.0	4.0	8.0	24.0	36.0	100.0(25)	5.1(2.0)
부모 참여 확대	8.0	4.0	8.0	12.0	24.0	24.0	20.0	100.0(25)	4.9(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결과임.

2) 부모의 평가

서울시에서와 동일하게 부산시에서도 자녀가 현재 이용하는 보육시설이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다닌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와 보육료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 보육서비스의 질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변화는 13개 항목으로 변화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한 13가지 항목 중에서 변화 없음 비율을 보면 최소 20% 수준에서 최고 39%에 분포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시설설비와 교재교구 장비, 내부분위기가 가장 많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시설설비, 교재교구 및 장비, 내부분위기의 3개 항목에 부모의 약 68~70%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원장에 대한 호감, 교사에 대한 호감, 비용, 건강관리,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 항목은 약 20% 수준으로 타 항목에 비해서 변화되었다는 응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12 참조).

그러나 인식의 변화 정도가 낮다고 하여 이것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보육서비스의 질이 이미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 있다면 공보육어린이집이 되기 위하여도 변화의 폭이 클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시 공보육어린이집 선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시설들이 이미 일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IV-5-12〉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변화: 부모 평가

단위: %(명)

구분	변화 없음	약간의 변화	많은 변화	잘 모르겠음	계(수)
원장에 대한 호감	39.1	28.8	22.8	9.3	100.0(215)
교사에 대한 호감	39.2	28.3	24.5	8.0	100.0(212)
주변환경	28.6	32.4	27.7	11.3	100.0(213)
시설설비	19.6	33.2	36.9	10.3	100.0(214)
교재교구 및 장비	19.7	34.3	33.8	12.2	100.0(213)
내부 분위기	20.8	34.0	34.0	11.3	100.0(212)
비용	30.0	34.3	25.7	10.0	100.0(210)
건강관리	37.0	25.6	25.1	12.3	100.0(211)
급간식관리	31.5	28.6	31.5	8.5	100.0(213)
안전관리	30.7	27.8	28.8	12.7	100.0(212)
교육내용	23.9	32.4	33.8	9.9	100.0(213)
부모참여	29.6	32.9	25.8	11.7	100.0(213)
부모교육 및 상담	29.0	33.6	25.7	11.7	100.0(2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표 IV-5-13〉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부모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척도 (표준편차)
원장	1.0	-	2.4	31.7	65.0	100.0(420)	4.6(0.6)
교사	1.0	-	0.7	32.1	66.3	100.0(418)	4.6(0.6)
주변환경	1.0	1.0	21.7	38.6	37.9	100.0(420)	4.1(0.8)
시설설비, 실내환경	1.0	1.0	13.8	44.2	40.1	100.0(419)	4.2(0.8)
교재교구 및 장비	1.0	-	11.4	44.8	42.9	100.0(420)	4.3(0.7)
내부 분위기	1.0	-	8.3	41.7	49.0	100.0(420)	4.4(0.7)
비용	1.0	0.7	11.0	41.1	46.2	100.0(418)	4.3(0.8)
건강관리	1.0	0.2	6.7	40.5	51.7	100.0(420)	4.4(0.7)
급간식관리	1.0	-	3.6	37.2	58.2	100.0(419)	4.5(0.7)
안전관리	1.0	0.2	6.4	36.9	55.5	100.0(420)	4.5(0.7)
교육내용	1.0	-	5.7	39.9	53.5	100.0(419)	4.4(0.7)
부모참여	1.2	0.2	17.1	41.2	40.2	100.0(420)	4.2(0.8)
부모교육 및 상담	1.0	-	11.4	41.9	45.7	100.0(420)	4.3(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결과임.

이는 전체 이용자의 보육서비스 항목별 만족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공보육 어린이집 부모의 항목별로 불만족 비율은 거의 없는데,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을 중심으로 보면 질적 수준 변화 정도가 가장 낮은 원장과 교사에 대한 매우 만족 비율이 65%, 66%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급간식, 안전관리, 교육내용으로 50%대이며, 그 이외는 주변환경이 37.9%로 가장 낮고 나머지는 모두 40%대이다(표 IV-5-13 참조).

6. 공공 어린이집 관련 의견

1) 시설장 의견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1,000개소를 지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간개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서울시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5개 항목으로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표 IV-6-1〉 공공형 어린이집 확산시 필요 조건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별로 불필요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가인증 접수 반영	8.7	24.0	47.0	20.3	100.0(1,269)
자가 시설여부 반영	15.1	28.3	35.2	21.4	100.0(1,267)
자기자본 비율을 반영	11.6	25.7	36.5	26.2	100.0(1,267)
보육시설의 규모 반영	15.2	31.4	36.0	17.4	100.0(1,267)
운영하는 기관의 수 반영	9.9	25.7	38.9	25.5	100.0(1,264)
특별활동 수 및 수납액 반영	14.0	33.9	35.6	16.4	100.0(1,26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먼저 평가인증 여부 이외에 평가인증 접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7.3%인 것으로 나타났고, 자가 시설여부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6.6%, 자가 시설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을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7.2%이고, 보육시설의 규모를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3.4%, 실제 운영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의 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4.4%이고, 특별활동 수 및 수납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절반의 응답자들이 필요한 조건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일부 항목은

반대로 40% 이상의 응답자들이 불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표 IV-6-1 참조).

다섯 가지 조건 중에서 설립유형별로 국공립과 민간, 가정시설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조건은 네 가지이다. 시설의 자가여부를 반영한다는 국공립과 법인은 73~74%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민간과 가정시설은 53~54% 정도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자기자본비율을 반영은 국공립은 73.4%, 나머지 시설유형에서는 약 60% 내외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보육시설 규모 반영에 대해서는 국공립은 63.3%, 민간은 55.5%, 직장은 46.4%가 동의하였고, 마지막으로 특별활동비용은 민간과 가정이 50% 내외인데 비하여 이외 유형에서는 6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자가시설, 자가시설의 자기자본비율, 보육시설 규모는 민간, 가정시설의 경우 개인의 자본이 충분치 않으면 공공형 보육시설로 공인받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형의 조건으로 수용하는 데에도 국공립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표 IV-6-2 참조).

〈표 IV-6-2〉 시설유형별 공공형 어린이집 확산시 필요 조건 적절성

단위: %(명)

구 분	평가인증 접수	자가시설 여부	자기자본 비율	보육시설 규모	시설 기관수	특별활동 비용	(수)
전체	67.3	56.6	62.7	53.4	64.4	52.0	(1,269)
국공립	74.3	73.0	73.4	63.3	70.6	69.6	(148)
법인	82.6	77.3	56.5	65.2	77.3	60.8	(23)
민간	66.2	54.9	64.3	56.2	64.5	51.3	(551)
가정	65.3	52.4	58.2	46.4	61.7	46.6	(526)
직장	80.9	66.7	66.7	76.2	71.4	71.4	(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공인 어린이집과 비공인 어린이집간의 의견을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 공인 어린이집이 비공인 어린이집보다 공공형 각 조건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공인 어린이집의 경우 이미 공인 받기 위하여 평가를 받고 일정 기준을 통과한 후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비공인 어린이집 보다는 평가 조건에 대해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표 IV-6-3 참조).

〈표 IV-6-3〉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울형여부별 공공형 어린이집 확산시 조건 필요성
단위: %(명), 점

구 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한 편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계(수)	X ² (df=3)	4점척도 평균 (표준편차)
평가인증점수							
서울형	6.3	20.9	46.3	26.5	100.0(441)	32.473***	2.9(0.9)
비서울형	11.0	28.1	46.7	14.2	100.0(636)		2.6(0.9)
자가시설여부							
서울형	14.5	30.2	32.0	23.2	100.0(440)	4.499	2.6(1.0)
비서울형	17.8	29.6	34.0	18.7	100.0(636)		2.5(1.0)
자가자본비율							
서울형	10.2	23.9	34.5	31.4	100.0(440)	11.491**	2.9(1.0)
비서울형	13.4	28.5	35.4	22.8	100.0(636)		2.7(1.0)
보육시설규모							
서울형	16.6	33.6	31.1	18.8	100.0(441)	4.364	2.5(1.0)
비서울형	16.5	31.0	36.7	15.7	100.0(635)		2.5(0.9)
시설기관수							
서울형	8.6	25.2	37.7	28.4	100.0(440)	8.313*	2.9(0.9)
비서울형	11.5	27.4	39.8	21.3	100.0(635)		2.7(0.9)
특별활동비용							
서울형	13.4	38.1	33.8	14.7	100.0(441)	1.822	2.5(0.9)
비서울형	15.8	34.9	34.1	15.3	100.0(634)		2.5(0.9)

주: * p< .05, ** p< .01,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장 조사」 결과임.

나. 부모 인식

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인식으로 공인 어린이집을 공공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공공 어린이집³⁹⁾ 장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서울 공인 어린이집을 공공 어린이집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하여 서울형 어린이집이 공공 어린이집이라는 응답은 34.0%이며, 조금 다르다가 34.6%이고 13.0%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서울시 공인 어린이집을 공공 보육시설로 보는 인식이 약 1/3으로 그리 높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의 특성 차이는 거의 없으나 보육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공공 어린이집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차이를 나타냈다(표 IV-6-4 참조).

39) 공공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대표적 유형으로 응답자도 이를 염두에 두었을 것임.

〈표 IV-6-4〉 서울형 어린이집과 공공 어린이집이 동일한지에 대한 부모 인식

단위: %(명)

구 분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조금 다르다	전혀 다르다	잘 모르겠다	계(수)	X ² (df)
전체	2.9	31.1	34.6	13.0	18.4	100.0(1,558)	
연령							
영아	2.5	29.7	35.1	13.3	19.3	100.0(1,030)	5.69(4)
유아	3.8	33.9	33.3	12.2	16.8	100.0(531)	
모취업							
취업	3.7	33.0	31.8	10.8	20.6	100.0(563)	24.90(**)
미취업	2.5	30.2	36.4	14.1	16.8	100.0(985)	
모부재	-	16.7	8.3	16.7	58.3	100.0(12)	

주: ** p <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한편 부산 공보육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공보육 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 수준에 대한 질문에 16.6%는 매우 같다고 응답하였고 57.6%는 어느 정도 같다고 응답하여 74.2%가 대체로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11% 정도가 다르다고 하였고, 14.7%는 모르겠다는 응답이었다.

〈표 IV-6-5〉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과 공공 어린이집 수준 비교

단위: %(명)

구 분	매우 같음	어느 정도 같음	조금 다름	전혀 다름	잘 모르겠음	계(수)	X ² (df)
전체	16.6	57.6	10.8	0.2	14.7	100.0(415)	
연령							
영아	15.5	57.8	10.7	-	16.0	100.0(206)	1.566(4)
유아	17.0	57.8	11.2	0.5	13.6	100.0(206)	
모취업							
취업	18.9	58.7	9.8	0.7	11.9	100.0(143)	3.497(4)
미취업	14.1	58.9	12.5	-	14.6	100.0(19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

서울시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이 생각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IV-6-5>와 같다.

〈표 IV-6-6〉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 서울시 부모

단위: %(명)

구분	저렴한 보육료	신뢰	보육비용 투자	질 높은 교사	깨끗한 외부환경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47.4	37.5	2.8	7.3	4.7	0.3	100.0(1,558)	
연령								
영아	43.7	39.3	3.3	8.1	5.4	0.2	100.0(1,028)	18.84(5)**
유아	54.4	34.0	1.7	6.0	3.6	0.2	100.0(529)	
모취업								
취업	41.8	43.1	2.3	8.0	4.6	0.2	100.0(562)	38.93(10)***
미취업	50.6	34.6	3.1	7.0	4.6	0.2	100.0(983)	
모부재	45.5	18.2	-	-	36.4	-	100.0(11)	
소득계층								
99만원 이하	25.6	60.5	-	4.7	9.3	-	100.0(43)	48.44(25)**
100~199만원	54.9	27.5	2.9	6.4	7.8	0.5	100.0(204)	
200~299만원	49.0	38.2	2.3	5.1	5.1	0.3	100.0(351)	
300~399만원	50.0	35.6	3.8	7.2	3.4	-	100.0(416)	
400~499만원	47.0	38.5	1.0	10.0	3.5	-	100.0(200)	
500만원 이상	41.0	41.9	3.2	9.0	4.4	0.6	100.0(344)	

주: ** p< .01,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저렴한 부모 보육료가 47.4%로 가장 높았고, 정부의 철저한 관리에 따른 신뢰가 37.5%를 차지하였고 이외 질 높은 교사가 7.3%, 깨끗한 외부환경 4.7%, 1인당 보육 비용 투자 2.8% 순이었다. 자녀연령별로는 영아에 비해 유아 부모의 저렴한 부모 보육료 응답 비율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모취업별로는 취업모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에 따른 신뢰가 43.1%로 가장 높았고, 미취업모는 저렴한 보육료가 50.6%로 가장 높아 차이를 나타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99만원 이하 가구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에 따른 신뢰를 가장 큰 장점으로 응답하였으며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부모보육료 응답 비율이 낮았다. 이는 이들 계층 대다수가 보육료 지원 대상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소득 99만원 이하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저렴한 부모 보육료와 깨끗한 외부환경을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IV-6-6 참조).

다음 부산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공공 어린이집의 장점으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에 따른 신뢰를 든 비율이 54.9%로 가장 높고 이외 저렴한 부모 보육료 18.6%, 질 높은 교사 11.5%의 순이었다(표 IV-6-7 참조). 상위 3개 요인은 서울시 부모조사 결과와 동일하였으나 1, 2위가 순서는 달라졌다.

〈표 IV-6-7〉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 부산 공보육 보육시설 이용 부모

단위: %(명)

구분	저렴한 부모 보육료	정부의 관리에 따른 신뢰	1인당 높은 보육비용 투자	질 높은 교사	깨끗한 외부 환경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18.6	54.9	5.5	11.5	4.2	5.2	100.0(381)	
연령								
영아	12.6	56.8	5.0	17.6	4.0	4.0	100.0(199)	22.587(5)***
유아	25.0	52.8	6.1	5.0	4.4	6.7	100.0(180)	
모취업								
취업	18.5	54.8	6.7	11.1	3.7	5.2	100.0(135)	2.218(5)
미취업	16.8	56.2	5.9	13.0	5.4	2.7	100.0(185)	

주: *** p<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 부모조사」 결과임.

7. 요약 및 시사점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으로 서울시의 서울형 어린이집과 부산시 지정 공보육 어린이집 사업의 운영 효과에 대해 살펴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서울과 부산 공보육어린이집 사례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공인 어린이집 수용성은 선정 기준과 지원조건에 달려 있으며, 선정 기준과 지원조건은 보육시설의 공공성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수위 결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서울형의 경우 선정 기준과 지원조건을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수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전체 시설의 50% 정도가 서울형으로 공인 받았으며 그 이외 시설도 50% 정도가 공인을 받을 의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부산은 평가기준이나 조건이 유사 국공립 수준을 유지하여서 공공성 측면에서는 손색이 없으나 그러다보니 수용하는 어린이집은 소수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국공립과 같은 공공어린이집으로 생각하는 시설장은 34.0%인 반면에 부산시 지정 공보육 어린이집을 공공어린이집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70% 이상으로 서울에 비하여 높았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선정 조건의 차이에서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하겠다.

둘째, 공인 어린이집 운영에서 가장 큰 공감대는 회계의 투명성이다. 공인어린이집 운영조건 적절성 조사에서 시설명의 1계좌로 회계관리 투명성이 조건으로 적정하다는 점수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재무회계규칙 지출에서 기타

운영비 항목 10% 준수는 74.4%가 잘 지키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⁴⁰⁾ 기타 운영비 준수에 대한 민간 및 가정 서울형과 비공인 어린이집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은 서울형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조건에 있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하여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공 어린이집 성공의 열쇠는 교사이다. 서울시 시설장들은 서울형 어린이집 성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49.1%가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공인 이후 재정지원이 교사 급여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가 정한 공인 어린이집의 조건 유지의 어려움이 상존함을 시사한다. 부모 보육료 수입의 10%를 추가로 지원함에도 이러한 민간과 가정 서울형 보육시설에 추가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서울형 시설장의 17.0%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사후관리는 서울시 조사대상 전체의 33.5%, 서울형 보육시설장은 46.7%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부산의 경우도 평가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2.4%로 절반 이상이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52.0%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의 욕구와 공공성 확보 수단 사이에 갈등의 선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인식은 높지 않고, 또한 이를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삼지 않는 부모도 상당수이어서, 정부 정책의 홍보나 정보 전달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공보육 이후 대기아동은 서울 26.7%, 부산 52.4%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 인지는 높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조사에서 시설 이용 부모의 대부분 서울형 어린이집을 막연하게 알고 있고 잘 아는 비율은 12.7%에 불과하며 세부 지원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높다. 서울형 공인 이후에 시설을 선택한 경우에도 30.2%는 공보육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도 보육료나 교사 인건비 지원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 모른다는 응답은 20% 수준이었고, 공보육 시설로 지정 받은 이후에 시설을 선택한 부모도 11.0%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공인 어린이집 운영 개선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시설체계화와 열린 운영, 공공성 확대에 대해 7점 만점에 서울 5점 수준, 부산 5.7점 내외로 나타나

40) 일부에서는 총액이 아닌 부모보육료 기준으로 10%를 산정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하였음.

서 시설장들은 보육시설 운영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리 체계화, 교사의 자존감이나 업무 적극성, 자존감에서도 개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재정운영도 개선이 되었다는 응답이 64.2%이다. 부산의 경우 보육시설이 공보육어린이집에 참여한 이유는 안정된 교사채용이 50% 수준이었다. 그러나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일과운영, 보육시설의 안전과 위생 등은 시설유형이나 공인여부별 차이는 보이지 않아서 어느 정도 평준화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공인 어린이집의 부모에 대한 효과는 질적 수준 개선에 대한 인식, 보육료 감소로 나타났으나, 특히 서울시 시설장들은 투자 대비 효율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시설설비, 교재 교구 및 장비, 내부분위기의 3개 항목에서 변화되었다는 비율이 서울과 부산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는 서울형 시설장들은 35% 정도만이 투자한 만큼 서비스의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반면에 부산의 경우 시설장의 66.7%가 투자한 만큼 서비스의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들도 서울은 34%만 공인 어린이집이 공공 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부산에서는 74%가 공보육 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하였다.

여덟째,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산할 경우 선정이나 유지 조건은 서울형보다는 강화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서울시 시설장들은 공공형 어린이집 조건들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비율 반영 67.2%, 평가인증 점수 반영 67.3%로 다른 조건에 비하여 높았고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과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비슷하였다. 또한 비서울형에 비하여 서울형에서 여러 조건들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아 공인 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조건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가적 사업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자율장학은 필요에 대한 인식은 높으므로, 이를 위한 전문가의 지원이 요구된다. 본 조사에서 서울시 시설장의 70%가 자율장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전문가 교사 연구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간의 보육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보육내용에 대한 지침이나 지도인데 이제 이에 대한 정책을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 주치의 제도는 형식적 성취율이 높으나 내용상 성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내실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끝으로 IP-TV는 필요성이나 교사, 아동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서 부모들의 인식과 시설장의 입장이 다소 차이를 보여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함을 나타냈다. 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들과 비교하여 IP-TV가 필요하다는 비율은 높고 교사나 아동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낮았다.

V. 정책제언

본 연구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을 검토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앞으로의 제도 발전가능성을 모색하여 보육정책 방향 및 개선 방안 등 정책제언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특정한 보육정책으로 서울시의 서울형어린이집과 부산시 지정 공보육어린이집 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시설장과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의 인식 및 의견을 파악하여 효과성과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보육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1. 향후 정책과제

가. 보육비용 지원

보육료 지원사업은 그 대상과 지원수준이 확대되었고, 지원기준도 종전의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보육아동의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취업모를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를 우대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여전히 높고, 이는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심의 공급구조에서 정부의 부모보조금 지원 확대로 부모 부담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보육료 지원 및 부모 부담과 관련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5세아 무상보육에 대한 소득 제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5세 무상보육이 보편적 학교 준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취업모에 대한 소득 감액 제도는 보육에서 취업모를 배려한 제도 도입 자체는 높이 평가하지만, 감액 수준의 한계로 지원대상이 한정적이다. 또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서 파악되지 않는 많은 비정규직 등 다수의 취업모가 누락되고 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은 일반 보육료 추가

지원보다는 다자녀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등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넷째, 보육료 이외에 기타 필요 경비 상한선이 지역차이를 보이며, 일부지역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정부는 특별활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통합적 운영이나 표준보육과정만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책도 향후 정책과제가 된다.

다섯째,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의 하나로 현금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육수당은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면에서 보육료 지원에 비하여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등보육료와 달리 2~4세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0세~1세 아동 중 일부 소득계층은 소득수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이용에 따라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지원대상의 확대와 금액의 조정이 주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양육수당의 보육시설 이용 저해, 모의 노동 저해, 아동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음 등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금액 및 대상 등 정책방향 설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현금 지원인 아동수당으로의 전환 방안 모색도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여섯째, 유아 보육료 지원단가와 실제 보육료간의 격차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무상보육, 전액지원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은 이유가 상당부분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첫째로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 조정하거나, 이용시간 다양화를 통한 보육시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보육 공적 인프라 공급

보육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에 시범사업이 예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는 비용효율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을 추진 중인 시·도는 서울시와 부산시 두 지역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시설비나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확충하지 못하는 기피되는 상황에서 보육시설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공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교사, 이용하는 부모 모두 공인 지정 이후 서

비스 질 개선, 교사 처우 개선 등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형은 투자대비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의 35%만이 투자대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효율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부산은 이 비율이 67%이다. 공인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인가에 대해서도 서울시 부모들은 34% 정도만이 공인 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을 동일시하였다. 서울과 부산 공공형 어린이집의 차이는 선정 조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임대료나 이자 등 시설투자 비용을 매달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질 높은 보육을 위하여 교사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선정 시부터 국공립시설과 유사한 지출 구조를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하여 투자 비용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계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서비스 공급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 다시 한번 전면적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보육의 질과 부모 부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후부터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1990년대의 양적 확충 정책의 결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공급의 구조는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사실상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국공립보육 시설 설치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효과성도 높히 평가하였다는 점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육시설 이외에 육아지원시설이 주요한 인프라로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재정상태가 가장 좋은 서울시에서만 서울플라자라는 명칭으로 육아지원시설을 두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높다. 이외의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육아 지원시설이 설치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다. 보육서비스 다양화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

첫째, 현재 보육시설에서는 시간연장형이나 장애아 보육, 일시보육 등 다양한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한 가지 방법으로 거점형 보육시설을 제안하며, 대체교사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수 확대, 장기적으로는 교사 추가배치로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맞춤형 보육 중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보육서비스는 시간연장형 보육이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모든 보육시설이 신청하도록 개방하며 아동이 한 명이어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은 정책이다. 시간연장형 보육정책의 어려움은 정확한 상시 수요 예측이 어려운 정책이지만, 시간연장형 보육 상시 수요는 7%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이용은 보육아동의 2% 수준에 불과하였다. 시설별로 소수의 아동을 보육하도록 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취약보육 거점형 어린이집을 두어서 취약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시간연장형 보육을 종전에 야간보육교사 인건비지원에 더하여 2010년부터 시간연장보육교사에게 1일 2시간 근무, 1만2천원을 근무수당으로 월 약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는 탄력성이 높은 정책으로, 2010년 주요 제도적 성과라 하겠으나, 교사의 장시간 근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둘째, 주간에 모든 아동이 12시간을 보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보육시설 이용시간 체계를 다양화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2009년 조사 결과 실제 등원부터 하원까지의 시간은 평균 7시간 25분 정도로 파악되어 현실과 제도가 괴리를 보이며, 보육시설 운영자, 이용자 및 교사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한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종일제 보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동도 일부 장시간 보육시설에 머물게 된다. 상당수의 아동은 유치원 연장제 형태로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형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일찍 귀가하거나 필요 없이 장시간 보육시설에 머물거나 모두 보육재정 낭비요인이 된다. 보육교사도 12시간 아동보육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법으로 정한 근로기준의 준수는 물론 재교육은 물론 보육활동 준비를 위한 시간도 확보하기 어렵다. 격무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고 이직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무엇보다도 교사가 아동에게 아동 눈높이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과 연구시간의 비율은 6:4가 적절하다고 한다.

라. 질 관리와 재정지원 연계

2009년에는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6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제2주기 평가인증으로 평가지표와 운용체계가 변화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2009년과 2010년은 평가인증제도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해이다. 평가인증제도에서 앞으로의 정책과제는 인증결과 공개를 통한 활용 확대와 보육재정 지원과의 연계이다.

먼저 평가인증 관련 정보는 보다 상세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첫째, 전체 보육시설을 최소한 우수인증시설과 인증시설, 미인증시설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인증 시설은 최소한 총점 등급과 영역별 등급, 장단점 등을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홈페이지는 물론 부모에게 서류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증 결과는 인증통과 시설 명단만 공개하는데, 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 정도가 높지 않고 보육시설 선택시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비율도 낮기 때문에, 평가 인증 결과를 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 공개 범위를 넓힐 필요성에 배경을 둔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인증은 중앙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현재는 평가인증과 보육료 지원 등 재정지원과의 연계가 없어서 평가인증제도가 질적 수준 제고 수단으로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고, 재정 지원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연계되었다는 증거도 확보하기 어렵다. 평가인증제도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실시하기 쉬운 1단계 방안부터 점차 수위를 높인 2~3단계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1단계는 평가인증제도와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소규모 운영비 지원과 연계하고, 2단계는 영아 기본보육료와 연계하며, 3단계는 차등보육료와 연계한다. 평가인증은 초기에는 신청과 연계하고 점차 인증통과와 연계한다. 평가인증 시설의 확대 추이에 맞추어서 일정기간을 두어 정책도입을 예고한 후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 평가인증제도를 평가제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교사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보육교사 처우 및 환경 개선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가 운영중인 공공형 어린이집은 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은 공공형어린이집에 참여한 계기와 성과 모두 교사와 관련된 내용을 꼽았다. 특히 부산에서 안정된 교사채용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참여 결과 교사채용이 안정되고, 질 높은 교사를 선택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서울시 시설장들도 서울형 어린이집 성공의 열쇠로 교사 전문성 확보 노력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교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부분은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먼저, 보육교사 처우 관련 예산 사업 중 대체교사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

되는 사업으로 제도 도입은 주요한 정책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가 연가를 주중 5일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 사용상 불편 사항이다. 휴가 이외에 연가나 교육 등에도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수를 당분간 증가시켜야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비담임 교사 추가 배치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평일 하루 8시간 근로는 출퇴근 시간 조정인 탄력 근무로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오후반 교사 배치가 검토되어 보육교사가 아동과의 보육활동 이외에 보육활동 준비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8시간 근로에 한 시간 휴게시간 확보도 성인 인력 추가 배치 없이는 개선되기 어렵다.

셋째, 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농어촌 등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데, 이 수당은 액수 증액과 더불어 전국 보육교사로의 확대가 요구된다. 지방정부 중 특수시책으로 교사수당을 지원하는 곳이 많은데, 지역차이가 크므로, 중앙정부가 보육교사 근속수당이나 평가인증과 연계한 보육교사 수당 등은 전국적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지원금 및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보수교육 실시 시 직무교육은 40시간 기준으로 1인당 6만원, 승무교육은 80시간 기준으로 1인당 12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방정부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현재와 같은 지원금은 질 높은 보수교육을 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반당 50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기 어렵다.

바. 지역별 차이 해소

보육서비스 공급과 이용, 공공어린이집 배치 등에서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공급과 이용의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이루는 문제는 주요 정책과제이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보육서비스 공급률 평균은 58.5%이며, 시·군·구 단위 이용률은 평균 45.6%이다. 시·군·구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 공급률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70.4%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 광주, 충북, 전남이 50%로 수준으로 높다. 보육 이용률 역시 공급과 마찬가지로 동일 시·도내에서도 시·군·구별 편차가 크다. 특히 전북이 지역별로 표준편차가 10%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공급이 낮은 지역에 소규모 국공립 등 공급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보육재정 시·도 균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004년 이후 보육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4조를 넘어섰다. 보육예산은 GDP 대비 비율은 0.47이다. 유아교육과 농어업인 지원까지 다 합하면 GDP 대비 비율은 0.62% 수준이다. 최근 해마다 큰 폭으로 증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OECD의 권고인 1%에는 아직 못 미친다. 보육예산 증대는 대표적인 조기 투자로 확대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육예산은 지역적 격차가 매우 크다. 특히 지방정부 간 특수시책 사업비의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4만원에서 98만원에 이르기 까지 시·도별 차이가 크다. 이러한 지역 차이를 조절하여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각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보육시책은 사업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종류도 다양하다. 지방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으로 필요하고 효과성이 높다고 지적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일부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모두가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 시책이라고 인식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하므로, 지방정부가 예산이 적은 곳은 이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평가인증보육시설 교사 수당과 같은 시책을 들 수 있다.

2. 맺는 말

본 보고서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중앙정부와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지방정부의 보육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황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은 규모나 대상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방식과 내용이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향후 우리나라 정책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가 가장 많은 보육재정을 투자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은 전액지원이라는 명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단가의 조정, 이용시간별 차등 비용 적용 등 세부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며, 취업모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시 소득공제제도도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 특성을 반영하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육수당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금액이나 지원 대상 확대시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영아의 시설 미이용이나 어머니의 취업 동기 부여에 부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는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을 8개 영역 66개 세부과제로 분류하고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정책의 중요도와 효과성,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공무원들은 각 지방정부에 따라 지역적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지방정부의 정책을 고려하기보다 해당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답하였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이나 출산수당과 같은 현금수당, 교사 수당 지원, 취약가정 우선 지원 등에서 공통된 상위 우선순위를 찾을 수 있어서, 이러한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 수당은 현재도 특수한 지역 보육교사에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 중 공인 어린이집 사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과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산시 지정 공보육 어린이집은 실시 규모나 지원방식 등이 일부 다른 부분이 많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 조건이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나타냈다. 시설 설치 비용을 매달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질 높은 보육을 위하여 교사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선정 시부터 국공립시설과 유사한 지출 구조를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여 투자 비용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계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재완(2009). 서울형 어린이집 공보육기준·평가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권 4호, 141~173쪽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 김현숙 외(2007). 연령별 적정학급규모를 통한 유아의무교육대비 표준교육비 산정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농림수산부(2010).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사업 계획.
- 변용찬·서문희·이상현·임유경(1998).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에 따른 영유아보육법·제도 평가,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 외(2000). 보육료 지원사업 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2010).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0). 2009년 보육통계.
- 서문희·이미화·구미진(2006).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 여성가족부.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김은기·김은영·송신영 외(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1차 시행의 평가와 추진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보육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안재진·최혜선·소마 나오코(2009).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효과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상현(1999). 보육시설 용자사업 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이상현(2001). 보육사업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 유희정·이미화·민현주 외(2009). 2009년도 전국 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여성정책연구원.

이미화·장혜경·김경미 외(2004). 2004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보고서. 여성부.

제갈현숙·김송이(2010).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공보육 확대를 위한 원칙. 사회공공연구소

조병구·조윤희·(2007). 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보고서: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사업. 한국개발연구원.

Piketty, T.(1998). "L'impact des incitations financières au travail sur les comportements individuels: une estimation pour le cas français," Economie et prévision, N. pp. 132~133.

부 록

부록 1. 시·군·구 보육시설·유치원 공급률, 이용률과 특수보육예산

부록 2.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 지표

부록 3 호주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부록 4. 조사표 5종

부록 1. 시·군·구 보육시설·유치원 공급률과 이용률

〈부표 1〉 2009년 시·군·구별 보육시설 공급률, 이용률 및 특수보육사업 예산

단위: %, 천원

지역	보육시설 공급률 (0~5세)	국공립보육 공급률 (0~5세)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공급률	보육시설 이용률 (0~5세)	국공립보육 시설 이용률	보육아동 1인당특수보 육사업예산
전국	54.2	5.4	10.6	42.9	4.7	149
서울특별시						
전체	45.1	10.5	11	37.9	9.6	328
종로구	66.8	27.9	31.6	54.8	25.5	190
중구	61.4	32.5	32.5	50.8	27	192
용산구	39.3	11.7	12.4	32.9	10.7	227
성동구	42.3	16.4	16.4	35.5	14.5	361
광진구	48.3	10.2	10.2	41.3	9.5	314
동대문구	53.5	13	13	43	11.1	173
중랑구	54.3	12.5	13	45.5	11.5	151
성북구	44	8	8.8	36.7	7.5	138
강북구	60.2	10.6	11.6	50.1	10.1	314
도봉구	57.2	8.3	8.7	45.9	7.9	485
노원구	45.6	8.5	9.7	38.5	8.1	184
은평구	50.6	5.2	5.9	42.8	5	170
서대문구	48.9	11.3	11.3	40.5	10.2	335
마포구	37.3	13.8	13.8	31.8	12.2	338
양천구	49.3	11.2	11.2	40.6	10.3	113
강서구	43.4	8	8.9	36.7	7.3	131
구로구	43.6	8.6	9.8	37.7	8	108
금천구	71.8	8.8	8.8	58.3	8.3	238
영등포구	41.1	8.1	9.2	35.2	7.5	197
동작구	40.8	13.1	13.6	34.5	12.3	283
관악구	43.1	11.6	12.5	36.3	10.5	177
서초구	31.3	8.6	8.6	26.7	8.1	256
강남구	35.7	14.3	14.3	29.6	13.2	2,652
송파구	33.8	8.1	8.3	29.3	7.5	472
강동구	39.9	7.3	7.6	33.7	6.9	382
부산광역시						
전체	50.9	7.3	12.2	40.9	6.4	15
중구	72.6	25.1	27.9	50.4	19.5	72
서구	61.1	15.9	21.5	48.8	14.3	12
동구	69.7	20.9	23.2	55.7	16.6	13
영도구	60.4	18.4	19.6	47	16.4	20
부산진구	38.4	6.5	8.9	32.6	5.8	13

〈부표 1 계속〉

지역	보육시설 공급률 (0~5세)	국공립보육 공급률 (0~5세)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공급률	보육시설 이용률 (0~5세)	국공립보육 시설 이용률	보육아동 1인당특수보 육사업예산
동래구	46.2	4.9	8.4	39.5	4.9	11
남구	43.9	8.4	12.2	36.1	7.9	5
북구	61.5	4.1	8.3	44.6	3.3	5
해운대구	50.7	5.3	12.1	40.4	4	14
사하구	50.6	8.9	14.4	43.1	8.2	10
금정구	54.6	7.3	12.2	41.4	6	15
강서구	71.4	7.3	32.6	50.2	5.9	95
연제구	38.9	4.4	6.7	33.3	3.8	21
수영구	46.4	2.7	9.2	37.9	2.1	12
사상구	56.1	6.9	8.6	46	6.1	12
기장군	58.2	5.2	20.9	46.2	4.3	19
대구광역시						
전체	59	1.9	14	46.2	1.4	31
중구	58	3.7	20.1	40.1	3.5	17
동구	58.2	2	13.6	46.2	1.5	21
서구	85.7	5.3	13.3	70.3	4.7	23
남구	60.5	0.7	26.8	48	0.6	27
북구	60.3	1.1	12.3	46.3	0.8	19
수성구	52.5	1.1	19.6	42.4	0.9	48
달서구	57.2	1.8	8.8	44.2	1.1	19
달성군	53.6	2.9	14.2	42.6	2.6	98
인천광역시						
전체	46.8	3.8	4.6	38.5	3.4	90
중구	44.3	9.5	11.1	34.9	8.5	151
동구	42	12.9	12.9	37.6	11.2	89
남구	48.7	5.1	6.4	39.5	4	72
연수구	45.3	5.5	5.5	38.2	4.7	136
남동구	45.1	2.6	3.5	36.7	2.4	83
부평구	47.2	2	3.5	39.2	1.9	37
계양구	52.3	2.8	2.8	43.7	2.4	82
서구	44.7	2.1	2.5	35.9	2	104
강화군	48.6	20.1	20.1	40.5	17.6	52
옹진군	35.2	9.7	9.7	28.1	7.7	2,082
광주광역시						
전체	68.6	3.4	18.2	53.2	2.6	9
동구	77.4	3.3	26.7	53.8	2.6	13
서구	59.6	5.6	18.4	47.3	4.3	14

〈부표 1 계속〉

지역	보육시설 공급률 (0~5세)	국공립보육 공급률 (0~5세)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공급률	보육시설 이용률 (0~5세)	국공립보육 시설 이용률	보육아동 1인당특수보 육사업예산
남구	63.9	2.1	18.4	52.3	1.9	-
북구	64.6	3.8	18	51.3	3	5
평산구	78.4	2.2	17	59	1.5	12
대전광역시						
전체	54.6	1.9	6.3	43.5	1.7	24
동구	62.9	2.2	10.5	49.2	2.1	12
중구	52.5	1.5	5.1	41.7	1.4	12
서구	53.5	1.9	3.9	43.2	1.8	40
유성구	48.2	0.2	5.7	37.5	0.2	25
대덕구	61.1	4.7	9.1	50.3	4.3	17
울산광역시						
전체	46	3	4.4	36.4	2.8	81
중구	46.1	2.7	4.3	37.8	2.7	9
남구	42.7	3.2	3.5	34	3	42
동구	40.3	3.8	3.8	34.5	3.7	28
북구	44.5	1.2	2	34.5	1.1	7
울주군	56.4	4.1	8.6	42.1	3.8	278
경기도						
전체	49.6	4.1	5	39.1	3.8	187
수원시	43.8	2.4	2.8	34.2	2.2	240
성남시	41.7	7.8	8	34	7.2	408
의정부시	67.4	4	4.2	50.6	3.6	95
안양시	44.7	5.6	6	37	5.5	168
부천시	41	3.7	4.3	35.1	3.4	156
광명시	38	6.1	6.9	32.9	5.8	210
평택시	54.7	4.2	5.2	40.5	3.7	134
동두천시	77.8	8.8	9.7	60.2	8.3	55
안산시	59.5	4.3	4.3	47.2	4.2	101
고양시	48	3	3.4	36.2	2.8	54
과천시	61.4	14.1	16.2	50.8	13.2	838
구리시	38.2	3.9	4.3	32.2	3.6	226
남양주시	51	2.2	2.8	42.2	1.7	36
오산시	35	5.3	5.6	30.2	4.7	295
시흥시	50	3.6	5.2	42.5	3.6	154
군포시	37.9	5.9	6.2	31.5	5.1	143
의왕시	42.8	5.7	11.3	36.5	5.4	112
하남시	46.8	4.4	4.4	37	4.3	350
용인시	46.1	1.5	2.4	35	1.4	320

〈부표 1 계속〉

지역	보육시설 공급률 (0~5세)	국공립보육 공급률 (0~5세)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공급률	보육시설 이용률 (0~5세)	국공립보육 시설 이용률	보육아동 1인당특수보 육사업예산
과주시	65	2.2	4.5	48.9	2.1	75
이천시	60.3	5	5	47.2	4.2	140
안성시	77.3	4.6	7	51.2	4.2	201
김포시	49.9	6	11.9	38.2	4.5	58
화성시	40.6	1.8	3.6	32.3	1.7	374
광주시	56.4	4.1	4.4	44.9	3.4	41
양주시	81.8	7.5	7.8	22.1	0.6	665
포천시	78.8	10.4	10.4	59.8	9	66
여주군	59.1	1.3	4.4	46.2	1.2	111
연천군	64.6	15.4	27.2	50.6	12.9	245
가평군	65.2	8.6	11.3	47.7	7.3	553
양평군	46.1	11.2	12.5	38.9	10	165
강원도						
전체	62.3	7.7	20.9	48.8	6.4	73
춘천시	60.6	5.9	17.5	47.6	5.4	110
원주시	58	6.3	14	45.4	5.3	66
강릉시	77.7	2.5	19.1	59	2.1	17
동해시	57.8	3.2	16.7	48.1	2.8	29
태백시	46.6	26	32	41.9	22.8	56
속초시	74.9	6.8	19	58.4	5.5	93
삼척시	56.9	13	21.8	46.2	11.1	32
홍천군	70.3	5.4	21.2	49.7	4.1	9
횡성군	74.1	6.5	52.2	51.6	4.9	160
영월군	57.9	6.1	38.7	42.7	5	327
평창군	40.3	7.6	19.7	34.1	5.4	272
정선군	57.2	17.9	57.2	41.4	15.3	381
철원군	78.8	5.7	12.5	64.3	5.3	39
화천군	43.5	14.2	23.9	33.9	9.5	17
양구군	66.9	6.3	42.7	53.2	5.3	21
인제군	46.5	18.6	29.1	37.4	15	55
고성군	68.8	36.5	36.5	56.9	30.6	32
양양군	44.7	7.9	26.4	39.5	6.8	21
충청북도						
전체	66.3	4.3	17.7	50.2	3.7	252
청주시	67.7	2.2	8.2	50.4	1.8	172
충주시	73.5	6	21.2	54.1	4.7	215
제천시	57.1	12.5	25.2	46.7	11.6	622
청원군	61.2	0	22.6	44.1	0	338

〈부표 1 계속〉

지역	보육시설 공급률 (0~5세)	국공립보육 공급률 (0~5세)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공급률	보육시설 이용률 (0~5세)	국공립보육 시설 이용률	보육아동 1인당특수보 육사업예산
보은군	48.4	7.6	28	38.8	7.3	291
옥천군	55.3	8.1	18	44.6	6.4	331
영동군	57.1	6.3	41.2	42.2	5.3	222
증평군	67.2	1.5	17.8	56.4	1.2	242
진천군	71.1	6.8	26.2	57.2	6.3	287
괴산군	75.5	10.5	55.8	56.2	8.4	314
음성군	63.8	6.3	30.7	52.6	5.5	280
단양군	88.7	22.3	57.5	66	19.6	346
충청남도						
전체	56.5	3	13.8	44.4	2.6	73
천안시	47.4	1.5	3.9	37.5	1.3	83
공주시	59.4	6.6	16.5	47	5.8	60
보령시	60.5	5.4	18.1	47.5	4.7	86
아산시	58	2.3	7.9	45.9	2.2	20
서산시	51.9	0.9	15.6	38.3	0.4	114
논산시	85.7	4.5	24.5	65.6	3.5	34
계룡시	48.4	1.8	9.9	40.4	1.5	234
금산군	57	8.5	22.5	47.4	6.7	17
연기군	66.9	6.5	22.7	55.2	6.3	91
부여군	76.7	0	51.9	55.8	0	2
서천군	95.8	8.2	51.9	63.5	5.5	40
청양군	72.4	10.5	30.9	53	7	627
홍성군	56.1	6.7	29.9	47.6	4.7	13
예산군	47.3	2.2	23.1	40.5	1.8	36
태안군	54.5	1.9	23	44.7	1.2	141
당진군	56.2	4.1	13.4	44.4	3.9	98
전라북도						
전체	75.2	3.1	17.9	57.5	2.5	47
전주시	81.9	1	11.4	60.9	1	28
군산시	63.6	4	18	51.6	3.3	25
익산시	70.3	3.6	19.8	53.9	2.9	54
정읍시	96.8	5.5	28.6	70.5	4	141
남원시	93.2	1.5	23.7	75.8	1	185
김제시	80.5	5.3	34.7	56	4.1	68
완주군	67.6	4.2	24.6	54.5	3.9	-
진안군	40	12.5	12.5	33	11	19
무주군	46.1	12.2	19.3	39.6	9.1	96
장수군	56.7	12.4	50.7	49.3	12.3	-

〈부표 1 계속〉

지역	보육시설 공급률 (0~5세)	국공립보육 공급률 (0~5세)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공급률	보육시설 이용률 (0~5세)	국공립보육 시설 이용률	보육아동 1인당특수보 육사업예산
임실군	63.9	0	26.9	45.3	0	-
순창군	59	9.7	17.2	46.4	5.7	-
고창군	70	2.2	29	57.1	2.1	1
부안군	66.8	0	0	52	0	4
전라남도						
전체	68.6	4.6	24.3	53.5	3.7	81
목포시	75.5	2.1	16.5	60.1	1.8	48
여수시	61.8	6.8	23.5	50.1	5	55
순천시	66.6	4.7	11.9	54.8	3.9	41
나주시	88.7	14.8	43.2	64.7	10.6	164
광양시	69.9	6.8	18.7	55.3	6.4	205
담양군	55	0	12.1	41	0	9
곡성군	75.6	0	45	60	0	8
구례군	70.5	7.5	7.5	50.1	7.2	-
고흥군	67.2	1.7	29.4	51.1	1.7	294
보성군	47.2	16.6	34.6	35.9	13.5	20
화순군	90.4	1.7	20.2	72.8	1.3	77
장흥군	60.2	4.5	26.4	46.8	3.9	22
강진군	67.6	0	22.6	49.4	0	5
해남군	66.7	1.5	31.4	54.7	1.3	157
영암군	75.4	0	39.5	52.7	0	10
무안군	65.2	2.9	29.2	41.7	2.3	48
함평군	82	0	69.8	48.9	0	5
영광군	68.5	0	45.2	50.9	0	9
장성군	41.1	3.3	24	34.3	2.2	7
완도군	61.7	5.2	25.5	54.2	4.3	154
진도군	55.7	4.4	33.3	47.7	3.8	111
신안군	71.8	14.9	71.8	39.6	8.4	468
경상북도						
전체	63.2	4.7	11.4	47.3	3.7	150
포항시	68.3	2.4	7.8	50.9	1.9	292
경주시	70	1.7	9.6	51.3	1.4	312
김천시	64	5.4	19.5	44.6	4.4	120
안동시	50.1	7.2	18	43.3	6	114
구미시	55.2	2.6	6	40.9	1.9	106
영주시	60	5.8	10.2	50	5.1	-
영천시	60.7	6.3	18.8	51.1	5	140
상주시	42.1	1	6.4	32.5	0.7	46

〈부표 1 계속〉

지역	보육시설 공급률 (0~5세)	국공립보육 공급률 (0~5세)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공급률	보육시설 이용률 (0~5세)	국공립보육시 설 이용률	보육아동 1인당특수보 육사업예산
문경시	55.7	7.7	16.5	43.6	4.9	45
경산시	74.2	2.7	8.1	53	2.1	82
군위군	46.9	0	33.8	29.9	0	-
의성군	54.5	6.8	38.9	44.6	6.3	-
청송군	68.5	23.3	32.5	45.3	15.1	-
영양군	51.9	31.2	31.2	34	21.1	148
영덕군	67.3	25.3	25.3	55.3	18.5	77
청도군	68.5	17.9	37.9	49.3	14.1	113
고령군	78.4	16.6	29.3	54	11.8	79
성주군	58.1	15.6	15.6	48.3	14.6	40
칠곡군	79.1	2.3	7.3	54.8	2	21
예천군	60.4	6	16.7	50.3	4.9	3
봉화군	41.1	20	25.2	33.3	16.4	53
울진군	59.7	21.7	21.7	47.6	18.2	217
울릉군	24.6	15.5	15.5	22	15	-
경상남도						
전체	58.3	4.6	9.4	44.8	3.9	116
창원시	51.1	4.5	8.1	40.5	4.3	95
마산시	59.5	5.2	11.4	47.5	4.5	62
진주시	77	6.2	11.4	59	5.3	209
진해시	48.8	3.7	6.4	38.4	2.3	60
통영시	41.2	4.8	7.8	34.3	4.7	968
사천시	68.4	5.5	13.3	52.7	4.8	28
김해시	62.2	3.8	5.6	45.9	3.2	10
밀양시	83.8	1.1	24.2	57.8	0.7	69
거제시	33.3	2.7	4.7	28.5	2.5	46
양산시	73	1.3	8.7	50.2	1.1	38
의령군	57.3	11.5	11.5	39.7	7.7	65
함안군	49	5.5	12.9	40.9	5	49
창녕군	58.9	7.2	19	44.6	6.7	-
고성군	54.5	6.3	22.9	46.3	4.1	189
남해군	68.3	6.5	6.5	55.6	6.2	67
하동군	76.1	8.1	20.9	56.9	5.1	35
산청군	77	23.7	23.7	63	22.5	745
함양군	52.4	10.5	31.9	44.1	10.2	169
거창군	70.2	11.6	13.4	59.1	10	177
합천군	42.1	12.3	16.2	34.3	10.6	1,024
제주도						
전체	81	3.9	27.8	68.1	3.6	-
제주시	76.4	2.5	20.7	65.9	2.4	-
서귀포시	95	8.4	49.7	74.8	7.2	-

부록 2.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 지표

〈부표 2〉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기준

영역	내역	
맞춤형 보육서비스		
시간연장, 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중 1가지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① 맞춤형 보육 실시. ② 운영 계획 수립(미운영시) ③ 맞춤형 보육 실시를 위한 홍보 실시(미운영시 수요조사) ④ 맞춤형보육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계획) ⑤ 시설환경이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는데 적합	각 1점
안심보육: 시설안전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①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설치 및 대피시설로서의 기능【필수항목】 ② 비상재해대비시설은 설치 기준을 지켜 안전하게 설치 ③ 안전설비를 갖추어 적절히 관리 ④ 비상시 대처방안 마련 ⑤ 소방대피훈련을 매월 실시	각 2점
영유아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② 보육시설 실외의 시설설비가 영유아에게 안전하게 설치 ③ 보육시설 실내의 시설설비가 영유아에게 안전하게 설치 ④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에게 노출되어 있지 않음 ⑤ 연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실시	각 1점
안심보육: 급식·위생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급간식을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① 영양사가 계획한 식단을 사용하고, 식단표대로 제공 ② 급간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 ③ 보관중인 식자재는 유통기한을 준수. ④ 음식의 조리(또는 배식)과정이 위생적임. ⑤ 영·유아에게 제공한 일일 급간식 내용을 학부모에게 공개	각 1점
보육시설 전반이 청결하고 위생적인가?	① 보육실, 현관, 복도 등 보육시설의 청결상태가 양호 ② 화장실, 세면장의 청결상태가 양호 ③ 조리실의 청결상태가 양호 ④ 보육시설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 ⑤ 놀잇감의 청결상태가 양호.	각 1점
회계의 투명성		
시설명의로 1계좌를 사용하며,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	① 시설명의로 1계좌를 사용【필수항목】 ② 세입과 세출을 모두 계상하여 예산 편성 ③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 내역이 일치. ④ 시설운영과 무관한 부적절한 지출 내역이 없음. ⑤ 대금결제는 보육시설 전용 신용카드, 계좌입금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고 지급내역,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	각 2점

<p>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를 규정에 따라 수납, 관리하고 있는가?</p>	<p>①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는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스쿨뱅킹, 지로 등)을 통하여 수납【필수항목】 ②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는 월별로 수납 ③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잡부금품을 요구하지 않음 ④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에 대해 매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거나 가정 통신문을 통해 안내 ⑤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의 자치구별 상한액을 준수</p>	<p>각 1점</p>
<p>외부에 시설정보를 공개하고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가?</p>	<p>① 어린이집 기본소개, 반별현황, 종사자현황,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상세내역, 시설사진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서울특별시 보육포털) ② 온라인 공개 시설 정보는 구체적이고 충실하며 누락 없음. ③ 가정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 ④ 다양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실시. ⑤ 지역사회기관 한 두 곳과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이 있음.</p>	<p>각 1점</p>
<p>종사자 자질향상</p>		
<p>전문 인력 확보 및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p>	<p>① 1급 및 2급 보육교사가 전체교사의 60% 이상이다. ② 현 시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교사가 전체교사의 50% 이상 ③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업무분장에 맞는 역할을 수행 ④ 시설장과 보육교사 모두 교육이수 기간 내에 직무교육 이수. ⑤ 시설종사자가 직무승급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에 참여</p>	<p>각 1점</p>

부록 3. 호주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호주 보육시설 평가인증

-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질적 수준 관리체계를 갖고 있음.
 - 입법조치를 통해 종일제 보육센터의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 지급을 연동하여 지급함. 주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보육급여와 보육서비스 수준을 연계함.
 - 국립보육인증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NCAC)가 보육서비스 평가인증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결정검토위원회(Accreditation Decision Review Committee: ADRC)는 보육시설의 소원이 있을 경우 인증 관련 결정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함.
-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크게 종일제 보육시설과 가정보육, 방과 후 보육으로 현재는 각기 다른 지표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2012년부터 전국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전국 양질 교육 및 보육 기본안(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을 시행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평가인증 시행체제 개편도 포함되어 있음.

가. 평가목적 및 개요

- 호주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은 호주의 모든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을 보육종사자와 보육시설 이용자인 영유아와 부모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2009a).
 - 영유아 발달의 측면에서, 영유아 발달의 모든 측면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경험과 상호작용이 있는 최상의 질적 보육을 제공
 - 보육시설의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자체점검과 개선 과정에 보육시설과 부모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높은 질에 대한 영유아 및 가족의 요구와 전문적 발달에 대한 보육종사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보육의 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공약을 보육시설이 증명함으로써 보육종사자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직무 가치를 알도록 함.
- 평가인증은 모든 보육시설이 그 대상이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평가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해당 보육시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부모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평가 대상은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운영되는 종일제 보육시설 중에서 NCAC에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됨.
- 신청을 완료한 보육시설은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심의, 인증 결정의 5단계를 거쳐 인증에 이룸.
 - 1단계에서는 보육시설이 NCAC에 참여수수료를 납부하고 시설정보를 알림.
 - 2단계에서는 시설장, 교사, 부모 등으로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표에 따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 계획을 세워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NCAC로 제출함.
 - 3단계는 현장관찰로 현장관찰자들이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평가한 후 현장관찰보고서를 NCAC로 제출함.
 - 4단계(심의)에서는 심의위원들이 보육시설의 자체점검보고서, 설문지, 현장관찰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시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함.
 - 마지막 단계(인증 결정)에서는 시설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NCAC가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함.
 - 인증에 통과한 보육시설은 사후점검을 통해, 불인증된 보육시설은 6개월 내에 개선안과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함.
 - 불인증된 시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불인증된 시설 등의 이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결정검토위원회라는 독립된 별도의 전담 부설기관을 두고 있음.
 - 인증결정검토위원회에서는 공정성, 객관성, 증거 기반, 자연 정의에 의거하여 결정을 검토하고 의견을 작성하여 국립보육인증위원회에 제시

나. 평가기준

- 호주의 보육시설은 종일제보육시설, 가정보육, 방과후 보육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시설 유형별로 다른 기준에 의해 적용받음.

- 호주의 평가인증 평가지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조금씩 변경되었는데, 종일제 보육시설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1994년 10개 영역의 52항목으로 개발된 이후 1998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약 2년에 걸친 검토과정을 거쳐 2000년 11월 변경사항이 발표되었고, 2002년에는 10개 영역 35항목, 2005년에는 7개 영역 33항목으로 축소하여 2006년 6월부터 평가인증 과정에 적용하였음.
-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불충분(Unsatisfactory), 충분(Satisfactory), 우수(Good Quality), 매우 우수(High Quality)의 4가지로 평가된다. 문항에 따라서는 기본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도 있음.

〈부표 3-1〉 보육시설 유형별 평가인증 영역

유형	평가영역(원칙 개수)	
종일제 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동료 직원과의 상호작용(6) ▪ 가족과의 파트너십(3) ▪ 프로그램 및 평가(3) ▪ 아동의 경험 및 학습(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및 안전(5) ▪ 건강, 영양, 복지(6) ▪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4)
가정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작용(5) ▪ 물리적 환경(3) ▪ 영유아의 경험, 학습 및 발달(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위생, 영양, 안전, 복지(6) ▪ 종사자(4) ▪ 시설 운영 및 관리(5)
방과 후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 대한 존중(3) ▪ 종사자-아동간 상호작용 및 관계(3) ▪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3) ▪ 프로그램 및 평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와 발달(4) ▪ 건강, 영양, 복지(4) ▪ 보호 및 안전(3) ▪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6)

다. 평가 및 운용 체계

1) 기존 체계

- 2010년 6월 현재, 호주의 NCAC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평가결과는 인증지연, 1년 인정, 2년 인정, 3년 인정의 3단계로 구분됨.
 - 인증 지연의 경우에는 자체점검 개선계획을 세워 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함.
 - 사소한 문제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은 3개월 이내에 다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3회 연속해서 인증을 얻지 못하면 NCAC는 이러한 사실을

담당 부처에 통보하고, 이 경우 해당 보육시설은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그 보육시설에 등록하고 있는 학부모에게도 통보함.

- <부표 3-2>, <부표 3-3>은 2010년 6월 기준 시설유형별 평가인증 현황이다. 5단계 심의를 마친 시설의 인증 통과 비율은 종일제보육시설은 93.1%, 가정보육 94.6%, 방과후 보육 96.6%임.

<부표 3-2> 종일제보육시설 인증 현황 - 2010

단위: 개소, %

구분	인증 (A)	불인증	5단계 심의(B)	신규시설 자체평가	전체	심의 후 인증통과 비율(C=A/B)
전국	4,575	339	4,914	1,100	6,014	93.1
ACT	87	3	90	20	110	96.7
NSW	1,883	114	1,997	403	2,400	94.3
NT	49	11	60	8	68	81.7
Qld	1,056	57	1,113	318	1,431	94.9
SA	250	22	272	33	305	91.9
Tas	90	6	96	11	107	93.8
Vic	820	72	892	235	1,127	91.9
WA	340	54	394	72	466	86.3

<부표 3-3> 가정보육센터 인증 현황 - 2010

단위: 개소, %

구분	인증 (A)	불인증	5단계 심의(B)	신규시설 자체평가	전체	심의 후 인증통과 비율(C=A/B)
전국	279	16	295	36	331	94.6
ACT	5	0	5	0	5	100.0
NSW	89	3	92	2	94	96.7
NT	3	2	5	0	5	60.0
Qld	73	4	77	9	86	94.8
SA	11	1	12	0	12	91.7
Tas	11	0	11	0	11	100.0
Vic	71	5	76	21	97	93.4
WA	16	1	17	4	21	94.1

2) 2012년 도입 예정 체계

- 호주 정부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관리하고자 국가 교육 및 보육의

질 기준안(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을 도입, 2012년 1월부터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호주 정부는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더욱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호주 평가인증기구가 현재는 국가기구가 아니고 예산만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이나, 2012년부터 국가 조직으로 흡수되어 권한이 강화되고, 각 지방정부에 평가인증 관련 부서를 설치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며, 보육시설 이외에 유치원까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는 등의 변화를 추진함.
- 새로 도입되는 전국 질적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은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에 관련된 7가지 분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실천,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물리적 환경, 직원 사항, 영유아와의 관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리더십 및 서비스 관리로 구성된다.
- 새로운 평가 체계는 각각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곱 가지 질적 분야에 걸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나의 총괄적인 등급을 결정하며, 모든 서비스에는 승인과 등급 정보가 표시될 예정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매겨진 등급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됨.
- 각 서비스의 등급은 최우수(Excellent), 우수(High Quality),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 노력 중(Operation Level), 불만족(Unsatisfactory)의 5단계로 나누어짐.
 -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주기가 달라지는데 최우수(Excellent)와 우수(High Quality)는 3년마다,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는 2년마다 평가를 받으며, 노력 중(Operation Level)을 받은 시설은 최소 1번 이상의 방문점검과 1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함.
 - 신규시설은 처음 인가 시 노력 중(Operation Level)을 받는데 이 경우 3~6개월 이내 추가 방문점검을 받아야 함.
 - 평가 결과 불만족(Unsatisfactory)를 받은 시설은 개선계획과 함께 수시로 방문 점검을 받게 되며 개선 정도에 따라 처벌/폐쇄 조치가 가능함.
- 시설의 전체 등급은 영역별 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7개 영역 중 불만족(Unsatisfactory) 혹은 노력 중(Operation Level)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영역 점수로 평가됨.
 - 최우수(Excellent)는 우수(High Quality)를 받은 시설이 별도의 등급평가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받게 됨..

-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과 우수(High Quality)는 모든 영역에서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 등급을 받았거나 모든 영역에서 불만족(Unsatisfactory) 이나 노력 중(Operation Level)이 없을 때 받게 됨.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은 우수(High Quality)를 받은 영역이 3개 이하일 때, 우수(High Quality)는 교육 프로그램 및 실천, 영유아와의 관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리더십 및 서비스 관리과 시행 영역을 포함한 4개 이상 영역에서 우수(High Quality level)를 받아야 함.
- 모든 시설은 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온라인상에서도 검색이 가능함.

〈부표 3-4〉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 주기

구분	내용 및 평가 주기
최우수 (excell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gh quality를 받은 시설 중 별도의 평가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음. ▪ 서비스가 우수하며 이 분야의 선두적인 위치에 있음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함. ▪ 평가주기: 3년
우수 (high qu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질적 기준을 넘어섰음을 의미함. ▪ 평가주기: 3년
보통 (national quality stand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가 전국 질적 기준에 부합함을 의미함. ▪ 평가주기: 2년
노력 중 (operation le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시설의 서비스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함. ▪ 신규시설 인가 시 적용받게 되는 기본 등급, 3개월 이후 재평가 ▪ 기존 시설의 경우 1년마다 방문점검 및 재평가, NQS에 못 미칠 경우 1년 이내 재방문
불만족 (unsatisfac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규제기관이 해당 기관의 서비스의 즉각적 수준 향상을 위해 면밀히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함. ▪ 개선계획 및 수시점검, 개선 미비시 폐쇄조치 가능

부록 4. 조사표 5종

특수보육시책에 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현재 보육사업은 국고지원 사업 이외에 각 지방정부가 다양한 특수보육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역간 형평성과 더불어 국무총리실에서 표준보육비를 반영(인건비, 교구교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고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에 본 연구소는 국고사업으로의 채택 우선순위 등 정책건의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각 시·도와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보육시책의 필요성과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부모 부담 완화 및 보육사업 활성화 등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y 연락처 서문희 연구위원 02-398-7711, suhnh@kicce.re.kr
최혜선 연구위원 02-398-7705, seestem@kicce.re.kr

※ 귀하의 간략한 인적사항을 기록해 주십시오.

지	역	시·도	시·군·구
소	속	국	과
이	름	성	별
		남	여

※ 특수보육시책 중에는 국고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수 있으나, 본 조사는 특수보육시책에 대해서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아래의 시책이 특수보육시책을 가리킨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I. 특수시책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 제시된 7가지 영역 특수시책에 대하여 국고 지원 사업 이외에 시·도/시·군·구 특수시책으로 추가 사업으로 실시할 필요성과 각 사업이 보육의 질적 수준이나 부모 부담완화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하는 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II번 질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특수시책 필요성				전반적 효과성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대체로 필요	④ 매우 필요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대체로 효과적	④ 매우 효과적
1) 보육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2)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4) 보육시설 기능 보강 추가 사업								
5) 부모 보육료 추가 지원								
6) 평가인증 통과 시설 지원								
7) 취약보육 운영 추가 지원								
8)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 9) 위의 8가지 특수시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번

II. 영역별 세부 특수시책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 보육인력 인건비 지원 관련 각 사업을 시·도/시·군·구 특수시책으로 실시할 필요성과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효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난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특수시책 필요성				보육의 질에 대한 효과성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대체로 필요	④ 매우 필요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대체로 효과적	④ 매우 효과적
1) 공인 민간시설 인건비 지원 (서울형, 부산형 등)								
2)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3) 교사 담임수당 지원								
4) 특수근무 교사 지원								
5)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 지원 (해당시설)								
6) 취사부인건비 지원								
7) 사무원 인건비 지원								
8)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 9) 위의 8가지 특수시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번

●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 각 사업**을 시·도/시·군·구 특수시책으로 실시할 필요성과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효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난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특수시책 필요성				보육의 질에 대한 효과성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대체로 필요	④ 매우 필요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대체로 효과적	④ 매우 효과적
1) 교재교구비 지원								
2) 냉난방비 지원								
3) 영아 간식비 지원								
4) 유아 간식비 지원								
5) 친환경 급식비 지원								
6) 차량운영비 지원								
7)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8) 건강, 안전 관련 운영비 지원								
9) 공공요금 지원								
10) 기타 포괄적 운영비 지원								

11) 위의 10가지 특수시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번

● **보육시설종사자 지원 관련 각 사업**을 시·도/시·군·구 특수시책으로 실시할 필요성과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효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난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특수시책 필요성				보육의 질에 대한 효과성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대체로 필요	④ 매우 필요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대체로 효과적	④ 매우 효과적
1) 중식비 지원								
2) 교통비 지원								
3) 명절휴가비 지원								
4) 근속수당 지원								
5) 자기계발비 지원								
6) 교재연구비 지원								
7) 교육 및 연수비 지원								
8) 기타 역량개발 지원								
9) 기타 종사자 처우 개선								

10) 위의 9가지 특수시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번

● **보육시설 기능 보강 관련 각 사업**을 시·도/시·군·구 특수시책으로 실시할 필요성과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효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난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특수시책 필요성				보육의 질에 대한 효과성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대체로 필요	④ 매우 필요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대체로 효과적	④ 매우 효과적
1) 공립시설 확충								
2) 공립시설 증개축								
3) 공립시설 환경개선, 장비비, 개보수비 등 지원								
4) 민간시설 증개축								
5) 민간시설 환경개선, 장비비, 개보수비 등 지원								
6)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7) 육아지원기관(영유아,플라자) 설치								
8) 장난감 대여점 설치 운영								

9) 위의 8가지 특수시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번

● **평가인증시설 지원 관련 각 사업**을 시·도/시·군·구 특수시책으로 실시할 필요성과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효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난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특수시책 필요성				보육의 질에 대한 효과성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대체로 필요	④ 매우 필요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대체로 효과적	④ 매우 효과적
1)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2) 장비비 기자재비 지원								
3) 교재교구비 지원								
4) 냉난방비 지원								
5) 차량운영비 지원								
6) 보육교사 수당 지원								
7) 시설장 수당 지원								
8) 종사자 교통비 지원								
9) 종사자 교육, 연수 비용 지원								
10)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								
11) 기타 운영비 인센티브 지원								
12) 평가인증 조력자 수당 지원								

13) 위의 12가지 특수시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번

● **보육비용 지원 관련 각 사업**을 시·도/시·군·구 특수시책으로 실시할 필요성과 부모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난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특수시책 필요성				부모부담 완화 효과성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대체로 필요	④ 매우 필요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대체로 효과적	④ 매우 효과적
1) 다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2)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료지원								
3) 입양아동 보육료지원								
4) 민간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								
5) 입소료 지원								
6) 현장학습비 지원								
7) 특기활동비 지원								

8) 위의 7가지 특수시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번

● **취약보육운영 지원 관련 각 사업**을 시·도/시·군·구 특수시책으로 실시할 필요성과 사업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난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실시 필요성				사업 활성화 효과성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대체로 필요	④ 매우 필요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대체로 효과적	④ 매우 효과적
1) 장애아전담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2) 장애아전담시설 운영비 지원								
3) 장애아통합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4) 장애아통합시설 운영비 지원								
5) 영아전담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6) 영아전담시설 운영비 지원								
7) 시간연장보육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8) 시간연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9) 방과후보육 인건비(수당) 지원								
10) 방과후보육 운영비 지원								

11) 위의 10가지 취약보육 특수시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번

● 출산 축하금이나 기관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과 같은 일회성 혹은 월별 수당 관련 사업을 시·도·시·군·구 특수시책으로 실시할 필요성과 부모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난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특수시책 필요성				부모부담 완화 효과성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대체로 필요	④ 매우 필요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대체로 효과적	④ 매우 효과적
1) 출산수당								
2) 양육수당								

● 현재 보육료 추가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이나 셋째아 등 다자녀 가구에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지원이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소득층 가정 자녀 ② 다자녀 가구 자녀

● 현재 표준보육비용에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와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급식비, 난방비 지원사업 등은 표준보육비용에 포함된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중복지원이라고 국무총리실에서 지적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의 중복지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표준보육비용에 포함되는 사항(예: 간식비, 난방비 등)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있다면 무엇인지 있는 대로 모두 기록해 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소정의 사례금 지급을 위한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계좌번호	()은행 ()

자치구 번호	조사구 번호	시설 번호

서울시 보육시설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 및 유아교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등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선도하는 서울시 보육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전국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편으로 송부한 본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가지고 계시면, 전문조사원이 방문하여 응답 내용을 확인하고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질문지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희 연구위원 02)398-7711 suhmh@kicce.re.kr

최혜선 연구원 02)398-7705 seestem@kicce.re.kr

김선화 인턴연구원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전화번호	시설	보육시설명	() 어린이집
	핸드폰		
조사원	성명	방문일자	
	연락처		

육아정책연구소

1. 보육시설 일반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시설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립유형과 설립연도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설립유형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민간 ④ 가정 ⑤ 직장
설립연도	()년

2. 귀 시설의 보육이동 정원과 현원, 그리고 보육료 지원아동, 취업모 아동 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정원	()명
현원	영아 ()명 유아 ()명 총 ()명
보육료 지원아동	전액지원아동 ()명/ 일부지원아동 ()명/ 미지원아동 ()명
취업모 자녀수	취업모 아동 ()명

3. 귀 시설의 건물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단독건물 ② 아파트 ③ 주택 ④ 상가건물
 ⑤ 종교단체 건물 ⑥ 공공시설 복합건물 ⑦ 기타()

4. 귀 시설의 임대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① 자가(용자없음) (☞ 5) | ② 자가(용자) (☞ 4-2) |
| ③ 건물 전체 임대(전세) | ④ 건물 전체 임대(월세) |
| ⑤ 건물 일부 임대(전세) | ⑥ 건물 일부 임대(월세) |
| ⑦ 아파트 임대(전세) } (☞ 4-1) | ⑧ 아파트 임대(월세) } (☞ 4-1) |
| ⑨ 무상 (☞ 5) | ⑩ 기타() |
- 88) 비해당

4-1. 임대하고 있는 경우, 금액과 기간은 어떠합니까?

전세의 경우	① 전세금액: ()원
	② 계약기간: ()개월
월세의 경우	③ 월세보증금: ()원
	④ 월지급액: ()원

4-2. 귀 시설의 현재 용자금 규모는 얼마입니까?

용자금: ()백만원

5. 다음 중 현재 운영하시는 보육시설 이외에 귀하를 포함하여 가족(부모, 부부, 자녀)이 실제로 운영하거나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다른 시설이나 기관이 있는 경우 모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어린이집(개)	② 유치원(개)
③ 학원(개)	④ 기타((개))

II.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6. 평일 종일제 보육을 위하여 오전 당직교사(시설장 겸직 포함)가 출근하는 시간과 오후 당직교사가 퇴근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1) 오전 당직교사 출근시간	오전(아침) ()시 ()분
2) 오후(저녁) 당직교사 퇴근시간	오후(저녁) ()시 ()분

7. 귀 시설은 맞춤형 보육으로 어떠한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각 맞춤형 보육 실시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실시한다면 하루 평균 아동은 몇 명입니까? 현재와 같은 각 맞춤형 보육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형	실시여부		실시시 평균 아동수	확대 필요성	
	① 실시	② 미실시		① 필요	② 불필요
1) 시간연장보육			()명		
2) 시간제보육			()명		
3) 24시간보육			()명		
4) 휴일보육			()명		
5) 장애아보육			()명		

8. 위 시설은 평가인증을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언제 받으셨습니까?

- ① 받음(년월 ___년 ___월) ② 받지 않음

9. 위 시설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언제 받았습니까?

- ① 서울형(공인 년월 ___년 ___월)(10번 질문으로) ② 서울형 아님(9-1번 질문으로)

9-1. 서울형으로 공인을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기회가 되면 서울형으로 공인을 받으실 생각입니까?

- ① 받을 것임(10번 질문으로) ② 아님(9-1-1번 질문으로) ③ 잘 모르겠음 (10번 질문으로)

9-1-1. 서울형으로 공인을 받지 않으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공인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서
 ② 공인을 받아도 시설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서
 ③ 현재에 만족하므로 ④ 기타() ⑤ 비해당

10. 다음은 귀 시설에서 추가 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프로그램의 종류, 부모가 선택하는지 여부, 시간대 강사는 누구인지, 비용은 얼마인지를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가 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수는 몇 개입니까?	()개
2) 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① 모두 선택 가능 ② 일부 선택 가능 ③ 모두 의무 수강 ④ 비해당
3) 특별활동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외부 강사는 일주일에 몇 명 정도입니까?	주 ()명
4) 특별활동은 오전, 오후 언제 합니까?	① 오전에만 ② 오후에만 ③ 오전, 오후 모두 ④ 비해당
5) 특별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아동의 경우,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십니까?	월 ()원

17. 다음은 귀 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7점 만점으로 할 때 몇 점 정도입니까?.

구분	1	2	3	4	5	6	7
1) 보육시설 설비와 놀잇감 위험요소가 없다.							
2) 조리실 설비는 영유아의 활동공간과 격리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3) 영유아가 학대나 유괴가 무엇인지 인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도록 한다.							
4) 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험을 알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며, 차량 보호 장치의 중요성을 고지한다.							

18. 다음은 귀 시설의 청결과 위생, 건강 및 영양관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7점 만점으로 할 때 몇 점 정도입니까?

구분	1	2	3	4	5	6	7	8 (비배당)
1) 화장실과 세면장 청결이 잘 유지되고 있다.								
2) 조리실, 급식설비와 식기류, 식자재, 배식관리가 청결하고 위생적이다.								
3) 놀잇감은 청결하고, 자주 세척한다.								
4) 영유아는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침구를 자주 세탁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5) 식단이 영양적 균형을 이루고,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적절하고 다양한 형태로 조리되어 제공된다.								

III. 서울시 보육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최근 1년간 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의 변화를 7점 만점으로 할 때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변화 없음 ←-----→ 변화가 많음						
	1	2	3	4	5	6	7
1) 표준보육과정 등 보육내용 충실							
2) 안전 및 위생관리 개선							
3) 급식 등 영양 관리 개선							
4) 아동 인권 보호 강화							
5) 부모 참여 확대							

2. 귀하는 최근 1년간 귀 어린이집 운영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의 변화를 7점 만점으로 할 때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변화 없음 ←-----→ 변화가 많음						
	1	2	3	4	5	6	7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2)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관리 체계화							
3) 시설운영 전반 체계화							
4) 시설의 재정운영 안정화							
5) 회계관리시스템으로 재정 운영 투명화							
6) 공개와 열린 운영							

3. 귀하는 최근 1년간 서울시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서울시가 재정을 투자한 만큼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① 투자에 비하여 개선된 정도는 아주 미미하다.
 ② 개선은 되었으나 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하다.
 ③ 개선은 되었으나 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다.
 ④ 투자한 만큼 개선되었다
 ⑤ 잘 모르겠다

4. 귀하는 현재의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지표 기준이나 조건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점을 만점으로 할 때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적절 ←-----→ 매우 적절						
	1	2	3	4	5	6	7
1) 평가인증 통과							
2) 맞춤형 보육서비스(시간연장, 시간제, 장애아통합 보육) 중 1가지 이상 실시							
3)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대책 마련							
4) 영유아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							
5)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양질의 급간식 위생적 제공							
6) 보육시설 전반 청결하고 위생적							
7) 시설명세의 1계좌로 회계 관리 투명성							
8) 보육료 및 기타경비 규정에 따라 수납, 관리							
9) 운영위원회 구성, 정기적 운영							
10)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							

4-1. 이 중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의 성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골라주세요. ()번

5. 서울시가 민간과 가정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평균보육료 수입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그 지원 수준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지 않음 (5-1번 질문으로) ② 적절함(6번 질문으로) ③ 잘 모름(6번 질문으로)

5-1. 적절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수준

6. 귀 시설은 재무회계규칙 지출에서 '기타 운영비 항목 10%'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① 잘 지키(7 질문으로) ② 지키지 못함(6-1 질문으로)

6-1. 잘 지키지 못한다면 평균 수입의 몇 % 정도를 기타 운영비로 지출하십니까?
 _____ % 수준

7. 귀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조건이 현재보다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필요한 편이다 ④ 매우 필요하다

8. 귀하는 서울형과 같이 민간개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조건으로 다음 각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불필요	② 별로 불필요	③ 대체로 필요	④ 매우 필요
1) 평가인증 여부 이외에 평가인증 점수를 반영한다				
2) 자가 시설여부를 반영한다.				
3) 자가 시설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을 반영한다.				
4) 보육시설의 규모를 반영한다.				
5) 실제 운영자가 운영하는 시설, 기관의 수를 반영한다.				
6) 특별활동 수 및 수납액을 반영한다.				

9. 귀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사후관리(예. 교차점검, 안심보육모니터링)가 충분하고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적절	② 대체로 적절	③ 적절하지 않으므로 강화 필요	④ 지나치므로 완화 필요	⑤ 잘 모름
1) 사후관리의 충분성					
2) 사후관리의 적절성					

10. 귀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사후관리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최근에 어린이집에 설치되고 있는 IP-TV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 시설은 IP-TV를 설치하십니까?	① 설치 ② 미설치 ③ 무엇인지 잘 모름
1-1) 부모 중 몇 % 정도가 이를 이용하십니까?	()%
1-2) IP-TV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만족하나요?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2) IP-TV 설치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실제 많은 도움 ② 어느정도 도움 ③ 별 도움 안됨 ④ 잘 모름
3) IP-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불필요 ② 필요 ③ 매우 필요 ④ 잘 모름
4) IP-TV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침해 ② 어느정도 침해 ③ 침해하지 않음 ④ 모름
5) IP-TV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침해 ② 어느 정도 침해 ③ 침해하지 않음 ④ 모름

12. 귀하는 보육시설에 자율장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불필요 ② 별 필요 없음 ③ 필요한 편 ④ 매우 필요 ⑤ 잘 모름

13. 귀하는 보육시설 자율장학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요비용 지원 ② 전문가 지원 ③ 교사 연수
④ 보조(대체)교사 ⑤ 기타() ⑥ 별로 없음 ⑦ 잘 모름

14. 귀하는 보육시설 공동구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불필요 ② 별 필요 없음 ③ 필요한 편 ④ 매우 필요 ⑤ 잘 모름

14-1. 필요하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비용 절약 효과 없음 ② 고급 식재료 선택 제한
 ③ 배달시간 등 불편 ④ 1개 기업 집중 구매
 ⑤ 기타(_____)

**IV. 다음은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하는 질문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닌 경우 V번 질문으로 가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형 공인 이후 교사관리와 교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구분	① 매우 개선	② 비교적 개선	③ 별 차이 없음	④ 잘 모름
1) 교사 이직				
2) 교사 채용 어려움				
3) 교사의 심리적 안정				
4) 교사의 자존감				
5) 교사의 업무 적극성				

2. 귀 시설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 받은 이후 아동의 입소나 대기자가 늘었습니까?

1) 입소아동	① 증가 ()명 ② 감소 ③ 별 차이 없음 ④ 잘 모름
2) 대기자	① 증가 ()명 ② 감소 ③ 별 차이 없음 ④ 잘 모름 ⑧ 대기자 없음

3. 귀 시설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 받을 때, 맞춤형 보육을 실시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까? 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현재 실제로 해당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계획서 제출 여부	실제 실시 여부	미실시 이유
	① 제출 ② 미제출	① 실시 ② 미실시	
1) 시간연장보육			<보기> ① 준비 부족 ② 수지 안 맞음 ③ 수요 부족 ④ 기타 ⑧ 비해당
2) 시간제 보육			
3) 휴일보육			
4) 장애아보육			
5) 다문화가정자녀보육			
6) 기타(무엇: _____)			

4. 귀 시설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 받은 이후 보육시설의 총 수입과 총 지출에 변화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보기	증가, 감소한 경우 월평균 액수
1) 총 수입	① 증가함 ② 감소함 ③ 총수입은 차이 없음 (증가하거나 감소한 주된 이유: _____)	()원
2) 총 지출	① 증가함 ② 감소함 ③ 총수입은 차이 없음 (증가하거나 감소한 주된 이유: _____)	()원

ID	자치구 번호	동 번호	가구 번호	아동 번호
				1

서울시 영유아부모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 및 유아교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등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선도하는 서울시 보육정책의 성과와 부모 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보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시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가구주명			전화번호	집
				핸드폰
조사원	성명		방문 일자	
	연락처			

육아정책연구소

10 귀하는 서울시내 유치원의 '에듀케어'를 앞으로 이용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이용할 생각임 ② 이용할 생각이 없음 ③ 잘 모르겠음

10

11. 귀하는 부모들이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활동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IP-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불필요 ④ 잘 모름

11

12. 귀하는 보육시설 등 육아지원기관에 설치한 이러한 IP-TV가 교사나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 인권	① 매우 침해 ② 침해 ③ 침해하지 않음 ④ 잘 모름
아동 인권	① 매우 침해 ② 침해 ③ 침해하지 않음 ④ 잘 모름

12

13. 현재 귀 닥에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01번 자녀)는 다음과 같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이용시 어디를 이용하십니까? 또한 앞으로 이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구분	현재 이용여부	이용시 어디	앞으로 필요성
		① 상시 ② 1주일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년에 1~2번 ⑤ 없음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프라자 ④ 개인 ⑤ 기타
1) 잠깐씩 용(시간제보육)			
2) 늦은 시간까지 이용(야간보육)			
3) 1박 2일 등 24시간 이상 이용(24시간보육)			
4) 휴일에 이용(휴일보육)			

13

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I. 반일제 이상 기관에 다니는 영유아가 있는 부모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 앞의 1-6) 질문에서 ①~④번에 응답한 반일제 이상 기관(어린이집(놀이방 포함),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 미술 학원, 영어학원, 주민센터 등) 이용 아동에 질문

※ 여러 기관을 이용할 경우,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다니는 기관을 중심으로 응답

※ 기관 이용 아동이 여러 명일 경우, 가장 나이 어린 자녀를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 아동은 II번 문항만 있는 별도 질문지를 이용하여 추가, 반복 질문

응답 대상 아동 번호는 (번)으로 연령은 ()세입니다.

이 아이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응답합니다.

번호 세
연령

1. 현재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01) 국·공립보육시설 02)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03) 기타법인·단체보육시설
04) 민간보육시설 05) 가정보육시설 06) 직장보육시설
07) 부모협동보육시설 08) 국공립유치원 09) 사립유치원
10) 선교원 11) 반일제이상 영어학원(유치원) 12) 반일제이상 미술학원 등
13)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주민센터 등 14) 문화센터 등 15) 기타()

1

2.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을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제1순위 번, 제2순위 번) | |
| 01) 원장 | 02) 교사 | 03) 운영시간 |
| 04) 비용 | 05) 프로그램 | 06) 건강·영양 |
| 07) 시설규모(아동 수) | 08) 내부 분위기 | 09) 안전한 보호 |
| 10) 집과의 거리 | 11) 시설설비 | 12) 주변 입지 |
| 13) 주변의 평판 | 14) 특별프로그램 | 15) 기타(무엇:) |

	1순위
	2순위

3. 이 아이는 국가로부터 월 보육료나 교육비를 감면받고 있습니까?

(※ 영아 기본보조금, 학습바우처는 제외합니다)

- ① 전액 면제
- ② 60% 면제
- ③ 30% 면제
- ④ 아무런 혜택 없음
(8번 질문으로)

3-1. **면제나 감면받는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01) 소득별 차등 지원 대상
- 02)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대상자
- 03) 세 번째 자녀 05) 장애아동
- 05) 농어민 자녀 06) 기타(직장 등)
- 88) 비해당

3

3-1

4. 평상시에 이 아이가 보육 또는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이용시간은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작성합니다.)

예: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인 경우, 07시 30분 ~ 19시 30분

()시 ()분 ~ ()시 ()분

4		
	등원시간	하원시간

5.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 입학하실 때, 입소료나 입학금은 얼마를 내셨습니까?(※ 조사원은 지불한 금액이 없으면 비해당 888을 기입합니다.)

() 천원

5 천원

6. 매월 순수 보육료 또는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또한 이외에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월평균 얼마인지 항목별로 기록하여 주십시오. (※ 조사원은 년 1회 또는 분기별로 낸 경우 월 평균 값으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천원 단위로 기입하십시오.)

	항목	금액
	일정한 월 보육료 및 교육비	()천원
납부 금액	1) 현장학습비	()천원
	2) 특기교육비	()천원
	3) 교재비	()천원
	4) 급간식비	()천원
	5) 종일반 비용	()천원
	6) 차량운행비	()천원
	7) 행사비	()천원
	8) 기타()	()천원
	총계	()천원

6			천원
1)			천원
2)			천원
3)			천원
4)			천원
5)			천원
6)			천원
7)			천원
8)			천원
계			천원

7. 가구 월평균 소득대비 이 아이가 다니는 보육 또는 교육 기관에 지불한 월평균 총 비용 비율을 어느 정도 입니까?

총 () %

7

8. 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추가 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프로그램의 수, 부모선택 여부 및 비용은 얼마인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활동은 몇 개입니까?	()개
2) 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① 모두 선택 가능 ② 일부는 선택 가능 ③ 모두 의무 수강
3)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십니까?	월 ()천원

8

1)

2)

3) 천원

9. 이 아이가 이용하는 기관의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비용 등에 만족하십니까?

구분	만족 여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01) 원장					
02) 교사					
03) 주변환경					
04) 시설설비					
05) 교재교구 및 장비					
06) 내부 분위기					
07) 비용					
08) 건강관리					
09) 급간식관리					
10) 안전관리					
11) 교육내용					
12) 부모참여					
13) 부모교육 및 상담					

9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0. 현재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번 항목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제1순위 번, 제2순위 번)

10 1순위
 2순위

11. 앞으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현재 다니는 기관에 계속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① 계속 보낼 것임 ② 바꿀 것임 ③ 잘 모르겠음

11

※ 이 아이가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경우 비해당 처리합니다.)

12. 이 아이가 다니는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습니까?

① 평가인증을 받았다(질문 12-1로) ② 평가인증을 안 받았다(13번 질문으로)
③ 평가인증 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13번 질문으로)
④ 평가인증이 무엇인지 모른다(13번 질문으로)

12

15-4. 보육 비용에 변화가 있었다면 월 평균 얼마도 부담이 줄었습니까?
 월 평균 _____ 천원 감소

15-4 천원

15-5. 비용 이외에 서비스에 다소라도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 귀하가 느끼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변화를 만약에 구입한다면 월 평균 얼마정도의 비용을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천원을 더 낼 수 있는 정도임

15-5 천원

16. 이 아이가 다니는 서울형 보육시설에서 주치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음(16-1 질문으로) ② 모름(17번 질문으로)

16

16-1 알고 있는 경우, 이 아이가 주치의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① 있음(무엇: _____) ② 없음 ③ 모름

16-1

17. 이 아이가 다니는 서울형 보육시설은 IP-TV를 설치하였습니까?
 ① 설치(17-1 질문으로) ② 미설치(18번 질문으로) ③ 모름(18번 질문으로)

17

17-1. 설치한 경우, 이용자로 가입하십니까?
 ① 가입 ② 미가입

17-1

17-2. 설치한 경우,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 매일 이용 ② 주 2-3회 이용 ③ 주 1회 정도 ④ 가끔 이용

17-2

17-3. IP-TV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17-3

17-4. 귀 자녀의 활동을 다른 부모들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걱정되지는 않으십니까?
 ① 전혀 아님 ② 아님 ③ 걱정됨 ④ 매우 걱정됨

17-4

※ 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민간 및 가정 어린이 집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8. 이 아이가 다니는 보육시설이 서울형 공인어린이집이 아닌 경우, 서울형 어린이집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서울형이 아니어도 서비스가 좋아서 다니던 곳을 그냥 다니고 있음
- ②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아니나 별 차이가 없어서
- ③ 옮기고 싶어도 주변에 서울형이 없어서
- ④ 옮기고 싶어도 서울형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많아서
- ⑤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하여 모름
- ⑥ 기타(무엇: _____)

18

19. 인근에 서울형 공인어린이집으로 옮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③ 잘 모르겠음

19

III. 영유아 자녀 중 보육시설에 안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 보육시설에 안 다니는 아이가 있는 경우, 이 아이는 몇 세 인지 기록합니다.
이런 아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가장 나이가 어린 아동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응답 대상 아동은 ()번 아동으로 연령은 ()세

번호	
연령	

1. 앞으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① 보육시설에 보낼 것임(2번 질문으로) ② 보육시설에 안 보낼 것임(다음 페이지로)
 ③ 잘 모르겠음
2. 보육시설에 다니게다면 다음 중 어느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으십니까?
 ① 국·공립보육시설(2-1번 질문으로) ② 비영리법인단체보육시설(IV번으로)
 ③ 민간보육시설(2-2번 질문으로) ④ 가정보육시설(2-2번 질문으로)
 ⑤ 부모협동보육시설(IV번으로) ⑥ 직장보육시설(IV번으로)
 ⑦ 모르겠음(IV번으로) ⑧ 비해당(IV번으로)

1

2

2-1. (국·공립보육시설에 보내시게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용이 저렴하여서 ② 신뢰가 가서 ③ 가까워서 ④ 교사자질
 ⑤ 보육내용 ⑥ 기타() ⑧ 비해당

2-1

2-2. (민간이나 지정 보육시설에 보내시게다면) 보육시설 선택시 서울형 어린이 집을 우선 선택하시겠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름

2-2

IV. 전체에게 가구 및 부모 특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를 기입하십시오. 가구원수 ()명
2. 가족유형을 기입하십시오.
 ① 부부+자녀 ② 한부모+자녀 ③ 3세대 이상 가족 ④ (한)조부모+자녀
 ⑤ 친인척+자녀 ⑥ 기타
3. 지난 3개월 간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액은 얼마나 되는지요?(소득은 세금 공제전의 금액) (* 조사원은 오른쪽 칸에 만원 단위로 기입하십시오.)
 가구소득 총계 월 _____ 만원

1

2

3

4. 아동의 부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	모
<p>4-1. 아동의 부모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3년제 이하) 6) 대학교(4년제 이상) 7) 대학원 이상 8) 비해당(부재)</p>		
<p>4-2. 현재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직장과 하는 일을 질문하여 지침서의 직업분류표에서 확인하고 기입)</p> <p>01) 관리자 0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3) 사무 종사자 04) 서비스 종사자 05) 판매종사자 06) 농업, 임업, 어업 숙련종사자 07)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0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0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의무) 11) 무직 88) 비해당(부재) 99) 모름</p>		
<p>4-3. 최연소 아동의 부모는 현재 종사상 위치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① 자영업자 ② 고용주 ③ 상용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⑤ 일용근로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무직(무직, 군인, 학생, 주부 등) ⑧ 비해당(부재) ⑨ 무응답, 모름</p>		

4-1

--	--

부 모

4-2

--	--	--	--

부 모

4-3

--	--

부 모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

자치구 번호	동번호	시설 번호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 및 유아교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의 향후 전국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정 공보육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편으로 송부한 본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가지고 계시면, 전문조사원이 방문하여 응답 내용을 확인하고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질문지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희 연구위원 02)398-7711 suhnh@kicce.re.kr
 최혜선 연구원 02)398-7705 seestem@kicce.re.kr
 김선화 인턴연구원 02)398-7743 yellow2018@kicce.re.kr

주소	()구·군 ()동·읍·면		
전화번호	시설		보육시설명 () 어린이집
	핸드폰		
조사원	성명		방문일자
	연락처		

육아정책연구소

I. 보육시설 일반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시설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립유형과 설립연도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설립유형	① 민간 ② 가정	설립연도	()년
------	-----------	------	------

2. 귀 시설의 보육아동 정원과 현원, 그리고 보육료 지원아동, 취업모 아동 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정원	()명
현원	영아 ()명 유아 ()명 총 ()명
보육료 지원아동	전액지원아동 ()명/ 일부지원아동 ()명/ 미지원아동 ()명
취업모 자녀수	취업모 아동 ()명

3. 귀 시설의 건물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단독건물 ② 아파트 ③ 주택 ④ 상가건물
 ⑤ 종교단체 건물 ⑥ 공공시설 복합건물 ⑦ 기타()

4. 귀 시설의 임대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자가(용자없음) (5번 질문으로) ② 자가(용자) (42 질문으로)
 ③ 건물 임대(전세) (41 질문으로) ④ 건물 임대(월세) (41 질문으로) ⑤기타()

4-1. 임대하고 있는 경우, 금액과 기간은 어떠합니까?

전세		월세	
① 전세금액: ()원		③ 월세보증금: ()원	
② 계약기간: ()개월		④ 월지급액: ()원	

4-2. 자가인 경우 귀 보육시설의 현재 용자금 규모는 얼마입니까?

용자금: ()백만원

II.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5. 평일 종일제 보육을 위하여 오전 당직교사(시설장 겸직 포함)가 출근하는 시간과 오후 당직교사가 퇴근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1) 오전 당직교사 출근시간	오전(아침) ()시 ()분
2) 오후(저녁) 당직교사 퇴근시간	오후(저녁) ()시 ()분

6. 보육료는 정부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어떻게 받으십니까?

- ① 정부지원단가 ② 정부지원단가 보다 낮게 ③ 정부지원단가 보다 높게

20. 적절하지 않다는 경우, 귀하는 부산시 지정 공보육 어린이집 사후관리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1. 공보육 어린이집 지정 이후 교사관리와 교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구분	① 매우 개선	② 비교적 개선	③ 별 차이 없음	④ 잘 모름
1) 교사 이직				
2) 교사 채용 어려움				
3) 교사의 심리적 안정				
4) 교사의 자존감				
5) 교사의 업무 적극성				

22. 귀하는 공보육 어린이집 지정 이후 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변화가 많을 경우를 7점 만점으로 할 때,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변화 없음 ←-----→ 변화가 많음						
	1	2	3	4	5	6	7
1) 표준보육과정 등 보육내용 충실							
2) 안전 및 위생관리 개선							
3) 급식 등 영양 관리 개선							
4) 아동 인권 보호 강화							
5) 부모 참여 확대							

23. 귀하는 공보육 어린이집 지정 이후 귀 어린이집 운영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변화가 많은 경우를 7점 만점으로 할 때,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변화 없음 ←-----→ 변화가 많음						
	1	2	3	4	5	6	7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2)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관리 체계화							
3) 시설운영 전반 체계화							
4) 시설의 재정운영 안정화							
5) 회계관리시스템으로 재정 운영 투명화							
6) 공개와 열린 운영							

24. 귀 시설은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지정 이후 아동의 입소나 대기자가 늘었습니까?

1) 입소아동	① 증가 ()명 ② 감소 ③ 별 차이 없음 ④ 잘 모름
2) 대기자	① 증가 ()명 ② 감소 ③ 별 차이 없음 ④ 잘 모름 ⑤ 대기자 없음

25. 귀 시설은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지정 이후 보육시설의 총 수입과 총 지출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보기	증가, 감소한 경우 월평균 증가 or 감소 액수
1) 총 수입	① 증가함 ② 감소함 ③ 총수입은 차이 없음 (증가하거나 감소한 주된 이유: _____)	()원
2) 총 지출	① 증가함 ② 감소함 ③ 총지출은 차이 없음 (증가하거나 감소한 주된 이유: _____)	()원

26. 귀하는 공보육 어린이집 지정 이후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부산시가 재정을 투자한 만큼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 ① 투자에 비하여 개선된 정도는 아주 미미하다.
- ② 개선은 되었으나 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하다.
- ③ 개선은 되었으나 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다.
- ④ 투자한 만큼 개선되었다.
- ⑤ 잘 모르겠다.

IV. 다음은 귀하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 분류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27. 귀하의 성별, 연령, 학력 및 경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만 ()세
3)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2,3년제)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
4)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유아교육 ② 아동학 ③ 보육학 ④ 사회복지학 ⑤ 기타(무엇: _____)
5) 귀하가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일한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총 _____년 _____개월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연구보고 2010-12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인 조복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398-7700

팩스: 02)730-3313

인쇄처 대명기획 02)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64-6 93330